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로

동북아역사논총

46호 2014. 12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김종건 ▣ 中國 初級中學 『中國歷史』 教科書의 隋唐史 內容과 變化 7
- 김명진 ▣ 고려 명종대 조위충의 난과 금의 대응 83
- 최운정 ▣ 元代 兩都內戰(1328)과 동북지역
- 요양행성과 등도제왕 세력의 향배 및 세력 浮沈을 중심으로 119
- 이재정 ▣ 조선 활자 인쇄술이 일본 古活字本 인쇄에 미친 영향 151
- 임학성 ▣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移住韓人들의 생활 양태
- “楚山江北戶籍”(1902) 자료의 분석 사례 193
- 정안기 ▣ 일제의 군수동원과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 백낙승(白樂承)의 사례를 중심으로 221
- 방일권 ▣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소련의 귀환 정책과 사할린한인 277
- 이연식 ▣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315

서평

- 이익주 ▣ 고려-대원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35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368

Contents

Articles

Kim Jonggeon | The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History of the Sui-Tang Period in the Chi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7

Kim Myeongjin | Cho Wi-chong's Rebellion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of Goryeo and Jurchen Jin's Countermoves 83

Choi Yoonjung | The TwoCapitals War(1328) and Eastern Mongolia in the Yüan: Focusing on the Tendencies and Vicissitudes of Liaoyang Province and Eastern Uluse 119

Lee Jaejeong | The Introduction of Korean Movable Type Printing Technology to Japanese *Kokatsuji-ban* through the Imjin War(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1

Lhim Hakseong | Residence Status of Korean Immigrants in West Gando in the Early 20th Century: An Analysis of the *Chosan Gangbuk Family Register*(1902) 193

Joung Anki | The Military Mobilization of Imperialist Japan and the Wartime Cooperation of Korean Capital: Focusing on the Case of Paik Nak-Seung 221

Bang Ilkwon | A Thwarted Repatriation: The Steps of the Soviet Union for Detained Koreans in Sakhalinn 277

YI Yeonsik | The Steps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Detained Koreans in Sakhalin, 1945~1983 315

Book Review

Lee Ikjoo | New Perspective of the Studies on the Koryo-Dayuan Relations 353

논문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 初級中學『中國歷史』教科書의 隋唐史 內容과 變化

김종건 | 경북대학교 강의교수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역사교육의 지침과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 교과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및 중국에서 국가 간 역사 서술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의 본래 성격에서 벗어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하의 비역사적 지향이 가져온 왜곡의 산물이기도 하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훈을 생산하는 영역이다.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 기록에 근거하여 그것이 주는 현재적 의미를 추구하는 교수 및 학습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역사교육 현장에 비역사적 영향력이 여과 없이 그대로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로서 역사교육의 의미를 추구하는 필수 도구인 동시에 역사 인식의 구체적인 반영물이기도 하다. 역사 교과서의 기초가 어떠한 지향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初級中學 과정¹⁾에서 역사 교과는 ‘中國歷史’와 ‘世界歷史’를 포괄하여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高級中學 과정²⁾에서는 ‘中國近現代史’, ‘世界近現代史’를 배우고 있으며, 文科系列에서는 선택과목으로 ‘中國古代史’를 추가로 개설하고 있다. 아울러 실험교과서 『歷史』 1, 2, 3이 출간되었고,³⁾ 선택 교과로 6개 과목⁴⁾이 개설되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교과 개편을 지향하면서 운용되고 있다.

중국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편 발표되었으나 교과서상의 한국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전개되었다.⁵⁾ 중

- ※ 투고: 2014년 5월 22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18일, 게재 확정: 2014년 11월 24일
- 1) 의무교육 7~9年級(학년)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교 과정이다. 대체로 7年級에서는 중국고중세사, 8年級에서는 중국근현대사, 9年級에서는 세계사를 편성하고 있는데, 출판사에 따라서는 8年級에서 세계사, 고중세기대사를 편입하기도 한다.
 - 2)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3년간에 해당한다.
 - 3) 山東教育出版社 등은 교과서 표제를 『歷史』로 하고 『歷史』 2권 하에서 세계사 내용을 일부 편입하여 다소 다른 단원 편제를 하고 있으나, 7, 8年級에서 중국사, 9年級에서 세계사라는 편제는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 4) 현재 고급중학 선택과목으로는 ‘歷史上重大改革回眸’, ‘近代社會의 民主思想與實踐’, ‘20世紀의 戰爭與和平’, ‘中外歷史人物評說’, ‘探索歷史的奧秘’, ‘世界文化遺產薈萃’ 등 6개 교과가 편성되어 있다. 현재 高中 교과 편제에 대해서는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訂, 『高中普通歷史課程標準(實驗)』, 人民教育出版社, 2003年 4月 第1版, 2008年 6月 第5刷 참조.
 - 5) 이찬희 등, 1993, 『中國·日本 歷史教科書의 韓國關聯內容檢討』, 韓國教育開發院; 이찬희 등, 1994, 『中國歷史地理教科書의 韓國關聯內容變化分析』, 韓國教育開發院; 柳裁澤, 1994, 「中國의 韓國史 理解와 歷史解析의 準據」, 『史學志』 31; 鄭夏賢, 2001, 「中國의 역사교육에 있어서 少數民族의 理解」, 『歷史教育의 方向과 國史教育』, 尹世哲教授停年論叢刊行委員會, 4월; 朴永哲, 2001, 「中國歷史教科書의 韓國史敍述」, 『歷史教育』 80; 全寅永, 2002, 「中國近代史 教育의 觀點과 韓國史 認識」, 『歷史教育』 84; 朴今海, 1993, 「中國教科書에 나타난 韓國史敍述」, 『歷史教育』 54;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역사교과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 검토

국사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으나 개별 사안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⁶⁾ 시대사 서술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으나 수당 시대사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⁷⁾

본고는 현행 중국의 역사 교과서상에서 중국사 내용이 어떻게 편제되어 서술되고 있는지⁸⁾를 특히 수당 시대사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토, 『中國近現代史研究』 23;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 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金鍾健, 2010, 「中國 歷史教科書上的 韓國 關聯 敘述 內容 變化—初級中學 『中國歷史』 教科書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69; 禹成旼, 2011, 「韓·中間 '相互理解와 歷史和解'의 認識 提高를 위한 歷史教科書의 課題—韓·中 中高校 歷史教科書의 敘述 事例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75 등.

6) 尹輝鐸, 2002, 「中國의 愛國主義와 歷史教育」, 『中國史研究』 18; 柳鏞泰, 2002, 「中國 歷史教科書의 現代史 認識과 國家主義」, 『歷史教育』 84; 李銀子, 2003,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화개방'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中國近現代史研究』 19; 朴章培,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1—민국시대의 민족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19;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민국시대의 민족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20; 朴正鉉, 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中國近現代史研究』 20; 金유리, 2005,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 이인철, 2009, 「중국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역사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논리」, 『동북아역사논총』 26; 金종박 외, 2011, 『중국 역사 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7) 金鍾健, 2004,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명청사 내용과 변화 검토—최근 초급중학교 과서를 중심으로」, 『慶北史學』 27; 金鍾健, 2004,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중국근대사 내용과 변화 검토—최근 초급중학교과서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23; 金鍾健, 2012,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위진남북조사 내용과 변화—최근 초급중학교 과서를 중심으로」, 『우당이영석교수정년퇴임논총』, 우당이영석교수정년퇴임논총간행위원회 등 참조.

8) 중국 역사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金裕利, 2001, 「中國教育課程의 變遷과 歷史教育」, 『近代中國研究』 2; 吳炳守, 2002, 「中國 中等學校 歷史教育課程의 推移와 最近 動向」, 『歷史教育』 84; 金지훈, 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 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반채영, 2013,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의 수정을 통해 본 중국의 역사교육」, 『역사와 담론』 65 등 참조.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의 변천에 관한 개관은 吳炳守, 2001, 「中國 中等學校 歷史教科書의 敘述樣式과 歷史認識」, 『歷史教育』 80; 권소연 외, 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역사교육에서 수당 시대사 부문에 대해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 편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동이 부각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수당 시대는 중국 역사 전체에서 볼 때 두 번째 대통일을 이룬 시기로 중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이다. 이 시기는 기존 선진 진한시대까지 온전히 유지되어 내려오던 중화주의적 질서에 최초로 변화가 초래되었던 위진 남북조시대를 이으면서 다시금 중국 중심주의적 질서로 재편성이 이루어진 시대이다. 수당 제국은 북방 이민족에 의한 5호 16국의 흥망이라는 중국사에서 최대 혼란기를 평정하고 영역을 대외적으로 크게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개방적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서역의 문물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 문화가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등 동서 교류가 왕성해졌다. 특히 이 시기 제국의 통치 체제와 율령을 비롯하여 한자, 불교, 유학 등 문화적 요소의 대외적 영향력은 지대하여 이른바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이라는 문화사적 의의도 함께 갖는 바, 중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대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국가체제가 안정을 이루고 있던 상황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중국을 통일한 수당 제국은 정치적·군사적 팽창력을 한반도로 발산하였다. 군사적 대응을 거쳐 백제와 고구려는 결국 당에 멸망하고, 신라는 당과 전면 전쟁을 치렀다.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개선되어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하여 상호 왕래와 문물 교류가 왕성해지게 되었으므로, 수당 시대 중국 역사는 한국사 차원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수당 시대사가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급중학 교

고구려연구재단; 김지훈 외,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과서의 편제와 본문 서술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판⁹⁾과 직전판¹⁰⁾을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려고 한다. 초급중학용 중국 역사 교과서는 人民教育出版社에서 발간한 것을 비롯하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上海教育出版社, 廣東教育出版社, 四川教育出版社가 발행한 교과서가 있고, 浙江教育出版社, 湖南教育出版社, 岳麓書社 등에서 발행한 시험용 교과서도 있다. 그러나 현재 베이징을 비롯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¹¹⁾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고급중학 교과서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 아울러 다른 시대에 관한 검토도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9)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 12,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 이 교과서는 이후 매년 부분적인 수정이 진행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2014년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2014년판 電子課本을 참고함. 이하 『中國歷史』7下(2001판, 2014쇄)로 약칭함.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教師教學用書』7下, 人民教育出版社도 참고하였다. 2014년판에서 부분적으로 지면 배치나 사진 등 자료의 교체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하였고, 쪽수와 행수의 표기는 2014년판을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 10)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 12,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이 책은 2004년 10월 第4刷를 참고함. 이하 『中國歷史』7下(2001판, 2004쇄)로 약칭)은 최근판보다 11쪽이 적으나 이는 최근판이 단원 시작 부분에 2쪽씩 삽화와 단원 목차면을 추가 편성하고, 기타 사진 등 자료 배치를 이동하고 판을 새로 짠 결과 나타나는 차이일 뿐, 수록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수록 내용 변화의 추적은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2001, 11,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二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이 글은 2004, 1, 第3刷를 참고했다. 이하 『中國歷史』2(2001판, 2004쇄)로 약칭)과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1993, 4,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二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이 글은 1999, 10, 吉林第1刷를 참고했다. 이하 『中國歷史』1(1993판, 1999쇄)로 약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11) 金裕利, 2001, 「中國教育課程의 變遷과 歷史教育」, 『近代中國研究』2, 124쪽에서는 인민교육출판사판의 사용률이 70%가량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II. 隋唐史의 편제와 변화

현재 中國人民教育出版社에서 출판한 初級中學『中國歷史』 교과서는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7학년 1, 2학기과 제8학년의 1, 2학기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제3책의 제4과까지를 중국고대사로 편성하고 있고, 제3책의 제5과부터 제27과까지와 제4책 제17과까지 40과를 중국근대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제4책의 제18과부터 28과까지의 11과를 중국현대사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제1책과 제2책은 초급중학 1학년 과정이고, 제3책과 제4책은 2학년 과정이다. 초급중학 교과서에서 수당 시대사 영역은 현재 7년급 하책 제1단원 「번영과 개방의 사회」로 편성된 제1과부터 제8과까지의 8개 과이다.

중국 수당 시대사 관련 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직전판부터 최근판까지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²⁾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는 28개 省, 市, 自治區에서 3년간의 실험 점점을 거쳐 1992년 가을 학기부터 보편 보급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1992년 3월과 1993년 4월 두 차례 수정을 거쳤고, “국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공산당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사랑하게 하며 4대 기본 원칙과 개혁개방정책을 견지하도록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³⁾고 편수 지침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수당사 영역은 9개 과로 편성되었다.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1993년판의 기초 위에서 부

12) 직전판(1993판, 1999쇄)의 경우, 제목과 항목의 표기는 『의무교육초급중학교교과서: 중국력사』 제2권(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9. 10, 제2판, 1999. 10, 제3쇄)의 번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우리 용어로 최소한의 수정을 가했다.

13)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권두의 「說明」 참조. 9년 의무교육 초급중학 역사 교과과의 교학목적과 교학내용에 대해서는 課程教材研究所 編, 2001,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 『20世紀中國中小學課程標準·教學大綱匯編: 歷史卷』, 人民教育出版社, 15~735쪽.

〈표 1〉 초급중학 『中國歷史』 수당사 관련 단원 편제 변동 내역

『中國歷史』 2 (1993판, 1999쇄)			『中國歷史』 2 (2001판, 2004쇄)			『中國歷史』 7하 (2001판, 2014쇄)		
과	제목	항목	과	제목	항목	과	제목	항목
1	한때 번성한 隋 왕조	1. 수 왕조의 남북 통일 2. 開皇의 治 3. 수 왕조의 대운하 4. 폭군 隋煬帝 5. 瓦崗軍과 隋 왕조의 궤멸	1	(좌동)	1. 수 왕조의 통일과 개황의 치 2. 수 왕조의 대운하 3. 폭군 隋煬帝와 수의 멸망	1	(좌동)	1. 남북 재통일 2. 대운하의 개통
2	“貞觀의 치”에서 “開元의 치”까지	1. 晉陽 거병 2. 玄武門의 변 3. 정관의 치 4. 여황제 武則天 5. 開元 盛世	2	(좌동)	1. 당 왕조 건립과 “정관의 치” 2. 여황제 武則天 3. 開元 盛世	2	“정관의 치”	1. 당 왕조의 건립 2. “정관의 치” 3. 여황제 武則天
3	성세 경제의 변영	1. 쌀에는 윤기가 흐르고 좁쌀은 새하얗다 2. 정교한 수공업품 3. “長安百萬家”	3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3	“개원 성세”	1. “개원의 치” 2. 성세 경제의 변영 3. 당 왕조의 쇠퇴
						4	과거제의 창립	1. 과거제의 탄생 2. 과거제의 완비 3. 과거제의 영향
4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1. 突厥汗國의 흥쇠 2. 위구르 옷을 입고 위구르 말을 타다 3. “車書本一家” 4. 蒼山과 洱海 사이의 南詔 5. 당과 토번이 “화동으로 일가를 이루다”	4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5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1. 松贊干布와 文成公主 ★위구르의 발흥 ★“車書本一家” ★蒼山과 洱海 사이의 南詔
5	“은 천하에 벗이 있다”	1. 빈번한 무역 왕래 2. 당과 신라의 우호관계 3. 당풍이 奈良城에 흘러 넘치다 4. 玄奘이 인도로 가다 5. 페르시아, 아라비아와 당조의 통교 6. 당과 동로마의 왕래	5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페르시아, 아라비아와의 통교 6. (좌동)	6	대의 우호 왕래	1. 건당사와 鑿眞의 東渡 2. 당과 신라의 관계 3. 玄奘의 西遊

『中國歷史』2 (1993판, 1999쇄)			『中國歷史』2 (2001판, 2004쇄)			『中國歷史』7하 (2001판, 2014쇄)		
과	제목	항목	과	제목	항목	과	제목	항목
6	唐왕조의 석락과 멸망	1. 天寶 위기 2. 安史의 난 3. 변진의 할거 4. 환관의 전횡 5. “黃巢·王仙芝 거병은 백성을 위한 것”	6	(좌동)	1. 安史의 난 2. 변진의 할거와 환관의 전횡 3. “黃巢·王仙芝 거병은 백성을 위한 것”			(3과 3항으로 이동 축약)
7	봉건문화의 고봉(1)-과학 기술의 발달, 종교의 흥성	1. 흥성한 건축업 2. 목판인쇄술과 회화의 발명 3. 천문학자 一行 스님 4. 藥王 孫思邈 5. 종교의 발전	7	찬란한 수당 문화(1)-발달한 과학기술	1. (좌동) 2. 목판인쇄술의 발명 3. (좌동) 4. 의학의 발전	7	찬란한 수당 문화(1)	1. 고도로 발전한 건축 수준 2. 목판인쇄술의 발명 3. 천고에 빛나는 시단
8	봉건문화의 고봉(2)-千古에 빛나는 문단	1. 시가의 황금시대 2. 고문운동 3. 당대의 傳奇	8	찬란한 수당 문화(2)-千古에 빛나는 문학예술	1. 빛나는 시가와 산문			
9	봉건문화의 고봉(3)-오색 찬란한 예술	1. 서법의 고봉 2. 이채로운 회화 3. 예술의 보고 莫高窟 4. 풍격 다양한 음악과 춤 5. 고대 체육의 흥성기			2. 이채로운 서법과 회화 3. 예술의 보고 莫高窟	8	찬란한 수당 문화(2)	1. 눈부신 서법과 회화 2. 세계적 예술의 보고 莫高窟 3. 화려한 음악과 무용
			활동과	역사인물 변론	당 현종은 과오가 큰가. 공이 큰가?	활동과 1	역사단극	文成公主의 入藏

본적인 수정을 하였다.¹⁴⁾ “기초지식, 능력배양 및 사상교육이라는 3대 교육 목표의 전제하에 첫째, 학생 부담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며, 둘째, 취미성, 생동성 및 계발성을 강화하며, 셋째, 전통적 교육방식을 바꾸어 창의적 인식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수되었다”¹⁵⁾고 지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전체 8개 과로 편성하였으나 권말에 活動課 1개 과가 추가되었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는 2001년판 『中國歷史』 2가 기초로 삼은 지침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편제를 대폭 수정하여 <표 1>과 같은 구성으로 간추렸다. 그리고 새로 단위 구분을 시도하였고, 8개 과를 포괄하는 단위명을 「번영과 개방의 사회」라고 하였으며, 기존 권말에 있던 活動課를 단위 말미에 추가했다.¹⁶⁾ 이는 창의력과 실천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 새로운 교학 지침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의 제1과 「한때 번성한 隋王朝」의 課名은 2001년판 『中國歷史』 2와 2001년판 『中國歷史』 7하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판 『中國歷史』 2에서는 기존 1항 「수 왕조의 남북 통일」과 2항 「開皇의 치」를 통합하여 1항으로 묶어 「수 왕조의 통일과 개황의 치」로 축약하였고, 4항 「폭군 隋煬帝」와 5항 「瓦崗軍과 隋왕조의 궤멸」을 통합하여 3항 「폭군 隋煬帝와 수의 멸망」으로 압축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재에서는 수의 멸망 과정을 삭제하여 2개 항으로 줄였다. 폭정이나 멸망 기사가 삭제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보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향하는 기초에서 기인한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의 제2과 「貞觀의 치」에서 “開元の 치”까지 課名이 2001년판 『中國歷史』 2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01년판 『中

14) 『中國歷史』 2(2001판, 2004쇄)는 2001년 제1판 제1쇄가 출간되었는데, 2004년 제3쇄까지 추가적인 편제나 수정이 없다.

15) 『中國歷史』 2(2001판, 2004쇄) 및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권두의 「說明」 참조.

16) 2001년판 『中國歷史』 2에서는 권 전체에 活動課가 1개 과뿐이었으나, 2001년판 『中國歷史』 7하에서는 活動課를 제1단원에 1개 과, 송원대를 다룬 제2단원에 1개 과, 명청대를 다룬 제3단원에서는 2개과로 전체 4개 과를 편성하였다.

『中國歷史』 7하에서는 「정관의 치」란 제목으로 바뀌었다. 2001년판 『中國歷史』 2에서는 기존 1항 「晉陽 거병」, 2항 「玄武門의 변」, 3항 「정관의 치」 부분을 묶어 1항 「당 왕조 건립과 “정관의 치”」로 압축하였고, 「여황제 武則天」과 「開元 盛世」 부분을 2, 3항으로 이어 편성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에서는 「당 왕조의 건립」, 「정관의 치」를 다시 별항으로 구분하는 대신, 「개원의 치」 부분은 제3과로 옮겨 편성하였고, 과거제 관련 내용은 제4과로 옮겨 정리하였다. 내전과 정변 관련 기사를 줄인 것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지향하는 기조와 유관하며, 역시 당 왕조의 번성을 강조한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의 제3과 「성세 경제의 변영」은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재에서는 課名과 항목 편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제3과 「“개원 성세”」, 제4과 「과거제의 창립」으로 세분화되어 제3과에는 「“개원의 치”」, 「성세 경제의 변영」, 「당 왕조의 쇠망」으로 편성하였고, 제4과에는 과거제의 탄생, 완비, 영향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상세히 내용을 담았다. 이는 「번영과 개방의 사회」라고 한 단원명 편성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당대 중국사의 개방성과 변영한 치세에 대한 강조를 지향한 모습이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의 제4과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는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는 課名과 항목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같은 과명을 유지한 채 제5과로 편성되었으나 기존 1항 「突厥汗國의 흥쇠」가 빠지고, 5항에 있던 문성공주 관련 내용이 1항으로 이동하여 정리되었다. 유목 이민족 가운데 티베트 기사가 앞으로 옮겨진 것은 중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면이 크다. 위구르, 말갈과 발해, 운남 등에 대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돌궐 기사가 삭제된 것 역시 현재 돌궐족 사회가 중국 내에서 독자적 정체성이 없어진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새 교과서에서는 서북 위구르, 동북의 발해, 운남의 南詔를 다룬 2, 3, 4항은 ★표를 하여 지역별·학교별로 선택 수업을 하도

록 지침을 따로 두고 있다.¹⁷⁾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의 제5과 「은 천하에 벗이 있다」는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는 課名과 6개 항의 내용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課名을 「대의 후호 왕래」로 바꾸어 제6과로 편성하였고, 내용도 전체적으로 축약하여 「遣唐使와 鑿眞의 東渡」, 「당과 신라의 관계」, 「玄奘의 西遊」 등 3개 항으로 간추렸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의 제6과는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는 과명이 유지된 채 기존 1, 2항을 묶어 「安史의 난」으로, 기존 3, 4항을 묶어 「번진의 할거와 환관의 전횡」으로 하여 기존 5개 항을 3개 항으로 조정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과의 내용 전체를 「당 왕조의 쇠망」으로 대폭 줄여서 제3과 제3항으로 이동 편성하고 과를 없애 버렸다. 전란이나 쇠망 관련 기사를 줄인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조하려는 지향과 관련 있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의 제7, 8, 9과는 문화를 다룬 내용이다.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課名 「봉건문화의 고봉」을 「찬란한 수당 문화」로 바꾸고 이를 2개 과로 줄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는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의 제7과에서 제5항 「종교의 발전」을 삭제하였고, 課名의 부제에서도 ‘종교의 흥성’이란 표현을 삭제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는 課名은 유지하면서 부제를 삭제하였고, 내용에서도 건축, 인쇄 부분은 두고 천문학, 의학학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 제8과 1항에 있던 시문학 내용을 옮겨 편성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는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의 제8과와 제9과를 통합하여 부제를 ‘千古에 빛나는 문학 예술’로 바꾸고, 시문, 서예와 회화, 막고굴의 3개 항의 내용만 남기고 소설, 음악, 무용, 체육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문학 부분이 제7과로 옮겨간 대신 「눈부신 서법과 회화」, 「세계적 예술의 보고 莫高窟」, 「화려한 음

17)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권두의 「說明」 참조.

악과 무용」의 3개 항으로 편성하였다. 음악과 무용 부분은 2001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93년판 『中國歷史』 2에 인용된 그림 일부를 포함하면서 새로 추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중화주의적 중국사 서술의 기초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적 지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인식 정책이 반영된 구조인데,¹⁸⁾ 내적 분열이나 민족 간 대결 기사를 줄이고 통일왕조의 영토 확장과 주변 민족에 대한 통합과 통일, 정치적·사회경제적·문화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Ⅲ. 본문 서술 내용의 특징과 변화

중국 초급중학 교과서 『中國歷史』 7하의 내용 구성은 제시문, 본문, 참고문, 생각하기, 지도, 사진이나 그림, 도표, 주석, 자료 및 연습문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기본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과 참고문의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기록상의 변화 내용에 주목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¹⁹⁾

『中國歷史』 7하(2001판) 교과서의 제1과는 『中國歷史』 2의 제1과를 계승한 것으로, 단원명은 「한때 번성한 수 왕조」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새로 서술하고 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서술상의 변

18) 이동훈, 2011, 「중국역사 교과서에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분석-근대이전의 민족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역사 교과서와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동북아역사재단.

19) 『中國歷史』 2(1993판)에서는 본문은 흰 바탕, 참고문은 주황색 바탕 안에 수록되어 있고, 『中國歷史』 2(2001년판)에서는 본문은 흰 바탕, 참고문은 연한 녹색 바탕 안에 수록되어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에서는 본문과 참고문 모두 흰 바탕에, 참고문만 연한 녹색 글자로 인쇄하여 구별하고 있다.

화 내용을 『中國歷史』 2(1993판)과 대비하여 요약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²⁰⁾

기존 교과서에서는 이 단원에서 陳나라의 멸망과 隋나라의 통일 과정, 수 문제의 치적, 수 양제의 폭정, 대운하, 수나라의 멸망 과정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고루 자세하게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교과서에서는 陳나라와 隋나라의 쇠망 과정, 수 양제의 폭정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추린다는 지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럽지 못한 중국 역사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수 문제의 모범적인 ‘개황의 치’, 대운하 개착의 의의 등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요지를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할 만한 주제 중심으로 역사를 새로 정리한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수 통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는 새로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하고 있다.²¹⁾ 이 점은 수가 통일국가로서는 길지 않았지만 남북조 분열을 통일하여 민생의 안정을 가져왔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기초에서 통일과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또한 수 문제의 근검절약을 강조²²⁾하고 수 양제의 사치와 폭정을 부각시켜 대비한 것은 전형적인 교훈적 역사의 지향이다. 요컨대 이 과의 새 교과서 내용은 자랑스러운 중국사, 통일을 통한 안정, 근검절약의 강조가 돋보인다.

20) 이하 표의 작성에서 본문은 (본)으로 참고문은 (참)으로 표시하였다. 1993년판에 있던 내용으로 2001년판에서 삭제된 내용은 ()로 표시하였고, 2001년판에 추가된 내용은 ____로 표시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본문에서 ‘우리나라’라고 한 부분은 ‘중국’으로 바꾸고, ‘조선’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나라’로 바꾸어 정리하였다.

21) “수 문제 통치 20년간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수 왕조에서 장안, 낙양 …… 양식과 직물이 역사에는 정부가 5~60년 사용할 수 있었다고 기록된다”. 『中國歷史』 7하, 2쪽, 9~13행.

22) “수 문제는 근검절약을 제창하여 …… 후비도 낡은 옷을 입었다. 태자 楊勇이 금옥으로 장식한 갑옷을 사용하자 수 문제가 알고 비평하여 이르기를 “예로부터 근검절약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수 문제의 주도로 수초에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中國歷史』 7하, 2쪽, 1~4행.

〈표 2〉 「한때 번성한 수 왕조」의 내용 변화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1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1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1. 한 때 번성한 수 왕조	1. 수 왕조의 남북 통일	p.2, 1 ~5행(본)	581년, 북주(황제)의 외척 양견이 정권을 탈취하여 수조를 세우고 장안에 도읍 하(고 연호를 개황이라 하)였다. 양견이 바로 수 문제이다. (남북조 후기의 북방 민족 …… 통일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589년에 수조는 진조를 멸망시키고 남북을 다시 통일하였다.	1-1. 남북 재통일	p.2, 2 ~4행	북주 멸년 외척 양견이 <u>대권을 장악하였다</u> . 581년 그는 북주정권을 탈취하여 장안에 도읍하였다. 양견이 곧 수 문제이다. 589년 <u>수군이 남하하여 남조 마지막 왕조인 진조를 멸망시키고 남북을 다시 통일하였다</u> .	부분 축약 수정
		p.2, 6 ~20행(참)	(수나라가) 陳나라를 멸(하는 데는 4개월 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 진 후주는 (…… 마침내) 나라를 망친 임금이 되었다.		p.2, 5행 ~p.3, 5행(참)	진나라를 멸하기 전 강남인민들은 <u>부패한 진나라가 싫어 …… 수군이 …… 올라와 진 후주는 …… 나라를 망친 임금이 되었다</u> .	전체 대폭 수정
	2. 개황의 치	p.2, 21 ~24행(본)	(수 문제 즉위 이후 개혁을 실시하여 ……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p.3, 6 ~9행(본)	수 문제는 <u>힘써 통치한 황제이다</u> . …… <u>사회 경제는 번영하였다</u> .	전체 대폭 수정
	p.3, 1 ~4행(본)	(수 문제는 관리선 발제도를 개혁하여 …… 이후 각 왕조에서 계승되었다.)			(과거제 관련 내용은 제4과 제1항으로 이동)	축약 수정 삽입	
	p.3, 5행 ~9행(참)	수 문제는 근검절약을 숭상하여 …… 후비도 낡은 옷을 입었다. (그는 아들도 절약하도록	p.3, 14 행~p.4, 3행(참)		수 문제는 근검절약을 제창하여 …… 후비도 낡은 옷을 입었다. 태자	전체 대폭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1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1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교육했다.) 태자 楊勇이 멋진 갑옷을 (얻고 늘 흐뭇해했다.) 수 문제가 보고 비평하여 이르기를 “예로부터 …… 근검 절약에 유념해야 한다” 수 문제의 주도로 (귀인들도 …… 장신구를 달지 못했다.) 수 초에 근검 절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태자 楊勇이 금옥으로 장식한 갑옷을 사용하여 수 문제가 알고 비평하여 이르기를 “예로부터 …… 근검절약에 유념해야 한다” 수 문제의 주도로 수 초에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체 대폭 수정
		p.3, 10 ~19행 (본)	수 문제 재위 20여 년간 (국기를 통일 인정시켜 …… 경제가 번영, 발전했다.) 장안, 낙양 …… 양식과 직물이 (당 초 기까지 사용되었다. 전국 호수는 배로 늘어났다.) 역사에서는 “開皇의 치”라고 한다.		p.3, 9 ~13행 (본)	수 문제 통치 20 년간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수 왕조에서 장안, 낙양 …… 양식과 직물이 역사에는 정부가 50~60년 사용할 수 있다고 기록된다.	부분 수정 부분 추가
3. 수 왕조의 대운하	p.3, 20행 ~p.4, 2행(본)		남북 교통을 강화 …… 하기 위해, 605년부터 (610년까지) 수 양제는 수백만 명을 동원하여 …… 대운하를 개통하였다. 대운하는 낙양을 중심으로 북으로 涿郡, 남으로 余杭까	1-2. 대운하의 개통	p.4, 5 ~10행 (본)	남북 교통을 강화 …… 하기 위해, 605년부터 수 양제는 확보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수 백만 명을 동원하여 …… 대운하를 개통하였다. 대운하 …… 개통은	부분 축약 부분 추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1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1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지 (전체 4~5천 리의 길이였다. 이것은 고대 세계 최장의 운하였다. 그 개통은 남북 경제 교류를 크게 촉진했다.			남북 경제 교류를 크게 촉진했다.	
		p.4, 3 ~8행 (참)	대운하 (개통은 …… 새로운 …… 것이 아니라) 기존 자연 하천과 운하를 이어 소통시킨 것이다. (수 양조의 대운하는) 영제거 …… 5개 하류를 이은 것이다. 그것은 (…… 광대한 지역을 통과하여) 남북 교통의 대동맥을 이루었다. (당초 사람들은 대운하를 …… 라고 찬양하였다.)		p.5, 1 ~5행(참)	수조의 대운하는 이미 있던 …… 개통한 것이다. 그것은 영제거 …… 5개 하류를 이은 것으로 남북 교통의 대동맥을 이루었다. 대운하의 개통은 중국 경제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대량 삭제 부분 수정 부분 보충
4. 폭군 수 양제		p.4, 9 ~10행 (본)	(수 양제는 …… 폭군이였다. ……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전체 삭제
		p.4, 11 ~15행 (참)	(낙양 서남의 顯仁宮은 규모가 광대하여 …… 西苑에서 밤에 말을 타고 즐겼다.)				전체 삭제
		p.4, 16 행~p.5, 4행(참)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 “중국은 풍요하기에, …… 나무에 감는가”라고 물었다.)				전체 삭제
		p.5, 5 ~6행 (본)	(대운하 개통 이후 수 양제는 …… 환송하여야 하였다.)				전체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1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1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5, 7 ~9행 (참)	(수 양제가 탄 龍舟는 …… 호송 기병이 20만명이나 있었다.)				전체 삭제
		p.5, 10 ~11행 (본)	(수 양제는 세 차례 고구려와 전쟁 …… 군량을 운송했다.)				전체 삭제
		p.5, 12 ~13행 (본)	(끊임 없는 요역과 병역으로 …… 대구 모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전체 삭제
5. 瓦崗軍과 수 왕조의 궤멸	p.5, 14 ~18행 (본)	(618년 산동 장백산 …… 각지 농민들이 다투어 호응했다.)					전체 삭제
	p.5, 19 ~24행 (참)	(장백산 농민기의 수령 王薄은 …… 고구려를 치러 요동으로 가서 죽지 말라고 했다.)					전체 삭제
	p.5, 25 ~30행 (본)	(장백산 농민기의 이후 …… 翟讓과 李密이 이끄는 와강군이었다.)					전체 삭제
	p.6, 1 ~9행 (참)	(적양은 …… 와강군이라 불리었다. 616년, 이밀은 …… 세상에 호소하였다.)					전체 삭제
	p.6, 10 ~12행 (본)	(수조는 와강군과 각지 농민기의군의 공격하에 …… 멸망되었다.)					전체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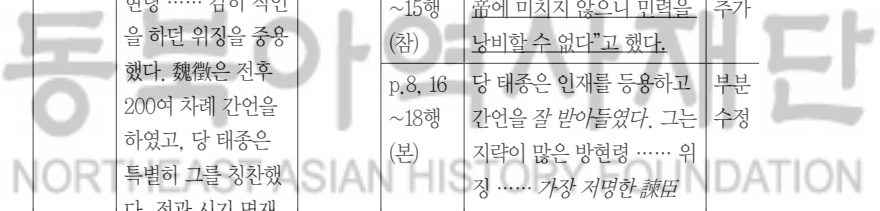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 7하 교과서의 제2과, 제3과, 제4과는 『中國歷史』 1의 제2과와 제3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 개편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서술상의 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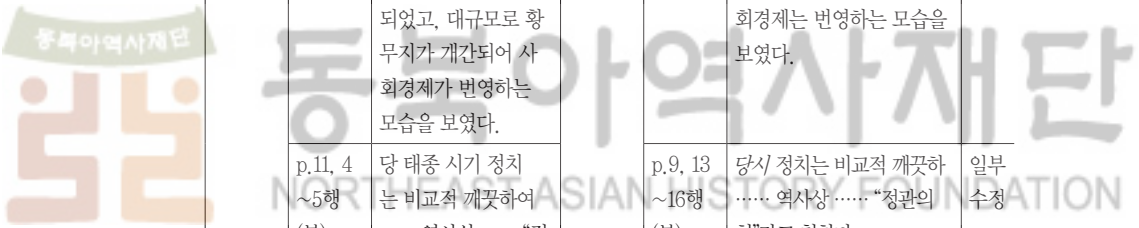
<표 3> 「“정관의 치”, 「“개원의 치”, 「“과거제의 창립” 과의 내용 변화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2. “정관의 치”에서 “개원의 치”까지	1. 진양 거병	p.8, 1 ~3(본)	수 말 농민전쟁이 발 전하고 …… 균웅이 일어나 …… 승리자 는 진양에서 거병한 이연 부자였다.	2-1. 당 왕조의 건립	p.7, 1 ~4행 (본)	수 양제 통치 후기 폭학무 도하여 …… 기의군의 공 격하에 수 왕조는 와해되 었다.	전체 수정
		p.8, 4 ~8행 (본)	618년 이연은 (황제 를 칭하고) 당조를 건 립하고 장안에 도읍 했다. 이연은 당 고조 이다. (7~8년의 전쟁 을 거쳐 당조는 전국 을 통일했다.)			618년 양제가 江都에서 부하에게 피살되어 수 왕 조는 멸망했다. …… 太原에서 수에 맞서 일어난 쿠 쥌이연은 장안으로 진입 하여 당조를 건립했다. 이 연은 당 고조이다.	대폭 수정 부분 추가
	2. 현무 문의 변	p.8, 9 ~10행 (본)	(통일전쟁이 끝나면 서 …… 제위계승권 투쟁이 …… 현무문의 변이다.)				전체 삭제
	p.8, 11행 ~p.9, 14행(참)	(당조 건립 과정에서 이세민의 공이 혁혁 했다. …… 元吉도 이 세민 부하의 활에 맞아 죽었다.)	p.7, 6행 ~p.8, 2행(참)	이세민은 …… 당 고조를 압박하여 제위를 물려받 았다.	내용 교체		
	p.10, 1 ~2행 (본)	(오래지 않아) 당 고 조 퇴위(하)고 이세민 이 황제 …… 연호는 정관이다. 이세민은 (중국 고대의 걸출한 정치가) 당 태종이다.	p.7, 5행 (본)	당 고조 퇴위 이후 이세민 이 뒤를 이었다. 이세민은 당 태종이고, 연호는 정관 이다.	축약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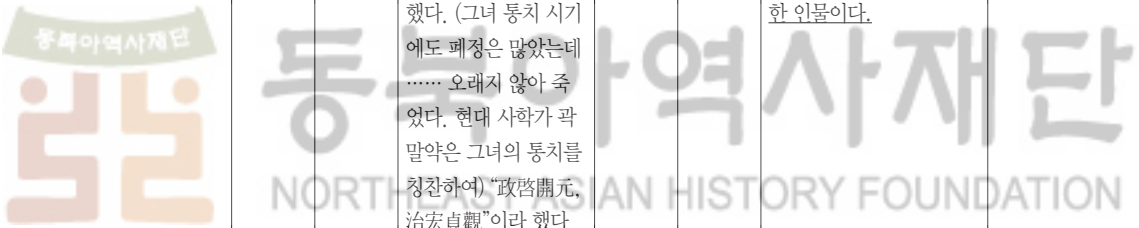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3. 정관의 의치	p.10, 3 ~4행 (본)	당 태종은 수나라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 생산을 발전시켜야 통치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2-2. “정관의의치”	p.8, 3 ~8행 (본)	당 태종은 <u>파란만장한 농민 전쟁 중 인민 구조 역량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수 멸망의 교훈을 받아들여 통치자가 …… 부역을 줄이고 생산을 발전시키고 황제가 …… 통치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u>	부분 수정 부분 추가		
	p.10, 5 ~7행 (본)	당 태종은 인재를 잘 쓰고 간언을 중시한 것으로 이름 높다. 그는 지략이 많은 방현령 …… 감히 직언을 하던 위징을 중용했다. 魏徵은 전후 200여 차례 간언을 하였고, 당 태종은 특별히 그를 칭찬했다. 정관 시기 명재상과 명장군이 많이 배출되었다.		p.8, 9 ~12행 (본)	당 태종은 <u>생산 발전을 중시하여 …… 인민 부담 경감에 유리하였다.</u>	전체 추가		
					p.8, 13 ~15행 (참)	당 태종은 …… “…… 漢文 辭에 미치지 않으니 민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다.	전체 추가	
					p.8, 16 ~18행 (본)	당 태종은 인재를 등용하고 간언을 잘 받아들였다. 그는 지략이 많은 방현령 …… 위징 …… 가장 저명한 諫臣 이고 당 태종의 중용을 받았다. 정관 시기 명재상과 명장이 많이 배출되었다.	부분 수정	
		p.10, 8 ~12행 (참)	위징은 원래 이견성의 책사였는데 …… 위징이 병으로 죽은 뒤 “…… 나는 거울을 잃었다”고 했다.		p.9, 1 ~11행 (참)	한번은 위징이 간언 …… 위징을 여전히 후대했다. 뒤에 위징이 세상을 떠나자 …… “…… 나는 거울을 잃었다”고 했다.	부분 추가 부분 수정	
		p.10, 13 ~16행 (본)	당조는 수나라 3성6부제를 이어받았다. …… 인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했다.				전체 삭제	
	p.10, 17 ~21행 (본)	정관 시기 과거에 고시과목을 늘려 …… 천문학 등도 있었다.				제4 과로 일부 이동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p.10, 22~26 행(참)	당 태종 시기 진사과의 지위가 날로 높아져 …… “천하의 영웅이 내 올가미에 있다”고 했다.				제4과 제2항으로 일부 이동
		p.11, 1~3 행 (본)	(당이 처음 설 때 경제는 좋지 않았다.) 정관 연간 …… 노역 부담이 비교적 가벼워 생산 시간이 보장되었고, 대구모로 황무지가 개간되어 사회경제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p.9, 12~13 행 (본)	정관 연간 농민은 일정한 토지를 갖고 부역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인 생산과 생활환경을 가졌고 , 대구모로 황무지가 개간되어 사회경제는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p.11, 4~5 행 (본)	당 태종 시기 정치는 비교적 깨끗하여 …… 역사상 …… “정관의 치”라고 칭한다.	p.9, 13~16 행 (본)	당시 정치는 비교적 깨끗하여 …… 역사상 …… “정관의 치”라고 칭한다.		일부 수정
4. 여황제 무측천	p.11, 6~9 행 (본)	당 태종의 아들 고종은 병이 많아 황후 무측천이 …… 황제가 되어 당 태종의 생산 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수많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뒤의 명신 姚崇, 宋璟은 바로 그가 발탁했다.) 역사에서는 그녀의 통치를 정관유풍이라고 한다. 무측천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이다.	2-3. 여황제 무측천	p.9, 17~26 행	무측천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이다. 그녀는 본래 당 고종의 황후였으나 점차 실권을 장악하여 만년에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周로 바꾸었다. 무측천은 집권 동안 당 태종 …… 계승하여 당조의 사회경제가 진일보 발전하고 국력이 부단히 증강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통치를 “政啓開元, 治宏貞觀”이라 했다.		부분 수정 부분 삭제 부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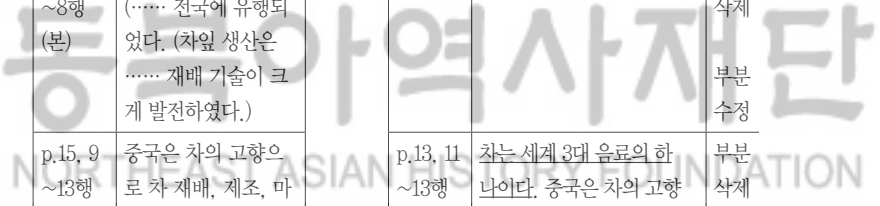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11, 10 ~15행 (참)	무측천은 (어려서부터 …… 황제가 되고 …… 대신들이) 인재를 천거하게 했다. (당시) 저명한 문화가 駱賓王이 무측천에 반대하는 반군에 가담하여 무측천 토벌하자는 글을 썼다. 무측천은 이를 보고 …… “이런 인재를 기용하지 않으면 재상의 과실이다”라고 했다. (그녀 통치 시기에 도 폐정은 많았는데 …… 오래지 않아 죽었다. 현대 사학가 곽말약은 그녀의 통치를 칭찬하여 “政啓開元, 治宏貞觀”이라 했다.		p.9, 27 ~4행 (참)	무측천은 인재를 <u>아꼈다</u> . 저명한 문화가 駱賓王이 무측천에 반대하는 반군에 가담하여 무측천을 성토했다는 글을 썼다. 무측천은 이를 보고 …… “이런 인재를 기용하지 않으면 재상의 과실이다”라고 했다. <u>그녀는 수많은 인재를 과격적으로 기용하였는데 뒤에 일대의 명신이 된 요승 등은 모두 그녀가 기용한 인물이다.</u>	축약 수정 부분 추가
5. 개원 성세	p.11, 16행 ~p.12, 3행(본)	무측천 이후 당조의 정치 정세는 …… 당 현종 때 이르러서 …… 안정되었다. 당 현종 (즉위 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정사를 잘 알고 개혁정신이 강한 요승, 송경이 재상이 되어 통치에 힘썼다.	3-1. “개원의 치”	p.12, 1 ~6행 (본)	무측천 이후 당조의 정치 정세는 …… 당 현종 때 …… 안정되었다. 당 현종은 …… 요승, 송경을 재상으로 <u>임용하여</u> 통치에 힘썼다. <u>그는 지방통치를 중시하여 …… 정국을 일신하여</u> 역사에서 “개원의 치”라고 한다.	일부 삭제 일부 수정 일부 추가	
	p.12, 3 ~20행 (참)	당 현종 李隆基는 …… 요승에게 …… 재상으로 임명 …… 요승의 재상 임명을 선포했다. 요승은 은		p.12, 7 ~10행 (참)	요승을 <u>임명할 때</u> 당 현종은 마침 관원들과 사냥중이었는데 바로 요승의 재상 임명을 선포했다. 의외로 요승은 은혜에 감사하	부분 삭제 부분 수정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혜에 감사하지 않아 현종이 아주 놀랐다. …… 사냥을 할 때 …… 저의 10개 항 건의를 따르지 않으면 임명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 이후) 요승이 인정의 실행 …… 등 10개 항을 말하였다. 현종이 …… 허락했다. …… “이것이 폐하가 어진 통치를 하는 시작입니다”라고 했다.			지 않아 현종이 아주 <u>이상히 여겼다</u> . 사냥을 할 때 저의 10개항 건의를 따르면 임명을 받아 나가고, <u>그렇지 않으면</u> 임명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요승이 인정의 실행 …… 등 10개 항을 말하였고 당 현종이 모두 따랐다.	부분 추가
	p.12, 21 ~27행 (참)		당 현종은 (관리에 …… 선입한) 2백여 명의 현령을 (선정전으로 불러 시험 ……) 한 명만 …… 현령으로 나갔고, 나머지 (…… 최하위 45명은 ……) 다시 공부하게 하고 …… (이부 관원 둘을 해직하였다.)	p.13, 1 ~4행 (참)		당 현종은 일찍이 새로 선입한 2백여 명의 현령을 <u>도성으로 불러 친히 시험을 보았다</u> . 그중 한 명만 …… 임지로 나갔고, 나머지 불합격자들은 다시 공부하거나 원래 자리에 머물게 했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p.12, 26행 ~p.13, 2행(본)		(당 현종 통치 전기 정치가 비교적 안정 되고 …… 성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 의 연호가 ‘개원’이어서) 역사에서 “개원성세”라고 한다.				p.12, 5 ~6행과 p.15, 14 ~15행 으로 수정 이동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3. 성세 경제의 변영	1. 쌀에 는 윤기 가 흐르 고 좁쌀 은 새하 얇다	p.14, 1 ~6행 (본)	(당조의 식량은 주로 조와 벼였다. …… 수 수와 메밀은 이때 황 하 유역으로 전입되 었다.)	3-2. 성 세 경제 의 변영	p.13, 5 ~10행 (본)	당 <u>현종 시기 사회경제는</u> <u>생기발달 …… 농업 방면</u> <u>에서 …… 대형 수리시설</u> <u>…… 남방 벼가 광범하게</u> <u>…… 채소에는 수많은 신품</u> <u>종 …… 차 생산은 강남 농</u> <u>업에서 중요 지위를 차지하</u> <u>여 차 마시는 풍속이 전국</u> <u>적으로 성행하였다.</u>	대폭 축약
		p.14, 7행 ~p.15, 3행(참)	(메밀은 원래 장성이 북 …… 진귀한 것이 었다. 당조의 채소는 (…… “…… 2월 중순 에 이미 오이가 달렸 네”라고 했다.)			대폭 추가	
		p.15, 4 ~8행 (본)	차를 마시는 풍습은 (…… 전국에 유행되 었다. (차잎 생산은 …… 재배 기술이 크 게 발전하였다.)			부분 삭제	
		p.15, 9 ~13행 (참)	중국은 차의 고향으 로 차 재배, 제조, 마 시기는 모두 중국에 서 기원하였다. 당조 (의 명차는 20여 종 이다.) 세계 최초의 차 전문 서적 『茶經』 은 당대 陸羽가 쓴 것 이다.			부분 삭제	
		p.15, 14 ~19행 (본)	(당조의 의복은 …… 양잠은 …… 장강 유 역에서도 발전했다.)			부분 추가	
		p.15, 20~27 행(참)	(수당 시기 …… 대부 분 말을 타고 …… 변 방의 좋은 말 종자를 들어오기 위해 애썼 다.)			전체 삭제	



『中國歷史』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16, 1 ~6행 (본) 당대 농민들은 쟁기 …… 曲轆犁 …… 簡 車를 만들었다. (정부는 수리 시설 …… 을 중시 하였다. …… 먼 변경에 도 있었다.) 당시 자연 재해를 막는 능력이 전 대에 비해 증강되었다.		p.13, 14 ~17행 (본) 당대 농민들은 쟁기 …… 曲轆犁 …… 簡車를 만들 었다. 당시 사람들은 한해 를 극복하고 추해를 다스 려서 자연재해를 막는 능 력이 전대에 비해 증강되 었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p.16, 7 ~18행 (참) (당대 농업에 대한 추해 …… 봉건 미신에 …… 감히 잡으려 나가지 않 았다. 715년) 산동지역 추해가 엄중했다. 요승 이 적극적 …… 산동으 로 보내 일하게 했다. (汴州의 지방관은 …… 요승의 의견을 반대했 다.) 요승은 (그를 질책 하면서 ……) 황충 박멸 의 원리를 설명했다. 변 주의 지방관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 황충 14만석 을 소멸시켰다.		p.13, 18행 ~p.19, 5행(참) 당 현종 초년 산동지역 추 해가 심각하여 많은 농가에 서 피해를 입어 사람들이 미신으로 하늘이 내린 재앙 으로 여겨 감히 황충을 박 멸하지 못했다. 재상 요승 은 미신을 믿지 않아 그는 적극적 …… 산동으로 보 내 일하게 했다. 이들 지방 관은 이것이 천재라고 문계 민고 …… 요승이 엄중 책 망하고 황충 박멸의 원리를 설명했다. 지방관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 황충 14만 석을 소멸시켰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부분 추가	
		p.17, 1 ~3행 (본) (당 전기 황무지가 대량 개간되어 …… 3배 가 까이 되었다.)			전체 삭제	
2. 정교 한 수공 업품	p.17, 4 ~7행 (본)	당대 (…… 견직업이) 아주 발달했다. (宋州와 …… 이름을 날렸다.) 직물 기술이 발달하고 직물업의 무늬와 품종 이 아주 많(고 가볍고 얇기로 소문이 높)았다.		p.14, 6행(본) 당대 수공업이 발달했다. 견직물의 무늬와 품종이 아주 많고 기술도 발달했 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부분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17, 8 ~13행 (참)	(전하는 말에 따르면 한 아랍상인이 당대 비단의 정교함을 말해 준다.)				전체 삭제
		p.17, 14행 ~p.18, 2행(본)	도자기는 당대 (사람들의 일상 생활용품이었고, 품종이 아주 많아) 越窯의 청자와 邢窯의 백자가 유명했다. (그중 정품은 미려했다.) 세계에 이름난 당삼채도 (이 시기에 만들어져) 외형이 아름답고 예술의 진품이다.	p.14, 6 ~8행 (본)	도자업은 당대 중요한 발전을 하여 越窯 청자, 邢窯 백자와 당삼채가 가장 유명했다. 당삼채는 외형이 아름답고 채색이 수려하여 세계 공예에서의 진품이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부분 추가	
		p.18, 3 ~5행 (참)	월요의 청자는 형요의 백자는 은처럼 희다는 평을 받았다.	p.14, 9 ~10행 (참)	월요의 청자는 형요의 백자는 은처럼 희다는 평을 받았다.	전제	
		p.18, 6 ~10행 (참)	(당삼채의 제작은 중요한 산지이다)			전제 삭제	
		p.19, 1 ~4행 (본)	(금속그릇도 揚州 銅鏡이 대표적이다.)			전체 삭제	
3. “장안 백만가”		p.19, 5 ~14행 (참)	(철의 생산지는 새로 나왔다.) (종이는 조정에 바치는 공물이었다.)			전체 삭제	
		p.19, 15 ~21행 (본)	당조(..... 변화한) 대도시 가 있었다. (당의 수도) 장안은 웅장하고 화려했다.	p.15, 1 ~5행 (본)	당조의 상업이 번영하여 대도시 가 있었다. 장안성은 웅장하고 화려했다. 성 안에 市와 坊이 구분	부분 삭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성 안에 市와 坊이 있었는데, 시는 변화한 상업구역, 방은 주택구역(으로 돌은 갈라져) 있었다. 전 성의 도로는 정연하고 가로수가 늘어섰(고 양편에 배수 시설이 있었다).			되어 있었는데, 방은 주택 구역, 시는 변화한 상업구역이었다. 전 성의 도로는 정연하고 가로수가 늘어섰다.	부분 추가
		p.19, 22행 ~p.20, 2행(참)	당의 수도 장안에는 우뚝 솟은 궁성 장안의 녹화를 묘사한 것이다.				전체 삭제
		p.20, 3 ~5행(본)	장안성에는 백만 명의 인구 변방 각 민족과 각국 교민들이 (이곳에) 운집하여 (왕래) 붐볐다. (시 내에는 절포들 아주 변화했다. 당대) 장안은 각 민족 왕래의 중심이었고 국제적 대도시이기도 했다.	p.15, 5 ~9행 (본)	장안성 내 인구가 백만 명을 넘었고 변방 각 민족과 세계 각국 교민들이 (이곳에) 운집하여 붐비고 왕래했다. 장안은 이미 각 민족 왕래의 중심이었고 국제적 대도시이기도 했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p.20, 6행 ~p.21, 5행(참)	(장안 성내 西市는 더욱 변화 대자는 사가 가장 유명했다.)				전체 삭제
				p.15, 10 ~13행 (본)	당 현종 통치 시기 정치가 맑고 경제가 역사에서 “개원성세”라고 한다.	이동 수정	
6. 당 왕조의 쇠락과 멸망			(내용 전체)	3-3. 당 왕조의 쇠망	p.15, 14 ~18행 (참)	당 현종 통치 후기 양귀비를 총애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 907년 당조가 멸망했다.	대폭 축약 이동 수정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2, 3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2, 3, 4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4-1. 과 거제의 탄생	p.17, 1 ~8행 (본)	위진 이래 관원은 대부분 …… 관리선발권도 지방으로 부터 조정으로 집중되었다.	전체 추가
					p.17, 9 12행(참)	수대 과거제가 처음 실행되 어 …… 저명한 정치가, 문 학자, 사학자, 경학자가 있 었다.	전체 추가
				4-2. 과 거제의 완비	p.18, 1 ~8행 (본)	당대 과거제가 점차 완비되 고 …… 최우수자를 장원이 라 했다.	전체 추가
					p.18, 9 ~13행 (참)	당 태종은 과거제 발전 …… 홍분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영웅이 내 올라미에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의 시에 “태 종황제의 뛰어난 영웅을 백두까지 거둔 것이다”라고 도 했다.	전체 추가 제2 과 제3 항에 서 일부 이동
					p.18, 14 ~25행 (본)	당 태종의 뒤를 이어 …… 당 현종때 …… 많은 인재를 등용했다.	전체 추가
					p.18, 26 ~p.19, 1행(참)	어느 해 현종이 궁내에서 친 히 면접하여 …… 主考官을 파직하였다.	전체 추가
				4-3. 과 거제의 영향	p.19, 2 ~7행(본)	과거제는 임용제도를 개선 하여 …… 唐詩의 번영에 아주 유리했다. 과거제는 …… 청말에 이르러 폐지되 었다.	전체 추가
					p.19, 8 ~p.20, 5행(참)	당시 진사급제는 최고의 영 예였고 …… 최치원은 당대 신라 …… 뛰어난 인물이다.	전체 추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 3개 과는 기존 교과서에서의 2개 과를 새롭게 3개 과로 늘려 재편성한 만큼 내용의 변동이 더욱 두드러진다. 기존 교과서에서 제2과 당대 정치사, 제3과 경제사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새 교과서에서는 제3과에 태종 연간의 ‘정관의 치’, 제4과에 현종 연간의 ‘개원의 치’를 중심으로 2개 과를 구분한 가운데 정치와 경제 모든 내용을 함께 서술하였다. 과거제 주제만 새로운 제4과로 독립시켜서 과거제의 성립 과정과 특징 및 주변국에 미친 영향까지 상세히 서술하였다.²³⁾ 전체적으로 첨삭이 많고 이동 서술이 많다. 따라서 변동의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우선 중국 내부의 갈등과 전란에 대한 내용이 삭제 내지 축약 처리되었다. 수나라의 붕괴 과정보다는 당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다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 태종이 玄武門의 변을 일으켜 집권하는 갈등의 과정도 거의 삭제하였다. 당 중 후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적 사건인 安史의 난과 당말 농민 기의 등에 대한 설명도 아주 간략하게 축소 서술하였다.

그리고 실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치적을 강조하는 쪽으로 서술의 양적 비중을 강화하였다. 당 태종 이세민이 무력 집권하는 과정은 소략하게 다루고, 지략과 용맹을 강조하는 데 내용상의 비중을 높였다.²⁴⁾ 또한 당 태종의 정치가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음도 부각시켰다.²⁵⁾ 武則天에 대한 설명에서도 “만년에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周로 바꾸었다”고 하여 그녀가 새로운 국호를 내걸고

23) 과거제 관련 내용은 기존 교과서에서는 「정관의 치」 안에서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쳤으나 새 교과서에서는 제4과를 새로이 편성하여 과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내용을 늘려 편성하였다.

24)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7쪽, 6행 이하에서 “이세민은 이연의 둘째아들로 지략과 용맹을 겸비하여 …… 마침내 대권을 잡고 당 고조를 압박하여 제위를 물려받았다”라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25)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8쪽, 4행 이하에서, “당 태종은 파란만장한 농민 전쟁 중 인민 군중 역량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수나라 멸망의 교훈을 받아들여 통치자가 농민을 지나치게 압박 착취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요역과 부역을 줄이고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9행 이하에서는 “당 태종은 생산 발전을 중시하여 농민들의 세금과 부역을 경감하고 동시에 사치를 경계하고 정무를 간소화하여 …… 인민 부담 경감에 유익이 있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13행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연 자료도 수록하였다.

황제로서 실제 전국을 다스렸음을 강조하였고,²⁶⁾ 무리한 일족 등용, 불교 숭상으로 인한 민생 피해 등의 기사는 삭제하고 인재 등용 등 업적을 강조하였다.²⁷⁾ 당 현종의 정치에 대해서도 지방 통치를 중시하여 중앙의 우수한 인재를 지방으로 보낸 일, 사치를 금지한 일 등 치적을 집중 설명하였고,²⁸⁾ 그에 따라 경제가 번영하였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²⁹⁾

또한 당시 중국이 제도나 경제 영역에서도 세계사적 영향력을 크게 미쳤음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었다. 특히 차에 대해서는 “세계 3대 음료”³⁰⁾라고 하면서 당대에 차가 신품종으로서 전국적으로 생산과 음용이 확대되었음을 강조하였고, 공예품 중 특히 당삼채가 “세계 공예의 珍品”³¹⁾이라고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제를 자세히 서술한 제4과에서도 제3절을 과거제의 영향이라고 제목을 설정한 가운데,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한 다음 신라, 일본 등 주변 나라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³²⁾

『中國歷史』 7하 교과서의 제5과, 제6과는 기존 교과서 『中國歷史』 2의 제4과와 제5과의 내용 구성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부분적인 개편,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서술상의 변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6)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9쪽.

27)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0쪽에서, 폐정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녀는 수많은 인재를 파격적으로 기용하였는데 뒤에 일대의 명신이 된 요승 등은 모두 그녀가 기용한 인물이다”라고 하였다.

28)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2쪽, 3~6행 참조.

29)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3쪽, 5행 이하 참조.

30)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3쪽, 11행. 이에 대한 주에서 세계 3대 음료를 차, 커피, 코코아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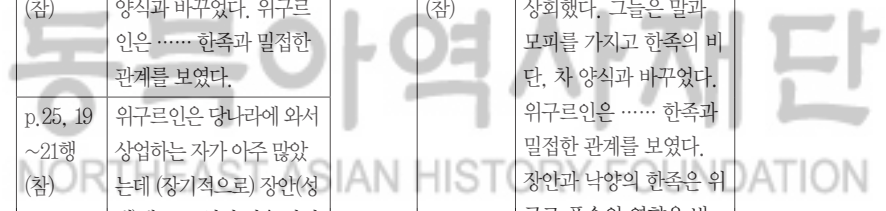
31)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4쪽, 10행.

32) “당대 과거제는 당시 이웃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신라와 일본이 모두 고시로 관리를 뽑았다. 수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장안에 와서 과거에 참가하였는데, 신라의 저명한 문화가 최치원은 당대 신라 출신으로 장안에서 진사가 된 대표적 인물이다”라고 하였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0쪽, 1~5행.

〈표 4〉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대외 우호왕래」 단원의 내용 변화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4.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1. 突厥汗國의 흥쇠	p.22, 1행 ~p.23, 3행(본)	(중국 알타이산 일대에서 …… 돌궐칸국을 건립했다.)	5-서두 (항목없이 본문만 있음)			전체 삭제
		p.23, 3 ~9행(참)	(돌궐인은 천막에 …… 비석 2개가 발견되었다.)				전체 삭제
		p.23, 10 ~16행(본)	(6세기 말 …… 동돌궐이 망하고, 당 고종 때 서돌궐이 멸망했다.)				전체 삭제
		p.23, 17 행~p.24, 3행(참)	(626년 당 태종 즉위 초 …… 동돌궐 각부 수령은 …… 정부 요직에 참여했다.)				전체 삭제
		p.24, 4 ~8행(본)	(당 태종은 비교적 개혁적 민족정책을 실시하고 …… 당 태종과 무측천은 서역을 관할하는 최고 행정 군사기구(인 안서도호부와 북정도호부)를 잇달아 설립했다.		p.22, 1 ~7행(본)	수당 시기 …… 변경 지역에 기구를 설치하여 관할을 강화했다. 당 태종과 무측천은 지금의 신강 지역에 서역을 관할하는 최고행정 군사기구를 잇달아 설립했다.	전체 삭제 전체 추가
2. 위구르 옷을 입고 위구르 말을 타다	2. 위구르 옷을 입고 위구르 말을 타다	p.25, 1 ~4행(본)	위구르는 …… 셀렝가강 일대에서 유목했다. (동돌궐 멸망 이후 위구르는 점차 남으로 발전했다. 8세기 중엽 (위구르 수령 구리페로 …… 위구르 칸국을 건립했다.	5-★, 위구르의 발흥	p.24, 10 ~18행(본)	위구르는 …… 셀렝가강 일대에서 유목했고, 점차 남으로 발전했다.	대폭 축약
		p.25, 5 ~12행(참)	(위구르인은 ……) 용맹을 숭상하고 민풍이 순박하며 (…… 칸과 귀족들이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들은 용맹을 숭상했고 민풍이 순박했다.	대폭 축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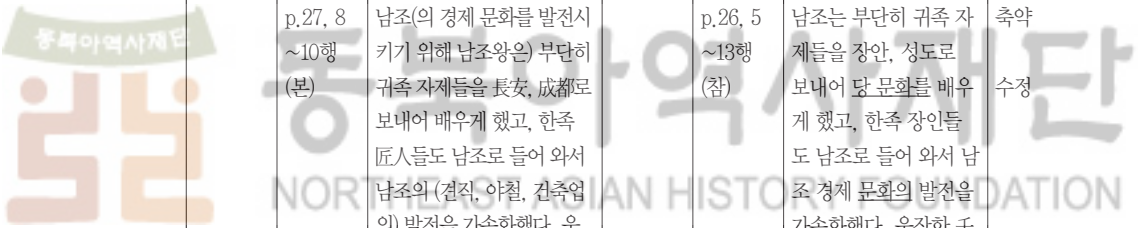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p.25, 13 ~15행 (본)	(위구르와 당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당 현종은 구리페로를 懷仁칸으로 책봉했다. 뒤에 위구르는 이름을 回鶻로 고쳤다. 9세기 중엽 회골정권이 와해되고 인민 대부분은 지금의 감숙, 신강 등지로 옮겨갔다.)		p.24, 10 ~18행 (본)	8세기 중엽 위구르칸국을 건립하자, 당 현종이 그 수령을 懷仁칸으로 책봉하여 쌍방이 우호관계를 맺었다. 뒤에 위구르는 이름을 回鶻로 고쳤다. 회골정권이 와해된 후 부족 대부분은 지금의 감숙, 신강 등지로 옮겨갔다.	대폭 축약
		p.25, 16 ~18행 (참)	위구르는 (늘) 말과 모피를 가지고 한족의 비단, 차, 양식과 바꾸었다. 위구르인은 …… 한족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p.25, 1 ~8행 (참)	위구르인은 당나라에 와서 상업 …… 천여 명을 상회했다. 그들은 말과 모피를 가지고 한족의 비단, 차 양식과 바꾸었다. 위구르인은 …… 한족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장안과 낙양의 한족은 위구르 풍속의 영향을 받아 …… 늘 보는 정경이었다.	축약 수정
		p.25, 19 ~21행 (참)	위구르인은 당나라에 와서 상업하는 자가 아주 많았는데 (장기적으로) 장안(성내)에 …… 천여 명을 상회했다. 그들은 장안에서 호화 주택 …… 한족과 통혼했다.) 장안과 낙양의 한족은 위구르 풍속의 영향을 받아 …… 늘 보는 정경이었다.				
3. “車書本一家”		p.25, 22 ~23행 (본)	송화강, 흑룡강 일대에 수당 시기 말갈족이 거주했다. (7세기 중엽 이후 말갈의 속말부가 강대해졌다.)	5-★. “車書本一家”	p.25, 9행 ~p.26, 4행(본)	수당 시기 우리 동북의 송화강, 흑룡강 유역에 말갈족이 살았다.	축약 수정
		p.25, 24 ~26행 (본)	(말갈인은 집이 없이 …… 살았다. ……) 그들은 용맹 강인하고 가무에 능하여 (무용 중 전투 자세가 많았다.)			그들은 용맹 강인하고 가무에 능했다.	본문 이동 축약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p.25, 27 ~28행 (본)	7세기 말 속말부 (수령 대조영이) 각 부족을 통일하여 정권을 세웠다. 8세기 전기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봉했고, 이후 속말말갈정권은 발해라 이름했다.			7세기 말 <u>말갈족의 일지파 속말말갈이</u> 각 부족을 통일하여 정권을 세웠다. 뒤에 당 현종이 이곳에 <u>쑤</u> 를 개설하고 <u>그 수령을 도독으로 삼고 발해군왕으로 책봉했다.</u> 이후 속말말갈 정권은 “ <u>발해</u> ”라 이름했다. 발해는 책봉받은 이후 <u>면적이 부단히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여 중국 본토와의 무역 왕래가 빈번해졌고, 경제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海東盛國”</u> 이라 불렸다.	축약 수정 도성 관련 내용 은 아 래 참 고문 으로 이동
		p.26, 1 ~5행(본)	발해는 경제가 발전하여 중국 본토와의 무역 왕래가 빈번했다. 도성 上京은 장안성을 본따 건설했다. 발해는 문화가 발전하여 역사에서는 “海東盛國”이라 불렸다.				
		p.26, 6 ~15행 (참)	(대조영은) 발해 정권 초기부터 수차 귀족 자제들을 장안으로 보내 공부하게 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뒤에 발해정부에서 요직을 맡아) 중원 문화를 적극 전파했다. 발해 왕자도 한 명 장안에 와서 공부했는데, 그의 문학 재능은 중원 문인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저명한 시인 溫庭筠의 시 「送渤海王子歸國」은 그를 노래한 것이다.)		p.26, 5 ~13행 (참)	발해 정권은 늘 귀족 자제들을 장안으로 보내 공부하게 하여, <u>당 문화가 발해에서 크게 전파되었다.</u> 발해 왕자도 한 명…… 중원 문인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저명한 시인 溫庭筠의 시 「送渤海王子歸國」은 그를 노래한 것이다. 발해 도성 上京은 장안성을 본따 건설하여 <u>도로가 정연하고…… 당의 제도도 모방하여 지방에 府, 州, 縣을 설치…… 당삼채를 모방하여…… “渤海三彩”라 불린다.</u> 무역을 위해 <u>당은 산동반도에 渤海關을 개설…… 했다.</u>	축약 수정 溫庭筠 관련 내용은 각주로 내려서 실음 발해와 당 관계 부분 내용 대량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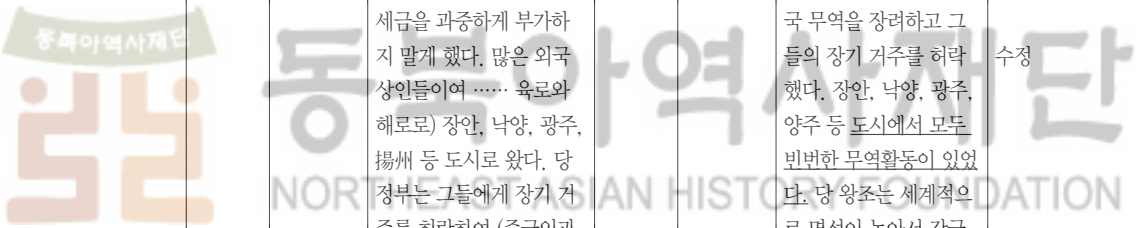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4. 蒼山과 洱海 사이의 南詔		p.27, 1 ~3행 (본)	7세기 초 운남 창산 이해 일대에는 六詔가 분포되어 있었고, 彝族과 白族의 선조들이 그곳에 살았다. 제일 남쪽의 남조가 (점차 강대해졌다. 8세기 전기 남조 수령 皮羅閣이) 육조를 통일했다. 당 현종은 그를 雲南王으로 봉했다.	5-★. 蒼山과 洱海 사이의 南詔	p.26, 14 ~18행 (본)	수당대 운남 창산 이해 일대에는 육조가 분포했다. 육조 거민은 이족과 백족의 선조들이었다. 뒤에 당조의 지지하에 제일 남쪽의 남조가 육조를 통일했다. 당 현종은 그 수령을 운남왕으로 봉했다.		
		p.27, 4 ~7행(참)	(전설에 의하면 皮羅閣은 …… 五詔를 호령할 수 있었다.)					전체 삭제
		p.27, 8 ~10행 (본)	남조(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조왕은) 부단히 귀족 자제들을 長女, 成都로 보내어 배우게 했고, 한족 匠人들도 남조로 들어 와서 남조의 (결직, 야철, 건축업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웅장한 千尋塔은 ……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				p.26, 5 ~13행 (참)	남조는 부단히 귀족 자제들을 장안, 성도로 보내어 당 문화를 배우게 했고, 한족 장인들도 남조로 들어 와서 남조 경제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웅장한 千尋塔은 ……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
p.27, 11 ~12행 (참)	(천심탑은 ……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았다.)			사진 설명으로 이동				
5. 당과 토번이 “화동으로 일가를 이루다”		p.27, 13 ~14행 (본)	토번인은 藏族 …… 방직과 야철 수준이 높았다.	5-1. 松贊干布와 文成公主	p.23, 1 ~3(본)	토번인은 藏族 …… 방직과 야철 수준이 높았다.	전체	
		p.27, 15 ~18행 (참)	토번인들은 …… 보리와 메밀을 재배했다. (청장고원에는 ……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데) 토번인들은 이미 (채굴하여) 금속기와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 “榮耨甲門”으로 간주되었다.				p.23, 4 ~7(참)	토번인들은 …… 보리와 메밀을 재배했다. 토번인들은 금속기와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 “榮耨甲門”으로 간주되었다.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28, 1 ~9행(본)	7세기 전기 토번의 걸출한 (정치가) 松贊干布가 贊普가 되었다. 그는 靑藏고원을 통일하고 邏些에 도읍했다. 송찬간포는 수차 당에 청혼하였다. 당 태종은 文成공주를 그에게 시집보내었다. 이것이 당과 토번의 우호와 경제문화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p.23, 8 ~10(본)	7세기 전기 토번의 걸출한 贊普 松贊干布가 靑藏 고원을 통일하고 邏些에 도읍했다. 松贊干布는 中원 문명을 암모하여 수차 당에 청혼하였다. 당 태종은 文成공주를 그에게 시집보내었다. 文成공주가 토번에 들어가면서 당과 토번의 경제문화 교류가 밀접해지고 상호 우호관계가 증진되었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p.28, 10 ~14(참)	松贊干布 …… (13세 때) …… 반란을 평정하고, (서장 고원의 통일을 완성하여 …… 토번의 영웅이 되었다.)		p.23, 11 ~13(참)	松贊干布는 …… 어려서 부친을 잃고 …… 수히 반란을 평정하고 정국을 안정시켰다.	전체 문장 수정 일부 삭제
		p.28, 15 행~p.29, 4행(참)	(문성공주는 토번에 갈 때 많은 지참물을 가지고 가서 …… 비단옷을 입기 시작했다.) 양잠도 토번에 전했다. (토번의 경작기술은 아주 거칠었다.) 문성공주는 (생산기술) 서적과 곡식, 채소 종자를 가져갔다. 토번인들이 토지 개간, (수해방지), 채소 재배를 배웠다. 토번인은 노끈으로 …… 송찬간포는 토번문자를 만들었다. 토번 학자들은 당 역법을 참조하여 토번 역법을 만들었다.		p.23, 14 행~p.24, 4(참)	문성공주는 …… 유식한 여자였다. 그녀가 토번에 시집갈 때 많은 서적과 곡식, 채소 종자를 갖고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갔다. 이후 토번인들이 토지개간, 채소 재배, 양잠, 방직 등을 배웠다. 토번은 원래 보리 익을 때를 1년의 시작으로 삼았는데, 문성공주가 중국 역법을 사용하게 해주었다. 문성공주는 차 음용도 토번에 전했다. 송찬간포는 귀족 자제들을 당에 파견하고 …… 중국 유학자를 초빙했다. 송찬간포는 …… 토번 문자를 만들었다.	전체 문장 수정 부분 삭제 부분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29, 5 ~6행(본)	8세기 초 당(중종)은 (토번의 贊普 尺帶珠丹의 청을 받고) 金城公主를 그에게 시집보냈다. 尺帶珠丹은 당 황제에게 글을 올려 토번과 당이 이미 “和同爲一家”라 했다.		p.24, 5 ~8행(본)	8세기 초 당은 금성공주를 토번에 시집보냈다. 토번 贊普는 당 황제에게 글을 올려 토번과 당이 이미 “和同爲一家”라 했다. 당과 토번의 관계는 <u>남로 기밀해졌다.</u>	문장 일부 수정 부분 추가
5. “은 천하에 벗이 있다”	1. 빈번한 무역 왕래	p.31, 1행 ~p.32, 6행(본)	(수 왕조 시기 중국과 통상 …… 당대에 70여 개국으로 늘어났다.) 당 정부는 각국 상인들의 중국 무역을 장려하고 (관리들이 세금을 과중하게 부가하지 말게 했다. 많은 외국 상인들이여 …… 육로와 해로로) 장안, 낙양, 광주, 揚州 등 도시로 왔다. 당 정부는 그들에게 장기 거주를 허락하여 (중국인과 통혼하거나 관직을 맡기도 했다.) 당 왕조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다. 각국은 중국인을 “唐人”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6-서두	p.28, 1 ~10행(본)	수당대 대외교류는 비교적 활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나라들이 모두 왕래했다. 당 정부는 각국 상인들의 중국 무역을 장려하고 그들의 장기 거주를 허락했다. 장안, 낙양, 광주, 양주 등 도시에서 모든 빈번한 무역활동이 있었다. 당 왕조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서 각국이 중국인을 “唐人”이라 불렀다.	항목 제목 없음 축약 수정
	2. 당과 신라의 우호 관계	p.32, 7 ~9행(본)	(수대와 당 초기) 조선의 나라들은 중국과 모두 왕래했다. 7세기 후기 (신라와 당조의 왕래가 빈번했다. 당조의 외국) 유학생 중 신라인이 가장 많았다. 신라 상인들의 발자취는 충원으로 부터 江浙까지 이르렀다. 신라 물산이 당조 수입품 중 으뜸이었다.	6-2. 당과 신라의 관계	p.31, 6 ~9행(본)	조선의 나라들은 수당과 모두 왕래했다. <u>신라가 강성해진 이후 사절과 유학생이 대거 당으로 파견되어 중국 문화를 흡수했다. 수많은 신라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교역했고, 신라 물산이 당조 수입품 중 으뜸이었다.</u>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부분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32, 10 ~12행 (참)	신라(의 당 유학생은 많을 때는 200여 명에 달했다. 그들은 귀국 후 당 문화를 광범하게 전파했다. 그 중 저명한 사람인) 최치원은 12세에 당으로 와서 18세에 진사가 되었다. 그의 시문은 중국 문인들에게 중시되었다.		p.31, 12 ~14행 (참)	수당의 시문, 전적 등이 대량 조선에 전파되었다. 신라인 최치원은 12세에 당으로 와서 공부하여 18세에 과거에서 진사가 되었다. 뒤에 그는 당에서 관직을 지내며 많은 시문을 남겼다. 그의 문집 『桂苑筆耕』은 지금까지 전해진다.	수정 축약 추가
		p.32, 13 ~17행(참)	조선 음악은 (…… 환영을 받았고, 고구려 음악은 수)당 궁정에서 공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유행했다. (당의 전적, 시가가 대량 신라로 전입되었다.) 신라는 당을 본받아 과거제로 관리를 선발하였고, 당의 역법을 채택했다. (당은 …… 신라로 사신을 보냈다. …… 당 현종은 ……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 그대가 학문과 강론에 뛰어나서 파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p.31, 9 ~11행(본)	신라는 당을 본받아 정치 제도를 세우고, 과거제로 관리를 선발하였고, 중국 의 의학, 천문, 역산 등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다. 조선의 음악도 중국에 전해져서 당조의 궁정에서 공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광범하게 유행했다.	축약 수정 추가
3. 당풍이奈良城에 흘러 넘치다	p.33, 1 ~5행(본)	중일 양국은 수당 시기 왕래가 밀접하였다. (수 왕조 때 이미 일본은 견수사를 중국에 보냈다.) 貞觀 년간부터 일본 견당사가 중국에 13차나 왔다. 함께 온 (자들로) 유학생, 유학생들도 있었다.	6-1. 견당사와 鑑眞의 東渡	p.29, 1 ~8행(본)	수당 시기 중일 양국의 왕래가 밀접하였다. 당 왕조는 貞觀 연간부터 일본에서 중국에 온 견당사가 3수 차였고, 함께 온 유학생과 유학생들도 있었다. 사신단 규모가 방대하여, 적어도 20명.	부분 삭제 부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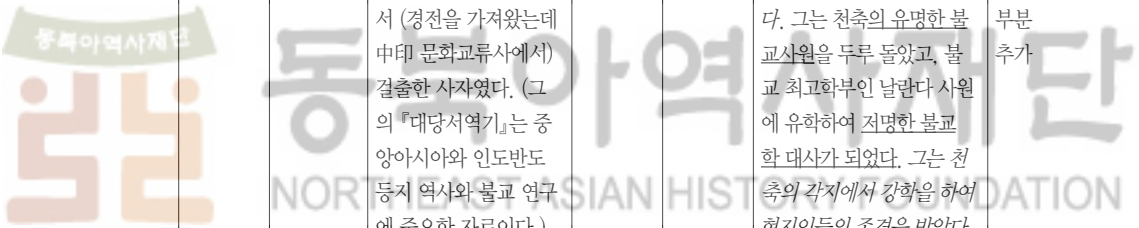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일본 음악과 무용이 당나라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일본 유학생 중 가장 유명한 것은奈良에서 중국으로 온 阿倍仲麻呂였다.) 당조가 일본에 보낸 사신과 승려도 적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것은 (당 현종 때 일본으로 건너간) 鑑真和尚이었다.			많으면 5,6백명 되었다. 자질도 높아 당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좋았다. 사신단이 당 왕조에 예물을 보내고, 당 왕조가 답서를 내렸으나 실제로 양국 간의 무역이었다.	대폭 추가
		p.33, 6 ~8행(참)	(당시 일본 천황은 수 양제 무측천 사신 粟田 중국사대부 같았다.)		p.30, 10 ~11행 (본)	당시 당조가 일본에 보낸 사신과 승려도 적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것은 鑑真和尚이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p.33, 9 ~13행 (참)	(阿倍仲麻呂는 기념비가 있다.)				전체 삭제
		p.33, 14 행~p.34, 2행(참)	鑑真(688~763)은 (양주 사람으로) 일본 승려들의 초청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섯 번 만에 일본에 도착했다. 당시 그는 이미 두 눈을 실명했다. 일본 천황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감진은 일본에 10년 머물며 (일본 건축, 의학 예술 등 방면에 뛰어난 공헌을 했다.)		p.30, 12 ~16행 (본)	당 현종 때 감진은 일본 승려들의 초청을 받아 여섯 번 만에 일본에 도착했다. 그는 일본에 10년 머물며 당나라 문화를 열심히 전파했다. 그가 절성을 다해 설계한 唐招提寺는 건축 양식이 우수하여 지금까지 남아 일본인들은 예술의 보배로 여겨지고 있다.	대폭 축약 부분 수정 부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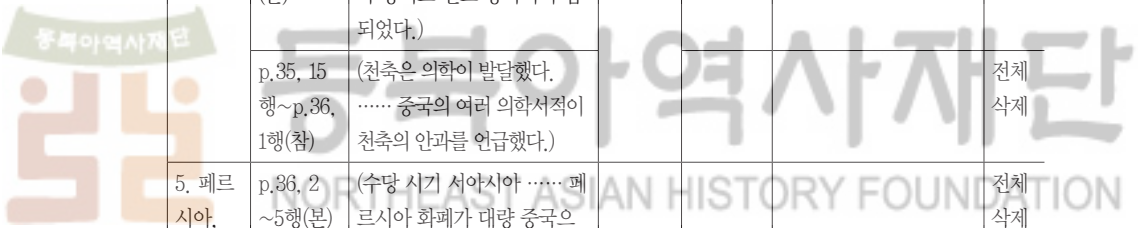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KOREA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감진이 (奈良에서) 설계 (건립)한 唐招提寺는 일본인들에게 예술의 보배로 여겨지고 있다. (뒤에 그는 일본에서 죽었다.)		p.31, 1 ~5행(참)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은 위험천만…… 두 눈을 실명하였으나 그는 계속 노력했다. 감진과 제자들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 천황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많은 서적 문물과 약방을 가지고…… 약재를 판별…… 제작한 불상도 일품이었다.)	이동 수정 부분 추가
		p.33, 3 ~6행(본)	(당조와 일본 간 무역이 번성했다. 일본에서 당 화폐 “開元通寶”가 대량 출토되고, 중국에서도 일본 화폐 “和同開珎”이 발견된다.) 일본은 당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당나라 사람들의 풍속이 보존되어 있다.		p.29, 10 ~12행 (본)	견당사는 귀국한 뒤 중용되어…… 당 왕조의 제도를 모델로 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일본인들은 당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그들의 한자를 참고하여 일본문자를 창제하고 사회생활에서 지금까지도 당나라 사람들의 풍속이 보존되고 있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부분 추가
		p.33, 7 ~21행 (참)	일본의 도성 평성경의 건축 양식은 거의 장안과 같다. 당나라 시가 일본에 널리 퍼지고 백거이의 시는 일본인들의 애호를 받았다. 일본 (천황) 사대부들도 중국 서예를 열심히 배웠다. (당나라 음식과 풍속 습관이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 궁정 연회에서는 당나라 요리가 애용되었다. 일본인들은 당나라 차 제조법을 배워 그것을 발전시켜 독특한		p.30, 1 ~9행(참)	일본의 도성 평성경은 거의 당 장안성의 건축 양식과 같다. 일본 동전의 양식도 당나라 동전과 비슷하다. 당나라 시가 일본에 널리 퍼지고 백거이의 시는 일본인들의 애호를 받았다. 일본 사대부들은 중국 서예를 열심히 배웠다. 일본 궁정 연회에서는 당나라 요리가 애용되었다. 일본인들은 일본인들은 당나라 차 제조법을 배워 그것을 改進하	부분 수정 부분 삭제 부분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풍격의 다도를 이루었다. (지금 일본의 (습속 중) 중앙절에 높은 곳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은) 곧 당에서 전해진 것이다.</p>			<p>여 독특한 풍격의 다도를 이루었다. 일본의 중앙절에 높은 곳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은 역시 당에서 전해진 것이다.</p>	
	4. 玄奘이 인도로 가다	p.34, 22 ~25행 (본)	<p>(지금의 인도 반도의 각국은) 당 왕조 때 (천축으로 불렸다. 당과) 천축과의 왕래는 끊어지지 않았다. 貞觀 연간 고승 현장이 천축에 가서 (경전을 가져왔는데 中印 문화교류사에서) 곁출한 사자였다. (그의 『대당서역기』는 중앙아시아와 인도반도 등지 역사와 불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p>	6-3. 玄奘의 西遊	p.31, 15 ~18행 (본)	<p>당 왕조 때 중국은 천축과의 왕래가 빈번하였는데, 가장 곁출한 사자는 고승 현장이었다. 貞觀 초기 현장은 장안을 출발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천축으로 갔다. 그는 천축의 유명한 불교사원을 두루 돌았고, 불교 최고학부인 날란다 사원에 유학하여 저명한 불교학 대사가 되었다. 그는 천축의 각지에서 강학을 하여 현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p>	<p>부분 삭제</p> <p>부분 수정</p> <p>부분 추가</p>
		p.34, 26 행~p.35, 10행(참)	<p>현장은 (緜氏 사람으로) 어려서 출가했다. (그는 불경을 연구하기 위해 정관 초년 옥문관을 출발하여)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불교성지) 천축에 도착했다. 현장은 천축을 두루 돌았고, 불교 최고학부인 날란다 사원에서 천축 불교 권위자인 90 고령의 실라브하드라법사에게서 배웠다. 학습을 마친 후 …… 그는 불경 650여 부를 갖고 장안으로 돌아왔고 ……</p>		p.31, 19 ~24행 (참)	<p>현장은 어려서 출가하여, 청년기에 장안, 성도 등지 …… 찾아가서 불경을 연마했다. …… 학설이 구구하여 …… 그는 불교 발원지인 천축으로 유학하기로 결심했다. 날란다 사원은 천축 최대 사원 …… 7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었다. 사원의 고승 실라브하드라 법사는 이미 90이 넘는 고령임에도 친히 현장에게 강학하였고, 그를 극히 칭찬하여 그가 전체 승려들에게 불경을 향문하도록 안배했다.</p>	<p>부분 삭제</p> <p>부분 수정</p> <p>부분 추가</p>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4, 5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5, 6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항목	쪽, 행	내용	
				p.31, 25 ~28행 (본)	정관 후기 현장은 대량의 불경을 갖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 불경을 번역하고 자신의 견문을 『대당서역기』로 썼다. 이 책은 중앙아시아, 인도반도 및 중국 신강 지역 역사와 불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p.35, 11 ~14행 (본)			(중국의 종이와 제지술은 당나라 때 인도에 …… 사원 건축 양식도 인도 양식이 수입되었다.)	전체 삭제
		p.35, 15 행~p.36, 1행(참)			(천축은 의학이 발달했다. …… 중국의 여러 의학서적이 천축의 안과를 언급했다.)	전체 삭제
	5. 페르시아, 아라비아와 당조의 통교	p.36, 2 ~5행(본)			(수당 시기 서아시아 …… 페르시아 화폐가 대량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전체 삭제
		p.36, 6 ~9행(참)			(페르시아와 중국의 왕래 …… 중국에 대한 …… 예술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전체 삭제
		p.36, 10 ~14행 (본)			(아라비아는 당 고종 때 …… 제지, 방직, 도자기 등 …… 유럽 여러나라로 전해졌다.)	전체 삭제
		p.36, 15 행~p.37, 3행(참)			(당조의 적지 않은 장인 출신 병사들이 …… 제지 …… 자기 …… 비빔밥과 燒餅은 아라비아에서 왔다.)	전체 삭제
	6. 당과 동로마의 왕래	p.37, 4 ~9행(본)			(수당 시기 중국은 …… 동로마제국과도 왕래했다. …… 고종의 시력을 회복시켰다.)	전체 삭제



이상 2개 과는 변동 내용이 많은데, 우선 변방 소수민족과 관련된 내용에 변화가 특히 많다. 1993년판 『中國歷史』 2 교과서에서의 제4과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는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기존 1항 「돌궐간국의 흥쇠」가 빠지고, 5항에 있던 문성공주 관련 내용이 1항으로 이동하여 정리되었다. 돌궐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은 돌궐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독자적 정체성을 보이지 못하게 된 상황과 유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티베트 기사가 앞으로 옮겨진 것은 중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면이 크다. 위구르, 말갈과 발해, 운남 등에 대한 내용이 특별 단원으로 유지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특히 수당 시기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발전했음을 강조하면서 당시 중국이 변경의 지방정권을 행정체계를 갖추어 관할했다는 기조 위에서 강조³³⁾되고 있다.

특히 발해에 대한 기록에서는 흡사 발해가 당의 지배를 받은 듯이 무리한 서술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도 기존 교과서에서 “7세기 말 속말부 수령 대조영이 각 부족을 통일하여 정권을 세웠다”³⁴⁾라고 했던 것을 “7세기 말 말갈족의 일 지파 속말말갈이 각 부족을 통일하여 정권을 세웠다”³⁵⁾라고 수정하여 건국 과정에서 대조영의 이름 자체를 삭제하고 있다. 또한 당 현종이 이곳에 州를 개설하고 그 수령을 도독으로 삼았다는 기사를 추가하였으며,³⁶⁾ 발해가 당의 제도도 모방하여 지방에 府, 州, 縣을 설치했고, 농업생산에서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하여 벼 생산량이 증대하였으며, 당삼채를 모방하여 도자기를 만들어, “渤海三彩”라 불렸으며, 무역을 위해 당이 산동반도에 渤海關을 개설하여 발해 상인과 사신을 전문 접대했다는 내용³⁷⁾ 등을 새로

33) 수당 시기에 각 민족들이 지방정권을 세웠으나 중원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당 왕조가 변강지구에 기구를 설치하여 관할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종과 무측천 시기에는 최고행정 군사기구를 두어 관할을 강화했음을 새로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2쪽, 1~7행.

34)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25쪽, 27행.

35)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5쪽, 13행~26쪽 1행.

36)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6쪽, 1~2행.

37)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6쪽, 5~13행.

추가하였다.

당과 신라 간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기사가 대폭 축소 또는 삭제되었고, 기존 교과서에서 신라에 대해 높이 평가한 부분들을 거의 삭제되었다. 8세기 전기 당 현종이 한 학자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면서 그에게 신라의 학문이 뛰어남을 강조한 인용문,³⁸⁾ 등이 완전히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라에서 당으로 온 유학생이 많을 때는 200여 명에 달했다³⁹⁾는 설명이 삭제된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당 관련 기록은 전체적으로 당 왕조에 복속하지 않고 독립 정권을 유지했던 신라라는 점을 의식하여 대폭 삭제,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최치원 기사에서 문집명 『桂苑筆耕』을 구체적으로 새로 소개한 점,⁴⁰⁾ “신라 물산이 당조 수입품 중 으뜸이었다”⁴¹⁾라고 하는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주목을 끈다. 이는 발해를 당 왕조의 책봉을 받은 지방정권으로 강조한 앞 과의 내용과 크게 대비되는데, 이는 발해의 판도까지를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사로 간주하는 기초와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1993년 판 제5과 “은 천하에 벗이 있다”를 새 교과서에서는 課名이 「대외 우호 왕래」로 바꾸어 제6과로 편성하였고, 내용도 전체적으로 축약하여 「遣唐使와 鑒眞의 東渡」, 「당과 신라의 관계」, 「현장의 서유」 등 3개 항으로 간추렸다. 일본을 먼저 서술하고 신라를 줄여서 뒤에 기록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티베트과 관련하여 문성공주가 티베트에 차를 전해 준 사실과 이후 학자들의 왕래가 많았음을 추가적으로 상세히 서술하였다.⁴²⁾ 일본 관련 기사는 사신, 승려, 학자

38)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2쪽, 16~17행에는 당 현종이 당시 그 신하에게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하고 문학과 사화에 능통함이 중국과 유사하다. 그대가 학문과 강론에 뛰어나서 파견하게 되었다”라고 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39)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32쪽, 10행.

40)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1쪽, 13행.

41)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32쪽, 9행.

42) 문성공주가 티베트에 간 이후 송찬간포가 귀족 자제들을 당에 파견하고 중국 유학자들을 초빙했음을 강조 서술하였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3쪽, 17행~24쪽, 3행.

등 인적 왕래 뿐만 아니라 교역 등에 대해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당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의의가 큼을 강조⁴³⁾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를 다녀온 玄奘 관련 서술은 강화되어 있지만,⁴⁴⁾ 서아시아나 유럽과의 왕래에 관한 기록은 새 교과서에서 전면 삭제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추린 모양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적 서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 말의 혼란과 당 왕조의 멸망을 다루었던 1993년판에서의 제6과 5개 절의 내용은 새 교과서에서 거의 삭제되었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에서는 「당 왕조의 쇠망」이라는 1개의 절로 대폭 줄여서 제3과 제3항으로 이동 편성하고 과를 없애 버렸다. 중원의 혼란이 새 교과서의 기조인 통일국가로서의 중국이라는 논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때문이고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중국사를 향한 지향과 관련되는 개편이라 할 수 있다. 『中國歷史』 7하 교과서의 제7~8과는 수당대의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기존 교과서 『中國歷史』 2의 제7~9과를 간추려 개편하였다. 서술 내용은 대폭적인 축약을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서술상의 변화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수당 시대의 문화를 다룬 이 두 과는 대폭 개편이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課名 「봉건문화의 고봉」에 부제를 붙인 3개 과를 「찬란한 수당 문화」로 바꾸고 이를 2개 과로 줄였다. 기존 제7과 제3항 「천문학자 一行 스님」, 제5항 「종교의 발전」, 제8과 제2항 「고문운동」, 제3항 「당대의 傳奇」, 제9과 제5항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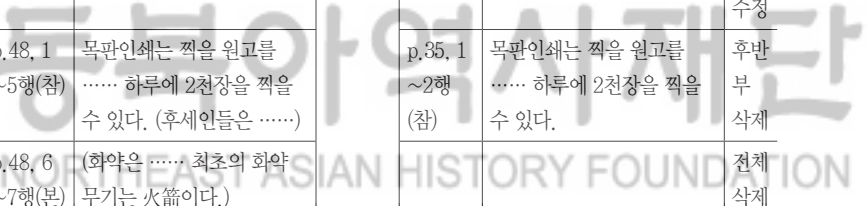
43) 당시 일본에서 견당사가 증용되어 당 왕조의 제도를 모델로 한 정치 개혁을 진행하였음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문화를 창제하고 당나라 사람들의 풍속이 계승되었음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9쪽, 10~12행.

44) 현장이 청년기에 장안, 성도 등지의 스님들을 찾아가서 불경을 연마했으나 의문스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여 불교 발원지인 天竺으로 유학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추가하였고, 날란다 사원이 인도 최대 사원으로, 당시 이미 7백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1쪽, 19~24행.

〈표 5〉 「찬란한 수당 문화」 단원의 내용 변화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7. 봉건 문화의 고봉(1)	1. 흥성한 건축업	p.45, 1 ~2행 (본)	수당 시기(각지에서 궁전, 사원 불탑과 주택을 많이) 건축(했다.) 규모는 크고 …… 화려하고 웅장했다.	7-1. 고도로 발전한 건축 수준	p.33, 1 ~3행 (본)	수당 시기 건축 규모는 크고 …… 화려하고 웅장했다.	축약
		p.46, 1 ~2행 (참)	(수대 저명한 건축가 宇文愷 …… 대흥성과 동도 낙양 성 건설 …… 지도했다.)				전체 삭제
		p.46, 3 ~4행 (본)	당의 수도 장안은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다. 성(동)북의 大明宮 含元殿은(장안에서) 화려한 건축이었다.		p.34, 4 ~5(본)	당의 수도 장안은 구획이 정연하고,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다. 성북의 大明宮 含元殿은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황궁이었다.	부분 수정 부분 추가
		p.46, 5 ~9행 (본)	수대 걸출한 장인 李春가 설계하여 건설한 趙州橋는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다리이다.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다리는 조주교보다 700여 년 늦다.		p.33, 4 ~6행 (본)	수대 걸출한 장인 李春가 설계하여 건설한 趙州橋는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다리이다. 이 다리는 <u>과학적으로 설계되어 …… 조형도 아름답다. 7백 년 뒤에 유럽인들이 비슷한 다리를 세웠다.</u>	전체 삭제 서술 추가 수정
		p. 46, 10~18 행(참)	조주교는 원래 이름이 安濟橋인데, 지금의 하북 趙縣에(洹河에 수 양제때 세워져) 있다. 다리의 큰 아치 양 끝에 작은 아치 돌썩을 내어 다리의 하중을 감소시키고 격류가 다리에 주는 압력을 줄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아치 …… 새겨진 용 문양은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조주교는 1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온전히 남아 있다.		p.33, 7행 ~p.34, 3행(참)	조주교는 원래 이름이 安濟橋인데, 지금의 하북 趙縣에 있다. 다리의 큰 아치 양 끝에 작은 아치 돌썩을 내어 배수면을 키우고 <u>홍수가 다리에 주는 충격력을 줄이고 다리의 하중과 지반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켰다.</u> 크고 작은 아치 …… 새겨진 용 문양은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u>이 조각은 …… 우수한 예술 작품이다.</u> 조주교는 1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온전히 남아 있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부분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p.46, 19 ~28행 (참)	(수당 시기 건축된 사원 …… 방형전탑이다. 수당 시 기 부잣집 …… 대단했다.)				전체 삭제
	2. 목판 인쇄술 과 화약 의 발명	p.47, 1 ~3행 (본)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쇄술 을 발명했다. 수당 시기에 이미 목판인쇄 …… 『금강 경』은 현존 세계 최초 …… 인쇄일이 새겨진 목판인쇄 물이다. (인쇄술의 발명은 문화전파에 이로왔다.)	7-2. 목 판인쇄 술의 발 명	p.34, 6 ~9행 (본)	인쇄술은 중국 고대 4대 발 명의 하나이다. 수당 시기에 이미 목판인쇄 …… 『금강 경』은 …… 인쇄일이 새겨 진 목판인쇄물이다.	내용 순서 변경 부분 추가 부분 수정
		p.48, 1 ~5행(참)	목판인쇄는 짝을 원고틀 …… 하루에 2천장을 찍을 수 있다. (후세인들은 ……)		p.35, 1 ~2행 (참)	목판인쇄는 짝을 원고틀 …… 하루에 2천장을 찍을 수 있다.	후반 부 삭제
		p.48, 6 ~7행(본)	(화약은 …… 최초의 화약 무기는 火箭이다.)				전체 삭제
		p.48, 8 ~14행 (참)	(전하는 말에 의하면 수조 杜子春 …… 화약무기이 다.)				전체 삭제
	3. 천문 학자 一 行 스님	p.48, 15~18행 (본)	(수당 통치자는 비교적 천문 학을 중시하여 …… 정밀한 역법이었다.)				전체 삭제
		p.49, 1 ~5행(참)	(수조의 저명한 천문학자 劉 焯이 『皇極曆』을 편찬했고 …… 승려 一行이 …… 자 오선의 길이를 산출했다.)				전체 삭제
	4. 藥王 孫思邈	p.49, 6 ~11행 (본)	의학은 수당 시기에 (비교적 크게) 발전했다. (정관 연간 …… 당 고종 때 …… 『唐本 草』는 …… 유럽보다 800 년 앞섰다. 이때) 명의가 배		p.35, 3 ~6행 (참)	수당 시기 의학이 발전하고 명의가 배출되었다. 수당 시 기 의학이 발전하고 명의가 배출되었다. 당조 걸출한 의 학자 孫思邈은 醫德이 뛰어난	부분 수정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내용
			출(되고 저술이 아주 많았다) 당조 (가장) 걸출한 의학자 孫思邈이 필생에 심혈을 기울여 쓴 『千金方』은 중국 의약학사에서 중요 …… 후세에 그는 “藥王”으로 불렸다.			“이명을千金처럼 귀중히 여겼다. 그가 필생에 심혈을 기울여 쓴 『千金方』에는 800여 종 약물과 5천여 종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의약학사에서 중요 …… 후세에 그는 “藥王”으로 불렸고, 그의 고향의 산도 “약왕산”이라 불렸다.	부분 추가 대폭 축약
		p.49, 12 ~28행(참)	(손사막은 가난한 사람들 …… 병자에게도 약을 주었다. 그가 쓴 『천금방』에는 800여 종의 약물과 5천여 종의 처방이 기록되어 (역대 의학자의 약물 지식을 풍부히 했다.) 손사막의 고향 …… 산이 사람들에게 藥王山이라 불렸다. (그때 소수민족 …… 티베트 의학의 기초를 닦았다.)				
5. 종교 의 발전		p.49, 29 행~p.50, 1행(본)	(수조와 당조의 지배자들은 종교의 작용을 중시했다. ……)				전체 삭제
		p.50, 2 ~15행(참)	(무척천은 …… 개원 연간에는 …… 가장 큰 석각불상이다.)				전체 삭제
		p.50, 16~19행 (본)	(도교는 수당 시기에도 …… 영향이 불교에 못미쳤다.)				전체 삭제
		p.50, 20~23행 (참)	(전설에 …… 吉善行이란 사람은 …… 이씨 당조 천하가 神이 준 것이라 했다.)				전체 삭제
		p.50, 24~25행 (본)	(수당 시기 외래 종교 …… 중국에 온 외국인 많이 신봉했다.)				전체 삭제
		p.50, 26 행~p.51, 4행(참)	(경교는 기독교의 일파 …… 이슬람교는 아랍인이 창시 ……)				전체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8. 봉건 문화의 고봉(2)	1. 시가 의 황 금시대	p.53, 1 ~3행(본)	당조는 중국 시가의 황금시대 로 백화제방의 당조 문화에서 시가가 가장 눈부시게 빛났 다. 전해오는 것이 2천여 명 시인의 5만여 수 시가이다. 唐 詩는 내용이 풍부하고 풍격이 다양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에 게 애호된다.	7-3. 천고에 빛나는 시단	p.35, 7 ~9행(본)	당조는 중국 시가 창작의 황금시대이다 . 당시는 내 용이 풍부하고 풍격이 다 양하여 기량이 뛰어난 시 인들이 끝없이 나왔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당조 2 천여 명 시인의 5만여 수 의 시가를 읽을 수 있다.	부분 수정	
		p.53, 3 ~11행(본)	(초당 …… 陳子昂 …… 성당 시기 …… 王維 …… 岑參 ……)					전체 삭제
		p.53, 12 행~p.54, 6행(참)	(왕유는 시에 능하고 그림도 잘 그렸는데 …….) (잠삼의 邊塞詩 …….)					전체 삭제
		p.54, 7 ~13행 (본)	(성당 시가는 대시인) 이백과 두보의 시가가 최고의 성취를 이루고 국내외에서 영향도 아 주 컸다. 백제(이)는 그들을 시 를 칭송 …….) 이백은 조국 산하를 사랑하여 …… 명산대 천을 찬미한 시를 많이 썼다. …… (『望廬山瀑布』 …… 상 상이 풍부하고 언어가 경쾌했 다. 사람들은 그를 “詩仙”이 라 불렀다.	p.35, 9 ~17행(본)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최 대 영향을 미친 시인은 이 백, 두보 및 백제(이)이다. 이백은 성격이 호방한 고 조국 산하를 사랑하 여 …… 명산대천을 찬미 한 시를 많이 썼다. …… (『望廬山瀑布』 …… 상 상이 풍부하고 경지가 기 묘하며 언어가 경쾌했다. 사람들은 그를 “詩仙”이 라 불렀다.	축약 수정		
		p.54, 14~13행 (참)	이백의 자는 태백(이고 彰明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 청년때는 뜻을 세워 집을 떠 나 유람했다. (뒤에 장안으로 가서 …… 장안을 떠나 …… 장강의 드넓음을 묘사 ……) …… 黃河 …… 廬山瀑을 …… 묘사했다.		p.35, 18~22행 (참)	이백의 자는 태백이다. 그 는 어려서 …… 청년때는 뜻을 세워 큰일을 하고자 했다. 그는 집을 떠나 유 람하며 각종 사람들을 만 나고 각지 명산대천을 유 람했다. 이백은 풍부한 감 염력 있는 예술 수법으로 …… 웅장하고 아름다움 을 묘사했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부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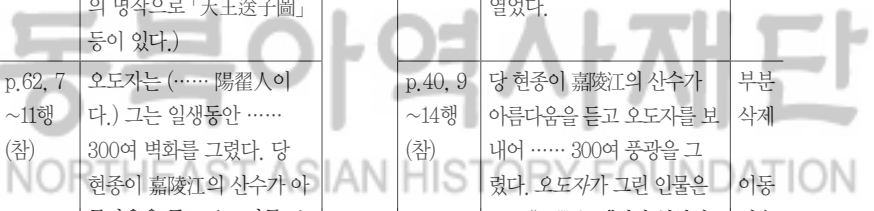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54, 14~17 행(본)	두보는 …… 그의 (많은) 시 는 …… “詩史”라 불렸다. 그의 “三吏”, “三別” ……. …… 언어가 (모두 아주) 세 련되고 …… “詩聖”이라 불 렸다.		p.35, 23~27행 (본)	두보는 …… 그의 시는 …… “詩史”라 불렸다. 그의 “三 吏”, “三別” …… …… 언어 가 세련되고 …… “詩聖”이라 불렸다.	부분 삭제 부분 수정
		p.55, 1 ~12행 (참)	두보의 자는 子美(이고 하남 鞏義 사람)이다. 어린시절 각 지를 유람하였고, 낙양에서 李白을 만나 깊은 정의를 맺 었다. 뒤에 그는 장안에서 10 년 살면서 (과거에 낙방하고 …) 조정의 어두움을 보았 다. (두보는 강렬한 애국 정 서를 가졌다.) 안사의 난 (후) 장안이 함락되자 그는 (매우) 비통해 하며 …… 당군이 (하 남 허북을) 수복했을 때 …… 나라의 운명과 하나가 되 었다.		p.35, 28행~ p.36, 6행(참)	두보의 자는 子美이다. 그는 어린 시절 많은 책을 두루 읽 었고 20세 이후에는 각지를 유람하였고, 낙양에서 李白을 만나 깊은 정의를 맺었으며, 뒤에 두보는 장안에서 10년 살면서 조정의 부패와 어두움 을 절실히 느껴 그의 시는 통 치자에 대한 불만과 인민에 대한 동정을 표현했다. 안사 의 난 때 장안이 함락되었다. 두보는 비통해 하며 …… 당 군이 승리하자 …… 나라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부분 수정
		p.55, 13~15 행(본)	중당 시기 (사회 모순이 중 첩되자 시단에서 개혁의 물 결이 있었다.) 백거이(로 대 표되는 이 시인들)은 시가에 …… 교육적 목적에 이를 것 을 제창했다. 백거이의 「秦 中吟」과 「新樂府」는 이런 류 의 시의 대표작이다.		p.36, 7 ~9행 (본)	백거이는 당 중기에 살면서 시가에 …… 교육적 목적에 이를 것을 제창했다. 그의 「秦 中吟」과 「新樂府」 등은 사회 를 풍자하고 인민을 동정한 이런 류의 시의 대표작이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p.55, 16행~ p.56, 7행(참)	백거이는 자가 樂天(이고 下 邳사람)이다. 어릴 때 집이 가 난(한테다 번진의 난을 만나 …) …… (만당은 …… 李商隱 ……. 杜牧은 …….) (그들의 詠史詩 …….)		p.36, 10 ~18행 (참)	백거이의 자는 樂天이고 어릴 때 집이 가난했다. <u>십오륙 세 때 그는 작품을 갖고 문단의 명사인 顧況을 찾아갔다. 그 때 고향은 …… 김탄을 금하 지 않으면서 …….</u>	대폭 수정 대폭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60, 6 ~12행 (참)	(안진경 …… “顔筋”이라고 그의 서법 특징을 개괄했다.)				전체 삭제		
		p.60, 13 ~15행 (본)	(안진경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서법가는) 柳公權이다. 그의 서체는 모나게 꺾여 수려하고 힘이 있는데 「玄秘塔碑」 등이 대표작이다.				p.38, 9 ~10행 (본)	류공권은 博采重長, 別出新意하여 스스로 “柳體”를 이루었다. 그의 서체는 모나게 꺾여 수려하고 힘이 있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p.60, 16, 20행 (참)	류공권은(…… 京兆華原人인데) 해서에 뛰어났다. 당 목종이 그의 서법을 좋아했다. (한번은 목종이) 그에게 필법을 묻자 그는 필법을 말하는 기회를 빌어 간언하길 “用筆在心, 心正則筆正”이라 하여 서예사에서 “筆諫”이란 美名을 남겼다. 후세 사람들은 그와 안진경의 서예를 “顔筋柳骨”이라 병칭한다.				p.39, 1 ~8행 (참)	류공권은 해서에 뛰어났다. 당 목종이 그의 서법을 좋아하여 그에게 필법을 묻은 적이 있다. 류공권이 “用筆在心, 心正則筆正”이라 했다. 목종은 당 후기의 아주 황당한 황제여서 류공권이 필법을 말하는 기회를 빌어 간언했고, 서예사에서 “筆諫”이란 美名을 남겼다. 후세 사람들은 그와 안진경의 서예를 “顔筋柳骨”이라 병칭한다.	부분 삭제 부분 추가
	2. 이채로운 회화	p.61, 1 ~3행 (본)	수당 시기의 회화(는 아주 이채롭다). 종교화의 현실 생활 기운이 농후했다. 인물(故事)화, 산수화, 화조화는 (이미) 대량 출현했다. 후세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화가는 (수조의 展子虔과) 당조의 閻立本, 吳道子이다.	p.39, 9 ~17행 (본)	수당 시기 회화예술이 고도로 발전했다. 종교화의 현실생활 기운이 갈수록 농후해졌다.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는 대량 출현했다. 후세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화가는 당조의 閻立本, 吳道子 등이다.	부분 추가 부분 수정 부분 삭제			
		p.61, 4 ~5행(본)	(초당의) 엽립본은 인물고 사회를 잘 그렸다. 그의 그림은 …… 필선이 열킨 철사 같았다. 대표작은 「역대 제왕도」와 「步輦圖」이다.	p.40, 1 ~3행 (본)	엽립본은 인물고사회를 잘 그렸다. 그의 그림은 …… 필선이 열킨 철사같았고, 人物神形을 겸비했다.	전체 삭제 부분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p.40, 6 ~8행 (참)	염립본은 역사자료에 의거하 여……「歷代帝王像」을 그 렸다. 그림속의 제왕은…… 살아 움직이는듯했다. 그의 대표작으로 「步輦圖」 등도 있다.	부분 수정 부분 추가
		p.62, 1~4행 (참)	(염립본은…… 그림을 배우 지 말라고 했다.)				전체 삭제
		p.62, 5~6행 (본)	(성당의) 오도자는 후세에 “畫聖”으로 불린다.……寫 意畫의 서막을 열었다. (그 의 명작으로 「天王送子圖」 등이 있다.)		p.40, 3 ~6행 (본)	오도자는 그림 기술이 뛰어 나 후세에 “畫聖”으로 불린 다.……寫意畫의 서막을 열었다.	부분 삭제
		p.62, 7 ~11행 (참)	오도자는 (…… 陽翟人이 다.) 그는 일생동안…… 300여 벽화를 그렸다. 당 현종이 嘉陵江의 산수가 아 름다움을 듣고 오도자를 보 내어…… 300여 풍광을 그렸다. 그가 그린 인물은 …… “吳帶當風”이라 칭찬 받았다.		p.40, 9 ~14행 (참)	당 현종이 嘉陵江의 산수가 아름다움을 듣고 오도자를 보 내어…… 300여 풍광을 그 렸다. 오도자가 그린 인물은 …… “吳帶當風”이라 칭찬받 았다. 오도자는 (…… 陽翟人 이다.) 그는 일생 동안…… 300여 벽화를 그렸다. 이 벽 화들은 “落筆雄動”으로 모두 달랐다.	부분 삭제 이동 서술 부분 추가
3. 예술 의 보고 莫高窟	p.62, 12~15 행(본)	석굴 예술은 수당 시기에 크게 발전했다. (용문석굴 …… 그때 판 것이다.) 지금 甘肅 서부 敦煌의 막고굴에 서 60~70%의 동굴이 수당 대에 판 것이다. (중국 고대 노동자들이) 막고굴에 대량 의…… 그림과 생동감 있는 조각상(을 그리고 빛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예술 寶庫 中 하나이다.	8-2, 예술의 보고 莫高窟	p.40, 15~20 행(본)	석굴예술은 수당 시기에 크게 발전하여 가장 저명한 것이 지 금 甘肅 서부 敦煌의 막고굴이 다. 그곳 대부분의 동굴이 수 당대에 판 것이다. 막고굴에 대량의…… 그림과 생동감 있 는 조각상이 있고 굴 안에 있 던 대량의 불경, 무서들도 아 주 진귀한 것이다. 막고굴은 세계 최대의 예술 寶庫中 하나 로 지칭된다.	부분 수정 부분 추가 부분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변화 내용	
		p.62, 16~27행	막고굴에는 천여 개의 동굴이 있어서 천불동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492굴이 있다.) 동굴의 네 벽과 천정에는 (금빛찬란한 채색) 벽화가 (가득) 그려져 있다. (현재 벽화의 총면적은 4,500㎡이며 내용은 불교 고사를 표현하였으나 적지 않은 그림에 수당 시기 사회 변영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제왕 …… 형상이 생동적이다) 그중 …… 비천 …… 비파 …… 선녀가 …… 대표작이다.		p.40, 21~27행(참)	막고굴은 천불동이라고도 하는데 천여 개의 동굴이 있다. 막고굴은 대형미술관과 같아서, 동굴의 네 벽과 천정에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총면적은 45000㎡이다. 그림은 주로 불교고사를 표현하였으나 수당 시기 사회 변영을 반영한 것도 적지 않다. 그중 …… 비천 …… 비파 …… 선녀가 …… 대표작이다.	부분 수정	
		p.64, 1~4행(참)	막고굴의 조소상은 모두 2,400여 존인(데 수당 시기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상은 …… 용맹스런데, 모두 (표정이 생생하고) 예술적 매력이 풍부하다. …… 가장 큰 것은 33m(인데, 둘레에 ……)		p.40, 28행~ p.41, 3행(참)	돈황 막고굴은 조소관과도 같다. 2천여 존의 자태가 모두 다르게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가장 큰 것은 33m이고, 작은 것은 연필만한 것도 있다, 이들 상은 …… 용맹스러운데, 모두 예술적 매력이 풍부하다.	부분 수정	
4. 풍격 다양한 음악과 춤	p.64, 5~9행(본)	서역 여러 민족과 주변 각국의 성과를 받아들였기에 수당 시기 음악·무용은 풍격이 다양하고 아름답고 잘 조화되어 성세의 특색을 갖추었다. (당시 저명한 음악가 ……)	8-3. 화려한 음악과 무용	p.41, 4~7행(본)	수당 시기 음악·무용은 서역 여러 민족과 주변 각국의 전통 무악을 대량으로 받아들인데다가 웅장하고 풍격이 다양하고 아름답고 잘 조화되어 성세의 특색을 갖추었다.	부분 수정		
	p.65, 1~12행(참)	(萬寶常 ……) (수 양제 ……) (당 현종 ……) (당 시 궁정 ……)				전체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제7, 8, 9과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제7, 8과			변화 내용
과	항목	쪽, 행	내용	항목	쪽, 행	내용	
5. 고대 체육의 흥성기		p.65, 13~15행 (본)	(수당 시기 무용은 대체로 자태가 씩씩한 健舞와 부 드러운 軟舞의 두가지였 다. 당 초기 이세민이 시 켜 만든 秦王破陳舞는 창 업의 고난을 잊지 않게 했 다. 성당 시기 유행한 霓 裳羽衣舞는 무용중 특출 했다.) 당대 저명한 무용 가 公孫大娘은 검무를 잘 추었다.		p.41, 8 ~17행 (참)	수대 …… 각국의 가무를 융 합하였다. 당 정관 시기 …… 十部樂으로 발전시켰다. 저 명한 가무곡으로는 당 태종 의 무공을 노래한 「秦王破陳 樂」, 당 현종 편제에 참여한 「霓裳羽衣曲」 등이 있다. 당 현종 때 유행한 霓裳羽 衣舞는 시인 백거이가 찬양 ……. 저명한 무용가 公孫大 娘은 검무를 잘 추었는데, 시 인 두보가 ……수십 년 뒤에 도 잊지 않았다.	대폭 수정 대폭 추가
		p.66, 1 ~5행(참)	(건무에는 ……) (민간의 집단무에는 ……)				전체 삭제
		p.66, 6 행~p.67, 1행(본)	(고대 체육은 수당 시기에 전례없는 흥성 ……)				전체 삭제
		p.67, 2 ~7행(참)	(馬球는 정관 연간에 토번 에서 내지로 ……)				전체 삭제

대 체육의 흥성기」를 삭제하였다. 2001년판 『中國歷史』 7하 교과서는 과명에서 부제를 삭제하였고, 내용에서도 건축, 인쇄 부분은 두고 천문학, 의약학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 제8과 1항에 있던 시문학 내용을 옮겨 편성하였다.

그리고 단원명은 남아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대폭 축약 조정이 이루어졌다. 주제 자체가 삭제된 대표적인 예로는 제7과 제1항 「고도로 발전한 건축 수준」에서 宇文愷의 도성 건설 내용, 제2항 「목판인쇄술의 발명」에서 화약 관련 내용, 3항 「천고에 빛나는 시단」에서 李白, 杜甫, 白居易 이외 인물 기사, 제8과 제1항 「눈부신 서법과 회화」에서 顏真卿, 柳公權 이외 서예가 인물 기사 등이다.

내용을 보충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데, 제7과 3항 「천고에 빛나는 시단」에서白居易가 문단 명사 顧況을 찾아간 내용,⁴⁵⁾ 제8과 제1항 「눈부신 서법과 회화」에서 柳公權이 ‘柳體’를 이루었다는 내용,⁴⁶⁾ 제3항 「화려한 음악과 무용」에서 당 貞觀 시기 十部樂 발전 내용,⁴⁷⁾ 公孫大娘의 뛰어난 검무를 어려서 본 시인 두보가 수십 년 뒤에도 잊지 않았다는 내용⁴⁸⁾ 등에 불과하다.

논조상의 변화도 보이는데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요소요소에서 강조하고 있다. 당의 수도 장안이 “구획이 정연하다”고 강조했고, 大明宮 含元殿에 대해서도 “크고 웅장하다”는 수식을 추가하였다.⁴⁹⁾ 인쇄술에 대해서도 “중국 고대 4대 발명의 하나이다”라고 강조하였다.⁵⁰⁾ 손사막의 의술에 대해서도 “인명을千金처럼 귀중히 여겼다”는 수사를 추가하였다.⁵¹⁾

피통치자 계급에 대한 중시와 동정도 강조되었다. 두보의 시가 “통치자에 대한 불만과 인민에 대한 동정을 표현했다”고 새로 추가 강조했다.⁵²⁾ 백거이도 사회를 풍자하고 인민을 동정하였다는 표현을 새로 추가하였다.⁵³⁾ 수당 시기 회화 예술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채롭다”⁵⁴⁾라는 표현 대신 “고도로 발전했다”⁵⁵⁾는 표현으로 수정, 강화하였다. 敦煌 莫高窟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찬사

45) 顧況은白居易를 “長安에 있는 百物이 모두 귀하나 백거이야말로 위대함에 변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의 “離離原上草，一歲一枯榮。野火燒不盡，春風吹又生”이라 읊은 시에 대해서도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6쪽, 1~18행.

46) 柳公權은 博采重長, 別出新意하여 스스로 “柳體”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8쪽, 9~10행.

47) 수대 예술가들은 중원의 가무와 각 민족과 각국의 가무를 융합하였고, 당 貞觀 시기에는 진일보하여 가무의 황금시대로 나아가 十部樂으로 발전시켰음을 강조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41쪽, 8~10행.

48)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41쪽, 16~17행.

49)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4쪽, 4~5행.

50)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4쪽, 6행.

51)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5쪽, 4행.

52)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6쪽, 1~2행.

53)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6쪽, 9~10행.

54)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61쪽, 1행.

55)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9쪽, 9행.

도 강화하였다.⁵⁶⁾

이상 수당 시대 중국사 서술에 나타나는 특징은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새로운 통합과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대외적으로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상호 왕래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융합이 이루어졌으며,⁵⁷⁾ 경제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이 보였으며, 문화적으로도 고도로 발전하여 찬란한 면모를 자랑하게 되어 이후 중국사 발전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논지를 보이고 있다. 이전 교과서에 비해 통합, 통일, 융합, 발전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고, 수당 왕조의 영향력과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변화상도 확인된다.

IV. 자료, 연습문제, 활동과 탐구 등의 특징과 변화

중국 초급중학『중국역사』교과서에는 단원 머리에 단원을 요약하는 제시문이 있어서 단원 내용 전체를 개괄하고 단원이 지향하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문과 참고문이 이어지면서 단원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문이나 참고문 사이 사이에 많은 도표, 그림, 사진, 지도, 인용구, 질문창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단원 말미에는 연습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도표, 그림, 사진, 지도, 인용구의 내용과 그 변화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56) “가장 저명한 것”, “굴 안에 있던 대량의 불경, 문서들도 아주 진귀한 것”, “대형 미술관과 같다”는 등의 찬양하는 수식이 추가되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40쪽, 15~22행.

57) 이는 민족 간 대립을 “內遷-雜居-融合”으로 강조하는 공식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이동훈, 「중국 역사 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분석-근대 이전의 민족관계를 중심으로」, 113쪽.

〈표 6〉 표, 그림, 사진, 지도, 인용구의 내용과 변화⁵⁸⁾

『中國歷史』2(1993판, 1999쇄)				『中國歷史』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내용	
1	한때 번성한 隋 왕조	지도 그림 그림 지도 그림 지도 그림 인용	수 왕조의 강역 수나라 무사 인형 진 후주와 두 비 수 왕조의 대운하 수 왕조의 악무용 수 말 농민기의 형세 와강군 와강군의 수 양제 토벌 공시문	1	(좌동)	지도 사진 사진 인용	수 왕조의 강역 수 왕조 때 일하는 인형 대운하 개착 고인의 대운하 역사적 공적 찬양	채색 교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교체 교체
2	“貞觀의 치”에서 “開元의 치”까지	그림 그림 그림 인용 그림 표 인용 그림 그림 그림	山西 太原의 晋祠 현무문의 변 당 태종 당 태종이 인용한 고인의 말 당 태종 昭陵의 석조 준마 당 3성6부제 “若家給人足 ……”(당 태종) 武則天 皇澤寺 당 태종의 姚崇 재상 임명	2	“정관의 치”	그림 그림 인용 그림 사진	당 태종 당 왕조의 공신상 “舟所以比 ……”(당 태종) 武則天 당 왕조의 우증경작도	삭제 삭제 채색 삭제 교체 삭제 교체 채색 교체
3	성세 경제의 번영	그림 지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인용 그림 그림 그림	敦煌 벽화 <농경도> 당조 농축산품 분포도 당대 여자 기마도 筒車 曲轆犁 <捕蝗圖> “憶昔開元全盛日 ……”(杜甫) 치마저고리 입은 당 부녀 투르판에서 출토된 얇은 천 邢窯 백자	3	“개원 성세”	그림 사진 그림 인용 사진 사진	당 태종의 姚崇 재상 임명 筒車 曲轆犁 “貞觀之風 ……”(史書 ……) 치마저고리 입은 당 부녀 당조의 청자와 백자	전재 삭제 삭제 삭제 교체 채색 삭제 교체 교체 삭제 교체

58) 구분은 표, 그림, 사진, 지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변화 내용은 전재(그대로 수록), 교체(바꾸어 실음), 삭제(신지 않음), 추가(새로 넣음)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당초의 그림이 사진으로 바뀌어 실렸으면 ‘교체’로 표기하였다.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내용	
		지도 그림 지도 그림 그림 그림			지도 4 과거제의 창립 그림 그림 사진 인용 사진	삭제 삭제 채색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4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지도 그림 그림 인용 지도 그림 지도 그림 인용 지도 그림 지도 그림 인용	5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지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인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교체 교체 삭제 교체 교체 진재
5	“은 천하에 벗이 있다”	지도 인용 그림 그림 인용 그림 그림 그림 지도 그림 그림	6	대외 우호 왕래	지도 사진 인용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채색 삭제 삭제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삭제 교체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내용	
		그림 표 그림 그림 그림	당 불탑 당과 인도의 무역 구슬과 오리 문양 당 비단 페르시아 은화 동로마 금화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唐 왕조의 쇠락과 멸망	그림 지도 그림 그림 그림 표 지도 그림 인용	양귀비 상마도 안사의 난 현종의 축방 도피 돈황벽화중의 절도시출행도 당 환관 번진의 할거성 황소기의 유동작전 황소 “待到秋來九月八……”(黃巢)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봉건문화의 고봉(1)-과학 기술의 발달, 종교의 흥성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인용 표 그림 그림	당 大明宮 含元殿 복원도 趙州橋 난간 용문 大雁塔 山西 五台山 佛光寺 대전 敦煌 벽화 속의 당 주력 수당 연회 실내 가구 〈金剛經〉 火箭 一行 孫思邈 “人命至重……”(孫思邈) 수 문제 시기 불교 발전 〈大秦景教流行中國碑〉 廣州 懷聖寺 光塔	7	찬란한 수당 문화(1)	사진 사진 그림	趙州橋 난간 용문 〈金剛經〉 大明宮 含元殿 복원도	삭제 교체 교체 교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8	봉건문화의 고봉(2)-천고에 빛나는 문단은 문단	그림 인용 인용 그림 그림 그림	王維의 그림 〈登幽州臺歌〉(陳子昂) 〈蘇軾讚美王維的詩畫〉 李白 杜甫 白居易			인용 사진 사진	“孤帆遠碧影空盡……”(李白) 두보 백거이	삭제 삭제 삭제 교체 교체 교체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 내용	과	단원제목	구분	수록내용	
		인용 그림 인용 그림 인용 그림 그림	〈新樂府·紅線毯〉 廣東 潮州的 景韓亭 〈雜說〉 廣西 柳州的 柳侯祠 〈小石潭記〉 〈南柯太守傳〉 〈柳毅傳〉 삽도			인용	“朱門酒肉臭 ……”(杜甫)	교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봉건문화 의 고봉 (3)-오색 찬란한 예술	사진 사진 인용 사진 인용 사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인용 그림 그림 그림 그림	歐陽詢의 〈九成宮體泉銘〉 張旭의 초서 杜甫〈飲中八仙歌〉 顏真卿〈多寶塔碑〉 “顏公變法 ……”(蘇軾) 柳公權의 〈玄秘塔碑〉 展子虔의 〈游春圖〉 〈歷代帝王圖〉 〈天王送子圖〉 돈황벽화의 시공 막고굴 예술 및 그 창조자 막고굴 당대 소상 坐部伎 立部伎 〈江南逢李龜年〉(杜甫) 勤政樓에서 노래하는 永新 霓裳羽衣舞 성당 시기 軟舞와 健舞 唐樂舞 격구하는 唐明皇과 양귀비	8	찬란한 수당 문 화(2)	사진 사진 인용 사진 사진 그림 사진 그림 그림	歐陽詢의 〈九成宮碑〉 顏真卿 〈顏氏家廟碑〉 “顏公變法 ……”(蘇軾) 柳公權의 〈玄秘塔碑〉 展子虔의 〈游春圖〉 吳道子〈送子天王圖〉 돈황벽화 속의 飛天 坐部伎 立部伎 軟舞와 健舞	전체 삭제 삭제 교체 전체 전체 교체 삭제 채색 교체 삭제 채색 삭제 삭제 채색 삭제 삭제
				활 동 과 1	역사 단 극-문성 공주의 티베트	그림	祿東贊이 東敎場에서 공주를 분간해 념 송찬간포와 문성공주가 티베 트 백성들과 함께 함	추가 추가



표, 그림, 사진, 지도, 인용구의 내용은 전체의 많이 줄어들었다. 특별 편성된 활동과를 제외한 일반 과에서의 이들 내용들을 대비하여 정리하면 <표 7> 과 같다.

<표 7> 표, 그림, 사진, 지도, 인용구의 변화 비율⁵⁹⁾

과	구분		지도		그림		인용문		표		사진		합계		신판/ 구판 (%)
	구판	신판	구판	신판	구판	신판	구판	신판	구판	신판	구판	신판	구판	신판	
1	1		3	1	4		1	1			0	2	8	4	50.0
2	2				7	3	2	1	1			1	10	5	50.0
3	3+4		3	1+0	2	2+2	1	1+1				3+2	16	7+5	75.0
4	5		5	1	6		3	1				5	14	7	50.0
5	6		2		11		2		1			16			28.0
6			2	1	4		1		1			9	7		
7	7				12		1		1				14		25.9
8					8	1	5	2				4	7		
9	8				12	3	3	1			4	5	19	9	47.4
합계			15	4	77	11	19	9	4	0	4	27	119	51	42.9
신판/구판 (%)			26.7		14.3		47.4		0		675		42.9		

전체적으로 119개이던 표, 그림, 사진, 지도, 인용구가 51개로 줄어들어 축소 비율이 42.9%를 기록하므로 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표는 기존 4개 모두가 삭제되었다. 지도는 기존 15개 중 「수 왕조의 강역」, 「당조 장안성 평면도」, 「당조 후기 강역과 변경 각축 분포」, 「당조 주요 교통 노선」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었다. 지도는 채색을 새로 하여

59) 구판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신판은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이다.

시각적 효과를 제고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지도상의 오류가 보이는 것이 아쉽다. 「당조 후기 강역과 변강 각족 분포」는 발해의 영역을 흑수말갈(흑룡강 하류 일대), 위구르, 토번, 南詔(현재의 운남 일대) 지역과 함께 채색 처리하여 당조의 邊疆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발해가 독립 왕조였음을 부정하면서 중국의 외연을 무리하게 확장한 모습이다.⁶⁰⁾

지도와 도표도 대폭 줄었으나 그림 자료들의 삭제 비율이 더 높다. 특히 그림은 77개이던 것이 11개로 줄어든 반면, 사진은 4개에 불과하던 것이 27개로 늘어났다. 그림 자료 가운데 많은 분량을 삭제하여 기존의 복잡하던 지면 구성이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가다듬어졌다. 또한 그림 자료들 가운데 다수를 다채색으로 색조를 넣거나 사진으로 교체하여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본문 내용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인용구들도 19개이던 것이 9개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인용구들은 대체로 단원 내에 소개된 인물이 남긴 말이나 단원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절들로 수록되어 있다. 출전이나 발언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함께 적어두고 있다. 그런데 새 교과서의 인용구도 2개만 기존의 내용 그대로를 실었고, 나머지 7개는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본문과 참고문 등 모든 것이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데 지문만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시각적 효과를 꾀하고 있다. 특히 새 교과서에서는 인용구들을 목간을 엮은 책 모양에 의한 살색 채색까지 함으로써 눈에 보다 더 잘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 밖에 질문창이 있다. 각 단원 내용의 핵심이나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적 요소와 중국인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 <표 8>과 같다.

60)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5쪽.

〈표 8〉 질문창의 제시 내용과 변화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질문 문장	과	질문 문장		
1. 한때 번성한 隋 왕조	수 왕조는 중국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가?	1. 한때 번성한 隋 왕조		삭제	
	수나라는 왜 단명했는가?			삭제	
			수 양제 때 어떻게 남북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개통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자.	추가	
			이전 대운하에 대한 평가 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조랑을 수상 운송하는 것이 고대에 왜 중요했는지 생각해 보자.	추가	
2. “貞觀의 치”에서 “開元의 치”까지	왜 당 태종을 걸출한 정치가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자.	2. “정관의 치”		삭제	
			당 태종과 한 무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지난 학기에 배운 역사 지식으로 생각해 보자.	추가	
3. 성세 경제의 변영	학생은 당대 정교하게 제작된 수 공업품을 몇 가지나 들 수 있는가?	3. “개원 성세”	이 시기 당 현종과 그의 증조부 당 태종은 어떻게 서로 같은 면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추가	
				삭제	
		당나라 장안성의 중요성은 어떤 면에서 드러나는가?		어떤 아라비아 상인이 광주에 와서 당 관원을 만났다. 그는 5벌의 비단 옷을 겹쳐 입었다. 이 예는 어떤 문제를 설명해 주는가?	추가
			4. 과거제의 창립	명경과는 임의로 선택한 5경 중의 일부를 고시생들이 써 내도록 하였다. 당신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의 시험에서 비슷한 유형이 있는가?	추가
			당 왕조의 진사과에서 시부를 중시했음을 알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추가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질문 문장	과	질문 문장	
4.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돌궐과 위구르 두 민족은 생활·문화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5.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삭제
			당 태종이 “옛부터 모두 중화를 귀히 하고 이적을 천시하였으나 짐만은 하나 같이 사랑한다”고 했다. 그의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민족정책을 실천했는가?	추가
			소학교에서 배운 티베트 인민 생활에 관한 지식을 돌이켜 보고, 티베트인들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추가
5. “은 천하에 벗이 있다”	작은 글자를 읽고 鑿眞과 玄奘의 공통점을 찾아 보자.	6. 대외 우호 왕래	만일 당신이 문성공주를 따라 티베트로 들어간다면 문성공주를 도와서 어떤 티베트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추가
	각국이 왜 중국인을 唐人이라 하는가? 생각해 보자.			삭제
			위 그림 속의 일본 동전과 당나라 동전은 무슨 비슷한 점이 있는가? 일본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례들을 들 수 있는가?	추가
			인도의 戒日王이 현장에게 “…… 秦王破陣樂이 있다는데 秦王이 누구인가 ……” 물었는데, ‘진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추가
6. 唐 왕조의 쇠락과 멸망	강성한 당 왕조에서 왜 안사의 난이 일어났는가?			삭제
	앞서 배운 어느 왕조에서 당 왕조의 환관 전횡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자.			삭제



동북아시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내용
과	질문 문장	과	질문 문장	
7. 봉건 문화 의 고봉(1)	수당 시기 세계적으로 앞선 중국 과학기술의 성과로 어떤 것이 있는가? 간추려 보자.	7. 찬란한 수 당 문화(1)		삭제
			인쇄술의 선구가 印章인가, 石頭 書인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왜 그런가?	추가
8. 봉건 문화 의 고봉(2)	당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3명의 시인은 누구인가? 그들의 시는 각각 어떤 특색이 있는가?		이백, 두보, 백거이의 시 특색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가?	수정
9. 봉건 문화 의 고봉(3)	왜 안진경을 왕희지 이후 최고 의 서예가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자.	8. 찬란한 수 당 문화(2)	안진경과 류공권의 楷書는 …… '宋體字'라 한다. 우리 책에도 송 체자가 많은데, 두사람의 서법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가?	수정
	수당 시기 중국 예술은 왜 백화 만발의 국면이 나타났는가? 생 각해 보자.			삭제
			…… 당시 霓裳羽衣舞를 가장 좋 아한 것은 누구였을까?	추가

질문창은 새 교과서에서의 그대로 전제된 것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수정 내지 교체되는 변화를 보인다. 전체 14개 항 중 12개 항이 삭제되고, 2개 항만 수정되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리고 14개 항이 새로 교체 추가되었다. 따라서 질문창의 전체 수는 2개가 늘어났다.

기존의 지문이 일반적으로 단답식 질의에 가까운 것들이라면 새 교과서의 지문은 생각을 요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질문창에 “動腦筋”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생각해 보는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어 이를 잘 보여준다. 질문창의 내용도 확연히 길어졌다. 교과서 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다. 그만큼 학생들의 직접적인 활동 학습을 강조하는 기초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습문제의 경우, 『中國歷史』 2에서는 객관식 선택 문제, 빈자

리에 써넣기, 주관식 문답문제, 열거하기 등 가운데 세 문항씩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中國歷史』 7하에서는 연습문제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있는데, 연습문제는 1개 항으로 줄이고 <활동 및 탐구>라는 타이틀로 2개 항씩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연습문제와 활동 탐구의 유형 및 내용과 그 변화⁶¹⁾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과	유형	질문 요지	과	유형	질문 요지		
1. 한때 변성한 隋 왕조	선택	수 왕조와 유사한 왕조	1. 한때 변성한 隋 왕조			삭제	
	넣기	수 왕조의 흥망		문답	수 양제는 왜 운하를 개통했나?	수정	
				활동	수나라 대운하와 지금의 대운하의 차이 비교	추가	
	넣기	대운하 상의 지명				삭제	
2. “貞觀의 치”에서 “開元의 치”까지			2. “정관의 치”			삭제	
	선택	정관의 통치		넣기	당 태종 때 신하 위징	수정	
	넣기	위징, 개원의 치				삭제	
	문답	무척천의 궁정적인 면		활동	한 무제와 당 태종 치적 비교 표 만들기	추가	
				활동	무척천 관련 영화 감상 나누기	추가	
				3. “개원 성세”	넣기	개원의 치	수정
					활동	당 현종의 초기 정치와 말기 정치 비교 분석	추가
					활동	당 현종 시기 관련 영상을 보고 감상 나누기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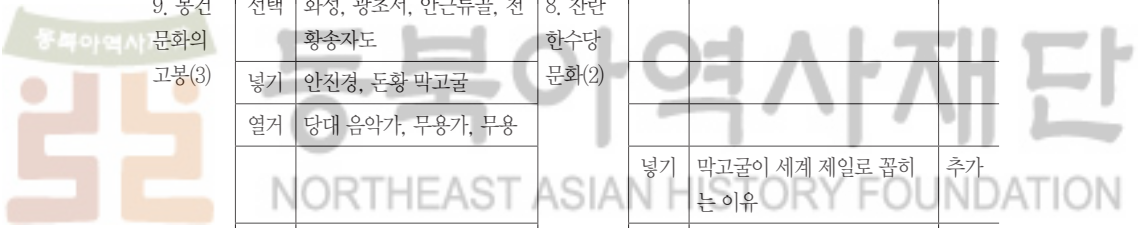
61) 유형 표시는 선택(객관식 선택 문제), 넣기(괄호넣기와 표 빈칸 채우기), 문답(설명하기), 열거(열거하기)로 줄여 표기하였다.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과	유형	질문 요지	과	유형	질문 요지		
			4. 과거제의 창립	넣기	과거제의 정식 탄생 시기	추가	
				활동	李德裕의 과거제 반대 논리 분석	추가	
				활동	과거제와 현행 고시제도 비교	추가	
3. 성세 경제의 변영	선택	당 왕조 때의 발명품				삭제	
	넣기	당대 자기, 장안 도시 구조				삭제	
	문답	당대 농업생산 성과				삭제	
4.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선택	당조와 소수민족과의 왕래	5. “和同으로 一家를 이루다”			삭제	
	넣기	돌궐문자, 위구르, 발해				삭제	
	문답	당조의 소수민족정책				삭제	
			넣기	위구르 등장 시기	추가		
			활동	소수민족 친구들의 풍속 습관 존중 방안 찾아보기	추가		
			활동	‘步輦圖’ 상의 티베트 사신 표정 분석	추가		
5. “은 천하에 벗이 있다”	선택	당·인도의 친선 왕래	6. 대외 우호 왕래			삭제	
	넣기	당과 신라·일본, 대당서역기				삭제	
	열거	당조와 인도·아라비아 간의 교류				삭제	
					넣기	증일 간 왕래한 저명 인물	추가
					활동	지도에서 당 왕조와 왕래한 나라와 지역 찾기	추가
			활동	〈서유기〉 상의 스님 묘사와 玄奘에 대한 생각 비교	추가		
6. 唐 왕조의 쇠락과 멸망	선택	당 왕조 쇠퇴 원인				삭제	
	넣기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삭제	
	문답	환관 전횡				삭제	

『中國歷史』 2(1993판, 1999쇄)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변화	
과	유형	질문 요지	과	유형	질문 요지		
7. 봉건 문화의 고봉(1)	선택	조주교, 금강경, 화약, 당본초	7. 찬란한 수당 문화(1)	활동	조주교와 현재의 다리 비교 조사	수정	
	넣기	손사막, 도교				삭제	
	문답	수당대 불교 발전				삭제	
8. 봉건 문화의 고봉(2)	선택	진자양, 이백, 백거이, 전기					삭제
	넣기	당대 시인들, 고문운동					삭제
	열거	이백, 두보, 백거이의 대표작					삭제
				넣기	시성 두보	추가	
			활동	당시 낭송회 해보기	추가		
9. 봉건 문화의 고봉(3)	선택	화성, 광초서, 안근류골, 천황송자도	8. 찬란한 수당 문화(2)				
	넣기	안진경, 돈황 막고굴					
	열거	당대 음악가, 무용가, 무용					
				넣기	막고굴이 세계 제일로 꼽히는 이유	추가	
				활동	막고굴 여행기 써보기	추가	
			활동	당대 서예 회화 작품 모사해 보기	추가		

연습문제와 활동 탐구 과제는 기존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었다. 본래의 문제 요지를 유지하면서 수정한 문항도 3개 항에 불과하다. 삭제된 것이 24개나 되며,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신규 편성한 것이 20개나 된다.

과거 교과서에서의 연습문제가 주로 단답식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새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과별로 1개 항으로 줄어들었고, 각각 2개 문항씩 편성된 〈활동과 탐구〉 문제는 내용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진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말풍선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 토론을 인도하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소감 나누기, 여행기 써보기, 작품 모사해 보기 등 새로운 형태의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새 교과서가 취미·생동·계발성의 강화, 창의적 사고 및 실천적 능력 배양을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음⁶²⁾을 잘 보여주는 변화로 파악된다.

그리고 새 교과서에서는 <자유 열람 카드>라는 부분을 각 과의 끝부분에 편성하고 있다. 1과에서는 「송嘉倉은 어떻게 식량을 오래 보존할 수 있었는가?」,⁶³⁾ 2과에서는 「정교한 昭陵의 六駿 부조」,⁶⁴⁾ 3과에서는 「화려한 당삼채」,⁶⁵⁾ 4과에서는 「최대 규모의 石頭書」,⁶⁶⁾ 5과에서는 「최초의 포탈라궁」,⁶⁷⁾ 6과에서는 「모국을 방문한 鑑眞 좌상」,⁶⁸⁾ 7과에서는 「趙州橋의 아치는 어떻게 연결되었나?」,⁶⁹⁾ 8과에서는 「비석은 어떻게 생성 발전하였는가?」⁷⁰⁾ 등의 주제에 관하여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한 설명은 문장 외에도 관련 도면

62)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권두의 「說明」 참조.

63) 수나라 때 낙양에 세워졌던 식량저장 창고인 함가창이 지하 7~12m, 입구 폭이 10~18m 지하에 조성되어 습기를 막고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6쪽.

64) 당 태종의 능묘인 소릉에 있었던 6필의 준마 조각의 예술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중 2점이 191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 펜실베이니아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소개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1쪽.

65) 다채색의 공예인 당삼채의 특징과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이 기법이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우리나라,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탈리아 등으로 전파되었음을 들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16쪽.

66) 후한대에 비롯되는 석두서가 당나라 때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어 114개 석판으로 완공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1쪽.

67) 포탈라궁이 641년 문성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건축하였다는 경위와 문성공주 등 인물 조각이 가득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27쪽.

68) 1980년 4월 감진의 좌상이 중국 양주와 북경에서 전시되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음을 소개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2쪽.

69) 조주교의 견고한 아치 구조의 공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37쪽.

70) 비석의 제작 배경과 기법을 소개하면서, 특히 당나라 때 가장 발달하고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서예사상의 가치도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中國歷史』 7하(2001판, 2014쇄), 43쪽.

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물, 유적, 유물들을 강조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중국 역사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근거하여 역사적 자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하의 편성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 중국 초급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수당 시대를 다루고 있는 단원들의 내용과 그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철저히 국가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적 요소의 우수성, 중국인의 탁월성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중국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극히 간략하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다. 중국 사회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술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언급으로 대신하고 있다.

둘째, 중국인들의 역사적 성취를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수당 왕조가 통일 제국을 형성함으로써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뛰어난 업적들이 오늘날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이어가고 있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수당 통일왕조는 제국 내에 편입된 소수민족들의 풍속과 전통에 대해서도 존중하여 통합과 통일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인도, 일본 등 이웃 나라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견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새 교과서에서는 내용상의 수정과 게시자료의 정리 보완은 물론 연습문제의 개편을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활동과 탐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

여에 의한 학습효과 제고를 지향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의 수당 시대사 서술은 최근 그 내용이 간추려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중국사, 통일적 다민족적 국가사를 지향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중국사의 외연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다분히 무리한 면모가 보인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다. 물론 역사 교과서는 전문 역사서와 달리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국수적 성격을 기반으로 애국주의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역사 교과서의 내용 서술도 기본적으로 객관성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충실히 동반될 때 최근 심각하게 되는 국가 간 교과서 분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소연 외, 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 김종박 외, 2011, 『중국 역사 교과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동북아역사재단.
- 김지훈 외,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이동훈, 2011, 「중국역사 교과서에서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분석-근대이전의 민족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역사 교과서와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동북아역사재단.
- 이찬희 등, 1993, 『中國·日本 歷史教科書의 韓國關聯內容檢討』, 韓國教育開發院.
- 이찬희 등, 1994, 『中國歷史地理教科書의 韓國關聯內容變化分析』, 韓國教育開發院.
-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教師教學用書』 7下, 人民教育出版社.
- 課程教材研究所 編, 2001,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 『20世紀中國中小學課程標準·教學大綱匯編: 歷史卷』, 人民教育出版社.
-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 12,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2004년 10월 第4刷).
-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 12,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2014년판 電子課本).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1993, 4,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二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1999. 10, 吉林第1刷).
-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著, 2001, 11,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二冊, 人民教育出版社, 第1版(2004. 10, 第4刷).
- 인민교육출판사역사실 편저, 1999, 10, 『의무교육초급중학교교과서: 중국력사』 제2권,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제2판(1999, 10, 제3쇄).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訂, 2003, 『高中普通歷史課程標準(實驗)』, 人民教育出版社, 2003년 4월 第1版(2008년 6월 第5刷).

金裕利, 2001, 「中國教育課程의 變遷과 歷史教育」, 『近代中國研究』 2.

- 金鍾健, 2004,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명칭사 내용과 변화 검토-최근 초급중학교과서를 중심으로」, 『慶北史學』 27.
- 金鍾健, 2004,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중국근대사 내용과 변화 검토-최근 초급중학교과서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23.
- 金鍾健, 2010, 「中國 歷史教科書上的 韓國 關聯 敘述 內容 變化-初級中學 『中國歷史』 教科書を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69.
- 金鍾健, 2012, 「중국 역사 교과서상의 위진남북조사 내용과 변화-최근 초급중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당이영석교수정년퇴임논총』, 우당이영석교수정년퇴임논총간행위원회.
- 김유리, 2005,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북방사논총』 6.
- 김지훈, 2007,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동북아역사논총』 17.
-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역사교학대강』 교과서와 『역사과정표준』 교과서의 비교 검토」, 『中國近現代史研究』 23.
- 朴今海, 1993, 「中國教科書에 나타난 韓國史敘述」, 『歷史教育』 54.
- 朴永哲, 2001, 「中國歷史教科書의 韓國史敘述」, 『歷史教育』 80.
- 朴章培,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1-민국시대의 민족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19.
- 朴章培,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민국시대의 민족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20.
- 朴正鉉, 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中國近現代史研究』 20.
- 반채영, 2013,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의 수정을 통해 본 중국의 역사교육」, 『역사와 담론』 65.
-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중국과 타이완, 홍콩 역사 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 吳炳守, 2001, 「中國 中等學校 歷史教科書의 敘述樣式과 歷史認識」, 『歷史教育』 80.
- 吳炳守, 2002, 「中國 中等學校 歷史教育課程의 推移와 最近 動向」, 『歷史教育』 84.
- 禹成旼, 2011, 「韓·中間 '相互理解와 歷史和解'의 認識 提高를 위한 歷史教科書의 課

- 題-韓·中 中高校 歷史教科書의 敘述 事例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75.
- 柳鏞泰, 2002, 「中國 歷史教科書의 現代史 認識과 國家主義」, 『歷史教育』 84.
- 柳裁澤, 1994, 「中國의 韓國史 理解와 歷史解析의 準據」, 『史學志』 31.
- 尹輝鐸, 2002, 「中國의 愛國主義와 歷史教育」, 『中國史研究』 18.
- 李銀子, 2003,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화개방'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中國近現代史研究』 19.
- 이인철, 2009, 「중국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역사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논리」, 『동북아역사논총』 26.
- 全寅永, 2002, 「中國近代史 教育의 觀點과 韓國史 認識」, 『歷史教育』 84.
- 鄭夏賢, 2001, 「中國의 歷史教育에 있어서 少數民族의 理解」, 『歷史教育의 方向과 國史教育』, 尹世哲教授停年論叢刊行委員會, 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History
of the Sui-Tang Period in the Chi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Kim Jongeon

I have examined the contents of and the changes in each chapter in the new history textbook used in Chinese middle schools for the Sui dynasty and the Tang dynas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textbooks continue to maintain the frame of state history. The superiority and excellence of China is always emphasized, and criticism of historical problems in China was extremely simple or minimal, or not described or mentioned.

Second, Chinese historical achievements are emphasized the most. The textbook explains that the Sui and Tang dynasties ended the division and the disorder of China by forming a united empire, and many achievements made upon this foundation continue to influence not only China, but the world today.

Third, it is also emphasized that the traditional cultures and practices of minority peoples were respected in the united empire of the Sui-Tang dynasty, thus consolidating integration and unity. These united empires are also described as having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Korea, India, Japan, and other neighboring states.

Fourth, in the new history textbooks, effort has been made to enhance the learning effect through the rectification of contents, the

presentation of complementary materials, and the reorganization of exercise questions. In particular, new types of tasks called “Activities and research” have been added to enhance the learning effect by inducing th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which is outstanding.

Generally, the focus on the Sui dynasty and the Tang dynasty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has changed to concise content, and tends to stress the core contents. The mood of the proud Chinese history and the orientation of the multi-ethnic people's state history are clear. However, it is a pity that excessive attempts to understand too inclusively the outer realm of Chinese history are made, thus admitting that the textbooks are different from professional history books themselves and have a patriotic mood, for they are produced for the sake of national education.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n objective approach to objective historical facts is necessary in order to earn true historical instruction. In this sense the focus of the historical contents in history textbooks should be based on objectivity. The serious disputes over history textbooks among states can be solved only in this wa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nts of the Sui-Tang period section in the history textbook used in Chinese middle schools and analyzes the changes in recent revisions of the textbook. From this study we may see several features. First, this is a nationalistic history. It emphasizes the superiority of Chinese culture and Chinese people. Descriptions of internal problems of China are rare or excluded. The textbooks attribute all of the crises of China to foreign powers or to the feudal class in China.

Second, the power of Chinese people is emphasized greatly. It is maintained without doubt that the people of China made heroic

devotions in spite of the continuous national disasters to form the China of today, that the patriotic anti-foreign movement of the people has protected China, and that the anti-feudal struggle has promoted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China,

Third, the effort to unify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 Sui and Tang dynasties is emphasized, and China's friendly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India, Japan, and others is strengthened, in particular,

Fourth, the textbook has tried to change the contents to complement the material and to change the type of exercise questions to improve the teaching effects.

Considering that the exact recognition and proper explanation of historical facts is the indispensable first step for historical awareness, a revised Chinese history textbook should be analyzed meticulously regarding its appropriateness. Moreover, the ferocious debates regarding the distortion of history among the three n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demands an objective approach. And we, too, as Koreans, should be careful of how nearby nations recognize Korean history textbooks.

Keywords

China, History Textbook, History of the Sui-Tang Period, Chinese Middle School

고려 명종대 조위총의 난과 금의 대응

김명진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고려 명종대에 서경(평양)에서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사람은 趙位寵이었다. 의종의 정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의종을 몰아내고 명종을 옹립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신들이 중앙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의종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던 서경류수 조위총은 의종의 죽음과 개경 무신들의 전횡에 반발하며 서경에서 고려시대 최대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조위총의 난을 그보다 앞서 거사하였던 김보당의 행위와 비교 검토한 연구가 있었다.¹⁾ 그런가하면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조위총이 주목되기도 하였다.²⁾ 또한 조위총의 난에 영향을 주었던

※ 투고: 2014년 8월 17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27일, 게재 확정: 2014년 11월 24일

1) 변태섭, 1978, 「武臣政權期の 反武臣亂의 性格-金甫當의 난과 趙位寵의 난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9, 한국사연구회.

2) 이정신, 1991, 『高麗 武臣政權期 農民·賤民抗爭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김보당의 거사도 연구되었다.³⁾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조위총의 난에 대한 대략적인 실상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간 학계에서 조위총의 난이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위총의 난이 무신정권 초기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조위총의 난에 대해서 그 배경과 전개과정, 종결 등을 시간의 흐름 속에 궁금함을 풀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가 최근에 앞선 연구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만주 문자로 된 관련 자료를 발견하게 되어 좀 더 실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조위총의 행적과 그가 일으켰던 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려 한다. 그런 다음 조위총란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논지전개의 자연스런 흐름일 것이다. 여기에 그의 행위가 항쟁인지 반란인지⁴⁾ 용어의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풀어야 할 것이다. 조위총은 처음에 그 세가 만만치 않았지만 나중에는 고려 중앙정부군에 밀리게 되자 금나라에 曷嶺(慈悲嶺, 황해도 서흥) 이북의 땅을 떼어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금은 조위총의 조건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만주 문자로 기록된 『滿洲實錄』에서 찾아보려 한다.

원.

3) 황병성, 1985, 「金甬當亂의 一性格」, 『韓國史研究』 49, 한국사연구회; 김용선, 2001, 「金甬當과 韓彦國의 亂-고려 귀족사회 속 인맥의 한 단면」,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4) 조위총의 행위가 그 출발은 義였으나 끝은 叛이었다는 조선시대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논고가 있어 참고된다. 유영옥, 2013, 「고려 趙位龍의 義와 叛에 대한 성리학 적 논변」, 『역사와 경계』 88, 부산경남사학회.

II. 조위총의 행적과 亂의 배경

서경류수 조위총은 1174년(명종 4) 9월에 서경(평양)에서 군사를 일으켜 고려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⁵⁾ 그가 거사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서경류수가 되었는지 알려주는 기록은 거의 없다. 작은 실마리 속에서 그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㉔-①] 조위총의 가계는 사료에 없다. 의종 말에 병부상서로서 서경류수가 되었다. 정중부·이의방 등이 의종을 살해하고 명종을 세우니, 명종 4년(1174)에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을 토벌할 것을 모의하고 드디어 동북 양계의 여러 성의 군사에게 격문으로 불러 말하기를, ……⁶⁾

[㉔-②] (조위총의 군대를 토벌하러 간 崔均이 붙잡히자) (최)균이 꾸짖기를, “너희 역적의 괴수 (조)위총은 行伍에서 일으켜 지위가 八座에 이르렀으니 나라의 은혜가 더할 수 없이 크다. …….”⁷⁾

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먼저 ㉔-①에서 조위총의 가계는 사료에 없다고 하였다. 조위총은 언제 태어났는지, 그의 조상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⁸⁾ 그가 서경류수로 부임되기 이전까지의 기록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로 삭제된 듯하다. 만약 안 좋았던 행실이 있었다면 원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투의 기록이 남아 있었을 텐데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장점이

5)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4년 9월.

6)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趙位寵 史失世系 毅宗末 以兵部尙書 爲西京留守 鄭仲夫李義方等 弑毅宗立明宗 明宗四年 位寵起兵 謀討仲夫等 遂檄召東北兩界諸城兵曰”.

7)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4년 10월. “均 罵曰 汝賊帥位寵 起自行伍 位至八座 國恩莫大 ……”.

8) 한편, 조위총을 白川趙氏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수건,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70쪽.

많았던 인물로 추정된다.

먼저 조위총은 문신과 무신 중 어디에 해당되었는지 궁금하다.⁹⁾ ㉗-㉘는 조위총이 병부상서와 서경류수가 되기 이전에 그의 대해서 알 수 있는 실날 같은 기록이다.¹⁰⁾ 여기에서 그는 향오, 즉 병졸로 시작하였으니 그의 집안은 그가 관직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한미했을 것이다.¹¹⁾ 향오로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조위총의 관직 출발은 무신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조위총의 난 이후에 김보당의 거사와 달리 문신들에 대한 학살이 없었던 것도 조위총이 원래 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그는 지위가 팔좌¹²⁾에 해당하는 병부상서에 올랐다고 하였다.

조위총의 열전에 의하면 그에게 妻孥와 장성한 아들로 보이는 趙卿이 있었다고 한다.¹³⁾ 이를 통해 그가 난을 일으킨 시점의 나이는 최소한 40대 이후였으며 처와 2명의 자식(조경, 이름 모름 孥)과 함께 서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무신이었기 때문에 무신란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에 있었다는 것도 그의 무사함에 대해 이해를 높여준다. 서경에 있는 병부상서로서 서경류수를 겸직한 조위총은 중앙의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다.¹⁴⁾

다시 ㉗-㉘를 살펴보면, 조위총은 의종 말에 병부상서로서 서경류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의종은 1170년(의종 24) 8월에 발발한 무신의 난으로 인하여 실권하고, 다음 달인 9월에 왕위가 명종에게 넘어갔다.¹⁵⁾ 의종의 재위가 25년

9) 조위총을 문신으로 본 견해(이정신, 1991, 앞의 책, 44쪽)와 무신으로 본 견해(변태섭, 1978, 앞의 글, 57~58쪽)가 있다. 이 글에서는 변태섭의 견해를 따른다.

10) 같은 내용이 『고려사』 권99, 열전12, 최균'에도 있다.

11) 변태섭, 1978, 앞의 글, 57~58쪽.

12) 팔좌는 6부상서와 좌·우복야이다. 변태섭, 1971,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尙書省 機構를 중심으로-』,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일조각, 15쪽.

13)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14) 이정신은 무신란 이후에 조위총이 축출되지 않았던 것은 무신들이 개경에서 서로 주도권을 다투기에 급급하여 外方に 주의를 돌릴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참고된다. 이정신, 1991, 앞의 책, 44쪽.

15) 『고려사』 권19, 세가19, 의종 3, 24년 8·9월.

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위총은 의종의 연간에 관료로서 성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위총은 의종의 신임을 받아 관료로서 성장하여 병부상서 겸 서경류수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실 사례로서 이의민이 있다. 미천한 출신인 이의민은 京軍의 병졸이었는데 手搏을 잘하여 의종이 그를 사랑했으며 隲正을 거쳐 別將으로 승진하였다고 한다.¹⁶⁾ 바로 이의민의 경우처럼 조위총도 의종의 총애를 받아 항오로부터 시작하여 병부상서 겸 서경류수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조위총에 앞서 서경의 책임자로 있던 사람 중에서 1155년(의종 9) 5월에 崔子英이 判吏部事·西京留守事로 임명된 기록이 보인다.¹⁷⁾ 그리고 세 달 후에 최자영은 평장사로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¹⁸⁾ 따라서 서경류수는 시간적으로 최자영의 후임으로 누군가가 있었으며 그 다음이 조위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의종 말에 조위총이 서경류수로 임명되었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위총은 최자영과 달리 병부상서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서경의 병력을 이전에 비해 좀 더 보강했지 않았나한다. 이러한 점이 그가 거사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위총의 행적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가 가능하다. 당대에 한미한 가문출신인 조위총은 병졸부터 시작하여 병부상서 겸 서경류수의 지위에 오른 무신이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나 의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렇지만 무신의 난이 발발했을 적에 그는 무신이면서 지방인 서경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조위총은 난을 일으킨 시점에 처와 2명의 자식과 함께 서경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의 행적을 정리할 수 있다.

서경은 잘 알려졌듯이 태조 이래로 개경중앙정부에서 매우 중요시 하던 곳이었다. 또한 북방민족이 고려를 침공할 때 도성인 개경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군사적 거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경에서 조위총이 난을 일

16) 『고려사』 권128, 열전41, 반역 2, 이의민.

17)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 9년 5월.

18)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 9년 8월.

으킬 때 서경은 물론이고 그 일대 지역민들이 적극 동참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의종과 서경의 친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종은 1158년(의종 12) 3월에 서경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노비가 된 자들을 사면해 주었다.¹⁹⁾ 서경의 반역이란 1135년에 발생한 묘청의 난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의종은 왕위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서경을 두 번 방문하였다. 무신의 난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168년(의종 22) 3월에 의종은 서경에 행차하였다. 왕의 아우 익양후(명종)와 평량후(신종)가 자못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었는데 왕이 변란이 있을까 의심하여 서경으로 거처를 옮겨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이러할지 몰라도 실제 서경에서 의종의 행보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국정과 관련된 교서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乙卯亂(1135, 묘청의 난)에 연좌되어 남쪽으로 유배된 자들을 석방하여 귀향하도록 영을 내렸다.²⁰⁾

의종은 서경에서 발생한 묘청의 난에 연좌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하였던 것이다. 그는 봄과 여름을 서경에서 보내고 가을이 되어 개경으로 돌아왔다.²¹⁾ 그리고 다음 해(1169) 3월에 또 서경에 갔다가 한 달 후인 4월에 돌아왔다.²²⁾ 의종의 서경행차 시 서경에서 의종을 받든 사람은 당연히 서경류수 조위총이었다. 의종이 묘청의 난으로 연좌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으니 서경의 민심은 의종에게 좋은 쪽으로 모아졌으리라 여겨진다. 이때 서경의 책임자였던 조위총은 의종과 서경인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조위총의 의종에 대한 순수한 忠節과 서경 일대 사람들이 왜 조위총의 반란에 동조했는지 이해된다. 서경을 비롯한 북계 사람들은 조위총란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 일대 지역민들이 의종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종이 죽은 후에 지역 민심이 개경 중앙정부에 대해 반항

19)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 12년 3월.

20)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 22년 3월·4월; 『고려사절요』 권11, 의종장효대왕 22년 3월·4월.

21)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 22년 秋; 『고려사절요』 권11, 의종장효대왕 22년 秋.

22) 『고려사』 권19, 세가19, 의종 3, 23년 3월·4월; 『고려사절요』 권11, 의종장효대왕 23년 3월·4월.

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서경 주변 북계 사람들에게 개경 중앙정부에서 차별하는 관행이 있었다. 현덕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겠지만 그는 조위충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승장구하지 못하였으며, 吏部郎中으로 제수되려고 할 때 諫官이 그를 변경사람(邊城人)이라며 반대해서 좌절시켰다.²³⁾

이 일대의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차별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의종대에 국왕에 대한 호감도가 좋아졌는데 명종대에 와서 다시 안 좋아졌던 것이다. 그러한 예를 1172년(명종 2) 6월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무신란) 이후로 북도 사람들이 횡포 방자하여 창주(평북 창성) 사람은 그 고을 수령이 사랑하는 기생을 죽여서 관청에 버려두었고, 성주(평남 성천) 사람은 삼등현(평남 강동군 삼등면)을 없애는 것을 의논할 때 따르지 않은 사람 수십 명을 죽였으며, 철주(평북 철산) 사람은 그의 관장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격투하여 죽었다고 한다. 이를 서북면병마사대장군 송유인이 제지하지 못하고, 후임자인 금오위대장군 우학유도 제지하지 못하였다.²⁴⁾ 이 같은 상황은 이 지역에서 무신란 이후에 개경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위충이 1174년에 난을 일으켰는데 이는 4년 전인 1170년(의종 24, 명종 즉위년, 경인년)에 발생한 무신의 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8월 정축일 저물녘에 의종이 보현원으로 들어설 때 이의방·이고 등이 왕을 호종한 신하와 환관들을 모조리 살해하였다.²⁵⁾ 평소 불만이 산적한 일부 무신들이 주동이 되어 문신들을 살상하고 의종을 폐위시킨 이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사건의 주동 인물은 정중부·이의방·이고 등 이었다.

의종은 거제현(경남 거제)으로 쫓겨나고 태자는 진도현(전남 진도)으로 축출되었다. 의종의 뒤를 동생인 익양공(익양후) 왕호가 넘겨받으니 이가 곧 명종이다.²⁶⁾ 그러나 서경에 있었던 조위충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

23) 『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이정신, 1991, 앞의 책, 73~74쪽.

24)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2년 6월.

25) 『고려사』 권19, 세가19, 의종 3, 24년 8월.

26) 『고려사』 권19, 세가19, 의종 3, 24년 9월.

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하여 국왕이 바뀌고, 지방에 있었던 그로서는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이 원래 무신출신이라는 것으로 무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 만족하며 분을 삭이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다가 3년이 흘러 1173년(명종 3) 8월에 의종의 복위운동이 일어났다. 金甫當의 거사가 그것이다. 東北面兵馬使·諫議大夫 김보당이 東界에서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와 이의방을 치고 의종을 복위시키려 하였다. 이에 東北面知兵馬事 韓彥國이 호응하였다. 김보당은 장순석 등을 거제도로 보내 의종을 경주로 나와 거처하게 했다.²⁷⁾ 이는 문신들이 일으킨 무신란 이전의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반무신란이며,²⁸⁾ 무신란 이후에 최초로 전개된 조직적인 반무신란이었다.²⁹⁾

동북면에서 군사를 일으킨 김보당이 남해의 거제도도 군사를 보내 의종을 경주로 나오게 했던 정황으로 보아 처음에 김보당 군사의 위세가 북쪽과 남쪽에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인 9월에 김보당의 위세는 개경의 무신 집권세력에 의해 꺾이었다. 한언국이 먼저 체포돼 죽임을 당하였고 이어서 안북도호부(평남 안주)에서 김보당 등도 체포되어 개경에서 처형되었다.³⁰⁾

김보당이 동북면(동계)에서 처음 군사를 일으킨 곳은 그 중심인 和州(함경도 영흥)였다.³¹⁾ 그리고 그는 서쪽(북계)으로 향하여 청천강 이남인 안북도호부에서 정부군에 패배하고 사로잡혔다. 김보당이 안북도호부를 점령하고 있다가 패배했는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패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무튼 그는 양계지역을 점령하고 남으로 남하하려 했다고 추측된다. 남하할 때 첫 목적지는 단연 서경이었을 것이다. 당시 서경의 책임자는 조위충이었다. 그는 문신인 김보당의 거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궁금하다.³²⁾

27)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3년 8월.

28) 변태섭, 1978, 앞의 글, 55쪽.

29) 황병성, 1985, 앞의 글, 43쪽.

30)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3년 9월.

3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영흥대도호부, 명환 고려.

32) 김보당이 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용선, 2001, 앞의 글 참고.

이때 김보당과 조위총은 정황상 사전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이해된다. 사전에 두 사람이 의기 투합했다면 김보당은 바로 화주(영흥)에서 서경으로 가서 조위총과 합세했든지 아니면 화주와 서경 두 곳에서 개경으로 향하여 군사를 몰았을 것이다. 서경의 북쪽인 안북도호부(평남 안주)에서 김보당이 체포되어 개경으로 압송되었고 서경은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조위총과 김보당은 서로 사전 모의를 하지는 안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김보당이 안북도호부에서 실패하지 않고 서경으로 내려왔다면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은 있었다. 비록 김보당의 거사는 실패했지만 조위총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그의 생각에 김보당의 의종 복위 거사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조위총은 의종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시신조차 버려져 제대로 된 장례마저 치르지 못하는 상황³³⁾에 분개하며 서경에서 거병하였다.

만약 1170년 무신의 난 이후에 집권 무신들이 개혁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면 김보당과 조위총의 군사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³⁴⁾ 개경의 집권 무신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만 했기에 김보당과 조위총의 반발이 가능했던 측면도 있었다. 김보당의 거사는 결국 실패했지만 그 피해는 엄청났다. 김보당과 문신들이 연관되어 많은 문신들이 폐죽음을 당하였다. 김보당이 복위시키고자 하였던 의종도 1173년 10월에 경주 곤원사에서 이의민에 의해서 살해되었다.³⁵⁾ 이때 왕의 자손도 살해되었다고³⁶⁾ 하므로 진도로 유배된 의종의 태자도 살해되었을 것이다. 쫓겨난(명종 3, 1173)에 일어난 이 사건을 3년 전인 庚寅年(의종 24, 1170)에 일어난 무신란과 합하여 흔히 ‘庚癸의 亂’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그 피해의 규모를 엿볼

33)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3년 10월 庚申.

34) 신안식, 1997, 「고려 명종대 무인정권의 대민정책」,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75~176쪽 참고.

35)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3년 10월.

36)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수 있다.³⁷⁾

그런데 김보당의 거사가 양계 지역을 무대로 펼쳐졌다는 것이 이후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음 기록을 읽어보자.

〔㉔-①〕 (명종 3년 겨울 10월 임술) 왕이 “3경·4도호·8목으로부터 군·현·관·역에 이르기까지 관원들은 모두 무인으로 임용하라” 하였다.³⁸⁾

〔㉔-②〕 (조위총이 격문으로 불러 말하기를) “듣건대 서울의 重房에서 ‘北界의 여러 성들이 사납고 교만한 무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므로 토벌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병력을 많이 동원했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겠는가? 웅당 각자의 병마를 규합하여 빨리 서경에 집결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岫嶺 이북 40여 성이 모두 호응하였으나 오직 延州(평북 영변)만은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³⁹⁾

㉔-①의 내용은 1173년 10월의 일이다. 이는 지방까지도 무신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전국에 내려진 영이지만 특히 무신 또는 무신적 성향이 있는 3경의 하나인 서경과 양계 지역의 토박이 지역 우두머리들이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였다. 무신란과 김보당의 거사 이후에 하급 무신들의 신분이 수직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앙의 예전 하급 무신출신들이 지역사정을 잘 모르면서 내려오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서경과 그 주변에 관리로 내려올 때 당연히 같은 무신끼리 반발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다. 양계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신 성향의 지역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김보당의 거사 이후에 행해진 이 같은 상황이 자신들에 대한 개경 정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개경의 하급무신들이 득세

37) 김용선, 2001, 앞의 글, 200쪽.

38)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3년 10월 임술, “制 自三京四都護八牧 以至郡縣館驛之任 並用武人”.

39)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側聞上京重房議 以北界諸城 率多桀驁 欲討之 兵已大舉 豈可安坐 自就誅戮 宜各糾合士馬 速赴西京 於是 岫嶺以北四十餘城 皆應之 獨延州閉城固守”.

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조위총의 의종에 대한 순수한 忠節도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조위총에 동조한 지역 우두머리들은 대개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토박이 都領들이었다.⁴⁰⁾ 무신성향의 도령들은 문신인 김보당과 달리 자기들처럼 조위총이 지역사정을 잘 아는 무신이었기에 쉽게 호응한 측면도 있었다. ④-②에 의하면 개경의 무신 집권자들이 북계에 대하여 무력적 토벌을 한다하니 미리 서경을 중심으로 맞서 일어나자하며 조위총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 이는 조위총이 다소 과장 선동한 측면도 있었다. 조위총의 반란 명분 중에 하나는 개경의 무력적 압박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미리 선수를 치자는 것이었다.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조위총이 난을 일으키고 여기에 양계 지역민들이 동조한 배경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조위총은 무신란이 발발할 때 무신이면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종이 폐위되고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꾀하고자 거사하였지만 실패하고 의종도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자, 이에 분노한 조위총은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즉 개경의 일부 무신세력들이 자행한 의종의 폐위와 시해 그리고 장례절차도 없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⁴¹⁾ 이는 조위총의 의종에 대한 충절의 순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서경과 동북 양계 지역민들이 조위총의 난에 적극 가담한 이유가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중앙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의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종대에 돌변하였다. 의종대와 달리 중앙에서의 이 지역에 대한 압박 등이 반감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조위총의 선동이 잘 먹혀들었다. 또한 조위총은 일대 지역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무신란 이후에 무신적 성향이 있는 지역의 도령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40) 변태섭, 1978, 앞의 글, 58쪽. 고려시대 도령에 대한 이해는, '김갑동, 1996, 「고려 시대의 都領」, 『한국중세사연구』 3, 한국중세사연구회가 참고된다.

41)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이유로 이 일대 지역민들이 도령들을 중심으로 조위총의 난에 적극 가담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Ⅲ. 趙位寵亂의 전개과정

조위총은 1174년 9월에 서경에서 거사하였다. 그는 김보당이 실패한 뒤에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서 군량미 확보가 쉬운 1174년(명종 4) 음력 9월에 군사 행동을 감행했던 것이다.

앞선 시기에 崔承老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계 28조의 그 첫 번째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 지방이 戎狄와 접경되어 경비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⁴²⁾ 서북, 즉 북계 지역은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고려 국방 전략상 이곳은 주민구성에서 병사들의 비중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군량미가 많이 필요로 하므로 조위총은 김보당의 거사 이후에 추수기인 음력 9월까지 준비를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위총이 여러 성의 병마를 끌어들이며, “각자의 병마를 규합하여 빨리 서경에 집결하라”⁴³⁾ 했으니 이는 각 성에서 군수물자를 각자 조달하여 모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이제 조위총의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료 ㉞-㉟의 내용에서 延州城을 제외한 절령 이북 40여 성이 모두 호응했다고 하므로 조위총군의 첫 위세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위총의 거사 다음 달인 10월에 동계의 중심인 和州營(함경도 영흥)이 조위총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니⁴⁴⁾ 동계의

42)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 時務計 28조 중 첫 번째.

43)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44)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4년 10월.

대부분도 초반부터 조위총군에 합류했던 것 같다. 조위총군에 합세한 지역은 대체로 오늘날의 황해도 북부·평안도·함경도 등지였다. 물론 연주성처럼 예외적인 곳도 있었다.⁴⁵⁾ 조위총의 난은 그 지역적 범위와 소요 시간을 놓고 볼 때 고려시대 최대의 내전이였다.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서 향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개경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종을 폐위하고 시해한 죄를 가해자에게 묻고 의종의 장례를 국왕의 예로서 치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종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책임의 종착은 명종의 폐위였다. 그러면 새로운 국왕은 누가 되어야 옳은 일인지 조위총은 거병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일단 그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의종과 그 태자는 세상을 달리하였다. 아마도 조위총은 의종의 또 다른 동생인 신량후(신량공, 신중)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되면 정중부 등의 행위와 비슷하게 되지만 명분은 왕권복귀이니 그들과 다르다고 조위총은 생각했을 것이다.

조위총군과 개경정부군의 첫 전투는 1174년 10월에 절령에서 벌어졌다.⁴⁶⁾ 그런데 조위총란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왜 뽕嶺이 그 분기점인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절령(황해도 서흥)은 慈悲嶺인데, “황주에서 남으로 절령을 넘어가면 봉산·서흥·평산·금천 네 읍을 지나 개성에 이른다. 이것이 南北直路이다”⁴⁷⁾라고 하였다. 또한 “자비령 길 열여덟 구비에 한 칼로 가로 막으면 일만 창을 막을 수 있네”라는 詩도 있다.⁴⁸⁾ 절령은 서경에서 개경으로 가는 남북 직로이면서 고갯길이 험하여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곳이 뚫리면 바로 개경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 기준이 절령이었다. 뒷날 원나라가 설치한 東寧府의 기준도 바로 이 절령 이북이었다.

45) 조위총란 초기에 나타난 전체 동조지역에 대한 이해는, 변태섭, 1978, 앞의 글, 56쪽; 이정신, 1991, 앞의 책, 48~49쪽 참고.

46)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4년 10월.

47)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

4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서흥도호부, 산천 자비령 李藏用 詩.

조위총군과 개경정부군은 10월에 절령에서 맞닥뜨렸다. 개경에서 내려온 윤인침이 절령역에 당도하자 조위총이 군사를 보내어 급습해 격파하였다. 이어 조위총의 선봉이 개경의 서쪽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의방이 공격해 패퇴시키니 조위총군은 대동강까지 되돌아갔다. 서경성 밖에서 다시 양측이 교전을 하여 이의방이 퇴각하기에 이른다. 이의방의 부대도 조위총의 아들 조경을 사로잡아 목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⁴⁹⁾ 이때 이의방의 공격은 아마도 11월인 듯하다. 11월에 다시 윤인침을 元帥로 임명해 삼군을 지휘하고 서경을 공격하게 했으므로 시기적으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⁵⁰⁾ 그런데 조위총의 아들 조경이 사로잡힌 것을 통해서 조위총은 전투에 임할 때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아들을 전장의 최일선에 앞세움으로서 휘하 병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개경의 정부군에는 승려까지 종군하였는데, 12월에 개경은 권력다툼 속에 정중부의 아들 鄭筠이 종군 승려 宗昂 등을 꺾어 이의방을 암살하였다.⁵¹⁾ 이제 개경의 권력은 정중부에게 힘이 쏠리게 되었다. 이즈음에 정군은 명종에게 보고도 안하고 군사 3만여 명을 동원하여 서경을 공격하였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였다.⁵²⁾ 개경 중앙정부군이 조위총을 공격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사로는 최대 숫자였다.⁵³⁾

해가 바뀌어 1175년(명종 5) 1월에 조위총군이 요덕현(함경도 요덕)을 공격하자, 명종은 조위총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 내용은 대략 “악한 신하인 이의방이 죽었으니 그만 시위를 풀고 다시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조위총이 투항하겠다는 표를 올렸으나 바로 철회하였다. 그리고 나서 조위총은 이의

49)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50)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4년 11월.

51)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4년 12월. 한편, 조위총군에도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다(『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52)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53) 한편, 조위총군이 한 번에 동원 가능한 최대 숫자는 1만여 명이라는 기록이 보인다(『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방을 처형한 것에 대해서 왕에게 축하하는 표를 올렸다.⁵⁴⁾ 명종이 회유하는 조서를 내리고 이미 이의방이 죽었다고 했음에도 조위충은 군사를 거두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이의방이 죽었지만 의종을 직접 죽인 이의민 등이 무사한 상태에서 조위충이 군사를 거두는 것은 명분상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측에서 약간의 화해적인 행동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漣州(평남 개천)에서는 치열한 서로 간의 교전이 있었다. 1175년 3월에 개경 정부군이 漣州를 여러 달 포위하니 漣州에서는 조위충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때 조위충군은 정부군의 기습에 걸려 1천 5백여 명이 죽고, 2백 50여 명이 사로잡혔다.⁵⁵⁾ 다음 달인 4월에 葬園에서도 정부군의 기습이 성공하여 조위충군 7백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사로잡혔다.⁵⁶⁾ 이어서 5월에는 용강현(남포시 용강)의 백성들이 조위충의 난에 가담하려 했으나 양원귀의 설득으로 무산되기도 하였다.⁵⁷⁾

한편, 같은 달인 1175년(명종 5) 5월에 늦었지만 개경에서는 의종의 국상이 거행되었다. 전왕의 국상을 선포하여 시호를 莊孝, 묘호를 毅宗이라 하고 禮陵에 장사지냈다. 또한 의종의 초상을 해안사에 봉안하고 원당으로 삼았다.⁵⁸⁾ 조위충이 거병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명분은 의종의 폐위와 시해, 그리고 장례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여론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중앙정부에서 무마책으로 늦었지만 의종의 장례를 국왕의 예로서 시행하였다. 의종의 장례는 조위충의 거병이 거둔 가장 큰 성공이었다.⁵⁹⁾ 역시 같은 달에 의종의 시해에 적극 가담한 박존위가 운주(평북 운산) 사람들

54)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정월.

55)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충;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3월. 漣州 전투에서 『고려사』에는 포로가 2백 50여 명으로 나와 있고, 『고려사절요』에는 2백 20여 명으로 나와 있어서 숫자의 차이가 있다.

56)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충;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4월.

57)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5년 5월.

58)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5년 5월;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5월.

59) 유영욱, 2013, 앞의 글, 198쪽.

에게 살해당했는데 이는 운주 지역 백성들이 조위총의 거사에 호응했기 때문이었다.⁶⁰⁾ 이런 일들은 모두 조위총의 義에서 파생된 결과물이었다.⁶¹⁾

의종의 장례를 행한 후에 어느 정도 민심을 가라앉힐 명분을 쌓았다고 여긴 개경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해 6월에 조위총을 향해 다시 공격을 가하였다. 두경승이 漣州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개경 중앙정부군은 서북의 여러 성에서도 항복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윤인침을 시켜 서경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포위 작전을 병행한 것 같다. 이때 조위총의 군사들은 양식이 떨어져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⁶²⁾ 그즈음 고려 전체가 가뭄으로 고생하던 때라서⁶³⁾ 서경의 식량 사정은 더 곤란했을 것이다.

조위총은 군량미 준비관계로 1174년 가을 9월에 거사를 단행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어 양식이 떨어진 것이다. 그는 원래 거사를 단기간에 끝내려 했다고 생각된다. 해가 바뀌는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신속하게 개경 근처까지 군사를 몰고 왔기 때문에 조위총의 생각을 그려 볼 수 있다. 위기에 몰린 조위총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금나라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가운데 1175년 9월에 조위총은 절령병마사 대장군 강점과 싸워 승리하였다.⁶⁴⁾ 이는 다시 가을이 되어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개경 중앙정부군과 조위총군과의 전투에서 조위총군이 크게 패하여 3천여 명이 죽거나 사로 잡혔는데, 조위총의 입장에서 최대의 손실이었다. 그 장소는 鳳凰頭 일대일 것이다.⁶⁵⁾ 봉황두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경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추정된다.

또 해가 바뀌어 1176년(명종 6) 3월에 조위총은 서북지방 주와 진의 군사를

60)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5월.

61) 유영욱, 2013, 앞의 글, 198~199쪽.

62)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총;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6월.

63)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5년 6월.

64)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5년 9월.

65)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9월.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서북지방 주와 진이 처음에는 조위총에게 호응했지만 나중에 이탈하는 곳이 생겨서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달에 조위총은 龍興(황해도 황주)의 德部에서 개경 정부군과 싸워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⁶⁶⁾ 그에게는 이 전투가 마지막 승리였다.

조위총이 그 기세가 처음에는 높았지만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다. 그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발목을 잡았던 延州城(평북 영변)이었다.⁶⁷⁾ 연주는 유명한 藥山⁶⁸⁾이 있는 곳이다. 약산은 그 모양이 쇠독(鐵瓮)과 같고 하늘이 만든 성이라고 한다.⁶⁹⁾ 바로 鐵瓮城을 말하는 것이다. 약산의 형세는 사방이 높고 험하며 바위들이 깎은 듯이 서 있는 곳이라는 기록도 있다.⁷⁰⁾ 조위총란에 등장하는 연주성은 바로 약산성 또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라고 판단된다.

이곳의 터줏대감인 玄德秀⁷¹⁾는 그의 전기에 의하면, 자기 부친 및 고을의 장수들과 함께 항전의지를 다졌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방어에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조위총군과 대적할 만하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예전에 거란이 침범했을 때도 연주는 당당하게 성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덕수는 어린 시절에 개경에서 생활하다 연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⁷²⁾ 이때에 그가 명종 또는 명종의 측근과 가깝게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명종의 편에 서서 조위총과 맞서게 되

66)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6년 3월.

67) 이정신, 1991, 앞의 책, 52쪽.

68) 약산은 김소월의 시 ‘……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의 그 약산이다.

6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평안도 영변대도호부 형승, “狀如鐵瓮 天作之城”.

7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평안도 영변대도호부 누정 운주루 崔致雲 記.

71) 현덕수는 연주 토박이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평안도 영변대도호부, 인물고려). 그의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종 2년인 1215년에 사망하였다(『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72) 『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이정신, 1991, 앞의 책, 46쪽에서 현덕수가 다른 土豪들에 비해 개경의 지배층과 어느 정도 연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참고된다.

었을 것이다. 조위충군은 네 번에 걸쳐 연주성을 공격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⁷³⁾ 조위충은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개경쪽으로 집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서경의 북쪽에 있는 연주성이 그에게 비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여기에 더해 개경쪽에서 동조하는 자가 없었던 것도 조위충의 실패 이유 중의 하나였다. 1176년(명종 6) 1월에 남쪽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며 공주(충남 공주)를 함락시키면서 기세를 높였다.⁷⁴⁾ 이는 북쪽의 조위충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개경정부 입장에서는 북과 남에서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조위충에게는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개경쪽에서 동조자가 없었던 것은 김보당의 거사 때 의종의 편에 설만한 자들을 개경정부에서 이미 모두 살해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실패이유는 식량난이었다. 조위충은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 나름 군량미를 준비하였으나 일이 장기화 될 줄 몰랐던 것이다. 전투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군량미의 부족은 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처럼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조위충은 힘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는 몰락하기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금나라에 구원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였다. 이윽고 1176년 6월에 윤인침이 서경을 공격해 함락시켰다.⁷⁵⁾ 윤인침이 서경의 통양문을 공격하고, 두경승이 대동문을 공격해 격파하며 조위충군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조위충은 처형되고 그 머리는 명종에게 바쳐진 후에 개경의 큰 거리에 전시되었다.⁷⁶⁾ 조위충은 서경에서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 요동쳤지만 그 끝은 비참하였다. 하지만 그가 죽음으로서 서경과 그 일대가 모두 조용해지진 않았다. 동조자들에 의해 약 3년 간 더 계속해서 군사적 저항이 발생하였다. 1179년(명종 9) 4월까지 조위충의 동조자들에 대한 저항이 나

73) 『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74)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6년 정월.

75)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6년 6월.

76)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충.

타났다.⁷⁷⁾ 그리고 조위충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의민⁷⁸⁾과 최충현⁷⁹⁾이 뒤에 새로운 무신정권 최고 실력자가 되었으니, 그의 난은 실패했지만 고려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위충은 그 전기가 『고려사』의 열전에 수록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그의 전기는 반역전에 있어야 맞다. 특이하게도 그는 주요한 신하 또는 충신에 해당하는 諸臣傳에 그 전기가 있다. 그의 행위를 『고려사』 찬자는 반역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그의 행위를 반란으로 보거나,⁸⁰⁾ 항쟁으로 판단하는⁸¹⁾ 등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의종의 은혜를 입은 조위충은 의종의 폐위와 사망, 그리고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그의 막바지 행위는 다음 장에 기술하지만, 금나라에 고려의 땅을 떼어 바치려고 하면서까지 금의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조위충의 행위는 그 시작은 순수성이 있어서 의거이나 결말은 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²⁾ 만약 조위충이 금나라에 구원 요청을 하지 않고 서경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면 그의 평가는 논란 없이 의로운 인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고려사』 찬자는 조위충의 행위를 금나라에 고려의 땅을 떼어 바치려한 것보다 의종에 대한 신하된 도리로서의 의를 더 높이 사서 그를 반역전에 기록하

77)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2, 9년 4월.

78) 이의민은 무신란에 적극 협조하여 중랑장을 거쳐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김보당이 거병할 때 개경 무신정권에 붙어서 의종을 시해하고 이를 공으로 내세우며 대장군이 되었다. 그리고 조위충이 거병할 때도 공을 세워 상장군이 되었다(『고려사』 권128, 열전41, 반역 2, 이의민). 그는 김보당의 거사와 조위충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뒤에 자신이 집권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79) 최충현은 元帥 奇卓誠이 그가 용감하다는 소문을 듣고 別抄鄒壽으로 선발 임용하여 조위충란을 진압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에 공을 세운 최충현은 계속 승진하여 攝將軍이 되었다고 한다(『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 3, 최충현). 그는 조위충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80) 변태섭, 1978, 앞의 글.

81) 이정신, 1991, 앞의 책.

82) 조위충의 행위가 그 출발은 義였으나 끝은 叛이었다는 조선시대 학자의 견해에 대한 논고(유영욱, 2013, 앞의 글)가 참고된다.

지 않고 제신전에 기록했다고 생각된다.

IV. 조위총의 지원 요청과 이에 대한 金の 대응

조위총란의 가장 큰 특이성은 금나라에 구원요청을 했다는 점이다. 비록 조위총이 개경정부군에 대해 수세에 몰렸다하더라도 절령 이복에 대한 땅을 넘기겠다는 제의를 금나라에 왜 했을까 궁금하다. 그의 행위는 잘못되면 민심의 이반 및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복속시킬 수도 있었을 좋은 기회였는데 왜 거절했는지 그 숨은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앞서 1147년(의종 원년) 11월에 금과 관련한 역모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전에 금나라에서 온 祭奠使가 돌아갈 때 李淑 등이 밀서를 부쳐 말하기를 “귀국 군사가 직접 서경으로 쳐들어온다면 우리들이 내놓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李淑·柳赫·崇晷 등이 처형되었다.⁸³⁾ 이는 묘청의 난 진압으로 서경세력이 몰락됨에 따라 생긴 잔존 서경인의 반발 사건으로 보인다.⁸⁴⁾ 조위총은 이러한 서경에서 벌어진 지난 일을 떠올리며 금나라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한편 금나라에서도 조위총의 난을 지켜보고 있었다. 延州의 현덕수가 조위총에 맞서고 있자 금나라에서 군사를 보내왔다.

[㉔] 이듬해(1175)에 금나라에서 보낸 (장수) 高羅가 군대를 인솔하고 연주 지경에 와서 주둔하니 성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고라가 말하기를, “(우리) 황제가 당신네 나라의 여러 고을들에서 (고려)왕의

83) 『고려사』 권17, 세가17, 의종 1, 원년 11월.

84) 장상주, 2013, 『高麗 明宗代 政治勢力과 政局運營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쪽.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나 홀로 당신네 성(연주)은 (조위총군에) 붙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적들의 압박을 받아 형세가 심히 위태함을 듣고 나에게 군대를 인솔하여 원조하여 주라고 명하였으니 당신네들은 의심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담윤(현덕수의 父)은 은혜와 신의가 있다고 금나라 사람이 들어서 (그가 금나라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실지대로 말하였다. 고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황제의 들은 바가 과연 옳았소.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도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땅히 충성과 의리를 다하여 한마음으로 왕실을 받드시오” 하고서 드디어 돌아갔다.⁸⁵⁾

조위총이 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해인 1175년 어느 달에 금나라에서 고려를 인솔자로 삼아 군대를 연주로 보냈다. 비록 연주가 험한 지세를 이용하여 조위총의 군대와 맞서고 있지만 금나라의 군대까지 공격해 온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주성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다행히 현덕수의 부친인 현담윤이 나서서 금의 군사가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는 금나라가 조위총의 난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금은 고려 중앙정부의 편에 동조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위총 입장에서는 금이 흑시라도 개경정부 또는 현덕수의 연주성에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사면초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금이 개경 중앙정부를 돕지 말고 자신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이다. 아울러 조위총 자신의 처지가 몹시 곤궁하게 되었기에 금의 군사원조를 절실하게 원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조위총 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㉔] (조)위총이 金存心과 趙規를 금나라로 보내어 (이)의방이 (의종을) 내치고 시해한 죄를 알리려고 하였으나 (김)존심이 도중에 (조)규를 죽이고 禮安江으로 와서 정박하였다. 왕이 中使를 보내어 환영하고 위

85) 『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明年 金遣高羅 率兵來屯延州境 城中皆懼 高羅曰 帝聞爾國列藩拒王命 獨爾城不從 久爲賊所逼 勢甚危 命子領兵爲援 爾等勿疑 覃胤素以恩信 聞于金人 至其陣以實告之 高羅下淚曰 帝所聞 果信也 有急吾當助之 爾等宜勵忠義 一心王室 遂去”.

로하여 주고 (김)존심을 內侍閣門祇候로 임명하였으며 그의 군사와 장수 60명은 관직과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 (조)위충이 이를 듣고 (김)존심의 처자를 죽였다. (조)위충은 다시 徐彦 등을 보내 금나라에 표문을 올리기를, “前王(의종)이 본래 양위한 것이 아니라 대장군 정중부와 낭장 이의방이 시해했나이다. 신 위충은 절령 서쪽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40여 성이 (금나라에) 내속 할 것을 원하오니 군대를 보내 (신을) 원조하여 주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금나라 임금은 (서)언 등을 붙잡아 東京路都總管府로 압송하고 寧德城(평북 의주)에 공문을 보내기를, “서경류수 조위충이 세 차례에 걸쳐 96명의 사절을 보내 표문 등을 가져와 아뢰었다. 이제 (그가) 파견한 서언 등의 문건을 헤아리면, ‘…… 금년(1175) 6월에 (조)위충이 북계의 40여 성을 대조(금)에 예속시키려고 義州都領 崔敬若 등을 보내어 婆速路總管府에 공문을 보내었으나 의주 관문에 이르러 鄭百臣 등에게 살해되었으며 또 (정)균 등의 군대가 길을 차단하였다. 이 때문에 大使 김존심, 조규 등 각 30여 명이 海路로 와서 아뢰었으나 (그 후) 소식절차를 알지 못하여 다시 (서)언 등을 파견하여 대조에 복속하겠다는 것과 죄를 묻는 군대를 청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적으로 황제의 명을 받들겠다는 것이나 (조)위충이 애걸하는 것은 대국(금)에서 수용할 바 아니니 (서)언 등을 그의 나라로 넘기는 것을 시행하고 (서)언 등과 (그들의) 갑옷 여러 물건을 관리에게 나누어 보낸다”라고 하였다.⁸⁶⁾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위충은 정부군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승산이 없게 되자 모두 3차례에 걸쳐 금나라에 군사지원 요청을 하였다. 그만큼 절

86) 『고려사』 권100, 열전13, 조위충. “位寵遣金存心趙規如金 奏義方放弑之罪 存心中道殺規 來泊禮安江 王遣中使迎勞 拜存心內侍閣門祇候 其軍將六十人 職賞有差 位寵聞之 殺存心妻子 位寵復遣徐彦等 如金上表曰 前王本非避讓 大將軍鄭仲夫 郎將李義方弑之 臣位寵請以岫嶺以西至鴨綠江四十餘城內屬 請兵助援 金主執送彦等東京路都總管府 牒寧德城云 西京留守趙位寵 三次遣使九十六人 齎告奏表文等事 今勸得所遣人徐彦等狀稱 …… 今年六月 位寵與北界四十餘城 欲屬大朝 遣義州都領崔敬若等 齎牒婆速路總管府公文 至義州關門 爲鄭百臣等所殺 又筠等軍馬遮路 以此遣大使金存心趙規等 各三十餘人 泛海來奏 不知消息節次 再遣彦等 其欲屬大朝及請兵問罪等事 委是端的欽奉帝命 位寵陳乞事 則非大國所容 將彦等付彼國施行 其彦等衣甲諸物 差官交割”.

박했다는 것이다. 첫 구원요청은 1175년 6월인데 앞에서 기술했듯이 서경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시체를 먹는 지경에 있었다는 그때이다. 『金史』에는 대정 15년(1175) 9월조에 조위총의 요청 사실이 적혀 있다.⁸⁷⁾ 이는 세 번째 사절이 왔을 때 모아서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조위총이 금에 보낸 첫 번째 사절은 의주도령 최경약이었다. 그런데 그는 의주의 관문에서 정백신에게 살해되었으며 정중부의 아들 정균 등의 군대가 금나라로 가는 육로를 막아버렸다. 하지만 이때 조위총의 사절에 대한 내용을 금나라가 알고는 있었던 것 같다. 세 차례에 걸쳐 96명의 사람을 보내 공문을 가져왔다고 했으므로 금나라가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다고 여겨진다.

조위총의 두 번째 사절은 첫 사절이 실패하고 다음 달인 7월에 금나라로 향했다.⁸⁸⁾ 육로가 막히니 바닷길을 통해 김존심과 조규 등 각 30여 명을 금나라에 보내 사정을 아뢰게 했는데, 도중에 김존심이 조규를 죽이고 개경으로 도망쳤다. 조위총의 사절은 또 다시 실패했는데 이때까지도 금나라는 관망만 하였다. 절박한 조위총은 다시 같은 해 9월에 세 번째 사절로 서언 등을 보냈다.⁸⁹⁾ 세 번째도 바닷길로 갔을 것이다. 이번에는 무사히 금나라에 사절이 도착하여 금나라 조정에 구원요청이 전달되었다. 하지만 금 세종은 조위총의 사절을 잡아서 개경으로 압송해 버림으로 인하여 이 역시 실패하였다. 이러한 세 차례에 걸친 조위총의 사절 내용을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조위총이 금에 요청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절령 이복의 40여 성을 들어 금

87) 『金史』 권7, 본기7, 세종 中, 15년 9월 辛卯.

88)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7월.

89) 변태섭, 1978, 앞의 글, 61쪽에서는 세 번째 사절이 10월에 갔다고 하였다. 이는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10월의 기록 때문에 그리 기술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金史』 권7, 본기7, 세종 中, 15년 9월 辛卯條에 조위총의 구원 요청과 이를 금 세종이 不納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조위총이 보낸 세 번째 사절이 금나라에 도착한 것은 9월이고, 금나라가 서언 등을 잡아서 고려로 돌려보냈는데 서언 등이 고려 개경에 도착한 시기가 한 달 후인 10월이라고 판단된다. 서언 등이 한 달 만에 고려 개경으로 압송되어 온 것을 보면 금나라 세종이 상당히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개경정부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표 1〉 조위총이 금에 보낸 사절의 형태

횟수	사절을 보낸 시기	사절 숫자 (총 96명)	사행 교통로	결과	전거
1차	1175년 6월	최경약 외 약간 명(인원 숫자는 추정)	육로	최경약은 의주의 관문에서 정백신 등에게 살해됨	『고려사』 권22, 열전13, 조위총;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6월.
2차	1175년 7월	김존심, 조규 등 각 30여 명	바닷길	김존심이 도중에 조규를 죽이고 개경으로 투항	『고려사』 권22, 열전13, 조위총;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7월
3차	1175년 9월	서언 외 30여 명(인원 숫자는 추정)	바닷길	금 세종이 서언을 붙잡아 같은 해 10월에 고려 명종에게 압송	『고려사』 권22, 열전13, 조위총; 『고려사절요』 권12, 명종광효대왕 5년 10월; 『金史』 권7, 본기7, 세종 중, 15년 9월 辛卯

나라에 복속할 터이니 고려의 죄, 즉 의종의 폐위와 시해에 관한 죄를 따지는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이다. 조위총은 그 자신이 직접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힘이 부쳐서 금나라가 대신 해주기를 바란 것이다.⁹⁰⁾

다음은 이에 대한 금나라의 기록이다.

[⑩-①] (대정) 11년(1171, 고려 명종 1) 3월에 …… 皓(고려 명종)가 사실은 나라를 찬탈하여 暲(고려 의종)을 섬에다 가두어 두었다. 靖이 고려에 도착하자 皓가, “王暲(의종)은 이미 임금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나가 있으면서 병이 들어 차도가 없으므로 자리에 나와 숨을 받을 수 없으며, 오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 사신이 갈 곳이 못되오”라고 하였다. 靖은 결국 현을 만나 보지 못한 채 조서를 호에게 주고, 현의 表를 전달받아 가지고 와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표와 대략 같았다. 靖이 돌아온 뒤 上(금 세종)이 대신들에게 하문하니 모두들, “현의 표

90) 조위총은 마음속으로 금의 군사력을 이용한 뒤에 목적을 이루고서 자신의 제의를 없던 것으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같은 생각에 따라 금의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무모한 판단이었다.

가 이리하니 이제 책봉하여 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으나, 丞相 良弼·平章政事 守道 등은, “皓가 간절히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나이다”라고 아뢰었다. 12월에 호가 禮部侍郎 張翼明 등을 보내와 책봉하여 달라고 하였다.

[㉔-②] (대정) 12년(1172, 고려 명종 2) 3월에 결국 (고려 명종을) 책봉하여 주었다.

[㉔-③] (대정) 15년(1175, 고려 명종 5)에 고려의 서경류수 조위총이 皓를 배반하고 徐彦 등 96명을 파견하여 表를 올려 아뢰기를, “前王이 본래 (임금 자리를) 讓位한 것이 아니라 大將軍 鄭仲夫·郎將 李義方 등이 실은 살해하였나이다. 臣 位寵이 慈悲嶺(절령) 서쪽에서 鴨綠江에 이르는 40여 城을 바치고 內屬하겠사오니 군사로 원조하여 주십시오”하니, 上(금 세종)이 이르기를, “王皓에게 이미 책봉을 내렸는데, 위총이 함부로 병사를 불러들여 반란을 일으키고 또 땅도 바치려 하고 있다. 朕은 萬邦을 懷유·위무하고 있으니, 어찌 叛臣의 포획한 것을 도울 수 있겠는가?”하고서, 서언 등을 붙잡아 고려에 보내도록 하였다.⁹¹⁾

금나라에서는 고려의 왕위가 의종에서 명종으로 넘어간 실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양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국이라고 자처하는 금나라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丞相 良弼·平章政事 守道の 건의에 따라 고려가 간절할 때까지 애를 태운 정황이 ㉔-①에 나타난다. 그리고 ㉔-②에 의하면 1172년 3월에 명종의 책봉을 승낙하였던 것이다. 여기

91) 『金史』 권135, 열전 73, 外國 下, 高麗. “① …… (大定) 十一年 三月 …… 皓實篡國 囚覲於海島 靖至高麗 皓稱王覲已避位出居他所 病加無損 不能就位拜命 往復險遠 非使者所宜往 靖竟不得見覲 乃以詔授皓 轉取覲表附奏 其言與前表大概相同 靖還 上問大臣 皆曰 覲表如此 可遂封之 丞相良弼 平章政事守道曰 待皓祈請未晚也 十二月 皓遣其禮部侍郎張翼明等請封 ② (大定) 十二年 三月 遂賜封册 …… ③ (大定) 十五年 高麗西京留守趙位寵叛皓 遣徐彦等九十六人上表曰 前王本非避讓 大將軍鄭沖夫 郎將李義方實弑之 臣位寵請以慈悲嶺以西至鴨綠江四十餘城內屬 請兵助援 上曰 王皓已加封册 位寵輒敢稱兵爲亂 且欲納土 朕懷撫萬邦 豈助叛臣爲虐 詔執徐彦等送高麗”. 이상의 내용과 해석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한국사데이터베이스, 통사, 중국정사조선헌전, 『금사』)에서 인용 의존하였으며, 논지 전개의 편의상 3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에는 고려에서 사신으로 간 유응규의 7일에 걸친 단식투쟁도 금 세종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한몫을 했다.⁹²⁾ 『고려사』에는 1172년(명종 2) 5월에 금나라 사신이 명종의 책봉 책문과 조서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다.⁹³⁾ 이로써 무신정권의 정통성은 일단 금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⁴⁾

금의 명종 책봉은 늦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고려 개경정부 입장에서는 이때라도 책봉을 받은 것이 명종 즉위에 대한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다행이었다. 김보당의 거사와 조위총의 난이 명종의 책봉 이전에 발생했더라면 금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었던 문제가기 때문이다. 위의 ㉔-㉓에 조위총의 반란과 그의 절령(자비령) 이북의 땅을 떼어버리겠다는 제의가 나타나 있다. 조위총의 반란은 1174년이고 땅을 바치겠다는 제의는 1175년인데 여기에서는 1175년의 기록에 그 내용들을 전부 적어 놓고 있다. 아무튼 금 세종은 이미 왕호(고려 명종)에게 책봉을 했다고 되어 있다. 한번 결정을 내렸는데 천자를 자처하는 세종이 이를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위총의 행위를 반란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위총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조위총이 보낸 사절을 잡아서 고려 개경정부에 넘겨 버림으로써 조위총은 고립무원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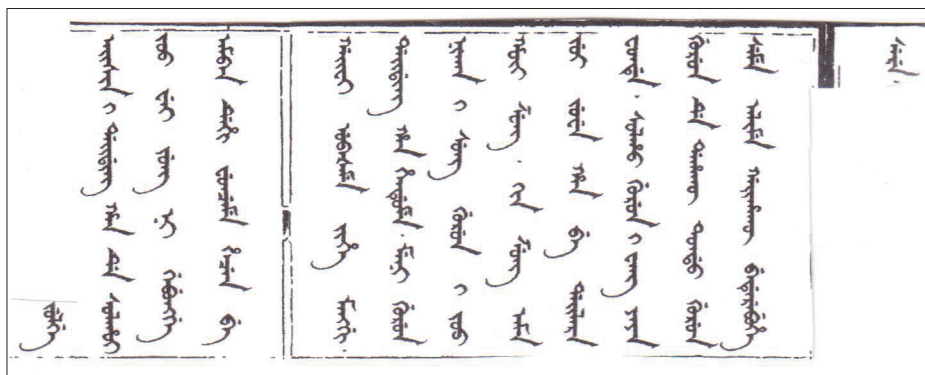
그렇다면 세종은 고려 명종을 이미 책봉했기 때문에 조위총의 보고와 제의를 묵살했는지 궁금하다. 금나라가 고려 내정에 깊숙이 관여 내지는 철저히 복속시킬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선행연구자인 이정신은 “금나라로서는 그들이 西北民과 합세함으로써 고려정부가 이를 빌미로 宋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 같다. 또한 금은 조위총이 비록 절령 이북의 40여 성을 귀속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얻기 위해 승산이 불확실한 고려의 내전에 말려들으로써 오히려 고려가 송과 함께 금을 공격하게 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추정

92) 『고려사』 권99, 열전12, 유응규.

93)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1, 명종 2년 5월.

94) 박한남, 1993,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4쪽.

〈표 2〉 『滿洲實錄』의 조위총 관련 기사



해서 밝힌 바 있다.⁹⁵⁾

이는 당시 동북아 대륙 정세의 주요 축이 金·宋·高麗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견해이다. 과연 당시 금 세종의 결정 속내는 무엇인지 〈표 2〉의 『滿洲實錄』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표 2〉의 만주어 사료는 『滿洲實錄』(中華書局影印本, 1986) 권5에서 만주국의 天命 태조 경기연한(청 태조, 누르하치) 己未 4년(1619), 봄 3월 21일 기사의 강홍립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만주 문자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읽힌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진다. 이를 뫼렌도르프식 로마자 표기로 적고 한글로 해석하여 〈표 3〉으로 나타내 보았다.

95) 이정신, 1991, 앞의 책, 57쪽.

〈표 3〉 『滿洲實錄』의 조위총 관련 기사의 로마자 표기와 해석⁹⁶⁾

julge aisin i daiding han de solhoi joo wei jung ni gebungge
 옛날 금나라의 大定帝(세종)에게 조선(고려)의 趙惟忠(趙位寵)이라는

amban dehi funceme hecen be gaifi ubašame jihe manggi,
 대신이 40 여 성을 가지고 배반하여 오자,

daiding han hendume, meni gurun nikan i sung gurun i
 대정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한인의 송나라의

joo hūi dzung, kin dzung ama jui juwe han be dailara fonde,
 趙(씨) 徽宗 · 欽宗父子 두 황제를 정벌할 때,

solho gurun i wang yaya gurun de dahakū tondo gurun
 조선국(고려)의 왕은 어떤 나라에도 따르지 않았으니 공정한 나라다”

seme alime gaihakū bederebuhe sere.
 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표 3〉의 내용은 청나라 누르하치가 금나라 세종의 조위총에 관한 고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금나라와 북송과의 전쟁은 소위 ‘靖康의 變’이다. 이는 1126~1127년에 있었던 북송의 徽宗·欽宗 두 황제가 금나라로 잡혀가면서 북송의 시대가 마감되고 남송이 시작된 사건인데 이는 잘 알려진 역사이다. 이에 대한 사실의 대강이 『고려사』에는 인종 5년(1127) 9월조에 기록되어 있다.

9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271쪽과 『滿洲實錄』(中華書局 影印本, 1986년) 권5에서 〈표 2〉와 함께 기록된 한문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금 세종의 판단을 알 수 있다. 금과 북송의 전쟁에서 고려가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금이 승리하여 북송의 두 황제를 잡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가 북송 편에 서지도 않았으며 금의 편에 서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금을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금과 북송, 그리고 고려라는 삼각 형세 속에서 고려가 가만히 있어주었기에 금은 안심하고 북송을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금 세종은 약 50년이 지난 1175년에 선대의 일을 떠올리며 고려의 내전에 50년 전의 고려처럼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은 결과적으로 고려 개경정부에 도움을 준 모양새가 되었으며 고려는 금에게 빛을 쬐진 셈이었다. 비록 한참 후대의 기록이지만 『滿洲實錄』의 조위총 관련 기사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조위총의 제의를 금이 거절한 이유가 잘 보인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금 세종은 현덕수의 연주가 굳건하게 조위총에 맞서 있고 고려 개경정부군의 조위총군 토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으므로 조위총이 성공하기 어려우리라는 계산도 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미 고려 명종을 금 세종은 천자의 권위로 책봉을 한 뒤였다. 이런 상태에서 조위총을 군사적으로 도운다면 외교적 명분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금이 조위총을 도와 고려를 침략하려고 했다면 고려로서는 남송과 손을 잡고 금과 맞서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금 세종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 온 조위총의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위총의 행위를 亂으로 규정하였는데,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서경류수 조위총은 1174년(명종 4) 9월에 서경(평양)에서 군사를 일으켜 고려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

먼저 난을 일으키기 전까지 조위총의 행적을 정리해보면, 그는 당대에 한미한 가문출신이며 병졸부터 시작하여 병부상서 겸 서경류수의 지위에 오른 무신이었다. 조위총은 능력이 뛰어나 의종의 총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렇지만 무신의 난이 발발했을 적에 그는 무신이면서 지방인 서경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조위총은 자신이 난을 일으킨 시점에 처와 2명의 자식과 함께 서경에서 살고 있었다.

조위총이 난을 일으킨 배경 및 이유는 의종이 폐위되고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꾀하고자 거사하였지만 실패하고 의종도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즉 개경의 일부 무신세력들이 자행한 의종의 폐위와 시해 그리고 장례절차도 없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조위총의 의종에 대한 충절의 순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조위총이 난을 일으킨 적에 서경과 그 일대 지역민들이 적극 가담한 이유가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중앙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의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종대에 돌변하였다. 의종대와 달리 중앙에서의 이 지역에 대한 압박 등이 반감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조위총의 선동이 잘 먹혀들었다. 또한 조위총은 일대 지역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무신란 이후에 무신적 성향이 있는 이 지역 토착세력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경과 일대 지역민들이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都領들을 중심으로 조위총의 난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조위총은 군량미 확보가 쉬운 음력 9월에 거사하였다. 난 발발 초기에 조위총에게 호응하였던 지역은 靑嶺(자비령, 황해도 서흥) 이북의 서경과 북계·동계 지역이었다. 물론 延州城(평북 영변)처럼 예외적인 곳도 있었다. 조위총의 난은 그 지역적 범위와 소요 시간을 놓고 볼 때 고려시대 최대의 내전이이었다.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켜서 향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는 개경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종을 폐위하고 시해한 죄를 가해자에게 묻고 의종의 장례를 국왕의 예로서 치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명종을 폐위하고 새 국왕을 옹립하려고 했을 것이다.

조위총은 전투에 임할 때 술선수범하였으며 처음에는 개경정부군을 압도하였다. 그러는 도중에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이의방이 암살되었다. 또한 1175년(명종 5) 5월에 늦었지만 개경에서는 의종의 국상이 거행되었다. 의종의 장례는 조위총이 거사한 뒤에 거둔 가장 큰 성공이었다. 하지만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조위총은 점차 그 세가 위축되었다. 조위총의 거사가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발목을 잡았던 延州城의 玄德秀가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천혜의 요새지인 연주성을 조위총군은 네 번에 걸쳐 공격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조위총은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개경쪽으로 집중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서경의 북쪽에 있는 연주성이 조위총에게는 비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개경쪽에서 동조하는 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실패 이유는 식량난이었다. 전투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군량미의 부족은 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는 몰락하기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금 세종에게 절령 이복 40여 성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군사 지원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였다. 금 세종이 거절한 이유를 만주 문자로 기록된 『滿洲實錄』의 관련 내용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알아보았다. 세종은 금과 송, 그리고 고려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중립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는 약 50년 전의 '靖康의 變'이라는 사건 당시 고려가 중립을 지킨 예를 상기하며 금도 고려의 내전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

금 세종은 현덕수의 연주성이 굳건하게 조위총에 맞서 있고 고려 개경정부군의 조위총군 토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으므로 조위총이 성공하기 어려우리라는 계산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미 고려 명종을 금 세종은 천자의 권위로 책봉을 한 뒤였다. 이런 상태에서 조위총을 군사적으로 도운다면 외교적 명분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또한 금이 조위총을 도와 고려를 침략하려고 한다면 고려로서는 남송과 손을 잡고 금과 맞서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금 세종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 온 조위총의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1176년 6월에 윤인침이 서경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조위총은 살해되

었다. 조위충은 서경에서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 요동쳤지만 그 끝은 비참하였다. 하지만 그의 동조자들에 의해 약 3년 간 더 계속해서 군사적 저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조위충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의민과 최충현이 뒤에 새로운 무신정권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조위충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고려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은 크다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金史』, 『滿洲實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 김갑동, 1996, 「고려시대의 都領」, 『한국중세사연구』3, 한국중세사연구회.
 김용선, 2001, 「金甫當과 韓彦國의 亂-고려 귀족사회 속 인맥의 한 단면」,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변태섭, 1971,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尙書省 機構를 중심으로-」,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일조각.
 변태섭, 1978, 「武臣政權期の 反武臣亂의 性格-金甫當의 난과 趙位寵의 난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9, 한국사연구회.
 신안식, 1997, 「고려 명종대 무인정권의 대민정책」, 『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유영욱, 2013, 「고려 趙位寵의 義와 叛에 대한 성리학적 논변」, 『역사와 경계』88, 부산경남사학회.
 황병성, 1985, 「金甫當亂의 一性格」, 『韓國史研究』49, 한국사연구회.
- 박한남, 1993,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건,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이정신, 1991, 『高麗 武臣政權期 農民·賤民抗爭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장상주, 2013, 『高麗 明宗代 政治勢力과 政局運營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통사, 중국정사조선전, 『금사』.

[ABSTRACT]

Cho Wi-chong's Rebellion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of Goryeo
and Jurchen Jin's Countermoves

Kim Myeongjin

As mayor of Seogyeong, Cho Wi-chong(hereinafter referred to as “Cho”), based in Seogyeong(now Pyeongyang), took up arms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of Goryeo in September 1174(the four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He was a military officer who rose from the ranks to the posts of Mayor of Seogyeong and also Byeongbusangseo (the equivalent of the present-day Defense Minister). He gained the favor of King Uijong with his outstanding ability.

The rationale behind Cho's rebellion was based on the failed attempt by Kim Bo-dang to restore the deposed King Uijong to the throne and King Uijong's tragic death as a result thereof. When Cho rose up in revolt against the government, local people in and around Seogyeong vigorously joined him in his fight.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uprising, the regions whose residents positively responded to Cho's cause were Seogyeong, Bukkye and Dongkye, all of which were located north of Jeolyeong(now Seoheung, Hwanghae Province). At first, the government forces from Gaegyeong were overwhelmed by Cho's army.

On the way, Yi Ui-bang,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military regime, was assassinated. Meanwhile, in May 1175(the fif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a state funeral was held for King Uijong in Gaegyeong(now Gaeseong), albeit late. That was quite a success achieved in the wake of Cho's rebellion. Unfortunately for Cho, however, the battle dragged on way too long, which served to gradually undermine much of the strength of the rebels led by Cho Wi-Chong.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that are deem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Cho's rebellion.

The first reason was due to Hyeon Deok-su, based in Yeonju Castle(now Yeongbyun, Pyeongbuk Province), who was, from first to last, a major drag on Cho. Yeonju Castle was such an almost impregnable fortress, created by nature itself, that Cho's forces attacked it four times only to fail. The second reason was that there was a general lack of sympathy from people in Gaegyeong for the cause of Cho's uprising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The third reason was due to food shortages arising from the prolonged battle, which caused more hardship for Cho.

Finally, Cho asked King Sejong of Jurchen Jin for military assistance in exchange for paying tribute to Jurchen Jin with some 40 castles north of Jeolyeong, but that his request was refused. The reason for King Sejong's denial of Cho's request was fathomable through putting together the information on this case contained in "Manchu Veritable Records(Manzhou Shilu)" written in Manchu script, and the circumstances back then. In fact, King Sejong of Jurchen Jin attempted to remain neutral, refusing to take sides with either of Goryeo and Southern Song.

In June 1176, Yoon In-cheom attacked and captured Seogyeong, and Cho was killed in the end. Cho Wi-chong's rebellion greatly affected the central government of Goryeo, although it failed.

Keywords

Cho Wi-chong's rebellion, King Uijong's death, Seogyeong, Jeolyeong,
Jurchen Jin's countermov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元代 兩都內戰(1328)과 동북지역

- 요양행성과 동도제왕 세력의 항배 및 세력 浮沈을 중심으로 -

최운정 | 경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1206년 칭기즈 칸이 대몽골국(Yeke Mongol Ulus)을 건설한 이래, 그의 후계자들은 끊임없는 대외 원정을 통해 대제국을 건설하여 13세기 유라시아 세계를 제패하였다. 칭기즈 칸의 대몽골국 건국 초부터,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유목적 가산분배 전통에 따라 초원의 천호와 목지 등을 諸子와 諸弟에게 분봉해 줌으로써, 소위 西道諸王, 東道諸王의 울루스가 형성되어 칭기즈 칸의 중앙 울루스와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되었다.¹⁾ 그런데, 중원과 강남을 통합한 쿠빌라이와 뒤를 이은 성종 테무르(재위 1294~1306) 사후, 특히 무중 카이산(재위 1307~1310) 사후 대간 계승 분쟁은

※ 투고: 2014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22일, 게재 확정: 2014년 11월 24일
 ※ 이 글에서 몽골어 지명과 인명은 원음을 분명히 轉寫할 수 없는 경우에는 漢字를 그대로 사용했다.

1) 杉山正明, 1978, 「モンゴル帝國の原象-チンギスカン一族分封おめぐって」, 『東洋史研究』 37-1.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것은 제국 질서의 동요와 변용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致和元年(1328) 7월, 태정제(泰定帝) 이순 테무르가 여름 궁전 上都에서 병사하고, 이로써 대원제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칸 位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기에 이른다.²⁾ 그것은 바로 태정제의 후예를 옹립하려는 회회인 다올라트 샤(倒刺沙, Daulat Shah)와 무중 카이산의 후예를 지지하는 엘 테무르(燕鐵木兒, El Temür)의 대립이었다. 대도 진영은 다올라트 샤가 장악하고 있던 상도 진영과의 대결을 위해 단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중 카이산의 신료였던 엘 테무르와 바얀(伯顏)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때문에 대칸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엘 테무르가 일으킨 정변은 무중 카이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무중계 인사들이 재기하게 되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³⁾

상도와 대도에서 각각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칸을 즉위시키고자 폭발한 양도내전은 원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⁴⁾ 평가된다. 그 결과는, 대칸 位(位) 轉移를 비롯해 원대 후기의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⁵⁾ 사실 엘 테무르는 무중계 후예를 카안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으뜸가

2) 이 정쟁을 『元史』에서는 ‘天曆之變’으로 표기했고, 국내의 학계에서는 ‘양도내전’, ‘兩都之戰’, ‘天曆之亂’ 등으로 표기하는데, 보다 중립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상도와 대도로 대표되는 두 정치세력 간의 다툼을 이 글에서는 양도내전 혹은 양도전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문종의 연호 ‘天曆’을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윤은숙, 2010,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247쪽, 각주 131 참조.
3) 蕭功秦, 1995, 「論元代皇位繼承問題—兩種政治傳統重疊的歷史後果」, 『蕭功秦集』, 409쪽.

4) Dardess, John W, 1973, *Conqueror and Confucians; Aspects of Political Change in Late Yüa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7.

5) 兩都內戰에 대한 가장 기본적 연구와 전론으로 張金鈺, 2006, 「元兩都之戰及其社會影響」, 『安徽大學學報』 5; 鈕希強, 2010, 『元朝兩都之戰研究』, 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이 있다. 이 전쟁의 성격에 관해서 윤은숙, 2010, 앞의 책, 243~269쪽; Dardess, 1973, 앞의 책, pp.31~52; Robinson, David M. 2009,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Cambridge, Mass.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pp.36~44 등 참조.

는 공신이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영예를 얻게 되어,⁶⁾ 자신은 다르칸(答刺罕, Darqan)과 太平王에, 증조부 이하 모두 왕으로 피봉되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연구들은 양도내전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카안을 용립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 권신 엘 테무르와 바얀의 대두를 새로운 정치적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원대 중후기의 정치사를 조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⁷⁾ 이런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다올라트 샤와 엘 테무르 가문의 배경과 위상, 이를 기반으로 한 그들의 집권 과정에 대한 세밀한 연구들은, 원대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자 역사적 분기점인 양도내전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이후 양자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와 그것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 테무르의 事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주로 그의 집권 배경과 정치·군사적 위상, 君權과 相權의 변화 추이, ‘본지와 한지파’라는 구도에서 이 정쟁을 설명한다.⁸⁾ 특히, Dardess는 엘 테무르와 바얀의 권력 장악을 설명하기 위해 ‘초원’과 ‘중원’의 정치적 대립 구조를 설정하고, 이들의 집권을 제국의 ‘유교화(confucianization)’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⁹⁾ 뿐만 아니라 文宗 특 테무르(圖帖睦爾)의 즉위, 엘 테무르의 부상과 권력 장악은 카안 권위를 약화시키며 제국의 통합과 융합을 붕괴

6) 『元史』(中華書局 點校本) 卷138, 「燕帖木兒傳」, 3332쪽. “凡號令·刑名·選法·錢糧·造作, 一切中書政務, 悉聽總裁”.

7) 스키야마 마사아키, 임대희 등 역, 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352~353쪽; 張沛之, 2002, 「元代土土哈家族探研」, 『元史論叢』8; 王頌, 2002, 「燕鐵木兒的軍事政變與明文禪替」, 『歐亞學刊』3; 馬娟, 2002, 「元代回回人倒刺沙事迹考論」, 『回族研究』; 馬娟, 2005, 「元代欽察人燕鐵木兒事迹考論」, 『元史論叢』10; 傅光森, 2008, 『元朝中葉中央權力結構與政治生態』, 國立中興大學歷史學系 博士學位論文, 285~346쪽; 권용철, 2010, 『카안 울루스 말기 權臣 엘테무르와 바얀의 집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8) 윤은숙, 2010, 앞의 책, 257~258쪽.

9) Dardess, John W, 1972~1973, “From Mongol Empire to Yüan Dynasty: Changing Forms of Imperial Rule in Mongolia and Central Asia”, *Monumenta Serica* 30.

시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국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되었다.¹⁰⁾ 양도내전에 관한 거의 유일한 전문인 張金銑과 鈕希強의 논문도 내전의 진행 과정과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역시 엘 테무르의 집권 계기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정쟁의 과정이나 영향을 언급하는 데 치중하였다.

더 나아가, 양도내전은 성종 테무르 사후 잇따른 대칸 위 계승 분쟁 속에서 순제 토곤 테무르(安權貼睦爾) 재위 시기에 나타난 카안 권위의 약화 등 원말 정치적 혼란의 전제로서 파악되기도 한다.¹¹⁾ 양도내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대 중기 사회 모순이 심화된 결과이자, 내전 기간에 대도 측이 중원과 동남 지역의 풍부한 물자를 제어하는 동시에 적절한 정치적 대책과 군사적 배치를 할 수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상도 측을 누르고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점은, 이때의 갈등과 정쟁은 비단 통치 집단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국 내 대부분의 行省이 직간접적으로 말려들게 되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분열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양도내전의 경과와 결과에서 행성들의 동향과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연구가 부족한 양도내전 자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당시 중앙 정계에서의 권력 관계와 상도 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쟁에 가담했던 요양행성과 동도제왕계의 정치적 향배와 권력 관계의 추이를 살펴 원대 중·후기 제국의 정치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한다.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대도파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계기에는 요동지역의 정치세력의 입장 변화와 군사적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0) 스키야마 마사아키, 1999, 앞의 책, 352쪽.

11) 藤島建樹, 1970, 「元の順帝とその時代」, 『大谷學報』 49-4.

II. 무종 카이산 사후 政局과 泰定帝의 즉위

至治3년(1323) 8월, 英宗 시데발라(碩德八剌)가 상도에서 대도로 귀환하는 도중 南坡에서 피살되었다(南坡之變). 이로써 그는 제국 역사상 가장 단명한 대칸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이전의 성종 사후 발생한 대칸 위 다툼에서 인종 아우 르바르와다(愛育黎拔力八達)는 자신이 탈취한 권좌를 막북에서 귀환한 형 카이산(海山)에게 “次序居長”의 명목으로 양보하였다. 하지만 그 실질은 카이산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에 굴복한 것이었다. 카이산은 즉위 후 9일째 되던 날, 동생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詔를 내려 아우르바르와다를 황태자로 삼고 金寶를 주었다. 이로써 쌍방은 “兄終弟及, 叔姪相承”하기로 약정하고, 승리의 성과를 함께 향유하기로 하였다. 형제간에 맺어진 이 약정에 대해, 定論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¹²⁾ 관련 사료에서 볼 때 “叔侄相授”의 언약이 실재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¹³⁾

원대 중기 정치사에서 무종과 인종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당시의 문인들도 칭송했듯이,¹⁴⁾ 인종의 시기에 이르러 몽골 통치자가 儒術을 遵用하는 정치가 행해지고, 인종의 재위 기간인 皇慶·延祐 시기는 ‘儒治’의 시대로 평가받는다.¹⁵⁾ 지대3년(1310), 무종의 근신 삼보노(三寶奴)가 무종의 아들 코실라(和世剌)를 황태자로 改封하고자 아우르바르와다의 황태자 신분과 繼位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¹⁶⁾ 무종 서거 후 당초의 약정대로 아우르바르와다는 순조롭게 즉위하였다(仁宗).

지대4년 正月, 무종이 병사하자 이틀 뒤 아우르바르와다는 황태자 신분으

12) Dardess, 1973, 앞의 책, p.18.

13) 『元史』卷138, 「康里脫脫傳」.

14) 『危太朴文集』續集卷1, 「檜亭集序」, “尊尙儒學, 化成風俗, 本朝極盛之時”.

15) 姚大力, 2011, 「元仁宗與中元政治」, 『蒙元制度與政治文化』, 北京大學出版社(原載: 1996, 『內陸亞洲歷史文化研究: 韓儒林先生紀念文集』, 南京大學出版社).

16) 『元史』卷138, 「康里脫脫傳」, “今日兄已授弟, 後日叔當授姪, 能保之乎?”

로 중추기구인 상서성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상서성 재직을 죽이거나 유배 보내며 철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¹⁷⁾ 당초의 약정대로라면, 카이산의 장자인 코실라(和世剌)가 인종의 뒤를 이어 차기 대간 위 계승자가 되어야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¹⁸⁾ 코실라는 연우2년(1315) 말, 一字 왕인 周王에 봉해지고, 이듬해 3월 제국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운남으로의 移居를 명령받게 되었다.¹⁹⁾ 1316년 12월, 인종의 아들 시데발라가 황태자에 봉해짐으로써 세조가 진김(眞金)을 황태자로 세운 이래 비로소 적장자 신분의 皇儲가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코실라가 막북으로 도망간 후 연우4년(1317)에서 5년 무종의 막북 舊臣인 영북행성의 투쿠치(脫忽赤, 혹은 脫火赤)가 군사를 이끌고 카라코룸으로 진공해 코실라 추대를 기치로 내걸고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²⁰⁾ 영북행성에서의 반기는 섬서지역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전쟁의 규모는 후자를 훨씬 넘어섰다.

연우7년(1320) 1월 인종이 서거하고, 동년 3월에 18세의 시데발라가 대명전에서 즉위하였다(英宗). 몽골의 정치적 전통에서 모후의 영향력은 상당하다.²¹⁾ 무종과 인종의 생모인 다기(答己)는懿旨와 聖旨, 命旨 등으로 政事에 직접 간여하였고, 코실라가 아닌 시데발라가 繼位하는 데 적극적 지지를 보냈기에 인종 재위 시기와 영종 초기까지 권신 테무데르(鐵木迭兒)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태후와 테무데르를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영종은 즉위 후, 무칼리(木華

17) 『元史』 卷24, 「仁宗紀」, 531쪽. “[至大四年 春正月 庚辰] 武宗崩 …… 罷尚書省. 以丞相脫虎脫·三寶奴·平章樂實右丞保八·左丞相哥帖木兒·參政王巖, 變亂舊章, 流毒百姓, 命中書右丞相塔思不花·知樞密院事鐵木兒不花等參鞠, 丙戌, 脫虎脫·三寶奴·樂實·保八·王巖伏誅, 忙哥帖木兒杖流海南”.

18) 藤島建樹, 1970, 「元の明宗の生涯」, 『大谷史學』 12, 14~28쪽.

19) 『元史』 卷25, 「仁宗紀」, 572쪽. “敕蕭拜住及陝西·四川省臣各一員, 護送周王之雲南”.

20) 杉山正明, 1987, 「西曆1314年前後大元ウルス西境をめぐるれ小札記」, 『西南アジア研究』 27; 黨寶海, 2007, 「元朝廷祐年間北方邊將脫忽赤叛亂考—讀〈大元贈嶺北行省右丞忠愍公墓碑〉」, 『西域研究』.

21) 周良霄, 1986, 「蒙古選汗儀制與元朝皇位繼承問題」, 『元史論叢』 3, 45~46쪽.

黎)의 후예이자 승상 安童의 손자인 바이주(拜住)를 좌승상에 임명하였다.

지치2년(1322) 8, 9월에 테무데르와 다기가 잇달아 죽었다. 영종은 태후집단의 핵심 인물들을 타격하고자 ‘新政’을 빌미로 ‘劉夔獻田貪污’ 사건을 다시 국문하여,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劉夔와 囊加台 등은 주살하였다. 이미 죽은 테무데르는 조부의 碑를 뽑고, 관직을 추탈하고, 테무데르의 아들 宣政院使 八里吉思는 사안과 직접 연관이 없었지만 주살되었다. 테무데르의 또 다른 아들 鎖南은 黜職되고, 테시는 비록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살아남는데, 이는 영종의 황후가 그의 여동생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²⁾

요컨대, 정치적 부담과 압력을 덜어낸 영종은 급속도로 소위 ‘至治新政’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로써 인종 이후 또 한차례 ‘儒治’의 부활을 꿈꾸는 낙관적 국면이 기대되었다. 신정의 핵심은 科擧와 引薦漢人으로 대표되는 ‘行漢法’이었고, 한인 사대부들은 바이주를 적극 찬미하였다.²³⁾ 반면, 영종의 정치 노선은 軍功 세습과 歲賜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제국을 황금씨족과 그 일가의 가산으로 여기던 몽골유목귀족 집단에게는 대단히 불만족스런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冗官冗署’ 혁파 조치는²⁴⁾ 색목인 특권 집단에도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가령 “毀上都回回寺” 조치 등으로 대표되는 회회인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종교적 탄압으로 영종대는 회회인의 고난의 시기로 인식된다.²⁵⁾ 인종·영종시기 종왕에 대한 대우도 대단히 각박해서,²⁶⁾ 즉위할 때 대규모 賞賜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제왕 및 그 所部에 대한 賞賚歲給 역시 國用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대칸과 초원귀족 세력 간의 유대와 일체감을 와해

22) 屠壽는 許有任의 『至正集』 권76, 「惡黨論罪疎」를 근거로, 테시의 여동생이 영종의 황후였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보았다. 『蒙兀兒史紀』 卷122, 「鐵失傳」. “如特實者, 身為臺端, 兼領數職; 妹為君配, 已正位次. 先帝[英宗: 引者]待之, 情過骨肉”.

23) 『元文類』 卷12, 「丞相拜住贈諡制」. “選賢與能, 奸黨滋懼”.

24) 『元史』 卷175, 「張珪傳」, 4079쪽. “近侍各私其署, 賁緣保祿”, “冗俸濫, 白丁驟陞出身, 入流壅塞日甚, 軍民俱蒙其害”.

25) 楊志玖, 1994, 「回回人與元代政治(3~4)」, 『回族研究』.

26) 李治安, 2007, 『元代分封制度研究』, 中華書局, 292쪽.

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결국, 영종이 무리한 정치 개혁에 착수하면서 우승상 테무데르의 ‘奸黨’을 제거하려고 하자 두려움을 느낀 테시(鐵矢) 일당은 영종이 상도에서 대도로 南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남파에서 살해하는 ‘南坡之變’²⁷⁾을 일으키게 되었다. 대칸과 우승상의 시해라는 뜻밖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조정 내에서 한법을 주장하는 세력과 몽골-회회법을 견지하는 양대 정치세력 간의 대립·충돌 각도에서 보는 견해,²⁸⁾ 영종의 개인적 성격 결함과 관련지어 보는 견해²⁹⁾ 등이 있다. 시해에 참여한 인물들로는 테무데르의 아들 鎭南, 테시의 동생인 선취사 鎭南, 전 평장정사 치긴 테무르(赤斤鐵木兒), 前 운남행성 평장정사 올제이(完者), 추밀원사 예센 테무르(也先帖木兒), 첨서추밀원사 章台와 樞密院副使 하싼(阿散)으로 회회인이 많이 가담하였다. 때문에 영종 시해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영종시기 회회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꼽기도 하지만,³⁰⁾ 당대 문인 소천작(蘇天爵)은 급속한 新政 추진이 영종과 바이주 피살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³¹⁾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쥘루 이순 테무르(也孫鐵木兒)와 다올라트 샤(倒刺沙)가 되었다. 영종 사후, 막북에 진수하던 이순 테무르는 몽골의 舊制와 舊俗에 따라 즉위하였고, 이듬해 ‘泰定’으로 개원하였다. ‘남파지변’에서 이순 테무르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악되기도 한다.³²⁾ 그렇다면 이

27) ‘南坡之變’에 대해서는 蕭功秦, 1983, 「英宗新政與“南坡之變”」, 『元史論叢』 2; 楊訥, 1997, 「泰定帝與南坡之變」, 『慶祝鄧廣銘教授九十華誕論文集』, 河北教育出版社; 王頌, 2001, 「仁·英承嗣與鐵木迭兒的弄權」, 『元史及民族史研究輯刊』 14; 王頌, 2002, 「燕鐵木兒的軍事政變與明文禪替」, 『歐亞學刊』 3; 王頌, 2002, 「元英宗朝政治與南坡之變」, 『陝南史學』; 劉曉, 2010, 「“南坡之變”芻議—從“武仁授受”談起」, 『元史論叢』 12 등 참조.

28) 蕭功秦, 1983, 앞의 논문.

29) 姚大力, 2011, 앞의 논문, 384쪽.

30) 楊志玖, 1994, 「回回人與元代政治(4)」, 『回族研究』, 41쪽.

31) 『滋溪文稿』 卷18, 「題丞相東平忠獻王傳」, “至治二年冬, 天子勵精圖治, 獨任丞相, 期復中統至元之盛. …… 當是時, 朝廷肅清, 刑賞攸當, 忠直獲伸, 奸邪歛避, 天下之人, 莫不延延企踵, 想望太平, 而小人[怨恨]思害之矣”.

32) 楊訥, 1997, 앞의 논문, 97~102쪽.

때 태정제가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일까?

이순 테무르의 딸인 카말라(甘麻刺)는 세조 쿠빌라이의 태자 진킴(眞金)의 적장자로서 최우선 계승 자격을 가졌다. 그럼에도, 카말라는 테무르(진킴의 三子, 二子 다르마바라는 이미 去歲)와의 대칸 위 경쟁에서 패했고, 자신의 일가가 다시는 제위를 넘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³³⁾ 『집사』에 따르면, 쿠빌라이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³⁴⁾ 정후 차비(察必) 소생으로 도르지, 진킴, 망가라, 노무칸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몽골인에게는 말자 상속관행이 있고,³⁵⁾ 嫡后 소생이 대칸 위 계승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첫째 도르지는 요절하고, 망가라는 지원15년(1278)에 죽고, 진킴은 지원22년(1285)에 죽었다. 결국 차비 소생의 적자는 노무칸만 남게 되었지만 노무칸은 막북에서 서북 중앙에게 포로로 잡혔던 다소 수치스런 전력이 있었고, 당초 황태자로 지목되었던 진킴이 죽은 뒤에도 쿠빌라이는 후계자 지정을 줄곧 미루었다. 죽은 진킴에게는 카말라, 다르마바라, 테무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노무칸이 줄곧 대칸 위를 엿보는 했지만, 결국 진킴의 아내 쿠케진(闊闕眞)의 일련의 노력으로 지원30년(1293) 테무르는 쿠빌라이에게 황태자 寶를 수여받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최종 계승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테무르의 寶座를 노린 또 다른 유력한 경쟁자는 普王으로 봉해져 몽골 본토에 진수하던 큰형 카말라(甘末刺)였다. 경쟁은 대단히 팽팽했고,³⁶⁾ 『집사』에는 쿠케진 카툰이 칭기즈 칸의 寶訓을 잘 암송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고 제언하였고, 이에 말을 더듬거리는 카말라가 결과적으로 패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실질적 이유는 카

33) 『元史』 卷29, 「泰定帝紀」, 638쪽. “我累朝皇帝根底, 不謀異心, 不圖位次, 依本分與國家出氣力行來”.

34) 라시드 왓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3, 『집사-칸의 후예들』, 사계절, 360~366쪽.

35) 孫賢淑, 1981, 「蒙古의 相續慣行에 대하여-특히 蒙古 帝國期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6.

36) 『元史』 卷199, 「玉昔帖木兒」, 2948쪽. “定策之際, 玉昔帖木兒起謂晉王甘麻刺曰: ‘宮車晏駕, 已踰三月, 神器不可久虛, 宗祧不可乏主. 曷昔儲闕符璽既有所歸, 王為宗盟之長, 奚俟而不言’. 甘麻刺遽曰: ‘皇帝踐祚, 願北面事之’”.

37) 『집사-칸의 후예들』, 470쪽.

말라 母后의 출신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듯하다.³⁸⁾ 그런 까닭에 성종 테무르가 후사 없이 서거한 뒤 발생한 제위 다툼에서 합법적 계승자는 다르마바라의 두 아들인 카이산과 아우르바르와다였고, 카말라계는 일찌감치 배제되었다. 이순 테무르는 바로 진김의 장자이고,³⁹⁾ 카말라가 칸위 계승 자격이 없다면 이순 테무르도 당연히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⁴⁰⁾

태정제의 즉위는 正王府 內史(正2品, 왕부 사무를 관장)인 회회인 다올라트 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2품인 내사에 임명된 점에서 다올라트 샤가 진왕의 총애를 얻고 긴밀한 정치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출신과 여타 조건에서 다소 열세였던 이순 테무르에게 다올라트 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었다.⁴¹⁾ 태정제 즉위 전까지 『元史』에서 다올라트 샤의 활동상은 찾아보기 어렵다.⁴²⁾ 비록 『元史』에서는 다올라트 샤가 직접적으로 영종 시해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그가 테시와의 연계를 통해 영종 시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시 다올라트 샤의 아들 하싼(哈散)이 바이주를 시봉하며 궁정 숙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에 하싼이 막북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사대부 테시와 바이주의

38) 『元史』, 「顯宗傳」에서는 카말라의 어머니를 쿵그라트 출신의 쿠케진(徽仁裕聖皇后)이라고 한 반면, 「后妃傳」에서는 徽仁裕聖皇后의 소생에 카말라는 들어 있지 않다. 앞에서 인용한 『집사』의 같은 부분에서 카말라가 테무르보다 ‘한 살이 더’ 많다고 했다. 장자와 三子가 한 살 차이, 둘째 다르마바라의 생일을 계산하면 결국 카말라는 쿠케진의 소생이 아니게 된다. 周良霄는 『元史』, 「顯宗傳」에서 쿠케진을 카말라의 생모라고 한 것은 태정제가 자신의 출신을 높이기 위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周良霄, 1983, 앞의 논문, 43쪽.

39) 논란이 되는 카말라와 송산(松山)의 서열에 대해서, 태정제는 카말라의 적자이나 장자가 아니고, 송산은 카말라의 장자이나 적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張金銑, 2005, 「元泰定帝生年及其他」, 『元史論叢』 第10輯, 73쪽.

40) 『元史』에 이순 테무르 사후 尊諡·묘호가 없고 ‘태정제’로만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周良霄, 1986, 앞의 논문, 44쪽.

41) 『元史』 卷29, 「泰定帝紀」, 646쪽. “朕即位以來, 無一人能執成法為朕言者, 知而不言則不忠. 且陷人於罪. 繼自今, 凡有所知, 宜悉以聞, 使朕明知法度, 斷不敢自縱. 非獨朕身, 天下一切政務, 能守法以行, 則衆皆安, 反是, 則天下罹於憂苦”.

42) 馬娟, 2002, 「元代回回人倒刺沙史事鉤沉」, 『回族研究』, 52쪽.

관계가 악화되자, 테시는 바이주를 제거하려는 모의를 다올라트 샤에게 알려주게 된다.⁴³⁾ 이순 테무르의 寵臣으로서 다올라트 샤의 정치적 항배는 자명하다.

‘남파지변’ 이후 ‘世守藩服’하던 이순 테무르는 일거에 가장 주목받는 대칸 위 계승자가 되었다. 테시는 정변을 일으키기 이틀 전 이미 밀사 斡羅思를 보내 교섭하였다. 胥王 王傅 옥매걸(旭邁杰)과 바이주는 모두 무칼리의 자손이었기에,⁴⁴⁾ 이번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테시는 특별히 斡羅思에게 명하여 정변 계획을 진왕과 다올라트 샤에게 알리고 은밀히 당부하였다.⁴⁵⁾

그렇다면 테시 일당이 다른 제왕이 아닌 진왕 이순 테무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왕이 막북에 주둔한 몽골제왕 중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몽골세력의 대표라는 점, 선취원 내시 집단(대표적으로 探忒)과 테시의 밀접한 관계, 다올라트 샤와 探忒의 긴밀성 등이⁴⁶⁾ 지적된다. 곧 두 정치 집단 간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영종 시해와 진왕 추대 과정에서 다올라트 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고, 1323년 9월 4일, 진왕은 龍居河(지금의 케를렌강)의 행궁에서 즉위하였다(泰定帝). 태정제 즉위 후, 다올라트 샤는 일약 종1품의 평장정사에 임명되고, 얼마 뒤 정1품의 중서좌승상에 천거되었다. 우승상이 좌승상보다 높았지만 다올라트 샤는 몽골인이 아니었기에 旭邁傑, 타스 테무르(塔失帖木兒)가 우승상이 되었다.

태정제 시기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으로, 다올라트 샤로 대표되는 대칸의 親臣 배양과 제왕중적에 대한 우대 정책이 지적된다.⁴⁷⁾ 이순 테무르로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즉위를 도운 친신에게 관대했고, 그 결과

43) 『元史』卷184, 「任速哥傳」, 4236쪽. “至治三年三月, 宣徽使探忒來王邸, 為倒刺沙言: ‘主上將不容於晉王, 汝盍思之.’ 於是倒刺沙與探忒深相要結. 八月二日, 晉王獵於禿刺之地, 鐵失密遣斡羅思來告曰: ‘我與哈散·也先鐵木兒·失禿兒謀已定, 事成, 推立王為皇帝’. 및 “未幾, 鐵失與倒刺沙構謀, 英宗遇弑, 遂引去”.

44) 劉曉, 2008, 「元代怯薛輪直新論」, 『中國社會科學』4期.

45) 『元史』卷29, 「泰定帝紀1」, 638쪽. “汝與馬速忽知之, 勿令旭邁傑得聞也”.

46) 蕭功秦, 1983, 앞의 논문, 154쪽.

47) 王頌, 2002, 『龍庭崇汗——元代政治史研究』, 南方出版社, 288쪽.

그들의 전횡을 제대로 제어하기 힘들었다.⁴⁸⁾ 주지하듯이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동반자로 ‘색목인’으로 통칭되는 다양한 민족들을 등용하였고 회회인들이 그 핵심에 있었다. 軍政 등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인구의 대부분을 점하는 피지배민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원칙상 중앙과 지방의 관부에서 최고 장관으로 주로 몽골·색목인이 활약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영종대에 회회인들은 정치 무대에서 한차례 흑독한 시련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태정제 즉위 이후 정치·군사·감찰 각 방면에서 회회인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가히 회회세력의 ‘부흥’이라 할 만한 정도로 행정·감찰·군사 기구는 많은 회회인의 손에 장악되었다.⁴⁹⁾ 태정제 시기 중서성에서 재집을 역임한 회회인 다울라트 샤, 우베이둘라(烏伯都刺), 바얀차르(伯顏察兒) 등이 대표적이다. 그 때문에 태정제 사후 새로운 대간 추대를 둘러싸고 전개된 ‘양도내전’은 다울라트 샤로 대표되는 회회인과 엘 테무르로 대표되는 킵차크인의 환관 대결로 이해되기도 한다.⁵⁰⁾

Ⅲ. 泰定帝 사후 각 행성의 향배와 내전의 전개 양상

致和元年(1328) 正月, 태정제 이순 테무르는 대도 동남쪽에 위치한 通州 柳林에서 수렵 도중 병에 걸린 이후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그해에 대부분의 중서성 관원을 이끌고 상도로의 순행길에 올랐다가 7월 그곳에서 병사함으로써

48) 『滋溪文稿』 卷16, 「高邑李氏先德碑」. “泰定間, 丞相都爾蘇[倒刺沙: 引者]當國, 其黨與有坐食墨者. 時車駕在上京, 公[李思明]以都事往奏其事, 丞相怒, 欲沮之萬方”.

49) 野口周一, 1998, 「元代泰定帝朝における宰相層について」, 『新島學園女子短期大學紀要』 15.

50) 楊志玖, 1985, 「元代回回人的政治地位」, 『元史三論』, 人民出版社, 263~264쪽.

써 대간 위를 둘러싼 空前의 갈등이 폭발하기에 이른다. 內戰은 任速哥라는 인물이 엘 테무르에게 ‘獻策’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⁵¹⁾ 당시 여러 정황과 맞물려 엘 테무르의 정치적 야심을 자극하였다. 엘 테무르는 킵차크 名將 토토키(土土哈)의 후예로, 어린 시절 숙위로 입시해 카이산을 따라 막북에 진수하여 상당한 총애를 받았다. 카이산 즉위 후 同知宣徽院事를 제수받고, 인종 皇慶元年(1312) 부친 상구르(床兀兒)의 뒤를 이어 左衛親軍都指揮使를 繼任하고, 태정3년(1326) 同僉樞密院事로 승진하였다.

무종 카이산계가 失勢한 후, 엘 테무르는 대칸위 복귀라는 정통을 내걸고 무종계를 지지하였다.⁵²⁾ 양도내전은 표면적으로는 몽골인과 색목인 지배 집단 내부의 다툼이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이 중앙 정부와 각 행성의 정치·경제·군사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제국 전역이 내홍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각 행성의 항배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³⁾

엘 테무르를 핵심으로 하는 대도 측을 지지하는 입장은 하남행성을 필두로 강서행성, 호광행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하남행성의 평장정사 메르키트 부족 출신의 바얀(伯顏)은 15세 때 무종 카이산의 侍臣이 되어 무종 즉위 후 상서성 평장정사를 지내고, 무종 서거 후 인종이 尙書省을 혁파하고 무종의 舊臣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요행히 엄벌을 피했지만,⁵⁴⁾ 이후 중추기구에서 배제되어 閑居 상태에 있었다. 延祐3년(1316) 인종이 코실라를 周王에 봉할 때 바얀은 常侍府 常侍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바얀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듬해 南臺御史

51) 『元史』 卷184, 「任速哥傳」, 4236쪽. “天下之事, 惟順逆兩塗, 以順討逆, 何患不克. 況公國家世臣, 與國同休戚, 今國難不恤, 他日有先我而謀者, 禍必及矣”.

52) 『道園學古錄』 卷24, 「曹南王勳德碑」, “以其世守之舊兵, 奉中興之大業, 以致真王之封食”.

53) 白壽彝 主編, 1997, 『中國通史』 제13책, 494~496쪽.

54) 『金華黃集』 卷24, 「宣徽使太保定國忠亮公神道第二碑」, “先是, 武宗皇帝命以故宋太后湯沐地悉歸于大崇恩福元寺, 平章政事伯顏持不可, 上震怒, 猶抗論不已. 暨仁宗皇帝以鈔法詰責前宰相執政, 公[賈奴]言: ‘伯顏在先朝能犯顏進諫[直諫], 可謂盡忠, 不宜例加罪譴.’ 上乃釋之”.

中丞에 出任하고, 연우5년 어사대부, 연우6년 강절행성 평장정사에 제수되었다.⁵⁵⁾ 이처럼 바안은 인종 시기엔 중앙 조정에서 밀려나 외임을 맡았다.

바안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도 측은 하남과 동남지역의 군사와 물자를 징집하여 상도 측에 맞섰다.⁵⁶⁾ 그렇지만 하남행성의 모든 관료들이 무종계의 옹립을 주장하는 바안에게 찬성한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는 잔혹한 무력이 수반되었다.⁵⁷⁾ 바안은 특 테무르가 江陵에서 대도로 가기 위해 하남을 지날 때, 친히 호종을 자청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⁵⁸⁾ 호광행성 평장정사인 高昌王 테무르 부카와 무창에 진수한 威順王 寬徹不化도 특 테무르와의 밀접한 관계로 즉각적으로 대도 측에 호응하였다.⁵⁹⁾ 강서행성도 평장정사가 엘 테무르 편에 기울어져 있었기에 대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한편, 강절·감숙·사천·운남행성은 다소 관망하는 입장이었다.⁶⁰⁾ 강절행성은 공개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대도의 요구에 따르는 편이었고, 대도 측도 새로운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강절행성의 소극성을 묵과하였다. 다만 감숙행성은 省臣들이 대도와 상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사천과 운남의 경우 무종계를 지지하는 점은 명백하지만, 엄밀히 말해 무종의 次子 특 테무르가 아니라 장자 코실라였다. 실제로 특 테무르가 즉위하자 운남과 사천에서는 잇달아 이에 반대하는 군대가 일어났다가 진압되었다.⁶¹⁾

55) 『元史』卷138, 「伯顏傳」 및 『石田集』卷14, 「敕賜太師秦王佐命元勳之碑」.

56) 『元文類』卷258, 「曹南王世德碑」.

57) 『危太朴集』卷續7, 「月魯帖木兒行狀」. “致和元年, 河南行省平章伯顏矯制起公[月魯帖木兒]爲本省參知政事, 共議起兵. 月魯帖木兒固辭曰: 皇子北還, 問參政受命何人? 則將何辭以對. 伯顏怒, 曾明里董阿迓皇子過河南, 因說收公與弟某·經歷古爾倉下獄”.

58) 『元史』卷35, 「文宗紀4」, 781쪽. “燕鐵木兒首倡大義, 躬擐甲冑, 伯顏在河南先誅攜貳, 使朕道路無虞, 兩人功無與比, 其賞不可與衆同”.

59) 『元史』卷32, 「文宗紀1」, 707쪽.

60) 『滋溪文稿』卷23, 「元故資政大夫中書左丞知經筵事王公行狀」. “四川行省平章政事囊加歹[繕兵自守”.

61) 『宋文憲公集』卷27, 「故翰林侍講學士中順大夫知制誥同修國史危公新墓碑銘」. “四川行省平章政事囊加歹, 天曆初舉兵, 慾翊戴明宗. 燕鐵木兒·伯顏等構殺之”.

세 번째 유형은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섬서행성⁶²⁾과 요양행성의 경우로 상도 측을 적극 지지한 경우이다. 요양행성은 정치·군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할 뿐만 아니라 쿠빌라이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諸王 세력과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⁶³⁾ 특히 兩都와의 관계에서도 요동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서부 교통로가 대도와 상도로 직결되어 있었다.⁶⁴⁾ 때문에 양도를 방어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고,⁶⁵⁾ 동북지역에 대한 통제가 수비가 약해지면 양도 지역의 안전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내전에서 요양행성의 군대는 대도 측에 대한 포위 공격에서 주력으로 활동했고, 섬서행성 주둔군도 거의 대부분 상도군과 동시에 행동을 취하였다. 요양행성이 상도 측을 지지한 것은 이 지역이 동도제왕계의 영향이 강하다는 측면과 요양행성에서의 회회 세력의 영향력을 상정할 수 있다. 요양행성 역임 宰執 중 주목되는 인물로 회회인 하싼(合散, 阿散, 哈散)이 있다. 하싼은 지원29년(1292)에 ‘遼陽行省省臣’으로 史籍에 출현하는데, 성종 元貞元年(1295) 요양행성 左丞相, 대덕9년(1305) 하남행성 평장, 이듬해(1306) 중서성 평장정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무종 즉위년(1307) 요양행성 평장정사에 임명되고, 지대2년(1309) 좌승상으로 승격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양행성 평장정사로 남았다. 인종 즉위 후에 그는 다시 중서성 평장정사로 옮겨오고, 황경원년(1312) 중서성 좌승상으로 승격되고, 연우원년(1314)에 다시 우승상에 올랐다. 우승상은 중서성에서 품계가 가장 높은 관직으로 대부분 몽골인이 임명되는 자리인데, 회회인 하싼은 두 번이나 우승상을 역임하였다. 그는 이처럼 장기간 중앙과 요양행성의 재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하싼은 1295년 설립된 肇州

62) 『至正集』 卷42, 「陝西行中書省題名記」. “据要重以控西北南三陞”; 『元史』 卷183, 「王思誠傳」, 4214쪽. “陝西重地, 天下之重輕系焉”.

63) 최윤정, 2010, 「元代 동북지배와 遼陽行省一行省 建置 과정과 治所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0집.

64) 黨寶海, 2006,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283~291쪽.

65) 危太樸文續集』 卷1, 「送札刺爾國王詩序」.

屯田萬戶府를 관할하였는데,⁶⁶⁾ 肇州屯田萬戶府는 양도내전에서 상도 측을 지지했다가 문종에게 징벌 조치를 당하였다.⁶⁷⁾

전반적으로 군사 역량에서는 상도 측이 우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⁶⁸⁾ 특히 초기의 형세는 상도 측이 더욱 막강했기에, 하남행성의 재집은 대도 측을 지지하는 바얀의 의견을 따르기를 거부하였다.⁶⁹⁾ 대간으로 추대될 자격을 가진 무종의 후예(코실라, 톡 테무르)는 대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벽거하고 있었고, 엘 테무르의 개인적 位望 또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엘 테무르는 書樞密院事로서⁷⁰⁾ 추밀원 내에서 네 번째 지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대도 측의 초기 전략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⁷¹⁾ 엘 테무르는 다올라트 샤를 비롯한 핵심 재집들이 대간을 수행해 상도에 체재하는 틈을 타서 8월 4일, 안서왕 아라트나시리(阿刺忒納失里) 등과 17명의 군사를 이끌고 궁정으로 들어가, 평장정사 우베이둘라(烏伯都刺), 중서좌승 타타(禿禿), 참지정사 王士熙 등을 옥에 가두고, 무종의 둘째 아들로 당시 江陵에 머물고 있던 톡 테무르를 맞이하였다. 톡 테무르가 강릉에서 대도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민심은 안정되었다.⁷²⁾ 톡 테무르는 23일 대명전에서 대간에 즉위하였고, 반

66) 『元史』 卷18, 「成宗紀」, 395쪽. “[元貞元年 秋七月] 立肇州屯田萬戶府, 以遼陽行省左丞阿散領其事”.

67) 『元史』 卷33, 「文宗既2」, 728쪽. “[천력2년 正月] 以遼陽省蒙古·高麗·肇州三萬戶將校從逆, 舉兵犯京畿, 拘其符印制敕”.

68) 史衛民, 1998, 『元代軍事制度史』, 軍事科學出版社, 390쪽.

69) 『元史』 卷138, 「伯顏傳」, 3336쪽. “參政脫別台曰: ‘今蒙古軍馬與宿衛之士皆在上都, 而令探馬赤軍守諸隘, 吾恐此事之不可成也. 我等圖保性命, 他何計哉?’ 伯顏不從其言”.

70) 『元史』 卷138, 「燕帖木兒傳」, 3326쪽. “拜正奉大夫, 同知宣徽院事. 皇慶元年, 襲左衛親軍都指揮使. 泰定二年, 加太僕卿. 三年, 遷同僉書樞密院事. 致和元年, 進僉書樞密院事”.

71) 『石門集』 卷14, 「燕帖木兒元勳碑」. “京師比至浹旬之間, 兩以左右矯稱使者; 南來者云駕已次近郊, 諸王及河南省臣·萬戶各以兵從, 民勿譁驚. 北來者云皇帝大兄且”.

72) 『宋文憲集』 卷41, 「回回神道碑」. “晉王崩, 明宗在北藩, 未至, 中外危疑. 羣臣會議不決, 公[회회]曰: 處變異於處常, 神器久虛, 非國家之福也, 皇弟宜居攝以防他變, 衆論乃定”.

대파는 모두 처형되었다.

한편, 상도 측의 핵심 인물인 다올라트 사는 상도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다가 대도의 정변 소식을 접한 후 제왕 滿禿, 宗正札魯忽赤 쿠쿠추(闊闊出) 등 18인을 죽이고, 이순 테무르의 아들인 황태자 아라기바(阿刺吉八)를 즉위시켜 天順으로 개원하였다. 앞서 살핀 대로, 엄밀히 말해 正妃 쿠케진 소생이 아닌 카말라게라는 점에서 정통성은 대도 측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天順帝는 황태자라는 명목상 합법적 계승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기에 대도 측을 “叛逆”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군대를 남하시켜 대도를 압박함으로써 본격적인 격돌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태정제의 적장자로서 황태자라는 계승 자격과 명분을 갖추고, 요동과 섬서 일대의 막강한 군대의 지지를 받던 상도 측은 결과적으로 패배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 대도 측이 중원과 동남일대의 풍부한 물자를 장악하고 있었던 점, 곧 ‘경제적’ 우위성이 지적된다.⁷³⁾ 여기에 엘 테무르 개인의 지략과 군사적 재능이 더해져 당초 열세였던 대도 측이 풍부한 물자와 재력을 바탕으로 주요 행성의 지지를 받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도는 초원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 기초가 박약했기에 장기간의 對戰에 불리했다는 것이다. 물론 무종계의 승리에 엘 테무르의 군사적 재능은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⁷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경제적 우위성도 내전의 개시에서 종결까지 불과 4개월 남짓한 시간이었고, 더욱이 징발된 군사들이 모두 최전방에 도달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요소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실제 어느 몇 가지 요소만으로 쌍방의 우열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당시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도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⁷⁵⁾ 당초 상도 측의 계획은 기

73) Dardess, 1973, 앞의 책, p.40.

74) 『道園學古錄』卷22, 「燕帖木兒右丞相封太平王制」, “英銳無敵, 及清宮而迎乘, 猶多壘之在郊, 臨陳誓師咸服, 奉辭之慷慨揮戈, 決戰衆驚用武之神明, 人民懷綏輯之恩, 城闕壯奠安之勢”.

75) 『滋溪文稿』卷16, 「武畧將軍河南淮北蒙古都萬戶府千戶武君墓碣銘後」, “天曆

세를 몰아 일거에 대도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상도 측은 케식과 衛軍, 東道諸王인 遼王 톡토아(脫脫)·梁王 옹센(王禪)·陽翟王 太平, 무갈리 후예인 國王 타르타이(朵羅台)와 볼로르 테무르(孛羅帖木兒)·시라(失刺)·멜릭 테무르(滅里帖木兒)·예센 테무르(也先帖木兒)·쿠라타이(忽刺台)·湘寧王 바라시리(八刺失里), 요양행성, 섬서행성과 행대의 지지를 받았다. 대도 측은 엘 테무르가 장악한 좌위친군, 킵차크, 이수 등의 衛軍을 근간으로 임시로 징집한 군대로 상도와 맞섰다. 대도 일대에 주둔하는 宿衛 계통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는데, 西卑를 우두머리로 하는 唐兀衛와 魯王 阿嘉里失里가 있다. 阿嘉里失리는 톡 테무르의 처형이기도 하다.⁷⁶⁾

1328년 8월 21일, 遼王 톡토아, 좌승상 다올라트 샤가 상도를 지키고 나머지는 4路로 나누어 대도를 향해 남하하였다. 태정제의 조카인 梁王 옹센은 거용관으로 진군하였고, 제왕 시라(失刺)는 古北口로 진공하였다. 제왕 이수 테무르는 遼東 遷民鎮으로 진군하였다. 태정제의 조카 湘寧王 바라시리 등은 산서를 돌아 섬서의 군대와 결합한 후 동쪽으로 紫荊關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燕山, 恒山 山麓의 중요한 지역, 가령 蘆兒嶺, 泰和嶺, 遷民鎮, 碑樓口, 古北口, 居庸關은 이미 모두 대도 측을 지지하는 군대들이 둔수하고 있었다. 때문에 먼저 시라가 이끄는 中路軍이 큰 타격을 받았다. 불충분한 戰備, 역량의 분산 등으로 옹센, 멜릭 테무르가 이끄는 서로군도 습격을 당하였다.⁷⁷⁾ 여기에 잇달아 예센 테무르를 主帥로 하는 동로군도 궤멸되었다.⁷⁸⁾ 이런 상황을 맞이하자, 상도의 阿速衛 지휘사 脫脫木兒가 부중을 이끌고 대도 측에 귀부하고, 내부의 제왕이 대도를 지원함에 따라 다올라트 샤 측은 열세에 처하기 시작하

之初，京師調兵以禦北軍，[武]庭璋被檄巡視檀·薊諸隘。人多觀望，庭璋獨戮力所事而不敢怠”。

76) 『元史』 권32, 「文宗紀」 및 卷132, 「撥都兒傳」.

77) 『元史』 卷32, 「文宗紀」, 706쪽. “[至治元年 八月] 乙卯, 脫脫木兒及上都諸王失刺, 平章政事乃馬台, 詹事欽察戰于宜興, 斬欽察于陣, 禽乃馬台送京師, 戮之, 失刺敗走”.

78) 『元史』 卷138, 「燕帖木兒傳」. “[天曆元年 九月] 遣撒敦往拒, 至薊州東沙流河, 累戰敗之”.

였다. 결국 옥쇄를 받들어 항복하고 어린 황제 아리기바의 행방은 모연해졌다. 이로써 엘 테무르의 정변은 승리를 고하였다.

곧 상술한 상황을 통해, 대도 측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계기에는 상도의 중로군과 동로군이 궤멸된 후 '제왕'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음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동도제왕계의 분열과 입장 변화는 전세의 변화를 몰고 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IV. 양도내전 중 요양행성과 동도제왕계의 동향

주지하듯이, 쿠빌라이가 末弟 아릭부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타가차르(塔察兒)를 필두로 하는 좌익군단의 군사적 지원이 결정적이었다.⁷⁹⁾ 이로써 대칸과 동도제왕가의 관계는 원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⁸⁰⁾ 대칸의 협력자였던 테무게 옷치긴 일가는 쿠빌라이 재위 시기 '나얀의 난'으로 일대 타격을 받았다. 이후 타가차르의 증손 톡토아(脫脫)가 부중을 이끌게 되면서 예전 자신의 일가가 향유했던 특권, 특히 나얀의 난으로 빼앗긴 부중과 군대를 되찾고자 하였다. 대덕11년(1307), 무중 카이산이 즉위 후 대규모 賞賜를 통해 제왕을 안위할 때, 톡토아는 당초 쿠빌라이의 명으로 중앙에 예속된 나얀의 부중을 다시 자신의 속민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

79) 杉山正明, 1982, 「クビライ政權と東方三王家—鄂州の役前後再論」, 『東方學報』 54, 258쪽.

80) 海老澤哲雄, 1962, 「モンゴル帝國の東方三王家に關する諸問題」, 『埼玉大學紀要』 21; 堀江雅明, 1982, 「モンゴル=元朝時代の東方三ウルス研究序說」, 『東方學論文集』; 堀江雅明, 1990, 「ナヤンの反亂について(上)」, 『東洋史苑』 34, 35合; 윤은숙, 2007, 「옷치긴家 타가차르의 활동과 쿠빌라이의 카안위 쟁탈전」, 『몽골학』 22호; 윤은숙, 2007, 「몽골제국 초기 帝位 계승분쟁-옷치긴의 군사행동을 중심으로」, 『몽골학』 23호 등.

국 조정의 간여로 실패하고 말았다.⁸¹⁾ 이후 인종 연우3년(1316), 툽토아는 요왕(遼王)에 봉해지는데, 이것은 옷치긴 왕가의 적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태무게 옷치긴계의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1323년 8월 영종이 남파에서 시해되고, 같은 해 9월 태정제가 즉위하기까지는 중앙 권력이 상당히 이완된 시기였다. 요왕 툽토아는 이를 틈타王妃들을 살해하였다. 이후 태정제 원년(1324) 2월, 감찰어사 등이 툽토아를 탄핵했지만,⁸²⁾ 이때 태정제는 중신들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다. 5월에 어사대부 등이 재차 요왕을 탄핵하고자 하였으나⁸³⁾ 역시 따르지 않았다. 어사대부의 구체적 탄핵 내용은, 툽토아가 옷치긴 일족인 바리야 등 백여 명을 살해하고 그의 양마 등 가축을 차지했다는 것이다.⁸⁴⁾ 뿐만 아니라 툽토아는 태정3년(1326) 7월에는 이전에 상실한 옷치긴의 어머니 후엘룬의 宮守兵과 여진 둔호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태정제로서는 몽골 통치계급 내부의 그간 인종과 영종이 한법을 추진하며 생긴 갈등과 내분을 수습할 필요성이 절박했고, 더욱이 영종의 피살로 인해 야기된 각종 정치적 의혹들을 잠재워야 했다. 이런 제 배경에서 태정제 시기 종왕귀척에 대한 대우는 대대적으로 제고되었다. 이때 태정제는 옷치긴 일가의 수령 요왕 툽토아에게 매우 관대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순 테무르가 장기간 북변에 출진해 있던 정치적 배경과도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덕6년(1302)부터 영종시기까지 이순 테무르는 쥘왕 신분으로 칭기즈 칸의 4대

81) 『元史』卷22, 「武宗紀」, 485쪽. “塔刺海塔思不花言: ‘前乃顏叛, 其繫虜之人, 奉世祖旨俱隸版籍. 比者, 近臣請以歸之諸王脫脫, 彼即遣人拘括, 臣等以為此事具有先制, 今已歸脫脫所部, 宜令遼陽省臣薛闡干等往諭之, 已拘之人悉還其主’”.

82) 『元史』卷29, 「泰定帝紀」, 644쪽. “遼王脫脫, 乘國有隙, 誅屠骨肉, 其惡已彰, 恐懷疑貳. 如令歸藩, 譬之縱虎出柙. 請廢之, 別立近族以襲其位”.

83) 『元史』卷29, 「泰定帝紀」, 646쪽. “遼王擅殺宗親, 不花, 即里孛羅亂法, 皆蒙寬宥, 甚為失刑, 乞定其罪, 以銷天變”.

84) 『至正集』卷76, 「糾遼王」. “近按托布哈[按忒不花]太子等嘗與惡逆, 此在聖上躬斷者, 尚且會集宗親共議處置. 比托克托[=脫脫]遼王擅殺親族巴哩雅[=八里牙]等, 實違太祖皇帝大法, 不聞有所處置, 內外無不憂疑”.

오르두와 군마, 몽골리아를 통령하였다.⁸⁵⁾ 진왕이 동북지역과 관련된 업무도 관할했기 때문에,⁸⁶⁾ 이 지역에 근거한 요왕 토크타야와의 정치적 유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순 테무르와 옷치긴 일가 領地의 지리적 인접성과 토크타야가 태정제 즉위를 지지했던 점 등 개인적 유대,⁸⁷⁾ 이순 테무르가 옷치긴 왕가를 제어하기에 역량이 부족했던 점⁸⁸⁾ 등이 지적된다. 사실 이런 태도는 태정제가 대칸에 오르면서 제왕세력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책과 맞물린 것이다. 당시 노골적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상실한 권한을 되찾으려는 요왕의 행위는 대칸에게 별다른 저지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동도제왕계가 태정제 사후 제위 계승을 둘러싸고 폭발한 양도내전에서 상도 측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옷치긴계의 권력 회복과 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옷치긴가와 잘라이르부를 핵심으로 하는 동도제왕계 대다수와 요양행성의 군대가 상도 측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대표적으로 요왕 토크타, 陽翟王 太平, 梁王 응센(王禪), 무칼리 5세손 타르타이, 東路蒙古軍萬戶 및 高麗女直漢軍萬戶府, 肇州蒙古屯田萬戶府의 군대도 상도에서 즉위한 태정제 후계자를 지지하였다.⁸⁹⁾ 특히 東路蒙古軍萬戶府는 나얀의 난을 진압한 후, 동북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

85) 『元史』 卷29, 「泰定帝紀」, 637쪽

86) 『元史』 卷26, 「仁宗紀」, 583쪽. 연우5년 三月, “命晉王也孫鐵木兒賑濟遼東貧民”.

87) 堀江雅明, 1985, 앞의 논문. 저자는 토크타야가 죽인 바리아에 대해서, 『元史』 107 종실세계표에 실린 타가차르의 형제 테무데르의 손자 팔리아 대왕으로 추정하고, 옷치긴 왕가 적통인 타가차르의 손자 토크타야 방계인 테무데르계 바리아 일족을 어떤 이유로 살해하고 재산을 자기가 획득한 사건으로 테무데르계의 단절이자 토크타야의 세력 확대로 이해했다.

88) 윤은숙, 2010, 앞의 책, 261쪽.

89) 『元史』 卷33, 「文宗紀」, 728쪽.

여 설치한 군사 기구 중의 하나로,⁹⁰⁾ 나안과 카단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⁹¹⁾ 공훈을 세운 킵차크인 토토카(土土哈)와 백 테무르(伯帖木兒)와 긴밀한 관련 속에서 설치되었다. 동로몽고군만호부는 당초에는 상도 측을 지지했는데, 대도로 진공하던 동로몽고군만호 카라나후(哈刺那懷)가 휘하 군인 만 명을 이끌고 엘 테무르에게 투항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태를 관망하던 카사르의 6세 손 齊王 우룩 테무르(月魯帖木兒),⁹²⁾ 東路蒙古元帥 부카 테무르(不花帖木兒) 등이 대도 측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⁹³⁾

이를 통해 동도제왕계가 양도내전 과정에서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도 측을 지지한 인물은 齊王 우룩 테무르와 東路蒙古元帥 부카 테무르가 대표적인데, 이 중 부카 테무르는 엘 테무르의 숙부였다. 1328년 10월, 부카 테무르와 우룩 테무르는 대부분의 군대가 대도 공략을 위해 남하한 틈을 타서 상도를 급습하였고, 이때 요왕 토크타이는 우룩 테무르에게 살해되었다.⁹⁴⁾ 상도 측 군대 대부분이 남하한 상태로 유수 중이던 다올라트 샤는 포로로 잡히고, 상도 측은 일거에 와해되었다. 상도 측을 지지한 중서성 평장정사 투만지르(禿滿迭兒)는 요동으로 도망가고, 엘 테무르는 쿠라타이(忽刺台), 타르타이, 아라 테무르(阿剌帖木兒), 타카이(塔海) 등을 사로잡아 죽였다.

요컨대, 양측의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 전환이 된 것은 요동 군대의 상도

90) 東路蒙古軍萬戶府(후에 東路蒙古侍衛親軍指揮使司로 개칭) 외에 東路蒙古軍(都)元帥府(한 차례 東路欽察軍萬戶府로 개칭), 總管高麗女眞漢軍萬戶府, 女眞侍衛親軍萬戶府, 右衛率府·宗仁衛·隆鎮衛의 東北屯軍萬戶府와 천호소 등의 군사 기구가 설치되었다. 薛磊, 2012, 앞의 책, 107쪽.

91) 『道園學古錄』 권23, 「句容郡王世績碑」, “敗叛王哈丹之軍, 盡得遼左諸部. 置東路萬戶府以鎮之”.

92) 『元史』 卷107, 「宗室世系表」, 2710쪽.

93) 『元史』 卷133, 「塔出傳」, 3331쪽, “先是, 齊王月魯帖木兒, 東路蒙古元帥不花帖木兒聞文宗即位, 乃起兵趨上都圍之. 時上都屢敗勢蹙”.

94) 『元史』 卷32, 「文宗紀」, 715쪽. “齊王月魯帖木兒, 東路蒙古元帥不花帖木兒等以兵圍上都, 倒刺沙等奉皇帝寶出降. 梁王禪暹, 遼王脫脫為齊王月魯帖木兒所殺, 遂收上都諸王符印”.

급습이었다. 특히 동로몽고원수 카라나후의 대도 측 투항은 당시의 전세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로써 상도 측의 餘兵은 東潰되었다. 물론 이것으로 대도 측의 승리가 굳혀진 것은 아니었다. 사천행성 평장정사 낭가타이(囊加台)를 필두로 일련의 저항이 있었다.⁹⁵⁾ 그런데 엄밀히 말해, 낭가타이의 경우 상도 측 지지자가 아니라 코실라를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천력2년(1329) 正月, 문종은 동로몽고군만호부를 징벌하였다.⁹⁶⁾ 이후 동로몽고군원수부·동로몽고군만호부는 모두 시위친군 계통으로 편입되었다.⁹⁷⁾ 상도 측을 지지한 요양 툽토아와 잘라이르부 타르타이(朶羅台)에 대해서도 추가적 징벌 조치를 취하였다.⁹⁸⁾ 동년 12월, 강남행어사대에서 요왕의 분지를 삭감할 것을 주청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선 문종은 즉각적인 회답을 하지 않았고,⁹⁹⁾ 오히려, 이듬해 1330년 8월, 요왕 툽토아의 후예인 아나시리를 요왕에 봉하고 인장을 내렸다.¹⁰⁰⁾ 이를 통해 강남행어사대의 상주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至順 연간에 조정에서는 일련의 몽골제왕과 부민들을 동북지역으로 遷徙시키는 조치를 통해 요동, 요서 일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⁰¹⁾

이전의 '나안의 난' 때까지는 옷치긴 왕가의 압도적인 세력을 바탕으로 동

95) 『元史』 卷32, 「文宗紀」, “[十月]四川行省平章囊加台自稱鎮西王, 以其省左丞脫脫為平章, 前雲南廉訪使楊靜為左丞, 殺其省平章寬徹等官, 稱兵燒絕棧道”.

96) 『元史』 卷33, 「文宗紀」, 728쪽. “[천력2년 正月] 以遼陽省蒙古·高麗·肇州三萬戶將校從逆, 舉兵犯京畿, 拘其符印制敕”.

97) 史衛民, 1998, 앞의 책, 301쪽

98) 『元史』 卷32, 「文宗紀」, 721~722쪽. “晉邸及遼王所轄路·府·州·縣達魯花赤並罷免禁錮, 選流官代之”. 및 “晉王及遼王等所轄府縣達魯花赤既已黜罷, 其所舉宗正府扎魯忽赤, 中書斷事官, 皆其私人, 亦宜革去”.

99) 『元史』 卷32, 「文宗紀」, 722쪽. “遼王脫脫, 自其祖父以來, 屢為叛逆, 蓋因所封地大物眾, 宜削王號, 處其子孫遠方, 而析其元封分地. 詔中書與勳舊大臣議其事”.

100) 『元史』 卷33, 「文宗紀」, 739쪽. “封牙納失里為遼王, 以故遼王脫脫印賜之”.

101) 가령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元史』 卷35, 「文宗紀」, 781쪽. “[지순2년] 三月, 壽王脫里出·陽翟王帖木兒赤·西平王管不八·昌王八剌失里等七部之民居遼陽境者萬四千五百餘戶告饑, 命遼陽行省發近境倉糧賑兩月”.

도제왕들은 일체적 경향이 강하였다. 이 경우처럼 옷치긴 왕가와 카사르 왕가의 당주가 적대적으로 나뉘어 대립한 적은 없었다.¹⁰²⁾ 동도제왕계의 분열 원인은 옷치긴 왕가의 위세 약화와 유목 환경의 악화로 인해 각 왕가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대간을 추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결과로 파악되기도 한다.¹⁰³⁾ 비록 요왕 톡토아가 상도 측에 섰다가 패하여 피살되었지만 아나시리가 요왕에 피봉되고, 톡토아의 인을 계승하였다. 다수의 울루스로 구성된 제국 내에서 대간의 종실 제왕에 대한 태도는 반란을 일으킨 제왕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지만,¹⁰⁴⁾ 궁극적으로 제왕가를 단절시키는 등의 강경책은 쓰지 않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적당한 인물을 뽑아서 상속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톡토아의 사후에도 나얀의 사후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아나시리에게 왕가의 후계를 유지시켜 준 것이다.¹⁰⁵⁾



이상 태정제 사후 대간 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도내전의 전개 양상과 정치세력의 향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양도내전(1328)은 결과적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간 권력의 轉移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제국 내 행성과 제왕세력은 자신의

102) 유사한 사례로 1254년 카사르계 예쿠가 옷치긴계 타가차르의 진영을 습격한 일로 對 고려전에 예쿠를 대신해 잘라이르타이로 교체된 일이 있다. 최윤정, 2011, 「몽골의 요동·고려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제209호, 140쪽, 각주 109.

103) 윤은숙, 2010, 앞의 책, 264~265쪽.

104) 『元史』 卷32, 「文宗紀」, [1328, 十月]. “江南行臺御史言: ‘王脫脫, 自其祖父以來, 屢為叛逆, 蓋因所封地大物重. 宜削王號, 處其子孫遠方, 而析其元封分地’ 詔中書與勳舊大臣議其事”.

105) 屠畜는 아나시리를 톡토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나시리와 톡토아의 親緣 관계는 상세하지 않다.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 정쟁에 개입하여 제국의 정치·군사적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때 옷치긴 일가와 잘라이르부를 핵심으로 하는 동도제왕계 대다수와 요양행성의 군대가 상도 측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영종 시테바라가 우승상 바이주와 함께 순행에서 귀환 도중 남파에서 살해된 '남파지변'(1321)의 최대 수혜자가 된 진왕 이순 테무르는 즉위 후, 통치집단 내부의 갈등과 내분을 수습하고 영종의 피살로 야기된 각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왕종척에 대한 대우를 대대적으로 제고하였다. 특히, 이순 테무르와 요왕 일가의 지리적·정치적 유대성으로 톡토아는 진왕의 대칸 즉위를 지지했고, 이후에도 톡토아는 태정제의 아들 아리기바를 적극 지지하며 옷치긴 일가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도내전은 당초 군사적으로 열세했던 대도 측이 승리를 거두고, 태정제의 적장자로서 황태자라는 계승 자격과 명분을 갖추고, 요동과 섬서지역의 군사적 지지를 받던 상도 측의 패배로 끝났다.

대도 측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도 측의 지리적·경제적 우위성과 엘 테무르의 개인적 역량이 강조되었다. 이 글의 검토를 통해서, 대도의 엘 테무르가 측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계기는 상도의 중로군과 동로군이 궤멸된 이후 톡토아와 우룩 테무르로 대표되는 동도제왕계의 분열과 입장 변화가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상도 측은 요동지역의 지지를 믿고 소수의 병력만을 상도에 남긴 채 대도로 진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를 찌르는 우를 범하였다.

요컨대, 동도제왕계의 분열과 요동 지역 주둔 군대의 입장 변화는 양도내전에서 궁극적으로 대도 측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얀의 난 이후 동도제왕 세력의 결집은 약화되고, 그것은 양도내전 시기 옷치긴계와 카사르계의 분열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상도 측을 지지했던 요동 군대의 이반이 대도 측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도내전에서 동북지역의 정치·군사세력의 항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 『元史』, 宋濂 等撰, 中華書局.
- 『大元聖政國朝典章』, 臺灣古宮博物院本, 臺北, 1973.
- 『高麗史』 全3卷, 景仁文化社, 影印本.
- 『歷代名臣奏議』, 楊士奇 緝, 上海古籍出版社, 1989.
- 『國朝文類』, 蘇天爵 編, 四部叢刊初編本.
- 『元朝名臣史略』, 蘇天爵 撰, 中華書局.
- 『中庵集』(劉敏仲), 北京圖書館珍本叢刊.
- 『牧庵集』(姚燧), 北京圖書館珍本叢刊.
- 『秋澗集』(王恽), 元人文集珍本叢刊本.
- 『吳文正公文集』(吳澄), 元人文集珍本叢刊本.
- 『道園類稿』(虞集), 元人文集珍本叢刊本.
- 『道園學古錄』(虞集), 北京圖書館珍本叢刊.
- 『至正集』(許有任), 元人文集珍本叢刊本.
- 『危太樸集』(危素), 元人文集珍本叢刊本.
- 『滋溪文稿』(蘇天爵), 中華書局交點本.
- 『金華黃先生文集』(黃潛), 四部叢刊初編本.
- 『宋文憲集』, 四部叢刊初編本.
- 『清容居士集』(袁角), 北京圖書館珍本叢刊.
- 『永樂大典』(중화서국 영인본).

연구서

- 라시드 앳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3, 『집사-칭기스한기』, 사계절.
- 라시드 앳딘 지음, 김호동 역주, 2005, 『집사-칸의 후예들』, 사계절.
- 유원수 역주, 1994, 『몽골비사』, 해안.
- 스기야마 마사아키 지음, 임대희 등 譯, 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 윤은숙, 2010,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 권용철, 2010, 『카안 울루스 말기 權臣 엘테무르와 바얀의 집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史衛民, 1998, 『元代軍事制度사』, 軍事科學出版社.
- 陳得芝 主編, 1997, 『中國通史』 13·14卷, 上海人民出版社.
- 周良霄, 1986, 『忽必烈』, 吉林教育出版社.
- 李治安, 2000, 『元代行省制度研究』, 南開大學出版社.
- 李治安, 2007, 『元代分封制度研究』(增正本), 中華書局.
- 傅光森, 2008, 『元朝中葉中央權力結構與政治生態』, 國立中興大學歷史學系 博士學位論文.
- 鈕希強, 2010, 『元朝兩都之戰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薛磊, 2012, 『元代東北統治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頌, 2002, 『龍庭崇汗——元代政治史研究』, 南方出版社.
- 張沛之, 2009, 『元代色目人家族及其文化傾向研究』, 天津古籍出版社.
- 黨寶海, 2006, 『蒙元驛站交通研究』, 崑崙出版社.
- Dardess, John W, 1973, *Conqueror and Confucians: Aspects of Political Change in Late Yua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i Cosmo, Nicola & Frank, Allen J. & Golden, Peter B. eds., 2009, *The Cambridge History of Inner Asia: The Chinggisid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binson, David M, 2009,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Cambridge, Mass.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新元史』, 柯劭忞, 上海古籍出版社.
- 『蒙兀兒史記』, 屠寄, 上海古籍出版社.

연구논문

- 孫賢淑, 1981, 「蒙古의 相續慣行에 대하여—특히 蒙古 帝國期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6
- 윤은숙, 2007, 「옷치긴家 타가차르의 활동과 쿠빌라이의 카안위 쟁탈전」, 『몽골학』 22.
- 윤은숙, 2007, 「몽골제국초기 帝位 계승분쟁—옷치긴의 군사행동을 중심으로」, 『몽골학』 23
- 최윤정, 2010, 「元代 동북지배와 遼陽行省—一行省 建置 과정과 治所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10집

- 최운정, 2011, 「몽골의 요동·고려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제209호.
- 海老澤哲雄, 1962, 「モンゴル帝國の東方三王家に關する諸問題」, 『埼玉大學紀要』 21.
- 杉山正明, 1978, 「モンゴル帝國の原象—チンギスカンの一族分封おめぐるて」, 『東洋史研究』 37-1.
- 杉山正明, 1982, 「クビライ政權と東方三王家—鄂州の役前後再論」, 『東方學報』 54.
- 杉山正明, 1987, 「西曆1314年前後大元ウルス西境をめぐるれ小札記」, 『西南アジア研究』 27.
- 松田孝一, 1979, 「元朝期の分封制—安西王の事例お中心として」, 『史學雜誌』 88-8.
- 松田孝一, 1980, 「フラグ家の東方領」, 『東洋史研究』 39-1.
- 堀江雅明, 1982, 「モンゴル=元朝時代の東方三ウルス研究序説」, 『東方學論文集』(龍谷大).
- 堀江雅明, 1985, 「テムゲオツチギとその子孫」, 『東洋史苑』 第24・25合.
- 堀江雅明, 1990, 「ナヤンの反亂について(上)」, 『東洋史苑』 34, 35合.
- 藤島建樹, 1970, 「元の順帝とその時代」, 『大谷學報』 49-4.
- 藤島建樹, 1970, 「元の明宗の生涯」, 『大谷史學』 12.
- 野口周一, 1998, 「元代泰定帝朝における宰相層について」, 『新島學園女子短期大學紀要』 15.
- 黨寶海, 2007, 「元朝廷祐年間北方邊將脫忽赤叛亂考—讀〈大元贈嶺北行省右丞忠愍公墓碑〉」, 『西域研究』 2期.
- 馬娟, 2002, 「元代回回人倒刺沙事迹考論」, 『回族研究』 4.
- 馬娟, 2005, 「元代欽察人燕鐵木兒事迹考論」, 『元史論叢』 10.
- 蕭功秦, 1983, 「英宗新政與“南坡之變”」, 『元史論叢』 2, 中華書局.
- 蕭功秦, 1995, 「論元代皇位繼承問題—兩種政治傳統重疊的歷史後果」, 『蕭功秦集』.
- 葉新民, 1988, 「斡赤斤家族與蒙元朝政的關係」, 『宋·遼·金·元史』,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 楊訥, 1997, 「泰定帝與南坡之變」 『慶祝鄧廣銘教授九十華誕論文集』, 河北教育出版社.
- 楊志玖, 1993~1995, 「回回人與元代政治(1~5)」, 『回族研究』.

- 王頌, 2001, 「仁·英承嗣與鐵木迭兒的弄權」, 『元史及民族史研究輯刊』 14, 南方出版社.
- 王頌, 2002, 「燕鐵木兒的軍事政變與明文禪替」, 『歐亞學刊』 3, 中華書局.
- 王頌, 2002, 「元英宗朝政治與南坡之變」, 『陜南史學』 1, 陜南大學出版社.
- 姚大力, 1986, 「元仁宗與中元政治」, 『內陸亞洲歷史文化研究—韓儒林先生紀念論文集』, 南京大學出版社.
- 劉迎勝, 2009, 「欽察親軍左右翼考」, 『元史論叢』 11, 天津古籍出版社.
- 劉曉, 2008, 「元代怯薛輪直新論」, 『中國社會科學』 4期.
- 劉曉, 2010, 「“南坡之變”芻議—從“武仁授受”談起」, 『元史論叢』 12, 內蒙古教育出版社, 2010.
- 張金鈺, 2005, 「元泰定帝生年及其他」, 『元史論叢』 第10輯.
- 張金鈺, 2006, 「元兩都之戰及其社會影響」, 『安徽大學學報』 5.
- 張沛之, 2001, 「元代土土哈家族探研」, 『元史論叢』 8, 江西教育出版社.
- 周良霄, 1986, 「蒙古選汗儀制與元朝皇位繼承問題」, 『元史論叢』 3, 1986.
- Dardess, John W. 1972~1973, “From Mongol Empire to Yüan Dynasty: Changing Forms of Imperial Rule in Mongolia and Central Asia”, *Monumenta Serica* 30.

[ABSTRACT]

The Two Capitals War(1328) and Eastern Mongolia
in the Yüan: Focusing on the Tendencies and
Vicissitudes of Liaoyang Province and Eastern Uluse

Choi Yoonjung

The death of Yisün Temür(*Tai ting di*) Qa'an in Shang-tu on 15 August 1328 touched off a destructive succession struggle. Although the war of the two capitals did not last a long time, as a result of the war the highest authorities were replaced. In various aspects this wa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wer structure of the Yuan Empire, where people were divided based upon their interests. At this time, the Army head of Liaoyang Province and the Odcigin family, Chinggis Qan's youngest brother, supported the Shang-tu court.

On 4 September 1323, when Shidebala(*Yingzong*) and Baiju(*yu cheng hsiang*) with the Imperial party had encamped at Nan-po on its return from Shang-tu to Ta-tu, they were killed(the "Coup in Nanpo"). Yisün Temür became the greatest beneficiary. Seeking the throne, settling the governing group's internal conflict and infighting, and compensating various alleged causes of Shidebala's death, Yisün Temür expanded the profit of the royal families. In particular, Toqto'a, Prince of Liao, supported Yisün Temür's accession to the throne because they had an apolitical and geographical relationship. As a result, Toqto'a supported the accession to the throne of Arigibag, son of Yisün Temür, and was trying to expand his forces and authority in Mongolia.

Initially, the Shang-tu court force had the upper hand. However, it was defeated as a result. Regarding the factors for the Ta-tu court's victory, not only El Temür's personal capacity, but also geographical and economic superiority have been emphasized. How did El Temür of the Ta-tu court achieve a decisive victory? After the Middle Road army and the East Road army of the Shang-tu court had collapsed, Buqa Temür, of the Eastern Mongolian Chief Military Command, and Örlüg Temür, the prince of Ch'i, supported the Ta-tu court after changing their initial positions. That became a crucial opportunity for the Ta-tu court to achieve victory.

Keywords

Two capitals war, Ta-tu, Shang-tu, Shidebala(Yingzong), Yisün Temür(*Tai ding di*), Daulat sha, El Temür, Eastern Ulus, Toqto'a, Prince of Liao, Liaoyang Province, Örlüg Temür, Buqa Temü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활자 인쇄술이 일본 古活字本 인쇄에 미친 영향

이재정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I. 머리말

壬辰倭亂은 문화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조선 문화는 江戸時代 일본의 학술·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임진왜란의 전리품으로 조선에서 가져간 서적과 활자 및 인쇄술은 일본의 인쇄 문화와 학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1593년 後陽成天皇의 勅에 의해 간행된 『古文孝經』을 시작으로 약 반세기에 걸쳐 활자에 의한 인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제작된 활자본을 幕末期의 木活字本과 구분하여 古活字版 또는 古活字本이라고 부르는데,¹⁾ 이 고허자본에 의한 인쇄가 조선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통설이었다.²⁾ 그런데 최근 비슷한 시기에 예수

※ 투고: 2014년 8월 12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26일, 게재 확정: 2014년 11월 24일

1) 大内田貞郎, 2005, 「古活字本について」, 加藤美方·森啓·藤田三男編, 『活字の歴史と技術 1』, 樹立社, 50~51쪽.

2) 川瀬一馬, 1967, 『増補古活字版之研究 上』, 日本古書籍商協會, 151~153쪽; 木宮泰彦, 1932, 『日本古印刷文化史』 富山房, 383~387쪽; 田川孝三, 1972, 「李朝 印

회의 순찰사가 들여온 서양 활자 인쇄기와 활자에 의해 九州 지역에서 제작된 키리시탄판(キリシタン版)이 일본 고활자본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 이에 따라 일본 학계에서는 두 방식의 영향을 함께 인정하는 절충설이 대두되기도 하였다.⁴⁾

한국 학계에서는 한일 고활자나 인쇄된 실물에 대한 명확한 고증 없이 일본 고활자판이 조선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시하여, 키리시탄판 및 일본 고활자본의 키리시탄판 기원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키리시탄판이 일본 고활자본의 기원이라는 주장은 조선의 활자와 인쇄 방식이 일본 고활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고활자본의 조선 활자 기원을 부정하는 일본 연구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조선 활자와 활자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刷文化와 日本, 『동양학』 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73~177쪽.

- 3) 일본 고활자판의 키리시탄판 기원설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은 小秋元段, 2010, 「古活字版の淵源をめぐる諸問題—所謂キリシタン版起源説を中心に」, 『國際日本學(特集「ナショナリズムの表現」について)』 8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한국에서 키리시탄판과 관련하여 언급한 예는 정하미, 2005, 「예수회 순찰사 발리나노의 역할과 기독교 금교령」, 『한양일본학』 15이다.
- 4) 예를 들어 水上文義, 2000, 「我が國の古活字印刷の歴史」,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科編,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 滋賀縣教育委員會, 總論 4쪽에서 “일본 고활자 인쇄는 조선 활자와 서양식 활자의 절충적인 인쇄기법을 채용하였다”고 서술하였다.
- 5) 김두중, 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292~293쪽에서 키리시탄판을 언급하였으나, 일본 고활자 인쇄술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일본 종래의 설을 답습하였다. 손보기, 1987, 「임진왜란과 일본의 활자 인쇄술」, 『애산학보』 5, 4쪽에서 일본의 慶長勅版이나 伏見版 活字, 駿河版 活字를 모두 조선에서 가져간 활자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하미, 1999, 「17세기 활자 인쇄의 일본적 변용에 대하여」, 『일본역사연구』 10, 160쪽에서는 일본 고활자의 키리시탄판 기원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조형진, 2002,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4, 91쪽에서 키리시탄판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조형진, 2003, 「日本の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서지학연구』 26에서 駿河版이 조선활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조형진, 2012,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서지학연구』 53, 87쪽에서 일본의 고활자 인쇄는 한국이나 중국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일본만의 특징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 고활자본의 조선 기원을 부정하는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일 양쪽의 고활자와 고활자본을 상세하게 비교 고찰하였다. 이로써 조선 활자 인쇄술이 일본 고활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증하고, 한일 양국 인쇄 문화의 교류 및 비교를 위한 보다 발전된 시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조선 활자 인쇄술의 일본 전래 기록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서적을 戰利品으로 일본에 가져갔다는 기록은 곳곳에 남아 있다. 예를 들어 1592년 봄에 倭軍 선봉장 宇喜多秀家가 출정에 임하여 豊臣秀吉을 알현할 때 近侍한 名醫 直瀬正琳이 전승의 선물로 조선본 증정을 요청하고, 宇喜多秀家は 많은 책을 가져와 直瀬正琳에게 증정했다고 한다. 德川家康이 駿府로 은퇴할 때 2대 將軍 德川秀忠에게 증정한 서적 30부 가운데 22부가 현존하는데 이 중 19부는 조선본이었으며, 德川家康이 죽은 후 御三家에 분배한 서적 중에서도 조선본이 매우 많았다.⁶⁾ 현재 일본 중요 도서관이나 개인 소장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본은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⁷⁾

일본군은 조선 서적과 함께 활자와 인쇄술도 가져간 것으로 전한다. 1935년 출판된 『好書雜載』라는 책에서는 加藤清正이 漢城에 들어왔을 때 銅으로 된 각형으로 글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전부 熊本城에 수송하여 성 중

6) 木宮泰彦, 1932, 앞의 책, 384~385쪽.

7) 藤本幸夫, 2008, 「일본소재 한국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그 서지학적 연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367~368쪽에서 豊臣秀吉이 조선 침략시 가지고 간 서적으로 尊經閣(前田氏藏書)과 德川氏 所藏本(紅葉山文庫-書禮部, 內閣文庫), 駿河御讓本(水戸 尾張(蓬左文庫) 紀州)을 들었다. 일본 소재 조선본 전반에 대해서는 藤本幸夫, 2006,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前言」.

에 두었다고 하며, 加藤清正의 딸이 德川家康의 아들과 혼약할 때 이것을 德川家康에게 선물했다고 한다.⁸⁾

일본 최초의 고헬자본인 勅版『古文孝經』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고문효경』 간행 전말은 江戸時代 전기 公卿으로 後陽成天皇의 측근이었던 西洞院時慶이 쓴 일기인 『時慶記』에 잘 나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문효경』은 칙명에 의해 近侍인 六條有廣, 西洞院時慶, 日野輝資 등 12명이 1593년(文祿 2) 윤 9월 21일 開版에 착수하여 11월 6일에 완성하였다.⁹⁾ 이 시기는 임진왜란에 출병했던 일본군이 돌아온 지 약 2개월 후이며, 이때 활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했던 장수들이 서적과 함께 활자와 인쇄 도구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이를 豊臣秀吉이 後陽成天皇에게 헌상하고 천황이 조선활자 신법으로 간행하도록 하명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⁰⁾

또한 『遺老物語』에 수록된 小瀬甫菴의 草稿本 ‘永祿以來出來初之事’에 秀吉 時代の 것으로 “활자판, 이것은 조선에서 들어온 것이다(一字版 これは高麗入有故也)”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 小瀬甫菴은 江戸 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의사이자 유학자로 1596년 『標題徐壯元補注蒙求』의 간행을 시작으로 여러 서적을 활자로 인쇄하였으므로, 그의 이러한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¹²⁾

한편 德川家康이 1606년(慶長 11) 圓光寺의 閑室元佶에게 大小 수만 개의 銅活字를 製作 上納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慶長日件錄』 11년 7월 28일 기록에 “高麗銅一字印 返進上之”라 하였다. 즉 동활자를 만들기 위해 궁

8) 정하미, 1999, 앞의 글, 160쪽.

9) 時慶記研究會編, 2001, 『時慶記』 제1권, 臨川書店, 237~265쪽.

10) 川瀬一馬, 1967, 앞의 책, 152~153쪽; 木宮泰彦, 1932, 앞의 책, 388~389쪽; 長澤規矩也, 1976, 『圖解和漢印刷史』, 汲古書院의 「解説」에서 『古文孝經』이 “조선 정벌에서 秀吉이 歸京한 약 2개월 후에 해당하므로 조선활자판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였다.

11) 木宮泰彦, 1932, 앞의 책, 386쪽.

12) 川瀬一馬, 1967, 앞의 책, 155~156쪽.

중에서 빌려왔던 조선 활자를 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이 활자가 앞서 後陽成 天皇 勅版 제작 관련하여 언급했던 궁중에 있던 조선 활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기록들은 조선의 활자 실물이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어 慶長 연간에는 後陽成 天皇의 勅에 의해 대자 목활자로 일련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이때 간행된 칙판으로는 1597년(慶長 2)에 간행된 『錦繡段』·『勸學文』, 1599년에 간행된 『日本書紀神代卷』·『古文孝經』·『大學』·『中庸』·『論語』, 『孟子』·『職原抄』 그리고 1603년(慶長 8)에 간행된 『白氏五妃曲』이 있다.¹⁴⁾ 『長恨歌·琵琶行』은 刊記가 없지만 역시 1603년에 『白氏五妃曲』보다 먼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慶長 勅版 가운데 『錦繡段』에 다음과 같은 간행 기록이 있다.

『錦繡段』은 東阜의 天隱이 편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간행되지 않았다. 이에 典籍의 문자를 취하여 한 글자를 하나의 나무 조각에 새기고 이것을 하나의 판면에 배열하고 한 장의 종이에 인쇄하고(필요한 매수를 끝내면 그) 배열을 해체한다. 이와 같이 하면 右渠閣과 天祿閣의 책(궁중의 모든 책·필자 주)도 모두 인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최근에 조선에서부터 전해져서 폐하의 귀에 들어가 그 곳의 양식에 의거하여 工人들에게 명하여 모사하게 하였다. 폐하가 생각하시는 바 몸을 굽혀 하문시켜 周나라 詩經의 六義로 교화시켜 집집마다 보관하고 사람마다 通曉시켜 영원히 전달되게 하려 한다고 한다.¹⁶⁾

-
- 13) 百瀬宏, 2000, 「駿河版銅活字 - その成立と鑄造技法の解析」,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柏書房, 54~57쪽.
- 14) 慶長勅版에 대해서는 川瀬一馬, 1967, 앞의 책, 177~178쪽; 조형진, 2013, 「日本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서지학연구』 54; 安野博之, 1999, 「慶長勅版 『長恨歌琵琶行』 『白氏五妃曲』의 刊行について」, 『汲古』 36; 安野博之, 2000, 「慶長勅版의 刊行について - 慶長四年刊本を中心に」, 『三田國文』 32, 慶應義塾大學國文學研究室.
- 15) 森上修·山口忠南, 1990, 「慶長勅版 『長恨歌琵琶行』에 着いて - 慶長勅版의 植字組版技法を中心として(上)」, 『ビブリア』 95, 78~80쪽.
- 16) 錦繡段者, 東阜天隱之所編, 而未有刊行. 茲取載籍文字, 鏤一字於一梓, 棊布諸一版, 印一紙, 纔改棊布, 則渠祿亦莫不適用. 此規模頃出朝鮮, 傳達天聽, 乃依

이 글은 豊臣秀吉의 名護屋의 本營에 隨從하였던 南禪寺의 玄圃靈三이 쓴 것이므로 그의 이러한 간기는 확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⁷⁾ 『錦繡段』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勸學文』 刊記에도 “工人에게 명하여 한 나무 조각에 글자 한 자를 새겨 한 판에 배열하여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조선에서 비롯되었는데 매우 편리하다(命工每一梓鏤一字, 綦布之一版印之, 此法出朝鮮, 甚無不便)”고 하였다. 이 두 기록은 慶長勅版이 조선의 활자 인쇄 방식으로 간행되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과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일본 고활자본과 고활자는 조선의 활자 및 판본과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 일본 고활자본이 조선의 인쇄 기법이 아니라 키리시탄판의 기법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대두되었다. 이 설은 일찍이 新村出이 제기한 바 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 大内田貞郎이 다시 제기하고 森上修가 뒤를 이었다.¹⁸⁾ 이 설의 타당성 여부는 後述하고자 하며, 여기서는 慶長勅版이 조선 활자 인쇄법에 따랐음을 명시하고 있는 두 刊記를 大内田貞郎과 森上修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大内田貞郎은 “만일 고활자판 모두가 오직 조선 고활자판의 기법만 처음부터 따랐다면 이 간기는 없었을 것이며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당시 識者들 사이에는 활자판의 기법에 키리시탄판과 조선 고활자판 2개가 존재한 것이 상식이었다면 이 간기는 양자택일 즉 필수적으로 대치되는 두 방식을 상징한 것, 즉 고활자판의 주류였던 기법에 대치하는 것이 ‘此法出朝鮮’이고 조선 고활자판에 대치하는 것이 키리시탄판의 기법이었음을 상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간기에는 고활자판의 주류가 되었던 기법은 키리시탄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무언중에 암시하는 것이고 이 간기는 또 이 책(간기가 있는 책)은 키리시탄판 기법에 결코 따르지 않았다고 환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彼様, 使工摹寫焉, 叡思辱在, 擬周詩六義教以化之, 家藏人誦, 傳之不朽云.

17) 川瀨一馬, 1967, 앞의 책, 151쪽.

18) 小秋元段, 2010, 앞의 글, 223~232쪽.

까”라고 하였다.¹⁹⁾ 당시 일본 고향자본은 키리시탄판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두 판본만 예외적으로 조선식을 따랐기 때문에 特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본 고향자본이 대부분 키리시탄판 방식을 사용했다는 명확한 사료도 제시하지 않고 두 책의 간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 두 책은 慶長勅版 가운데 최초로 제작된 것이므로 조선의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간기를 남기고, 이후의 칩판은 같은 방식이었으므로 굳이 남길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大内田의 ‘此法出朝鮮’이 일본에 납치된 조선의 인쇄공이 加勢要員으로 인쇄 공정을 뒷받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당시 일본인 인쇄공은 서구식 인쇄에 관한 知見은 있었으나 조선 고향자판의 기법에는 전혀 무지, 혹은 무관심하였다. 즉 ‘此法出朝鮮’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일본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조선 인쇄공만 알고 있었던 기법이었고 본다면, 그들이 고향자판 인쇄 현장에 있지 않는 한 일본인만으로는 ‘此法’은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이다.”²⁰⁾라고 하였다. 즉 일본 고향자 인쇄의 주류는 키리시탄판에서 온 것이며 慶長勅版의 일부에 조선 인쇄공들에 의해 조선의 인쇄술이 일부, 즉 固定式 匡廓에 의한 인쇄술이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 인쇄공이 키리시탄판 인쇄 기법을 배우고 그 방식으로 고향자본을 제작했을 것이라는 大内田의 주장은 스스로도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추론에 의거하고 있다.²¹⁾

森上修 역시 일본 고향자본이 서구의 활판 방식, 즉 키리시탄판의 조판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임진왜란 이전에 京都의 학자에게 그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慶長勅版뿐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 文祿勅版 『고문효경』도 키리시탄판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文祿勅版에 대해서는 關白 秀次와 친교가 있는 公家の 사람들이 開版에 관여하였고, 그 사업은 關白

19) 大内田貞郎, 2000, 「きりしたん版について」, 『本と活字の歴史事典』, 31쪽.

20) 大内田貞郎, 2009, 「「きりしたん版」に「古活字版」のルーツを探る」, 『活字印刷の文化史』, 勉誠出版社, 60쪽.

21) 大内田貞郎, 2009, 위의 글, 67쪽.

秀次가 天皇에 주청한 公家에 대한 家學獎勵策과 관련이 있고 그 일환으로 영민한 천황이 스스로 솔선수범, 여기에 호응한 壯舉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황실에 대해 秀次가 關白으로서의 職掌上 어떤 원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文祿勅版의 關版을 關白 秀次와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慶長 2년 칙판의 개판에 관해서 말하자면 關白 秀次 事件(할복한 사건-필자 주)이 있는 후 겨우 2년 후에 만든 것이고, 또한 26성인 순교사건(1597년 천주교도 26명을 사형한 천주교 탄압 사건-필자 주) 직후여서 천하 사람들이 秀吉을 두려워하고 그 입장을 깊이 고려하여 고의로 文祿의 役(임진왜란-필자 주)과의 관계를 내세우고 關白 秀次와 南蠻에서 도래한 서구식 활판 기법과는 일체 무관한 출판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조선의 활자 기법에 가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싶다”²²⁾고 하였다.

키리시탄판에서 고향자판으로 기술이 전승된 배경으로 豊臣秀次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의 존재를 상정하고, 천주교를 이해하고 선교사들과 교류한 豊臣秀次の 측근들이 서구의 활자 인쇄 기술을 알고 실용화한 것으로 본 것이다.²³⁾ 그러나 이후 豊臣秀次가 할복하고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이 칙판들을 키리시탄판 방식으로 만든 것을 은폐하려고 간기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豊臣秀次와 관련된 문화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刊記 자체를 허위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일본 고향자판이 조선 활자 인쇄 기법이 아니라 서양의 기법에 입각한 키리시탄판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를 펼침으로써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2) 森上修·山口忠南, 1991, 「慶長勅版『長恨歌琵琶行』に着いて-慶長勅版の植字組版技法を中心として(下)」, 『ピブリア』 97, 78~80쪽.

23) 小秋元段, 2010, 앞의 글, 231~232쪽.

Ⅲ. 일본 고향자본의 조선 기원 부정설 비판

이 장에서는 일본 고향자본이 조선이 아니라 키리시탄판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상세히 밝혀보고자 한다.

키리시탄판이란 일본 예수회에서 도입한 서양 인쇄기를 사용하여 1591년경부터 약 20년간 주로 九州에서 印行한 인쇄물을 말한다. 이러한 인쇄물은 일본인에 대한 포교와 교육, 일본 선교사에 대한 일본어 교육 등을 위해 간행된 것으로, 사전과 같은 어학서, 교리서, 일반 교양서 등 다양하다. 사용된 문자로 구분하면 로마자본과 일본어본, 일본어와 한자를 혼용한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활자는 서양식 펀치 방식으로 제작된 금속활자이며, 일부 목활자도 함께 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1613년 江戸 幕府가 禁教令을 내리고 1614년에는 교도들이 마카오 등으로 추방됨에 따라 인쇄기도 마카오로 옮겨져 키리시탄판 인쇄는 종말을 고하였다. 판본 역시 대부분 소각되어 현존하는 것은 30여 점에 지나지 않는다.²⁴⁾

일본 고향자본이 서양식 인쇄 기법에 의한 키리시탄판의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활자 조판 방식을 附着式과 組立式으로 구분하고, 조선 활자본의 조판 방식은 부착식이고 일본 고향자본의 조판 방식은 조립식이며, 조립식은 원리적으로 서양식, 즉 키리시탄판의 인쇄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착식은 중국 宋나라의 畢昇이 개발한 이른바 膠泥活字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植字版에 植字를 할 때, 아교 등의 접착제를 깔고 그 위에 활자를 심은 다음 가열하여 고정시킨 후 인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匡廓과 界線은 모두 고정식이다. 조립식은 元나라의 王禎이 쓴 『農書』에 기록된 방식으로, 동일한

24) 조형진, 2002, 앞의 글, 91쪽; 富永牧太, 1973, 「きりしたん版について」; 新井トツ, 1973, 「巡察使ヴァリニャーノ師ときりしたん版の出版」, 天理圖書館編, 『きりしたん版の研究』, 天理大學出版部.

크기의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 활자를 만든 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광곽, 계선, 활자를 모두 조립하는 방식이다. 부착식에서는 활자의 높이가 낮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조립식은 활자의 크기가 일정하고 높이도 높다.²⁵⁾

大内田貞郎의 조선의 활자 인쇄법이 부착식이라는 주장은 다음 사료에 의거한 것이다.

『世宗實錄』 권 11, 세종 3년 3월 24일 두 번째 기사(庚子字 제작 관련)

- ㉠-1 前此印冊，列字於銅板，鎔寫黃蠟堅凝，然後印之，故費蠟甚多，而一日所印，不過數紙，
- ㉠-2 改鑄銅板與字樣相準，不暇鎔蠟，而字不移，却甚楷正，一日可印數十百紙。

『世宗實錄』 권 65, 세종 16년 7월 2일 첫 번째 기사(甲寅字 제작 관련)

- ㉡-1 但因草創，製造未精，每當印書，必先以蠟布於板底，而後植字於其上。然蠟性本柔，植字未固，纔印數紙，字有遷動，多致偏倚，隨即均正，印者病之。
- ㉡-2 予念此弊，曾命卿改造，卿亦以爲難。予強之，卿乃運智，造板鑄字，竝皆平正牢固，不待用蠟，印出雖多，字不偏倚，予甚嘉之。

成俔 『慵齋叢話』 권 7

- ㉢-1 始者不知列字之法，融蠟於板，以字着之，以是庚子字，尾皆如錐。
- ㉢-2 其後始用竹木填充之術，以無融蠟之費，始知人之用巧無窮也。

25) 大内田貞郎·高部萃子, 1987, 「朝鮮古活字版に想うこと—特に活字の形狀と植字版を中心に」, 『ビブリア』 89쪽에서 T. F. Carter의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일본어 번역본 藪内清 等 譯注, 1978, 『中國の印刷術』, 平凡社 東洋文庫 316, 한국어 번역본 강순애·송일기 공역, 1995, 『인쇄문화사』, 아세아문화사) 4부 '활자에 의한 인쇄'에서 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활자 인쇄 기법을 畢昇式과 王禎式으로 이분하였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조선식을 畢昇式, 즉 부착식, 일본식을 王禎式, 즉 조립식으로 상정하고 후자는 서구 인쇄 기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大内田貞郎, 2000 및 2005, 2009, 앞의 글 등에서 이러한 주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갔다. 森上修 역시 森上修·山口忠南, 1991, 앞의 글 등에서 일본 고향자판이 키리시탄판의 인쇄 방식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世宗實錄』 권 69, 세종 17년 8월 24일 첫 번째 기사

④-1 本國鑄字用蠟, 功頗多,

④-2 後改鑄字, 四隅方正, 其鑄字體制二樣矣. 中朝鑄字字體印出施爲, 備細訪問.

위 사료 ①-1, ②-1, ③-1, ④-1에서 조선 초기 금속활자의 조판 방식이 식자판에 蠟을 녹여 붓고 거기에 활자를 심는 방식, 이른바 부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①-2, ②-2, ③-2, ④-2에서는 활자의 형태 또는 조판 방식에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蠟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③-2에서는 蠟을 사용하지 않고 竹木을 사용하여 빈 곳을 메웠음을 알 수 있다. 즉 더 이상 부착식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大內田貞郎은 조선 초기에 사용된 부착식 조판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도중에 蠟을 녹여 붓는 방식만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러한 주장은 사료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인쇄 도중에 밀랍을 녹여 부었다는 것은 ①-1의 “列字於銅板, 鎔寫黃蠟堅凝, 然後印之”를 “(밀랍을 녹여 부은 다음) 동판에 활자를 배열하고 황랍을 녹여 부어 굳힌 후 인쇄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즉 ①-1에서 동판에 활자를 배열하기 전에 밀랍을 녹여 부었다는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②-1, ③-1에서는 먼저 印版 바닥에 밀랍을 깔 후 그 위에 植字를 한다고 명확하게 서술하였고, 동시에 활자를 배열한 후에 밀랍을 붓는다는 내용은 없다. ①-1에서는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②-1, ③-1에서는 뒤의 과정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列字於銅板, 鎔寫黃蠟堅凝, 然後印之”를 “동판에 활자를 배열하되, (먼저) 밀랍을 (동판에) 녹여 부어 단단하게 한 후 인쇄한다”라는 해석이 보다 이치에 맞는 것이다. 더욱이 중간에 밀랍을 녹여 부으면 식힐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활자가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자면에 도포되지 않도록 밀랍을 주입하는 일도 쉽

26) 大內田貞郎·高部萃子, 1987, 앞의 글, 40~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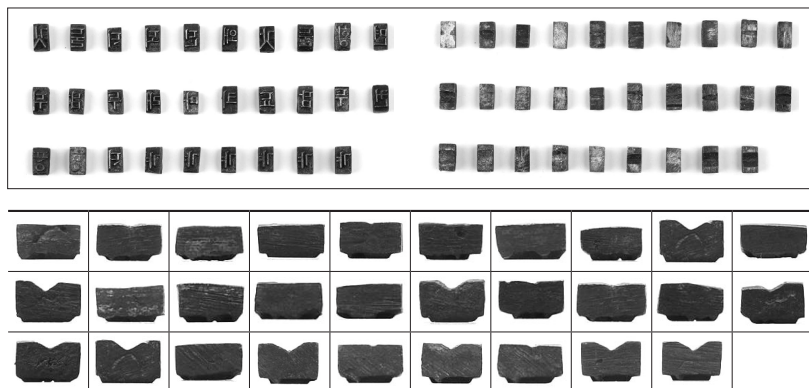
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활자 조판 방식은 식자판에 밀랍을 까는 부착식이 계속 유지되었고 초기에는 조판 후 다시 밀랍을 부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식자판에 고착제를 까는 것은 활자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癸未字가 어떤 모양인지는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고 실물도 전하지 않는다. 1420년(세종 3)에 제작된 庚子字에 대해 ③-1에서는 활자의 뒷면이 錐의 형태였다고 하였는데, ①-2에서는 “改鑄銅板與字樣相準”이라 하여 활자의 구체적인 모양은 기록하지 않고 동판과 글자 모양이 서로 맞다고 하였다. 역시 실물이 전하지 않으므로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③-1과 ①-2의 묘사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기록이며 활자 주조 당시의 기록이 아닌 ③-1보다 ①-2 實錄의 기록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경자자의 뒷면이 錐의 형태였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활자가 만들어진 당대에 살았던 卞季良도 처음 주조한 활자, 즉 계미자의 모양이 좋지 않았고 새로 주조한 경자자가 모양이 매우 정지하다고 하였으므로²⁷⁾ 錐의 형태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慵齋叢話』의 활자 관련 다른 내용들이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만큼 활자의 뒷면이 錐의 형태였다는 기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錐形 활자는 계미자인데 경자자로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²⁸⁾ 계미자 또는 경자자의 뒷면이 錐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印版 바닥에 고착제를 깔지 않고는 바로 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②-2 “造板鑄字，竝皆平正牢固”，④-2 “後改鑄字，四隅平正”과

27) 『世宗實錄』 권18, 세종 4년 10월 29일. “然其始鑄，字樣有未盡善者，印書者病其功不易就，永樂庚子冬十有一月，我殿下發於宸衷，命工曹參判臣李藏，新鑄字樣，極爲精緻，(中略)印者便之，而一日所印，多至二十餘紙矣”.

28) 成俔, 『慵齋叢話(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권7에서 癸未字를 丁亥字라 기록하여 제작 연대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成俔의 생존 당시의 일이 아니라 傳聞에 의한 기록이어서 이처럼 불명확하게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천혜봉, 2006, 『한국서지학(개정판)』, 민음사, 288~300쪽에서는 계미자를 끝이 둥근 錐形, 庚子字를 네 면을 낸 錐形活字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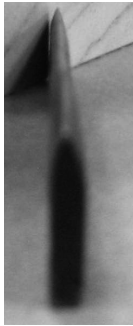
〈도판 1〉 을해자병용 한글 금속활자 앞면, 뒷면, 옆면

같이 1434년에 제작한 甲寅字에 이르러서는 활자와 조판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역시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네 모서리가 평평하여 밀랍이 없어도 植字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 가운데 1455년에 주조된 乙亥字 併用 한글 금속활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이 활자는 직육면체에 가까우며 뒷면은 평평한 것이 주를 이루고 일부는 세모꼴 홈이 파여 있다(도판 1). 활자의 형태로 보아 식자판에 고착제를 깔지 않고 空木으로 빈 곳을 채우는 방식으로 조판해도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갑인자와 을해자는 임진왜란 이전에 가장 널리 쓰인 금속활자이며 두 활자가 함께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갑인자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四隅平正”은 활자의 모양이 네모 반듯했음을 뜻할 것이다.

다음으로 식자판의 조립 방법을 검토해보자. 현존 계미자 인본으로 판단할 때 식자판의 네 모서리와 계선이 고정되어 있고 1행의 글자 수에도 다소 출입이 있어 활자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된 식자판

29) 이재정, 200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 국립중앙박물관 편,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236~251쪽.



〈도판 2〉
駿河版 활자의
계선 옆면

에 밀랍을 깔고 활자를 부착하여 조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자자 이후부터는 四周 固定式 植字版이 사용되지 않고 일본의 고탄자본과 마찬가지로 사주와 계선을 조립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종종 확인된다.³⁰⁾

三上修는 16세기 再鑄甲寅字本の 印面을 통해 조선의 활자판은 界線과 魚尾는 판마다 조립했으나 四周는 고정되었으며 활자도 부착식임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활자의 획 끝이 계선에 닿아 있는 현상이 보이는 점, 비뚤어진 글자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³¹⁾ 三上修는 조선 활자판의 계선을 일본의 銅活字인 駿河版 활자의 계선과 마찬가지로 尖頭形으로 주조한 것으로 보았다(도판 2). 그리고 첨두형 계선의 끝에 활자가 닿아 있는 현상은 활자의 옆면이 수직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조선 활자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台形이고 이런 활자로는 조립식 조판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이와 같은 모양의 조선 말기 목활자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 전기 활자의 형태 및 조선 인판의 계선 형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활자 조판시에 사용된 계선은 駿河版 활자의 계선과 달리 얇게 두드려 만들었다.³²⁾ 이런 계선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조판하려면 활자 옆면이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도판 1〉과 같이 15세기에 주조한 조선 활자의 옆면도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다. 三上修가 지적한 활자의 획 끝이 계선과 맞물린 현상은 오히려 활자와 계선이 꼭 맞도록 조립식으로 조판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비뚤어진 글자의 존재를 부착식 조판의 증거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조립

30) 천혜봉, 1990, 『韓國典籍印刷史』, 범우사, 232~233쪽에 소개된 庚子字本 『資治通鑑綱目』과 『文選』에서 조립식 흔적이 보인다.

31) 森上修·山口忠南, 1991, 앞의 글, 42~44쪽.

32) 『顯宗實錄撰修廳儀軌(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의궤 원문서비스)』, 丙辰(1676년) 4월 13일자 기록에 따르면 圍裏銅印札은 打造하였다. 이는 17세기의 기록이지만 조선 시대 印本の 계선 인쇄 상태로 볼 때 조선 전기부터 이런 방식으로 계선을 제작한 것이 분명하다.

식 조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王禎도 印版 내에 활자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竹片을 사이에 넣어 고정시킨다고 하였는데,³³⁾ 이 방식은 ③-2 『慵齋叢話』 “其後始用竹木填空之術, 以無融蠟之費”와 다를 바 없다.

三上修나 大內田貞郎이 조선 활자가 부착식이었다는 증거로 제시한 활자와 식자판은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다. 조선 후기의 활자 및 조판 방식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활자 형태 및 조판 방식을 논한 것은 조선의 인쇄술에 변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고려가 금속활자를 제작할 당시에는 畢昇의 부착식 활자 제작 및 조판 방식이 들어왔고 王禎의 조립식 조판 방식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부착식만 줄곧 사용했다는 것이다.³⁴⁾ 하지만 세종은 활자를 개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④-2에서 보듯이 중국의 인쇄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543년(중종 38)에 국왕이 승정원에 王禎의 『農書』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³⁵⁾ 『農書』는 그 이전에 조선에 수입되었음이 분명하여, 『農書』에 나와 있는 활자 제작 방식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③-2 “其後始用竹木填空之術, 以無融蠟之費”도 王禎의 『農書』에 기술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위 두 연구자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四周와 界線이 연결된 식자판을 부착식의 예로 들었는데, 이는 같은 활자를 사용하여 찍는 책이 많아지면서 처음부터 규격화시켜 조립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³⁶⁾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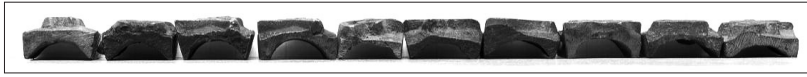
현존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금속활자는 대부분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뒷면에 둥근 홈이 파인 형태이다. 민간에서 제작한 목활자도 크기가

33) 王禎, 『農書』, 「造活字印書法」作 盜案字刷印法에 “先用刀削下諸樣小竹片, 以別器盛貯, 如有低邪, 隨字形衬菴”(徐億農, 2002, 『中國版本文化叢書 活字本』, 江蘇古籍出版社, 17쪽에서 재인용)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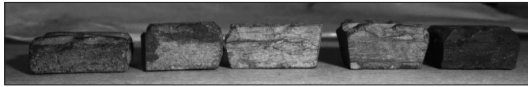
34) 大內田貞郎·高部萃子, 1987, 앞의 글, 40~45쪽.

35) 『中宗實錄』 권101, 중종 38년 11월 5일. “以東魯王氏農書, 下于政院曰: 農桑, 灌溉之事, 備在其中, 開刊廣布, 使民庶皆得見之, 則至爲美矣. 開刊與否, 議于大提學成世昌, 以啓.”

36) 청주고인쇄박물관 편, 2008,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고인쇄박물관, 28~29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壬辰字 大字(18세기 제작)의 옆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목활자의 옆면

〈도판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금속활자와 목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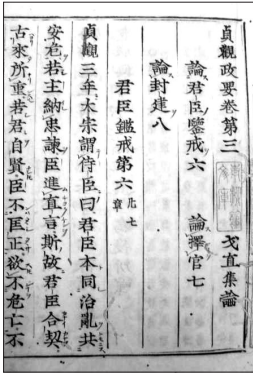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옆면이 斜線인 경우가 많다(도판 3). 이런 형태의 활자들은 평평한 바닥에 그대로 배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796년(정조 20)에 整理字를 제작한 후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기존의 활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조판할 때 젓은 종이를 붙여 활자의 수평을 맞추었다고 하였다.³⁷⁾ 그러나 여기에서도 밀랍을 녹여 부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반면 〈도판 1〉과 같이 15세기 활자는 뒷면이 평평하고 직육면체와 가까운 모양으로 조선 후기 활자와 다르다. 따라서 조선 후기 활자 조판 방식이 임진왜란 이전 방식과 같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구리를 절약하기 위해 활자 뒷면에 흙을 파면서 활자의 모양과 조판 방식에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³⁸⁾ 또한 整理字는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지만 기존의 활자에 비해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여 고착제 없이 충분히 조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시대 활자나 조판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았기에 고착제를 사용한 식자판이나 일부 조선 후기 활자의 형태로 임진왜란 이전 방식을 유추하는 것은 비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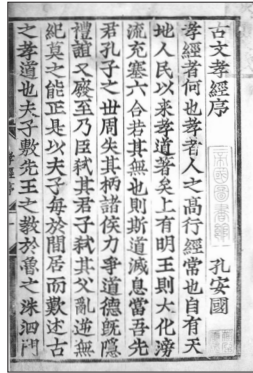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활자의 조판 방식을 부착식과 조립식으로 이분하여, 조선 활자판은 부착식, 일본 고활자판은 王禎의 조립식이었고, 따라서 일본의 활자 인쇄 기법은 조선에서 기원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비역사적이며 도식적인 설명이

37) 이재정, 2010, 「정조의 生生字·整理字 제작과 중국활자 구입」, 『한국사연구』 151.

38) 청주고인쇄박물관편, 2008, 앞의 책, 28~29쪽; 천혜봉, 1990, 앞의 책, 361~264 쪽에서는 조선 활자 조판법에서 부착식과 조립식의 변천에 대해 언급하였다.



4-1 伏見版『貞觀政要』,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번호 H-176



4-2 慶長勅版『古文孝經』,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7-7



4-3 坊刻本『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實』(1609년 간행),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7-99

〈도판 4〉 일본 고활자본의 몇 가지 형태

라고 생각된다. 중국 조판법을 두 계열로 구분한 카터(T. F. Carter)도 부착식은 조선에, 조립식은 서양에 또는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지 않았다. 다만 두 방식을 이은 것이 구텐베르크보다 반세기 이전에 조선의 왕실이 응용한 동활자라고 했을 뿐이다.³⁹⁾ 인쇄 방식을 부착식 아니면 조립식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두 방식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현존 일본 고활자 및 印本을 보면 王禎의 방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駿河版 銅活字나 1599년 德川家康의 명으로 圓光寺의 閑室元佶이 만든 伏見版 木活字와 기타 사찰 소장 활자들은 모두 조선 활자에 비해 규격이 일정하며 활자의 높이가 높다. 인쇄본도 조선본에 비해 글자와 글자 사이 여백이 많고 가로줄이 가지런한 편이다⁴⁰⁾(도판 4-1). 그러나 일본 고활자본 가운데는

39) 강순애·송일기 공역, 1995, 앞의 책, 283쪽.

40) 渡邊守邦外, 2002, 『寛永寺藏天海版木活字を中心とした出版文化財の調査・分類・保存に関する総合的研究』, 科學研究費基盤研究((A)(1) 平成 10年~13年度 研究成果報告書, 實踐女子大學文學部;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科,

가로선이 가지런하지 않은 예도 있어 일본 고허자가 모두 동일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판 4-2, 4-3). 다시 말해 인쇄 방식을 이분법으로 분류하면 일본 고허자본 역시 조립식과는 맞지 않은 예가 있다.

또한 조립식 활자 인쇄 기법이 중국에서 수용된 것이 아니라 키리시탄판의 방식이라는 주장⁴¹⁾ 자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大内田貞郎은 일본 목판공들이 목활자를 父型으로 하여 키리시탄판의 일본어본(國字本) 활자를 제작하였으며, 이들이 다시 京都로 가서 고허자본을 제작하였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일본 고허자본의 인쇄 방식이 키리시탄판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의 여지가 많다.⁴³⁾

고활자본이 성행하기 이전에 일본에서는 중국 원나라 俞良甫 등 刻工들이 활동하였고, 일본 목판공들도 중국 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駿河版 銅活字와 伏見版 활자를 만들 때 관여했던 林五官이 중국 사람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⁴⁴⁾을 볼 때 키리시탄판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王禎의 목활자 인쇄술을 이미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조립식을 곧 서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위그루 활자도 왕정식으로 조판되었으며 조선 활자도 활자의 높이에는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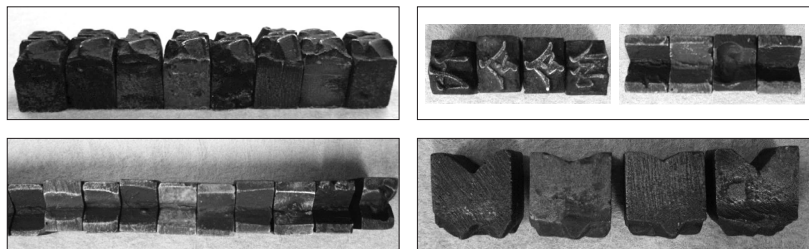
2000,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 滋賀縣教育委員會發行; 京都府教育委員會編, 1991, 『圓光寺所藏伏見版木活字關係歷史資料調査報告書』, 京都府教育委員會.

41) 大内田貞郎, 2005, 앞의 글, 50쪽에서 일본 활자 인쇄 기법이 중국으로부터 王禎의 인쇄 기법을 직접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들어온 인쇄기는 왕정의 원리와 동일한 서구계 인쇄기를 모방한 것이라 하였다.

42) 大内田貞郎, 2009, 앞의 글, 33~53쪽.

43) 大内田貞郎, 2009, 위의 글에서 일본 문자를 처음부터 일본 목판 인쇄공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豊島正之, 2010, 「前期キリシタン版の漢字活字について」, 『國語と國文學』 87, 52~53쪽에서 초기 大字 國字本은 유럽에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초기본과 후기본 사이의 공백을 京都에 勅版을 제작하러 간 기간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다. 또 大内田貞郎은 키리시탄판 활자의 父型을 목활자로 가정하였으나 이 역시 반론이 있다.(大内田貞郎, 2009, 위의 글, 21~22쪽)

44) 木宮泰彦, 1932, 앞의 책, 258~268쪽; 百瀬宏, 2000, 앞의 글, 68~69쪽.



〈도판 5〉 일본 駿河版 동활자(凸版印刷博物館 소장)의 앞면, 옆면, 뒷면(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복제품)

있지만 조판 방식은 조립식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서구의 인쇄술을 구분하는 보다 중요한 원리는 부착식이나 조립식이나가 아니라 활자의 제작 방식 및 인출 방식이다.⁴⁵⁾ 서양의 활자 주조 방식은 하나씩 개별로 주조하는 것이지만, 일본 駿河版 활자의 주조 방식은 목재로 만든 여러 개의 父字로 모래 거푸집을 만든 뒤 동합금을 거푸집에 녹여 부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선 동활자 주조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⁴⁶⁾ 〈도판 5〉와 같이 駿河版 활자의 모양도 조선 전기 활자인 乙亥字와 높이는 다르지만, 〈도판 1〉 乙亥字併用 한글 금속활자의 형태와 비교하면 뒷면에 삼각형 홈이 파인 형태가 매우 비슷하여 조선 동활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고활자본의 인출 방식도 서양과 같이 프레스 인쇄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판 인쇄에서부터 계속되어왔던 방식으로 和紙에 동양식 인쇄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版心이나 界線, 책의 형태, 글자체도 키리시탄판과 고활자판은 현저히 다르다. 일본 문자로 된 키리시탄판의 경우 판형, 책의 형태, 종이 등에서 동양식을 따르고 있지만,⁴⁷⁾ 이는 키리시탄판이 동양의 전통적 형식을 따른 사례라고 생각된다.

45) 강순애·송일기 공역, 1995, 앞의 책, 266쪽. 카터는 중국에 결여되었고 쿠텐베르크가 발명하였던 것으로 이 두 가지에 표음문자인 알파벳을 추가하였다.

46) 百瀬宏, 2000, 앞의 글, 94~104쪽.

47) 1599년에 간행한 『ぎやどべかとる』와 1598년에 간행한 『落葉集』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일본 고타자본이 키리시탄판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일본 고타자가 이른바 藥研形(藥研彫)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약연형은 활자의 글자면을 깊이 새기고 옆면 역시 산의 경사면과 같은 모습인 것을 뜻한다⁴⁸⁾(도판 5 참조). 그리고 이것이 서양 활자의 父型(punch)과 유사한 형태라 하여 이를 서양식 활자를 모방한 중요 증거로 제시하였다.⁴⁹⁾ 하지만 이 역시 반론의 여지가 많다. 첫째, 일본 고타자가 모두 약연형인 것은 아니다.⁵⁰⁾ 약연형 활자는 인쇄했을 때 伏見版 활자처럼 자간에 여백이 많은데, 일본 고타자본 가운데는 글자의 위아래가 맞물려 약연형 활자로 인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도판 4-2, 4-3 참조).

둘째, 서양 활자의 父型이 일본 고타자의 약연형과 유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두 활자의 제작 방식의 연원이 같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일본 유일 금속활자인 駿河版 활자의 주요 방식은 서양식이 아니라 조선식이며, 駿河版 활자를 제외한 나머지 활자들은 목활자이므로 서양의 금속활자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약연형 활자는 활자 하나하나의 형태로 나무토막을 자른 후 글자를 새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는 판목에 먼저 글자를 새긴 후 날개 활자 형태로 四邊을 자르는 방식으로 제작된 왕정의 활자 제작 방식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⁵¹⁾ 하지만 足利 시대인 1386년에 간행된 『鹽山和泥合水集』 판목에 藥研彫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⁵²⁾ 일본 고타자의 약연형의 기원을 오히려 일본의 목판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 고타자본의 제작에서 기존의 목판 제작 전통의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⁵³⁾

48) 藥研彫에 대해서는 百瀬宏, 2000, 앞의 글, 90쪽.

49) 大内田貞郎, 2009, 앞의 글, 56~57쪽.

50) 水上文義, 「天海版一切經木活字の種類と特色」, 渡邊守邦外, 2002, 앞의 책 18쪽에서 天海版一切經木活字는 전체적으로 알게 새겨 藥研彫이 아니며, 이는 根本인 宋版一切經の字體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였다.

51) 大内田貞郎, 2009, 앞의 글, 57~58쪽.

52) 百瀬宏, 2000, 앞의 글, 91쪽.

53) 川瀬一馬, 1967, 앞의 책(상), 161쪽.

약연형 활자의 기원을 서양 활자에서 찾는 등 고활자본의 기원을 키리시탄판과 연결시키려는 논리는 새로운 문화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었던 일본의 특성이나 전통의 영향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嵯峨本 등에서 보이는 連綿體 活字를 키리시탄판 연면체 일본 문자본과 연결시켜 서양 알파벳의 횡폭이 신축 가능한 것, 合字(ligature)의 존재에서 유래했다고 본 것⁵⁴⁾ 역시 그러한 예이다. 두 글자 이상을 연결하여 만든 활자는 조선의 활자본에서도 흔히 사용되었으며, <도판 6> 1520년대 목판본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陰刻된 글자들



<도판 6>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의 陰刻活字 모습

에서 보듯이 連刻된 활자는 목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⁵⁵⁾ 연면체 일본어 활자를 제작하게 된 것은 중래의 전통인 書寫體를 활자본에서도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駿河版 활자 조판에 쓰인 尖頭形 界線 역시 조선의 界線과 다르며 서양식과도 달라 일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天海版 목활자의 罫線材도 이런 형태이다.⁵⁶⁾ 이는 글자의 행과 행 사이에 여백을 두어 墨書注記를 써 넣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활자 인쇄 기법을 부착식과 조립식으로 이분하여, 일본 고활자본의 기원을 키리시탄판 방식에서 찾는 것은 오류가 많다. 또한 조선 활자에 대한 잘못된 자료 사용과 사료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선 활자 인쇄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⁵⁷⁾ 서양

54) 大内田貞郎, 2009, 앞의 글, 52쪽.

55) 木宮泰彦, 1932, 앞의 책, 356~359쪽. 川瀬一馬, 1967, 앞의 책, 2편 2장에서 서양의 기법을 거치지 않아도 連續式의 平假名 고활자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하였다.

56) 渡邊守邦外, 2002, 앞의 책, 25쪽.

57) 小秋元段, 2010, 앞의 글, 234~235쪽에서도 이원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이원론에 따르면 일본 고활자판의 연원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의 영향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의 활자 인쇄 방식에서 배우되 중국이나 서양 또는 전통 방식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일본 고활자본에 나타난 조선 활자본의 영향

慶長勅版의 간행과 함께 일본에서는 京洛과 지방의 여러 사찰,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에 의한 출판, 개인 출판 등으로 다양한 고활자본이 간행되었다.⁵⁸⁾ 이때 간행된 일본 고활자본은 版式이나 裝幀, 글자의 모양 등 외형적인 면에서 조선 서적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 중세기의 서적들은 표지가 얇은데 고활자본의 표지는 두터운 종이로 바뀌고 문양이 있으며, 표지 안쪽에 배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지의 장정 방식도 五針眼釘法이 많다. 이러한 외형적인 유사성은 조선 판본을 고활자본 간행의 저본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⁵⁹⁾

하지만 개별 간본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조선 서적의 영향을 언급한 예는 많지 않으며, 또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596년 小瀬甫庵이 京都西洞院勘解由小路南町에서 간행한 『標題徐壯元補注蒙求』의 글자체

58)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1989,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汲古書院, 解説 I 「古活字版の系譜」, 403~422쪽.

59) 川瀬一馬, 1967, 앞의 책, 370~371쪽; 大内田貞郎·辻本雅英, 1989, 「本館所藏君臣圖像の版種について」, 『ビブリア』 93, 42쪽; 天理圖書館編, 1977, 『日本の古活字本』(天理ギャラリー第46回展, 東京 天理館, 도판 3 부분에서 文祿時代 인쇄 기술은 조선의 방식에 의하면서도 활자체는 內典(佛經)은 春日版 이래의 전통에 따라 일본식 寫經體이고 外傳은 조선본 또는 唐本을 모범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유타일, 2002, 「日本 江戸時代간행 韓國文獻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8; 이 유리, 2011,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은 江戸 시대 일본 간행 조선본 전반을 다루었다.

를 대소자 모두 조선풍, 특히 대자는 조선 갑인자에 가깝고 판면 처리도 이 종류의 조선본과 유사하다고 보았다.⁶⁰⁾ 그러나 이 책의 판식은 일반적인 조선 활자본과는 차이가 있으며 대자가 갑인자에 가깝다고 한 것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慶長 연간에 간행된 『君臣圖像』의 서체와 인쇄 방식이 조선본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나⁶¹⁾ 구체적으로 어떤 판본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글자체나 판식 면에서 조선본과 더 유사한 판본에 대해서는 조선본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았다.⁶²⁾

이 장에서는 일본 고향활자의 서체와 판식을 중심으로 조선 활자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_ 癸未字體 印本

계미자는 1403년 주조된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로 글자체는 南宋 판본, 그 중에서도 建安 판본을 모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⁶³⁾ 건안본 서체의 특징인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으며 새김이 예리하고 가로획이 오른쪽으로 올라간 것, 필획에 모진 것이 많은 것 등⁶⁴⁾이 계미자의 특징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계미자본으로는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宋朝表牋總類』·『十七史纂古今通要』·『纂圖互註周禮』·『通鑑續編』·『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陶隱先生詩集』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일본에 있는 것은 『纂圖互註周禮』(권1, 2)와 『十七史纂古今通要』(권11, 12) 2종이다.⁶⁵⁾

60) 天理圖書館編, 1967, 위의 책, 도판 2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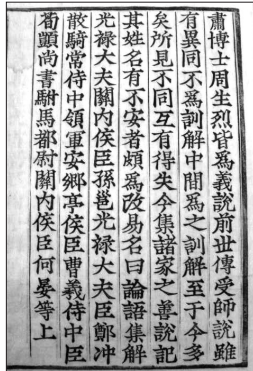
61) 大内田貞郎·辻本雅英, 앞의 글, 42쪽.

62) 예를 들어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1989, 앞의 책, 도판 158 『小學集說』 林羅山手澤本の 경우 『君臣圖像』의 글자체인 乙亥字體와 유사하며 판식도 조선본에 가까우나 이 책에 대한 해설에는 조선본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63) 藤本幸夫, 2012, 「日本現存癸未字活字印本纂圖互註周禮卷1, 2について」,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동아시아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217~218쪽.

64) 張麗娟·程有慶, 2002, 『中國版本文化叢書 宋本』, 江蘇古籍出版社, 37쪽.

65) 현존 계미자본에 대해서는 천혜봉, 2006, 『한국서지학(개정판)』, 민음사, 288~295



慶長勅版 『論語』,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번호 H-169

계미자본 『纂圖互註周禮』,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36-1

〈도판 7〉 慶長勅版과 계미자본 비교

일본 고향자본 가운데 계미자와 글씨체가 유사한 것이 慶長勅版이다.⁶⁶⁾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글자의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계미자의 크기는 글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로 1.35cm, 가로 1.7cm 정도이다. 이에 비해 慶長勅版의 활자 크기는 세로 1.5cm, 가로 1.8cm 정도로 추정된다.⁶⁷⁾ 〈도판 7〉과 같이 계미자본과 慶長勅版의 글자 크기나 글자체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慶長勅版은 광곽이 上下單邊, 左右雙邊인데 일본 고향자본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 조선 고향자본 역시 계미자본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자자 이후 조선 전기본은 대부분 四周雙邊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좌우는 쌍변, 상하는 단변인 경우는 없다. 또한 慶長勅版은 半廓 8행 17

쪽; 심우준, 1985,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찬도호주주례의 판본」, 『일본전존한국일서연구』, 일지사, 110쪽; 藤本幸夫, 2012, 앞의 글, 211~212쪽.

66) 천혜봉, 1990, 앞의 책, 294쪽에서는 慶長勅版을 계미자체라고 하였다. 손보기, 1987, 앞의 글, 4쪽에서는 慶長勅版을 조선에서 가져간 계미자 계통의 활자로 찍었다고 하였다.

67) 慶長勅版 목활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森上修·山口忠南, 1990, 앞의 글, 162~163쪽.

자이며 현존하는 계미자본 역시 자수에 약간의 출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8행 17자이다.⁶⁸⁾ 즉 慶長勅版은 계미자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글자의 형태나 판식이 유사하다. 이는 慶長勅版이 계미자본을 염두에 두고 이를 모방하려 했음을 추정하게 한다. 『錦繡段』의 刊記에 “此規模頃出朝鮮，傳達天聽，乃依彼樣，使工摹寫焉”이라 한 것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계미자본 『纂圖互註周禮』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들어가 德川家康을 거쳐 閑室元佶에게 전해진 책이다.⁶⁹⁾ 閑室元佶은 1599년 德川家康의 명에 의해 伏見版 木活字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다. 일본 고활자 제작에 관여하였던 德川家康과 閑室元佶이 계미자본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慶長勅版이 계미자본을 저본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2_ 甲寅字體 印本

갑인자는 1434년 세종의 명으로 제작된 활자로 明板 『爲善陰鷲』·『孝順事實』 등을 글자본으로 삼고 모자라는 글자는 후에 世祖가 되는 晋陽大君이 明板의 글씨체와 닮게 썼다고 한다.⁷⁰⁾ 그러나 상세히 보면 명판의 글씨보다 우아하고 기백이 있다.⁷¹⁾ 일본 고활자본 가운데 갑인자체로 간행된 것이 다수 남아 있다. 일본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에 수록된 도판으로 확인한 결과 갑인자체의 판본은 도판 49 『年代紀略』(小瀬甫菴 考, 慶長 17: 1612년 간행), 도판 53 『前關白秀吉公御檢地帳之目錄』(小瀬甫菴編, 慶長 15: 1610년 간행), 도판 141 『詩經』(慶長 연간 간행), 도판 142 『春秋經』(慶長 연간 간행),

68) 천혜봉, 1990, 앞의 책; 한국도서관학회편, 1976, 『韓國古印刷史』, 三和印刷株式會社の 계미자와 경자자 판본.

69) 藤本幸夫, 2012, 앞의 글, 219~224쪽.

70) 『世宗實錄』 권65, 세종 16년 7월 2일. “出經筵所藏孝順事實，爲善陰鷲，論語等書爲字本，其所不足，命晋陽大君琛書之，鑄至二十有餘萬字”.

71) 田川孝三, 1972, 앞의 글, 165쪽.



『古文尚書』(1609년 간행 추정),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번호 H 497-1~4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真寶』(1609년 간행),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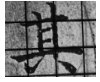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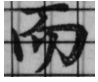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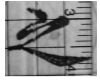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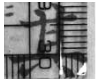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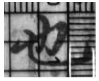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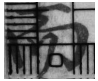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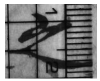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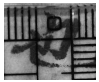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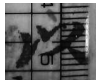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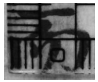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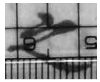
갑인자본 『御製文集』(16세기 중반간행),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820-4

〈도판 8〉 갑인자체 일본 고활자본과 갑인자본의 비교

도판 175 『蒙求付胡曾詠史詩』(慶長 元和 연간 간행), 도판 187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真寶』(慶長 14: 1609년 간행) 등이다.⁷²⁾

이 밖에 慶長 연간에 활약한 각공 下村生藏이 刊行한 『論語』·『孟子』·『中庸』·『大學』은 모두 四周雙邊 7행 17자의 동일한 판식이며 글자체도 모두 갑인자체이다.⁷³⁾ 『古文尚書』와 『長恨歌 琵琶行』⁷⁴⁾, 潤輦祖博이 간행한 『醫方大成論』(慶長 9: 1609년 간행)⁷⁵⁾ 역시 갑인자체이다.

72)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1989, 앞의 책, 해제 및 도판.
 73) 川瀨一馬, 1967, 앞의 책, 376~379쪽, 書影은 『增補古活字版之研究』 하책의 71, 73, 74쪽 참조. 下村生藏 刊本 四書는 川瀨一馬의 분류에 따르면 『論語』無刊記本 제 3종, 『孟子』제 2종, 『中庸章句』제 2종이다. 高橋智, 1996, 「慶長刊論語集解の研究」; 高橋智, 1998, 「慶長刊大學中庸章句の研究」, 『斯道文庫論集』 30, 32에 동일한 판식과 활자의 下村生藏이 간행한 『大學』도 소개되어 있다. 下村生藏의 刻工說은 국회도서관 소장 『元亨釋書』(1605년(경장 10) 간행, 청구기호 WA7-187) 해제 참조. 이 책의 글자체는 四書의 글자체와는 다르다.
 74) 川瀨一馬, 1967, 앞의 책(상), 373쪽의 『古文尚書』의 2형과 4형(書影은 川瀨一馬, 앞의 책 하도판 67쪽 참조), 『長恨歌 琵琶行』의 2형과 7형(상 393쪽, 중 804쪽, 하도판) 286쪽 참조)이 갑인자체이다.
 75) 天理圖書館編, 2011, 『天理圖書館開館80周年記念特別展: 新収稀覯本を中心

『大學衍義』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권27 1 좌10	권27 1 좌6	권27 1 좌6	권27 1 좌6	권27 1 좌5
『長恨歌傳』 일본 국립역사민속박 물관 소장, 자료번호 H-500					
	長恨歌傳 2 좌2	野馬臺 4 좌5	長恨歌傳 1 좌4	野馬臺 3 우5	野馬臺 6 좌2
『古文尙書』 일본 국립역사민속박 물관 소장, 자료번호 H 497					
	권1 序3 좌7	권1 序1 좌2	권1 堯典3 좌6	권2 8 좌7	권1 序1 좌3

〈도판 9〉 갑인자체 일본 고헤자본과 갑인자본의 글자 비교

이들 판본은 行字數가 조선 갑인자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판식 부분은 대체로 花紋魚尾가 많아 갑인자체와 판식이 유사하다. 〈도판 8〉 『古文尙書』와 『古文眞寶』는 上下 黒口, 三葉花紋魚尾로 16세기 중반 갑인자본 『御製文集』과 판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古文尙書』, 『長恨歌傳』과 갑인자본 『大學衍義』의 같은 글자를 추출하여 상세히 비교한 결과 글자의 크기와 형태가 매우 비슷함을 확인하였다(도판 9).⁷⁶⁾

이 서적들이 갑인자체로 제작되고 책의 형태도 대부분 조선본과 유사한 것은 조선본을 저본으로 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年代紀略』과 『前關白秀吉公御檢地帳之目錄』은 小瀬甫菴이 편찬에 관여하였

に』, 東京: 天理ギャラリー, 5 도판 24. 潤轍祖博에게 대해서는 조형진, 2013, 「日本 要法寺版 및 潤轍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서지학연구』 55.

76) 『大學衍義』는 천혜봉, 1990, 앞의 책, 235쪽 도판 107에 수록된 誠庵古書博物館 소장 초주갑인자본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의 첫째 면에서 뽑았다. “권27 1 좌10”은 권27 첫 번째 장의 좌면(앞면)의 10행에 있는 글자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자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長恨歌傳』은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본으로 『長恨歌傳, 長恨歌 琵琶行, 野馬臺詩』를 합철한 것이다.

는데, 그는 고헤자본의 초기 제작자로서 조선본을 소장하거나 인쇄 방식을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⁷⁷⁾

澗輻祖博은 直江兼統의 측근이며 直江兼統이 조선에 출병할 때 豊臣秀吉을 통하여 만났다고 한다. 그는 조선에서 활자 인쇄에 주목하여 그 기술을 일본에 도입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⁷⁸⁾ 또 『醫方大成論』이 小瀬甫菴이 간행한 『十四經發揮』와 매우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小瀬甫菴과도 연관되어 있었을 듯하다.⁷⁹⁾

『詩經』과 『春秋經』은 藤原惺窩의 手澤本이다. 藤原惺窩은 일본 근세 유학의 원조이며 徳川家康에게 儒學을 강의한 사람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유학자 姜沆과 밀접하게 교류하였고, 그로부터 유학을 배웠다고 한다.⁸⁰⁾ 이런 배경을 가진 藤原惺窩가 갑인자본의 글자체와 같고 판식도 유사한 서적을 소장했다는 것은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 조선 활자나 서적, 특히 갑인자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본을 바탕으로 갑인자체의 활자본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77) 이 책에는 「朝鮮國御進發之人數帳」, 「政要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辛基秀·仲尾宏, 1996, 『大系朝鮮通信使』 1, 明石書店, 80쪽에서는 이 책이 小瀬甫菴이 豊臣秀次로부터 임진왜란 때 약탈한 조선 목활자를 받아서 간행한 것으로 일본 최초의 목활자본이라고 하였다.

78) <http://www5.omn.ne.jp/~jidaikan/yone5.html>.

79) 天理圖書館編, 1973, 앞의 책, 도판 24 설명 참조.

80) 강항과 藤原惺窩의 관계는 이민우, 1985, 「壬辰倭亂期 姜沆의 賊中生活과 日本儒學」,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총 9; 신현승, 2009, 「17세기 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17.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포로에 대한 연구는 민덕기, 2008,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잔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한국사연구』 140; 김문자, 2004, 「임진·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3_ 乙亥字體 印本

일본 고활자본의 서체에는 갑인자체와 함께 을해자체가 종종 사용되었다. 을해자는 조선 전기 문인이자 대표적인 서예가인 姜希顔의 글씨를 글자본으로 하여 만든 활자로 조선 전기 다양한 서적의 인쇄에 사용되었다.

일본 고활자본 가운데 을해자체의 대표적인 책은 那波道円이 1618년(元和 4)에 간행한 『白氏文集』과 『倭名類聚鈔』이다. 那波道円은 江戸시대 초기의 유학자로 藤原惺窩의 門弟이며, 惺窩門四天王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로 유학의 보급과 출판 활동을 하였다.⁸¹⁾

〈도판 10〉에서 보는 것처럼 두 활자본의 글자체는 을해자체와 유사하다. 을해자본인 『杜工部詩』(16세기 간행 추정)의 같은 글자와 비교해 보면 양자의 유사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도판 11).

일본 고활자본 가운데는 이 두 책 외에도 을해자체로 간행된 책들이 있다.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에 수록된 것으로는 도판 7 『天台四教義集註』(慶長 5: 1600년), 도판 62 『寬永行幸記』(寬永 3: 1626년), 도판 115 『本朝文粹』(寬永 6: 1629년, 田中長左衛門 간행), 도판 130 『巨言抄』(元和 6: 1620년), 도판 153 『歷代君臣圖像』(慶長 연간), 도판 158 『小學集說』(慶長 연간, 林羅山 手澤本), 도판 178 『增續會通韻府群玉』(寬永 2: 1625년, 田中長左衛門 간행) 등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寬永 연간 간행 『雜問答』 역시 을해자체로 보인다.⁸²⁾ 이 가운데 『本朝文粹』에는 1629년(寬永 6) 林羅山

81) 那波道円에 대해서는 柴田純, 1981, 「那波活所と徳川頼宣—紀州藩教學の成立をめぐって」, 『日本歴史』 396; 柴田純, 1980, 「那波活所の思想」, 『日本史研究』 210; 柴田純, 1989, 「思想史における近世—那波活所の「人間學」から」, 『日本史研究』 327; 松下 忠, 1963, 「那波活所の學風と詩文論」, 『和歌山大學學芸學部紀要, 人文科學』 13.

82) 國立國會圖書館, 2013, 「新たな貴重書のご紹介」, 『國立國會圖書館月報』 630, 9 쪽에 따르면 이 책은 동일한 寬永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高野山 寶壽院 소장 고활자본과 형태가 달라 동시기에 적어도 2종류의 고활자본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倭名類聚鈔』,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7-10

『白氏文集』,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 7-76

『須溪先生批點杜工部詩』,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820-30

〈도판 10〉 那波道円 간행 을해자체 일본 고향자본과 을해자본의 비교

및 堀杏菴의 序가 있고 권14 말미에 같은 해 목판으로 찍은 那波道円의 抜이 있다.⁸³⁾ 林羅山과 堀杏菴은 那波道円과 함께 惺窩門四天王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한 『小學集說』은 林羅山의 手澤本이며 을해자본을 번각한 조선본 『小學集說』과 글자 모양이나 판식이 매우 비슷하여,⁸⁴⁾ 실제 을해자본을 보고 모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을해자체 고향자본 역시 조선의 유학 수용에 적극적인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들이 조선 활자본을 소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본과 동일한 서적을 제작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아가 『本朝文粹』은 『增續會通韻府群玉』과 함께 京都의 書肆 田中長左衛門이 간행한 것이어서 那波道円의 乙亥字體 활자가 당시 書肆의 활자 형태에 많이

83)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1989, 앞의 책, 해제 115.
 8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小學集說』(청구기호: 一簣古 181.1-J466s, 一簣古貴 181.1-J466s-v.6, 古貴 181.1346-J868s-v.4)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小學集說』(청구기호: 일산 귀 1256-6, 1256-7). 김두중, 1974, 앞의 책 293쪽에서도 『小學集說』이 을해자인본과 유사함을 언급하고 이 인본의 활자체가 조선활자의 字形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 和田萬吉의 견해도 소개하였다.

『倭名類聚鈔』	時	出	以	爲	此	見	有
	권3 15 우3	권3 16 우7	권3 15 우9	권3 17 우4	권3 19 좌8	권3 17 우8	권3 15 우7
『須溪先生批點 杜工部詩』	時	出	以	爲	此	見	有
	권상 5 좌9	리 좌4	리 좌3	리 좌8	리 좌4	권상 16 좌9	권상 7 좌7
『古文孝經』(17 세기 전반 간행) 국립역사민속박 물관 소장 자료번호H-499	時	出	以	爲	此	見	有
	序2 좌7	序2 우3	序1 좌3	序2 우6	序2 우6	三才章 第8 9 좌4	序1 좌3

〈도판 11〉 을해자체 일본 고헤자본과 을해자본의 글자 비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⁸⁵⁾

한편 〈도판 11〉의 『古文孝經』과 같이 을해자와 일치도는 떨어지지만 을해 자체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체도 있으며, 갑인자체에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 또 어떤 인본은 일률적으로 조선의 글자체 하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갑인자와 을해자체로 보이는 글자를 사용한 예도 있어, 일본 고헤자본 제작 시 조선의 금속활자의 글자체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4_ 활자 제작 방식 추정

일본 고헤자본이 판식, 장정, 글자의 모양 등에서 조선 활자본을 많은 부분 모방하고 있으며, 간행자나 소장자 등으로 볼 때도 조선 활자 인쇄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국 활자본의 모양은 완전히 일치

85) 國立國會圖書館, 2013, 「新たな貴重書のご紹介」, 8쪽에서 『增續會通韻府群玉』을 조선의 을해자본을 바탕으로 書肆 田中長左衛門이 목활자로 출판한 고헤자본이며 목활자는 원래의 금속활자를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하였다.

御製文集	古文眞寶
권11 좌5	권24 좌4

〈도판 12〉 갑인자와 갑인자체 일본 고향자의 於字 비교

하지 않으며, 활자의 모양도 일치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활자는 전체적으로 활자의 높이가 낮고 일본 활자에 비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일본 판본은 전체적으로 조선 판본에 비해 行間이 더 넓다. 그렇다면 일본 고향자는 어떻게 만든 것일까? 관련 기록이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도판 9〉처럼 일본 고향자본과 갑인자본의 글자의 크기나 획이 거의 일치하는 예는 갑인자본의 글자를 잘라내어 그대로 翻刻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즉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제작된 訓練都監字는 조선 전기 활자본을 그대로 翻刻하여 만든 倣甲寅字體, 倣庚午字體木活字인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⁸⁶⁾ 〈도판 12〉 『御製文集』(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820-4)의 於字의 ‘才(재방변)’의 가로획이 어긋났는데 이는 금속활자본에서 활자가 마모되고 이지러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목활자로 간행한 일본 고향자본 『古文眞寶』(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WA7-99)에 이와 동일한 현상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조선본의 글자를 잘라내어 그대로 번각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또 ‘其’字의 경우 일본 갑인자체 고향자본에 두 가지 형태(1형, 2형)의 활자가 있는데, 이는 초주갑인자본에 보이는 현상이다(도판 13). 이 역시 갑인자본의 글자를 그대로 잘라내어 번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둘째, 조선본의 글자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글자도 있다는 점에서 조선 판본을 보고 썼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 書寫의 주체는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 後陽成天皇, 後水尾天皇의 侍讀을 지내기도 했던 江戸時代 학자이자 『慶長日件録』을 쓴 舟橋秀賢은 목활자 인쇄술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목활자

86) 訓練都監字에 대해서는 천혜봉, 2006, 443~455쪽; 김두중, 1974, 앞의 책 289쪽에서 倣庚午字體로 간행한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제작시 安平大君이 쓴 印本을 擧刻하여 만들었다는 李恒福의 拔을 인용하였다.

其	其	其	其	其	
갑인자체 일본 고허자본 『長恨歌傳』의 '其'字 1형		갑인자체 일본 고허자본 『長恨歌傳』의 '其'字 2형			
其	其	其	其	其	초주갑인자본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일산 貴 1252-15)의 두 가지 형태의 '其'
갑인자체 일본 고허자본 『古文尙書』의 '其'字 1형		갑인자체 일본 고허자본 『古文尙書』의 '其'字 2형			

〈도판 13〉 갑인자체 일본 고허자본의 '其'字와 초주갑인자본의 '其'字 비교

로 책을 간행했다고 하는데, 그의 命으로 작성된 필사본에 조선인에게 본문을 書寫시켰다는 기록이 있다.⁸⁷⁾ 이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잡혀간 조선의 인쇄 기술자들이 일본 고허자 인쇄공으로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⁸⁸⁾

셋째, 조선에서 가져온 활자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조선 활자로 글자를 찍어 글자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 판본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중한 책을 活字의 底本으로 삼기 위해 소모해버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금속활자가 부족한 경우 목활자로 금속활자와 같은 글자체를 만들어 혼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런 활자를 가져와서 직접 일본 목활자본 인쇄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7) 安野博之, 2000, 앞의 글, 31쪽. 舟橋秀賢이 고허자 인쇄에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은 『朝日本歴史人物事典』의 舟橋秀賢에 대한 解説에 “後陽成天皇, 後水尾天皇의侍讀으로 근무한 碩學으로, 漢文, 戀歌 등에 능하였고 또한 목제에 의한 활자인쇄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古文孝經』 등을 인쇄하였다”고 한 것에 의거하였다.

88) 安野博之, 2000, 위의 글, 31쪽. 그는 앞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 고허자 인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V. 맺음말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의 전리품으로 조선에서 가져간 서적과 활자 및 인쇄술을 바탕으로 1593년 後陽成天皇의 勅에 의해 간행된 『古文孝經』을 시작으로 약 반세기에 걸쳐 활자에 의한 인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래 일본 고활자본이 조선 활자 인쇄술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근래 일본 학계에서 비슷한 시기에 예수회의 순찰사가 들여온 서양 활자 인쇄기와 활자에 의해 九州 지역에서 제작된 키리시탄판이 일본 고활자본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활자의 조판법을 부착식과 조립식으로 나누어, 조선 활자 조판은 일본의 조립식 조판과 달리 부착식이므로, 일본 고활자의 기원은 조선이 아니라 키리시탄판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선 활자의 조판 방식을 일괄하여 부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료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조선 활자는 조선 후기 것인데, 조선 전기 활자와 후기 활자는 모양과 조판 방식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전기 활자와 일본 유일 동활자인 駿河版 활자의 형태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되어, 일본 고활자의 인쇄 기법이 조선의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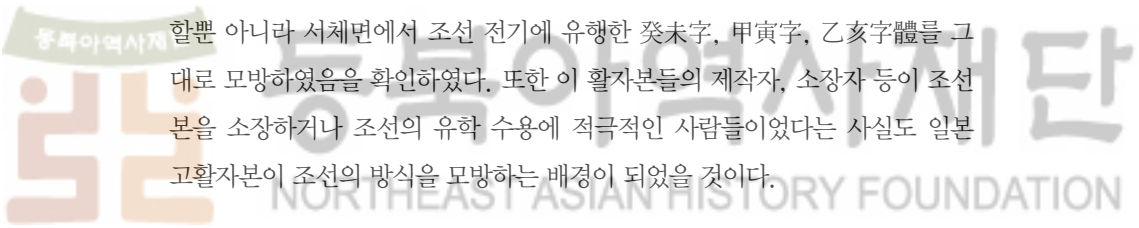
활자 인쇄 기법을 이분화하여 일본 고활자 인쇄 기법을 조립식으로 규정할 경우, 일본 고활자 인쇄 방식 자체에도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더욱이 일본 고활자 인쇄 기법의 기원을 서양의 키리시탄판에서 찾는 것은 일본의 목판 인쇄나 필사본 제작 전통이 일본 고활자본에 미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논리이다.

동양과 서양의 인쇄술을 구분하는 보다 중요한 원리는 활자의 제작 방식 및 인쇄 방식이다. 일본 고활자 인쇄 기법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동양식에 속하므로, 일본의 조립식 조판법을 서양식이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본 고활자본의 키리시탄판 기원설 자체가 추정에 근거하며,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고활자본이 조선활자 인쇄 기

법이 아니라 키리시탄판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활자 및 조판 기법뿐 아니라 고활자본의 형태나 그것이 제작된 문화적 배경에서도 일본 고활자본은 조선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임진왜란의 전리품으로 유학 서적을 비롯한 많은 서적을 가져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학이 발전하였다. 또한 일본 근세 유학의 원조이며 徳川家康에게 유학을 강의한 藤原惺窩은 임진왜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유학자 姜沆으로부터 유학을 배웠다고 한다. 江戸 시대 초기 일본 유학의 핵심적인 학자들은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유학 수용의 핵심이 되는 조선본을 직접 소장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서적을 간행하거나 간행에 관여하였다.

일본 고활자본의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조선 활자본과 판형이 비슷할뿐 아니라 서체면에서 조선 전기에 유행한 癸未字, 甲寅字, 乙亥字體를 그대로 모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활자본들의 제작자, 소장자 등이 조선본을 소장하거나 조선의 유학 수용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도 일본 고활자본이 조선의 방식을 모방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 『慵齋叢話』,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顯宗實錄撰修廳儀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의궤 원문서비스.
- 時慶記研究會編, 2001, 『時慶記』, 臨川書店.
- 강순애·송일기 공역, 1995, 『인쇄문화사』, 아세아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 김두중, 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 김문자, 2004, 「임진, 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
- 김태준, 1977, 『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한국연구총서 33), 한국연구원.
- 민덕기, 2008, 「임진왜란기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잔류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인식」, 『한국사연구』 140.
- 손보기, 1987, 「임진왜란과 일본의 활자 인쇄술」, 『애산학보』 5.
- 신현승, 2009, 「17세기 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17.
- 심우준, 1985,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찬도호주주례의 판본」, 『일본전존한국일서연구』, 일지사.
- 유태일, 2002, 「日本 江戸時代간행 韓國文獻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8.
- 이민우, 1985, 「壬辰倭亂期 姜沆의 賊中生活과 日本儒學」,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술 논총』 9.
- 이재정, 200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특징」, 국립중앙박물관편, 『한글금속활자』, 국립중앙박물관.
- 이재정, 2010, 「정조의 生生字·整理字 제작과 중국활자 구입」, 『한국사연구』 151.
- 이유리, 2011,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정하미, 1999, 「17세기 활자 인쇄의 일본적 변용에 대하여」, 『일본역사연구』 10.
- 정하미, 2005, 「예수회 순찰사 발리냐노의 역할과 기독교 금교령」, 『한양일본학』 15.
- 조형진, 2002,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4.
- 조형진, 2003, 「日本の 駿河版은 朝鮮의 活字인가」, 『서지학연구』 26.
- 조형진, 2012, 「日本 叡山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서지학연구』 53.

- 조형진, 2013,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서지학연구』 54.
- 조형진, 2013, 「日本 要法寺版 및 潤轍書院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서지학연구』 55.
- 천혜봉, 1990, 『韓國典籍印刷史』, 범우사.
- 천혜봉, 2006, 『한국서지학(개정판)』, 민음사.
-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고인쇄박물관.
-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 1976, 『韓國古印刷史』, 三和印刷株式會社.
- 木宮泰彦, 1932, 『日本古印刷文化史』, 富山房.
- 川瀬一馬, 1967, 『増補古活字版之研究 上中下』, 日本古書籍商協會.
- 長澤規矩也, 1976, 『圖解和漢印刷史』, 汲古書院.
- 藤本幸夫, 2006,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天理圖書館編, 1973, 『きりしたん版の研究』, 天理大學出版部.
- 京都府教育委員會編, 1991, 『圓光寺所藏伏見版木活字關係歷史資料調查報告書』, 京都府教育委員會.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科編, 2000,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查報告書』, 滋賀縣教育委員會.
- 渡邊守邦外, 2002, 『寛永寺藏天海版木活字を中心とした出版文化財の調査・分類・保存に關する總合的研究』(科學研究費基盤研究((A)(1) 平成 10年~13年度 研究成果報告), 實踐女子大學文學部.
- 印刷史研究會編, 2000, 『本と活字の歷史事典』, 柏書房.
- 張秀民 等, 2009, 『活字印刷の文化史』, 勉誠出版社.
- 天理圖書館編, 1977, 『日本の古活字本』(天理ギャラリー第46回展), 東京 天理館.
- 天理圖書館編, 2011, 『天理圖書館開館80周年記念特別展:新収稀覯本を中心に』, 東京: 天理ギャラリー.
-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1989,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汲古書院.
- 辛基秀, 仲尾宏, 1996 『大系朝鮮通信使』 1, 明石書店.
- 張麗娟·程有慶, 2002, 『中國版本文化叢書 宋本』, 江蘇古籍出版社.
- 徐億農, 2002, 『中國版本文化叢書 活字本』, 江蘇古籍出版社.
- 大內田貞郎·高部萃子, 1987, 「朝鮮古活字版に想うこと-特に活字の形狀と植字版を中心に」, 『ピブリア』 89.

- 大内田貞郎, 辻本雅英, 1989, 「本館所藏 君臣圖像の版種について」, 『ビブリア』 93.
- 大内田貞郎, 2000, 「きりしたん版について」,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柏書房.
- 大内田貞郎, 2005, 「古活字本について」, 加藤美方・森啓・藤田三男編, 『活字の歴史と技術 1』, 樹立社.
- 大内田貞郎, 2009, 「「きりしたん版」に「古活字版」のルーツを探る」, 『活字印刷の文化史』, 勉誠出版社.
- 百瀬宏, 2000, 「駿河版銅活字 - その成立と鑄造技法の解析」,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柏書房.
- 田川孝三, 1972, 「李朝 印刷文化와 日本」, 『동양학』 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小秋元段, 2010, 「古活字版の淵源をめぐる諸問題—所謂キリシタン版起源説を中心に」, 『國際日本學』(特集「ナショナルイズムの表現」について) 8.
- 安野博之, 1999, 「慶長勅版『長恨歌琵琶行』『白氏五妃曲』の刊行について」, 『汲古』 36.
- 安野博之, 2000, 「慶長勅版の刊行について—慶長四年刊本を中心に」, 『三田國文』 32, 慶應義塾大學國文學研究室.
- 森上修・山口忠南, 1990, 「慶長勅版『長恨歌琵琶行』に着いて—慶長勅版の植字組版技法を中心として(上)」, 『ビブリア』 95.
- 森上修・山口忠南, 1991, 「慶長勅版『長恨歌琵琶行』に着いて—慶長勅版の植字組版技法を中心として(下)」, 『ビブリア』 97.
- 豊島正之, 2010, 「前期キリシタン版の漢字活字について」, 『國語と國文學』 87.
- 藤本幸夫, 2008, 「일본소제 한국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그 서지학적 연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 藤本幸夫, 2012, 「日本現存癸未字活字印本纂圖互註周禮卷1, 2について」,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 高橋智, 1996, 「慶長刊論語集解の研究」, 『斯道文庫論集』 30.
- 高橋智, 1998, 「慶長刊大學中庸章句の研究」, 『斯道文庫論集』 32.
- 柴田純, 1981, 「那波活所と徳川頼宣—紀州藩教學の成立をめくって」, 『日本歴史』 396.
- 柴田純, 1980, 「那波活所の思想」, 『日本史研究』 210.
- 柴田純, 1989, 「思想史における近世—那波活所の「人間學」から」, 『日本史研究』 327.

松下 忠, 1963, 「那波活所の學風と詩文論」, 『和歌山大學學芸學部紀要: 人文科學』
13.

國立國會圖書館, 2013, 「新たな貴重書のご紹介」, 『國立國會圖書館月報』 6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Korean Movable Type Printing
Technology to Japanese *Kokatsuji-ban*
through the Imjin War(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Lee Jaejeong

The general consensus has been that Japanese *kokatsuji-ban*, or old movable type printing, originated from Korean movable type printing technology based on Korean old printed books and movable type which were looted during the Imjin War of 1592~1598. However, in recent years some Japanese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he rise of *kokatsuji-ban* emanated not from Korean movable type printing technology but from Kirishitan printing technology.

This paper reviews the validity of their argument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ir arguments are based on misreadings of historical sources. Furthermore the Korean old printed books and movable type presented as evidence are not only limited, they also are unsuitable. Lastly, the argument that Japanese *kokatsuji-ban* emanated from Kirishitan printing technology is not fully proven.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East Asian printing technology and western printing technology is the type-casting method and the pressing method. In this sense, Japanese *kokatsuji-ban* printing technology is more of East Asian technology than western technology.

Japanese *kokatsuji-ban* and Korean movable type printed books are strikingly similar in format and typefaces. Many influential scholars in

the early Edo period enthusiastically accepted Neo-Confucianism from Korean texts and from Korean scholars such as Kang Hang. They possessed many Korean books and tried to imitate Korean old books.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is much resemblance between Japanese *kokatsuji-ban* and Korean movable type printed books.

Keywords

Korean traditional movable type technology, Korean old printed books, Japanese *kokatsuji-ban*, Kirishitan printing technology, the Imjin War(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移住韓人들의 생활 양태

- “楚山江北戶籍”(1902) 자료의 분석 사례 -

임학성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I. 머리말

17세기 후반 淸 정부는 자신들의 발상지인 滿洲(東北) 지역을 封禁區로 정하여 기타 민족의 거주를 엄금하는 封禁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朝鮮 정부도 조선인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 지역으로 潛入·移住하는 것을 엄금하는 越江禁止 정책을 실시하였다.¹⁾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봉금과 월강금지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수많은 조선인이 間島 지역(압록강 對岸의 西間島와 두만강 대안의 北間島)으로 이주해 갔다. 이주 조선인의 대부분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거주하던 주

※ 투고: 2013년 5월 20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27일, 게재 확정: 2014년 11월 24일

1) 牛丸潤亮·村田懋麿 共編, 1927, 『最近間島事情: 附露支移住鮮人發達史』, 朝鮮及朝鮮人社, 57~60쪽. 한편, 朝·淸 양국 정부의 봉금 및 월강금지 정책에 관한 최근의 통사적 정리는 金春善 主編, 2009, 『中國朝鮮族通史(上)』, 延邊人民出版社; 金泰國, 2011, 「韓人의 滿洲 移住와 中國 韓人 社會의 形成」, 『中國 韓人의 歷史(상)』,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민들이었다.²⁾ 생계를 모색하기 위한 ‘新天地’의 개척(농지 개간)이 그 주된 이유였다.

향후 한·중 및 동북아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문제 중 하나가 ‘間島’(중국 측에서의 ‘동북 지방’) 거주 ‘조선족’³⁾에 대한 궤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조선족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에, 한·중의 학자는 물론 해당 조선족 학자들에 의해 지리적 또는 인적 연원을 밝히려는 노력이 적지 않았다.

간도 거주 조선족의 移住史는 크게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전후, 그리고 1930년대 만주국 건국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수많은 한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간도 거주 조선족은 여러 사정에 의해 未귀환하여 현재까지 조선족 사회를 지속·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간도 지역 조선족의 존재는 한국이민사 연구의 최대, 최적의 주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도 지역에 거주한 조선족 연구는 주로 그들이 이주·정착하게 된 배경 및 과정에 관한 연구(즉, 사회사적·정치사적 분야 연구), 이주 실태 및 규모에 관한 연구(즉, 인구사적 분야 연구), 농토(水田) 개발 및 소유에 관한 연구(즉, 경제사적 분야 연구) 등에 치중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간도 지역에 이주·정착한 조선인(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정착 후 어떠한 생활을 이루어 나아갔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이주 초기에 해당하는 20세기 초의 한인에 대한 거주 및 생활 실태 연구는 거의 이루어

2) 金春善, 1998, 「1880~1890년대 淸朝의 ‘移民實邊’ 政策과 韓人移住民 實態 研究 ~北間島 地域을 中心으로~, 『韓國近現代史研究』 8, 한국근현대사연구회; 尹炳奭, 2007, 「韓人(朝鮮人)의 間島 移住 開拓과 『間島開拓史』, 『白山學報』 79, 백산학회.

3) ‘조선족’은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韓人)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공식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공간인 간도, 즉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한인)을 지칭할 때는 ‘조선족’이라 표현하기로 하겠다. 다만, 조선 후기 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조선인’으로,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의 조선인에 대해서는 ‘한인’으로 표현하려 한다.

진 바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분석하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 간도 지역에 거주한 이주한인의 생활 양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시기를 20세기 초로 설정한 까닭은 우선,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는 그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한인의 간도 이주 배경 및 거주 양태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세기 초 간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주한인들의 戶籍(新式 호적)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다. 현존하는 자료 중 간도 지역에서 살았던 이주한인들의 거주 및 생활 양태를 살피는 데는 이들 호적 자료보다 더 적합하고 유용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호적 자료는 평안북도 楚山郡의 對岸인 압록강 북쪽, 즉 ‘西間島’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韓人들을 1902년(光武 6)에 戶口調査한 후 작성한 ‘楚山江北戶籍’이다. 이 자료의 考究를 통하여 20세기 초 간도 지역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의 생활 양태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西間島 거주 移住韓人의 戶籍 자료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20세기 초 평안북도 압록강 對岸의 西間島 지역에 거주한 이주한인의 戶口 및 家宅 현황을 조사한 호적 자료 17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된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에 대한 유일한 호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⁴⁾

4) 이들 서간도 지역의 호적 자료에 대해서는 필자가 선행 연구(임학성, 2013, 「20세기 초 ‘間島’ 지역에 거주한 朝鮮人에 대한 戶口調査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3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를 통해 자료 소개 및 특징,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考究한 바 있다.

〈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간도 호적 자료 현황

No	자료명	소장 번호	작성 시기
①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	奎 古4258-1	光武 6년(1902) 3월
②	〃	奎 古4258-2	〃
③	〃	奎 古4258-3	〃
④	〃	奎 古4258-4	〃
⑤	〃	奎 古4258-5	〃
⑥	〃	奎 古4258-6	〃
⑦	光武六年壬寅十二月日 邊界戶籍案	奎 17131	光武 6년 12월
⑧	〃	奎 17132	〃
⑨	〃	奎 17133	〃
⑩	光武七年癸卯正月日 邊界戶籍成冊	奎 17134	光武 7년(1903) 1월
⑪	〃	奎 17135	〃
⑫	〃	奎 17136	〃
⑬	光武七年六月日 邊界戶籍成冊(天)	奎 17137	光武 7년 6월
⑭	光武七年六月日 邊界戶籍成冊(地)	奎 17138	〃
⑮	光武七年六月日 邊界戶籍成冊(玄)	奎 17139	〃
⑯	光武七年六月日 邊界戶籍成冊(黃)	奎 17140	〃
⑰	光武七年六月日 邊界戶籍成冊(宇)	奎 17141	〃

먼저, 이들 자료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자료는 光武 6년(1902) 3월~7년(1903) 6월까지의 1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작성된 4종의 戶籍簿(戶籍成冊 또는 戶籍案)이다.⁵⁾

그런데 이들 자료의 명칭을 보면 ‘平安北道楚山江北’(자료 ①~⑥)과 ‘邊界’(자료 ⑦~⑰)라는 두 개의 지역명이 등장한다. 전자는 평안북도 楚山郡의 ‘江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강은 바로 초산군과 접해 있는 압록

5) 1903년 6월 자료는 表題는 ‘光武七年六月’로 기재되었으나, 內紙의 戶籍表는 모두 ‘光武七年五月’로 기재되어 있다.

강을 말한다. 따라서 이 자료는 초산군 지역이 아니라 그 對岸인 압록강 너머 북쪽 지역의 호적 자료가 되겠다.

다음, 후자에 등장하는 邊界는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 즉 국경 지역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측에서 간도 지역을 가리키던 명칭 가운데 하나였다. 이들 변계호적에 수록된 지역(面)을 확인한 결과 역시 압록강 대안(북쪽) 지역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이들 자료의 명칭 변화다. 즉, 1902년 3월 당시는 ‘江北’이라 표기(인식)했다가 1902년 12월 이후로는 줄곧 ‘邊界’로 표기(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江北’에서 ‘邊界’로의 변화 과정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서간도 지역에 대한 주체적 領土(領有)의식의 發顯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

이들 호적을 작성한 인물은 徐相懋로 그는 1897년 ‘西邊界管理司’로 임명 파견되어 당시 서간도 지역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⁷⁾ 실제 3종의 ‘邊界’ 호적 자료가 ‘管理邊民事務徐相懋’(1902년 12월 호적), ‘管理事務徐相懋’(1903년 1월 호적), ‘管理徐相懋’(1903년 6월 호적) 등을 기명하고 있어 이들 호적의 조사·작성의 관리책임자가 서상무임을 증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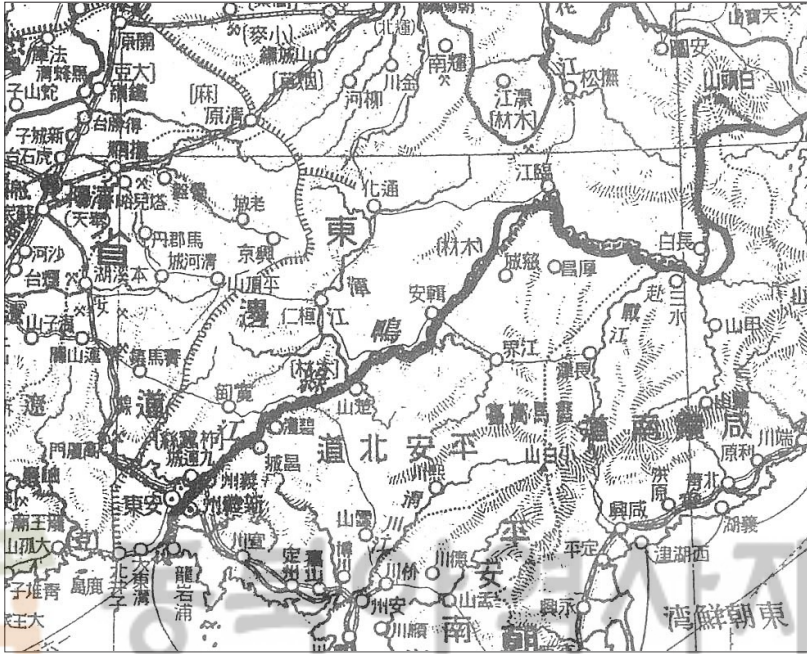
결국 위의 자료 17책은 서간도 지역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호적 자료가 되겠다. 아울러 서간도 이주한인들의 호적 자료 4종에 수록된 面의 명칭들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寬甸·桓仁·通化·輯安縣 일대에 해당하는 碧潼·楚山·江界郡 대안과 중국 臨江縣 일대에 해당하는 慈城·厚昌郡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⁸⁾ 이들 지역을 지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필자는 1903년 6월에 작성한 5책의 호적 자료(⑬~⑰)를 분석하여 이

6) 임학성, 2013, 앞의 글, 371~372쪽.

7) 松本忠雄, 1915, 『日支新交渉に依る帝國の權利』, 滿洲文化協會(국사편찬위원회 편, 2013, 『중국 한인의 역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 朝鮮總督府警務局編, 1920, 『西間島ニ於ケル不逞鮮人團體ノ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 한편,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李範允을 北間島 지역에 視察官으로 파견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00여 戶의 호적을 작성하였다. 『高宗實錄』 권43, 고종 40년 8월 11일조.

8) 임학성, 2013, 앞의 글, 374~375쪽.



〈지도〉 평안북도 압록강沿岸 및 서간도 지역
출전: 仲摩照久編, 1930, 『地理風俗(滿洲篇)』, 新光社.

에 수록(登載)된 1,453戶·3,512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⁹⁾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1호당 평균 인구수가 2.4명으로 매우 과소하게 나타났다. 미성년 여자 인구가 거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姓比가 162.5(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 인구의 비율)로 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 2) 미성년 여성 인구의 호적 미등록 현상은 가족 구성 양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戶主夫婦로 이루어진 2인 가족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45%)나 되었던 것이다. 이예다가 호주 혼자 거주하는 1인 가족

9) 입학성, 2009,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の 거주 양태~邊界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6%)을 합치면 그 비율이 무려 60%나 되었다.

- 3) 남(호주)·녀(처·婦·嫂 등)의 姓貫은 모두 密陽 朴씨, 金海 金씨, 全州 李씨, 全州 金씨, 金海 金씨 등이 상위에 분포했다. 남녀 간 성관 분포의 일치 현상은 바로 서간도 지역 내 이주한인들 간의 通婚 양상이 매우 강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호주의 직업은 98%가 農業이었다. 간도로의 이주가 농토를 開墾하거나, 小作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교육, 통역, 문서 대리 작성, 祭儀·占卜, 상업 등을 직업으로 삼았던 자들도 확인되어 이주한인 사회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정착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 5) 서간도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은 모두 초가집에서 거주했는데, 남의 집을 빌어서[借有] 사는 자(호주)가 무려 절반 가까이(45%)나 되었다. 가옥의 크기는 己有와 차유 모두 3칸(間)이 가장 많았다(기유 32%, 차유 28%, 합 60%).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잇는 후속 작업이 되겠는데, 1902년 3월에 작성한 6책의 ‘楚山江北戶籍’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과의 비교도 행하려 한다.¹⁰⁾

이들 6책의 호적 자료에 등장하는 지역은 총 14개 面으로 제1책은 叻島面과 新開河上·下面, 제2책은 雲上·下面, 제3책은 蓮上·下面, 제4책은 邱山面과 五龍面, 興道面, 제5책은 榆樹面과 檜面, 제6책은 九龍面과 荒城面 등이다.

10) 이와 함께 1898년에 작성된 평안북도 龜城郡의 호적(『平安北道龜城郡戊戌戶籍表(第三內東面)』)에서 나타난 양상을 참조하려 한다. 압록강 너머 邊界 지역과 인근 內地의 양상이 어떠한 同/異가 있는가를 비교 고찰하는 작업은 간도 이주한인들의 거주 실태를 이해하는데 有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성군 주민의 거주 양상은 이정주의 선행 연구(2013, 『19세기 말 평안북도 구성군 家戶의 구성과 거주 양태』, 『역사민속학』 43, 한국역사민속학회)에 의거하였다.

Ⅲ.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들의 생활상

1. 戶·口와 性比

1902년 3월 초산강북호적의 14개 면에 등재된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은 총 1,346戶·3,951명이다(〈표 2〉 참조). 성별로는 남성이 2,370명인 데 반하여 여성은 1,581명만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심한 불균형(性比: 149.9%) 양상을 보였다.¹¹⁾ 각 면별로는 189.1%(운상면)로 성비의 차이가 극심한 지역도 있었던 반면, 126.5%(연하면)로 그 차이가 작았던 지역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면은 성비가 1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면 전체의 1호당 평균 인구수도 2.94명으로 과소하게 나타났는데,¹²⁾ 남녀별로 1.76명(남성)과 1.17명(여성)을 보여 한 집(호)당 평균 남성 2명, 여성 1명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은 셈이 된다. 실제 호적 분석 결과 여성 없이 남성 만으로만 구성된 가호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각 가호에는 남성 인구가 최소 1명~최대 5명까지, 여성 인구가 최소 0명~최대 3명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 인구의 비정상적인 구성 양태는 대부분의 면에서 발견되었다. 각 면별로는 운하면이 3.77명(남성 2.23명/여성 1.54명)으로 1호당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았고, 구룡면이 2.35명(남성 1.44명/여성 0.9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여성 인구수와 이로써 비롯된 1호당 평균 인구수의 과소 양상은 戶主의 딸(女)이 거의 등재되지 않은 때문이었다(〈표 3〉 참조). 동거

11) 1902년 12월 변계호적의 분석 결과, 서간도 지역의 間島面(87戶)과 七道面(140戶) 거주 이주한인의 경우는 144.0과 168.3의 성비를 보였으며, 1903년 6월 변계호적의 경우(15개 면)는 성비가 162.5인 것으로 나타났다(임학성, 2009, 앞의 글. 이하, 변계호적의 분석 결과 비교시 논문 전거를 생략함). 이들 지역 역시 남녀 간의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 1903년 6월 변계호적에서는 1호당 평균 인구수가 2.4명으로 더 과소하게 나타났다.

〈표 2〉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의 戶·口 및 性比

面名	戶數	口數			性比
		계	男	女	
央島面	135	341(2.53)	211(1.56)	130(0.96)	162.3
新開河上面	63	200(3.17)	123(1.95)	77(1.22)	159.7
新開河下面	71	221(3.11)	133(1.87)	88(1.24)	151.1
雲上面	117	318(2.72)	208(1.78)	110(0.94)	189.1
雲下面	123	464(3.77)	274(2.23)	190(1.54)	144.2
蓮上面	84	262(3.12)	153(1.82)	109(1.30)	140.4
蓮下面	109	299(2.74)	167(1.53)	132(1.21)	126.5
邱山面	77	260(3.38)	149(1.94)	111(1.44)	134.2
五龍面	36	124(3.44)	72(2.00)	52(1.44)	138.5
興道面	101	343(3.40)	200(1.98)	143(1.42)	139.9
榆樹面	119	294(2.47)	170(1.43)	124(1.04)	137.1
檜面	139	381(2.74)	238(1.71)	143(1.03)	166.4
九龍面	82	193(2.35)	118(1.44)	75(0.91)	157.3
荒城面	90	251(2.79)	154(1.71)	97(1.08)	158.8
합계	1,346	3,951(2.94)	2,370(1.76)	1,581(1.17)	149.9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1호당 평균 인구수를 말함. ② 性比는 女인구 100에 대한 男인구수의 비율을 말함.

친속으로 기재된 가족 중 아들은 881명이었던 반면, 딸은 단 1명에 불과하였던 것이다.¹³⁾ 이러한 호적상 딸의 미기재 양상은 전통시기에 작성된 호적 자료에서도 확인된 바, 이는 국가로부터의 課稅 대상이 아니었던 데다가 成婚하지 않은 딸을 호적에 기재하지 않았던 관습 및 인식이 서간도 지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때문이었다고 본다.

13) 유일한 딸은 연상면 1동 11호의 호주 金利權(27세)과 처 金씨(33세)의 소생으로 나이가 3세였다. 한편, 1903년 6월 변경호적의 경우, 전체 호적 등재인구 3,512명 가운데 아들이 613명인 데 반해 딸은 불과 26명만 등재되었다.

〈표 3〉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의 남녀별 구성원 분포

남성		여성	
관계	인원수	관계	인원수
戶主	1,346명(34.1)	妻	1,185명(30.0)
子	881명(22.3)	女	1명
孫子	11명	母	21명
婿	1명	婦	334명(8.5)
弟	122명(3.1)	兄嫂	1명
姪子	9명	弟嫂	39명
계	2,370명(60.0)	계	1,581명(40.0)
性比	149.9	性比	100

남녀 합: 3,951명(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男女 합(3,951명)에 대한 백분비임. ② '관계'에서의 호칭은 戶主를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면 이러한 호구 양상은 1898년 평안북도 龜城郡(內東面)의 주민 양상과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먼저 1호당 평균 인구수는 5.05명을 보였으며, 성비 또한 126%(남성 565명, 여성 450명)를 보여 서간도 지역의 호적에서 나타난 양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등재된 子·女 인구수에서는 아들이 230명인 데 반해 딸은 단 2명만이 확인되어 호적에서의 딸 인구의 심한 누락 양상은 마찬가지였다.¹⁴⁾

2_ 연령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 호주는 15세의 최연소부터 84세의 최고령까지 그 연령이 분포했으며,¹⁵⁾ 연령대별로는 40대 후반(45~49세)의 연령층이 19.2%(258

14) 이정주, 2013, 앞의 글, 335~336, 340쪽.

15) 최연소(15세) 호주는 회면 7통 2호에 거주한 崔明奎로 2칸짜리 草家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최고령(84세) 호주는 흥도면 3통 6호에 거주한 邊得河로 처(77세)와 자(56세), 婦(56세) 등과 함께 초가 3칸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 4〉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 호주의 연령 분포

(단위: 명)

연령 지역	名數	10대	20대	20대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대	70대	80대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양도면	135	2	4	9	18	16	18	21	21	17	2	6	1	-	-
신개하상면	63	-	-	3	4	7	7	12	9	8	8	5	-	-	-
신개하하면	71	1	2	3	3	5	12	13	9	8	9	3	3	-	-
운상면	117	1	3	6	11	14	11	20	18	15	13	4	-	-	1
운하면	123	1	2	5	14	7	18	27	21	15	3	7	1	2	-
연상면	84	-	2	5	10	8	10	19	14	8	1	3	2	-	2
연하면	109	-	2	8	11	12	18	22	20	5	4	3	4	-	-
구산면	77	-	3	3	7	10	11	15	9	9	3	5	1	1	-
오룡면	36	-	-	1	1	5	8	6	5	6	2	2	-	-	-
홍도면	101	-	4	6	7	8	12	17	19	13	9	-	3	2	1
유수면	119	-	-	5	8	14	21	20	21	12	8	8	1	1	-
회면	139	2	2	5	15	15	18	35	23	9	10	3	2	-	-
구룡면	80	-	1	2	8	10	14	13	17	7	4	3	1	-	-
황성면	90	-	3	2	9	6	20	18	13	7	6	4	1	1	-
합계	1,344	7	28	63	126	137	198	258	219	189	82	56	20	7	4
		(0,5)	(2,1)	(4,7)	(9,4)	(10,2)	(14,7)	(19,2)	(16,3)	(10,3)	(6,1)	(4,2)	(1,5)	(0,5)	(0,3)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전체 합계(1,344명)에 대한 백분율임. ② 각 연령대에서 ‘전반’은 0~4세, ‘후반’은 5~9세 까지를 말함. ③ 구룡면의 경우 연령 미상인 2명의 戶主를 제외한 수치임.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0대 전반(50~54세)이 16.3%(219명), 40대 전반(40~44세)이 14.7%(198명), 50대 후반(55~59세)이 10.3%(139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상위에 분포한 이들 40~50대(40~59세) 연령층 호주의 비율은 전체의 60%나 되어 그 집중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¹⁶⁾

각 면별로는 대부분의 면에서 40대 후반 연령층의 호주가 가장 많았으나,

16) 1903년 6월 변계호적의 경우, 40~50대 연령층 호주가 무려 전체의 80%나 되었다. 1902년 3월의 경우보다 그 집중도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구성군에서는 40~50대 연령층 호주의 비율이 54%를 보여 서간도 지역보다는 다소 적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5〉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 남녀별 구성원의 연령 분포 (단위: 명)

구성원 연령	남성				여성				
	戶主	弟	子·姪子· 孫子·婿	계	妻	兄嫂· 弟嫂	母	女·婦	계
10세 미만	-	2	56	58	-	-	-	1	1
10대 전반	-	5	156 (17.3)	161	-	-	-	12	12
10대 후반	7	13	177 (19.6)	197	31	6	-	89 (26.6)	126
20대 전반	28	25	188 (20.9)	241 (10.2)	86	11	-	106 (31.6)	203 (12.9)
20대 후반	63	29	141 (15.6)	233 (9.8)	96	10	-	61	167 (10.6)
30대 전반	126	15	93 (10.3)	234 (9.9)	137 (11.6)	7	-	27	171 (10.9)
30대 후반	137 (10.2)	11	50	198	137 (11.6)	2	-	19	158
40대 전반	198 (14.7)	12	19	229 (9.7)	199 (16.9)	2	2	12	215 (13.7)
40대 후반	258 (19.2)	9	16	283 (12.0)	191 (16.2)	2	1	4	198 (12.6)
50대 전반	219 (16.3)	-	4	223	154 (13.1)	-	6	3	163
50대 후반	139 (10.3)	-	1	140	78	-	5	1	84
60대 전반	82	-	-	82	34	-	2	-	36
60대 후반	56	-	-	56	26	-	4	-	30
70대 전반	20	-	-	20	4	-	-	-	4
70대 후반	7	-	-	7	4	-	1	-	5
80대 이상	4	-	-	4	1	-	-	-	1
합계	1,344 (100)	121	901 (100)	2,366 (100)	1,178 (100)	40	21	335 (100)	1,574 (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각 구성원 합계에 대한 백분율임. ② 연령 미상인 11명(戶主 2, 弟 1, 子 1, 妻 7)을 제외한 수치임.

일부 면에서는 50대 전반의 연령층(양도면, 흥도면, 유수면)과 40대 전반의 연령층(오룡면, 유수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도면의 경우 30대 전반~40대 전반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호주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신개하상면·신개하하면은 50대 전반~60대 전반의 호주가, 구산면에서는 50대 전반~60대 후반의 호주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면별 차이는 우연적이 아니라면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차이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한편, 호주뿐 아니라 남녀별 모든 구성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남성(2,366명, 연령 미상 4명 제외)은 40대 후반이 12.0%(28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대 전반이 10.2%(241명), 30대 전반이 9.9%(234명), 20대 후반이 9.8%(233명), 30대 후반이 9.7%(229명), …… 등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1,574명, 연령 미상인 7명 제외)는 40대 전반이 13.7%(215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전반이 12.9%(203명), 40대 후반이 12.6%(198명), 30대 전반이 10.9%(171명), 20대 후반이 10.6%(167명), …… 등의 순서를 보였다. 따라서 전체 남녀별 연령 분포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누락된 女兒 인구수를 감안하면 남성보다 여성의 연령대 분포가 다소 내려갈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호주와 그 처의 연령 분포만을 비교해 보았더니 호주는 40대 후반(19.2%)과 50대 전반(16.3%)이 가장 많았던 반면, 처는 40대 전반(16.9%)과 후반(16.2%)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子和 婦의 경우 20대 전반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_ 姓貫

1,346명 호주의 성관 분포를 보면(〈표 6〉 참조), 상위(1~10위)에 속한 성관으로 慶州 金씨(7.3%, 98명), 密陽 朴씨(4.5%, 61명), 全州 李씨(4.2%, 57명), 忠州 金씨(4.1%, 55명), 金海 金씨(4.0%, 54명), 全州 金씨(3.9%, 52명), 淸州 韓씨(2.9%, 39명), 海州 吳씨(2.0%, 27명), 河東 鄭씨(1.9%, 26명), 文州 金

〈표 6〉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戶主)의 姓貫 분포

(단위: 명)

지역 성관	전체 (1,346)	양도 (135)	신개 하상 (63)	신개 하하 (71)	운상 (117)	운하 (123)	연상 (84)	연하 (109)	구산 (77)	오룡 (36)	흥도 (101)	유수 (119)	회 (139)	구룡 (82)	황성 (90)
慶州金	98	11	2	2	2	12	3	8	10	7	7	8	11	9	6
密陽朴	61	5	4	1	6	4	-	9	2	-	2	10	11	4	3
全州李	57	6	3	2	3	3	4	4	1	3	7	3	8	2	8
忠州金	55	3	3	-	7	14	4	5	2	1	3	6	4	3	-
金海金	54	9	-	3	6	1	2	4	3	1	9	5	3	1	6
全州金	52	6	3	2	2	5	2	1	2	-	6	2	9	3	9
淸州韓	39	1	4	3	5	1	2	4	2	-	2	7	4	1	3
海州吳	27	2	-	5	-	4	2	4	1	1	1	2	3	2	-
河東鄭	26	3	1	1	4	3	5	-	4	1	-	3	-	1	-
文州金	22	-	-	-	4	16	-	1	-	-	-	-	-	1	-
安東張	22	1	1	1	3	1	3	2	2	-	-	2	2	1	3
南陽洪	22	3	-	1	2	-	1	-	1	1	5	2	3	1	2
南平文	20	2	-	3	1	-	-	4	2	-	-	3	3	1	1
海州崔	20	3	-	-	1	1	4	4	2	1	2	-	1	1	-
豊基金	18	3	4	-	2	-	1	1	-	1	2	2	1	1	-
晉州姜	17	2	-	3	2	-	-	-	2	1	3	1	2	-	1
開城金	16	-	-	1	6	2	-	1	1	-	3	1	1	-	-
丹陽李	16	2	-	2	-	-	-	1	-	-	4	1	1	5	-
全州崔	16	-	1	1	4	1	2	-	1	-	3	2	-	1	-
昌原黃	16	1	-	3	2	1	1	5	1	-	1	1	-	1	-
延安金	15	4	-	2	-	-	-	3	1	-	2	-	3	-	-
坡平尹	15	-	1	-	-	-	1	-	2	-	1	1	7	-	2
固城李	15	-	3	1	4	1	1	-	-	-	3	2	-	-	-
廣州李	15	3	1	1	2	1	-	1	1	-	-	4	-	-	1
開寧朴	14	1	-	1	2	5	-	1	-	-	2	-	1	1	-
水原白	14	4	1	1	2	-	1	-	1	1	-	1	2	-	-
順興安	14	3	-	-	-	-	-	2	-	-	2	1	-	3	3
忠州趙	14	1	-	4	2	1	1	1	-	-	-	1	2	1	-
水原李	13	6	2	-	-	-	1	-	-	-	3	1	-	-	-
淸州金	12	-	-	1	-	4	1	5	-	-	-	1	-	-	-
기타	-	黃州 黃3	淸州 楊4	牙山 李3	江陵 劉3	龍仁 李3	海州 裴4 延安 車4 金浦 公3 達城 徐3	忠州 李4 淸州 楊3 白川 趙3		靑松 崔3	江陵 崔3	唐岳 金3	江陵 劉3 慶州 李3		和順 金3 平昌 李3 仁同 張3 黃州 崔3

비고: ()안의 수치는 전체 및 각 면별 호수임.

〈표 7〉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 婦女子의 姓貫 분포 (단위: 명)

관계 성관	母(外祖) 〈338〉	妻 〈77〉	嫂 〈1〉	婦 〈26〉	합계 〈442〉
慶州金	25	10	-	4	39(8.8)
全州李	18	4	-	2	24(5.4)
密陽朴	21	1	-	-	22(5.0)
金海金	17	1	-	-	18(4.1)
忠州金	9	7	-	2	18
丹陽李	8	3	-	-	11(2.5)
全州金	9	1	-	-	10(2.3)
安東張	4	5	-	1	10
水原白	5	2	-	2	9(2.0)
全州崔	4	2	1	2	9
南平文	7	1	-	-	8(1.8)
河東鄭	6	1	-	1	8
海州崔	7	1	-	-	8
淸州韓	7	1	-	-	8
順興安	5	2	-	-	7(1.6)
固城李	7	-	-	-	7
忠州趙	3	2	-	2	7
晉州姜	6	-	-	-	6(1.4)
開城金	5	-	-	1	6
延安金	5	1	-	-	6
淸州金	5	-	-	1	6
慶州李	3	3	-	-	6
達城徐	3	1	-	1	5(1.1)
坡平尹	4	1	-	-	5
南陽洪	3	2	-	-	5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각 관계별 성관이 확인되는 인원수임. ② () 안의 수치는 합계〈442명〉에 대한 백분비임. ③ ‘관계’에서의 호칭은 戶主를 기준으로 한 것임.

씨·安東 張씨·南陽 洪씨(각 1.6%, 각 22명) 등이 확인된다. 즉, 최상위에 분포한 성관도 그 점유율이 7%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몇몇 특정 성관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은 서간도의 이주한인 사회가 集姓村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았음을 엿보게 해준다.

물론 각 면별 양상에서는 특정 성관이 10%를 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운하면의 문주 김씨(13%), 구산면의 경주 김씨(13%), 오룡면의 경주 김씨(19%), 구룡면의 경주 김씨(11%), 황성면의 전주 김씨(10%) 등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상 역시 집성촌적인 경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다.¹⁷⁾

한편, 통혼 양상을 살피기 위해 婦女子(母, 妻, 嫂, 婦 등)의 성관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7〉 참조).

상위에 속한 성관으로 경주 김씨(8.8%, 39명), 전주 이씨(5.4%, 24명), 밀양 박씨(5.0%, 22명), 김해 김씨와 충주 김씨(각 4.1%, 18명), 단양 이씨(2.5%, 11명), 전주 김씨와 안동 장씨(각 2.3%, 10명), ……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혼인 여성들의 상위 성관은 호주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서간도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이 동일 지역 내에서 通婚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¹⁸⁾

4_ 가족

1902년 3월 서간도에 거주한 이주한인 1,346호의 家族員數는 호주 단 1인만으로 구성된 가호부터 최다 7인으로 구성된 가호까지 분포하였다(〈표 8〉 참조). 이 중 2인 가족이 39.3%(529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인 가족이 28.6%(385호), 4인 가족이 19.4%(261호), …… 등을 나타냈다. 2~4인 가족은 ‘戶主夫婦’ 및 ‘호주부부와 1, 2명의 미혼자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夫婦家族’의

17) 구성군 내동면의 경우, 호적에 등재된 1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에서 집성촌적인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정주, 2013, 앞의 글, 340쪽.

18) 이는 1903년 6월 변계호적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8〉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의 가족원수 분포도 (단위: 戶)

지역	가족원수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양도면	4	67	53	11	-	-	-	135
신개하상면	1	15	28	12	5	2	-	63
신개하하면	3	18	22	24	4	-	-	71
운상면	10	41	48	11	4	3	-	117
운하면	-	25	35	24	22	17	-	123
연상면	2	26	26	24	3	3	-	84
연하면	4	59	18	21	4	3	-	109
구산면	-	27	18	17	7	7	1	77
오룡면	-	5	10	20	1	-	-	36
홍도면	2	28	27	27	6	11	-	101
유수면	10	68	26	10	1	4	-	119
회면	10	57	38	28	3	1	1	139
구룡면	4	54	16	7	1	-	-	82
황성면	6	38	19	25	2	-	-	90
합계	54(4.0)	529(39.3)	385(28.6)	261(19.4)	64(4.8)	51(3.8)	2(0.1)	1,346(100)

비고: () 안의 수치는 전체 합계(1,346戶)에 대한 백분율임.

결합유형이었다. 따라서 이 유형이 전체의 87%나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⁹⁾

면별 양상에서도 대체로 전체의 양상과 유사하였는데, 신개하상면·신개하하면·운상면·운하면·연상면·오룡면 등에서는 3인과 4인 가족이 비교적 많았음을 본다. 특히 운하면의 경우는 4~6인 가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지역(면)과 비교할 때 ‘多人數家族’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구성군의 경우에서는 4인 가족이 27.9%, 3인 가족과 5인 가족이 각각 14.9%, 6인 가족이 12.9%, 7인 가족이 9.0% 등을 보여 서간도 거주 이주

19) 이러한 양상은 1903년 6월 변계호적에서도 확인된다. 역시 2인 가족이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인 가족(25%), 1인 가족(16%), 4인 가족(11%) 등을 보였던 것이다.

한인들보다 다인수 가족의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²⁰⁾ ‘정착형’ 가족 구성을 보였던 구성군과 달리 서간도 거주 한인들은 ‘이주형’ 가족 구성을 이루고 있었기에 가족원수가 다소 적게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5_ 직업

1902년 3월 서간도에 거주한 이주한인 호주의 직업은 거의 모두(97.3%)가 農業이었다(〈표 9〉 참조).²¹⁾ 간도 지역에 대한 封禁 해제 이후 한인들이 간도로

〈표 9〉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 호주의 직업 분포 (단위: 명)

지역 \ 직업	農	文	儒	學	匠	무기재	합계
안도면	135	-	-	-	-	-	135
신개하상면	61	1	-	-	-	1	63
신개하하면	69	1	-	-	1	-	71
운상면	117	-	-	-	-	-	117
운하면	123	-	-	-	-	-	123
연상면	68	-	1	-	-	15	84
연하면	107	-	-	-	-	2	109
구산면	77	-	-	-	-	-	77
오룡면	36	-	-	-	-	-	36
홍도면	101	-	-	-	-	-	101
유수면	112	-	-	-	-	7	119
회면	134	-	-	-	-	5	139
구룡면	79	-	-	1	-	2	82
황성면	90	-	-	-	-	-	90
합계	1,309(97,3)	2	1	1	1	32	1,346(100)

비고: () 안의 수치는 전체 합계(1,346호)에 대한 백분율임.

20) 이정주, 2013, 앞의 글, 337쪽.

21) 1903년 6월 변계호적에서도 농업의 비율이 98%로 나타났다.

건너간 주된 이유가 농토를 개간하여 생계를 모색하는 데에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비록 그 수가 1, 2명에 불과하지만 농업 외의 직업으로는 儒와 文, 學, 匠人 등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1903년 6월 변계호적에서 訓蒙, 商業, 學, 治匠, 訓(訓蒙?), 通詞, 筆, 萊(萊商?), 齋直, 齋守, 淸國差役, 巫(男巫), 卜術 등의 직업군이 확인된 것과 비교할 때 아직 사회적 분화(분업)가 덜 이루어졌음을 엿보게 해준다.

한편, 구성군의 경우는 201명의 호주의 직업이 모두 농업으로 나타났다.²²⁾

6_ 家屋

1896년에 개정 실시된 新호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에 대한 정보 외에 거주하고 있는 家宅에 대한 정보까지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1902년 3월에 작성된 초산강북호적의 경우 비록 新호적제도에 따른 ‘戶籍式樣’(즉, 戶籍表)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개정된 제도를 遵行하여 가택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였다. 다만 ‘호적식양’에 따라 가택 정보를 소유 여부(已有나, 借有나?), 형태(瓦家냐, 草家냐?), 크기(몇 間이냐?) 등으로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草家○間’으로만 기재하고 있었다.²³⁾

따라서 1902년 3월 호적으로는 가택의 형태와 크기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가택 정보를 기재한 가호는 총 1,247호인 데, 모두 草家였으며 최소 1칸에서 최대 6칸까지 분포하였다(〈표 10〉 참조).

1호당 평균 칸수는 2.47칸으로 나타났으며, 칸수별 분포는 2칸이 55.5%(692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칸이 39.3%(490호), 4칸이 4.0%(50호), …… 등이었다.²⁴⁾

22) 이정주, 2013, 앞의 글, 337쪽.

23) 신개하상면과 신개하하면의 일부 가호에서는 ‘借草○間’과 같이 기재하여 거주 가옥이 已有인지 借有인지를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

24) 1903년 6월 변계호적의 경우, 마찬가지로 모두 초가였으며 3칸이 59%, 2칸이

〈표 10〉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의 家宅 분포

(단위: 戶)

面名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합계
양도면	3	33	97	-	1	-	134
신개하상면	-	15	40	7	1	-	63
신개하하면	-	15	50	5	-	-	70
운상면	-	92	24	-	-	-	116
운하면	-	32	67	17	5	1	122
연하면	1	76	24	4	3	-	108
구산면	-	44	32	1	-	-	77
오룡면	-	13	23	-	-	-	36
흥도면	-	64	34	3	-	-	101
유수면	-	86	22	5	-	-	113
회면	-	113	23	-	-	-	136
구룡면	-	53	22	6	-	-	81
황성면	-	56	32	2	-	-	90
합계	4	692 (55.5)	490 (39.3)	50	10	1	1,247 (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전체 합계(1,247戶)에 대한 백분율임. ② 間數 미상(미기재)인 家戶 99 戶를 제외함.

면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의 양상과 유사(2칸 > 3칸 > 4칸의 분포 순위)였으나 양도면과 신개하상면, 신개하하면, 운하면 등의 경우 3칸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 그리고 운하면의 경우 4칸의 비중이 높았던 점 등은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구성군의 경우에는 3칸이 32.7%, 6칸이 21.6%, 5칸이 17.6%, 7칸이 9.0%, …… 등의 분포를 보여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의 가택보다 그 규모가

28%, 4칸이 6%, ……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초산강북호적과 달리 이 호적은 '호적식양'에 작성되었기에 가옥의 소유 여부(已有와 借有)를 구분하여 기재했는데, 기유가 55%, 차유가 45%였다. 차유 가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1902년 3월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의 가택 실상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²⁵⁾

IV. 맺음말

19세기 후반, 간도 지역(압록강과 두만강의 이북 지역)에 대한 청 정부의 封禁 정책과 조선 정부의 越江禁止 정책이 폐지되자 이 지역으로의 조선인/韓人과 청국인의 이주·정착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 지역은 조선인들에게 ‘기회의 땅’ 또는 ‘신천지’로 인식되었기에 그 이주·정착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한인들의 간도 이주 및 정착이 多大해지자 조선정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한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官吏를 파견하였다. 파견된 관리는 가장 먼저 이주한인들에 대한 戶口調査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관리·보호하기 위함이었다.

20세기 초 간도 지역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의 호구를 조사한 결과물(즉, 戶籍 자료)의 일부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남아 있다. 이 호적 자료들 가운데 1902년 평안북도 楚山郡의 江北, 즉 압록강 북쪽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楚山江北戶籍’ 자료 6책을 분석하여 西間島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호구 및 직업, 가족 구성, 가택 등의 생활 양상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서 확인된 서간도 이주한인들의 생활 양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2년 3월 호적 자료에 이주한인은 총 1,346戶에 3,951명이 등재되어 1호당 평균 인구수가 3명 미만(2.9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적은 평균 인구수를 보인 까닭은 호적 자료에 未成年 가족, 특히 女兒가 거의 등재되지 않은

25) 이정주, 2013, 앞의 글, 341쪽.

때문이었다. 이에 性比 또한 여성 100명을 기준할 때 남성이 150명이라는 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둘째, 이주한인 호주들의 성씨는 慶州 金씨(7.3%), 密陽 朴씨(4.5%), 全州 李씨(4.2%), 忠州 金씨(4.1%), 金海 金씨(4.0%), 全州 金씨(3.9%) 등이 상위에 분포하였다. 가장 다수였던 성씨도 그 점유율이 7%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처럼 성씨가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은 서간도의 이주한인 사회가 集姓村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편 이주한인 부녀자(妻, 母, 嫂, 婦 등)들의 성씨 분포를 살펴봤더니 호주의 분포 양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로써 서간도 이주한인들은 서간도 내에서 局地的 通婚을 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이주한인 家戶의 가족구성은 호주 단 1인만으로 구성된 가호부터 최대 7인으로 구성된 가호까지 분포하였다. 이 중 2인 가족(39.3%)과 3인 가족(28.6%), 4인 가족(19.4%) 등이 상위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2~4인 가족, 즉 ‘戶主夫婦’ 및 ‘호주부부와 1, 2명의 미혼자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夫婦家族’의 결합유형이 전체의 87%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주한인들의 직업은 거의 전부(97.3%)가 農業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중엽 이후 이주한인들이 간도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주된 이유가 농토를 개간하여 생계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양상이었다.

끝으로, 한인들이 서간도로 이주하여 마련한 家屋은 모두 草家로 나타났다. 그 크기는 최소 1칸에서 최대 6칸까지 분포하였는데 1호당 평균 칸수는 2.5칸 규모였다. 가옥의 크기는 2칸 가옥(55.5%), 3칸 가옥(39.3%), 4칸 가옥(4.0%) 등이 상위에 분포하였다. 한국인의 가옥은 부엌이 1칸을 차지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세기 초 당시 서간도에 거주한 이주한인들의 주거 실태는 대체로 열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양상들은 19세기 중엽 이후 間島 지역으로 이주해 간 한인들이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으며, 또 한인들의 고유한 전통을 固守하며 공동체 집단을 형성해 나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정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하겠다.

참고문헌

자료

-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央島面, 新開河上面, 新開河下面)』(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하 同, 소장번호 古4258-1).
-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雲島上面, 雲島下面)』(소장번호 古4258-2).
-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蓮島上面, 蓮島下面)』(소장번호 古4258-3).
-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邱山面, 五龍面, 興道面)』(소장번호 古4258-4).
-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榆樹面, 檜面)』(소장번호 古4258-5).
- 『平安北道楚山江北戶籍成冊(九龍面, 荒城面)』(소장번호 古4258-6).
- 『平安北道龜城郡戊戌戶籍表(第三 內東面)』(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韓國朝鮮文化研究室 소장).

『高宗實錄』 권43, 고종 40년 8월 11일조.

『西間島ニ於ケル不逞鮮人團體ノ狀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0. 11).

저서

- 牛丸潤亮·村田懋麿 共編, 1927, 『最近間島事情: 附露支移住鮮人發達史』, 朝鮮及朝鮮人社.
- 玄圭煥, 1967, 『韓國流移民史(상권)』, 語文閣.
- 梁泰鎭, 1992, 『韓國國境史研究』, 法經出版社.
- 梁泰鎭, 1999, 『近世韓國境域論考』, 景仁文化社.
- 백산학회 편, 2000, 『中國內 朝鮮人の生活像 論攷』, 백산자료원.
- 윤병석, 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金穎, 2004, 『近代 滿洲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 金春善 主編, 2009, 『中國朝鮮族通史(上)』, 延邊人民出版社.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2010, 『범월과 이산: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 출판부.
-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 연구』, 혜안.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3, 『중국 한인의 역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논문

- 金得梶, 1973, 「間島 領有權 紛爭時期에 있어서 淸의 西間島 開發經營」, 『白山學報』 15.
- 趙中學, 1974, 「近代東三省移民問題之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4期, 臺灣.
- 柳承宙, 1978, 「朝鮮後期 西間島移住民에 대한 考察」, 『亞細亞研究』 19-1.
- 박창욱, 1991, 「조선족의 중국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1991년-겨울호.
- 全海宗, 1992, 「延邊의 韓族에 대한 基礎研究」, 『東亞研究』 24.
- 全海宗, 1993, 「韓族의 滿洲(특히 間島)移住에 대하여」, 『東亞研究』 26.
- 洪鍾泌, 1993, 「滿洲(中國東北地方) 朝鮮人移民의 展開過程 小考」, 『明知史論』 5.
- 洪鍾泌, 1993, 「在滿朝鮮人移民의 分布狀況과 生業」, 『白山學報』 41.
- 全海宗, 1994, 「延邊 韓族의 定着過程과 初期 韓人社會」, 『東亞研究』 28.
- 金春善, 1998, 「北間島地域 韓人社會의 形成과 土地所有權 問題」, 『全州史學』 6.
- 金春善, 1998, 「1880~1890년대 淸조의 '移民實邊' 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8.
- 박선영, 2005, 「간도문제의 시대성: 시대적 함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5.
- 이왕무, 2005, 「조선 후기 『강북일기』에 나타난 만주지역 인식」, 『北方史論叢』 4.
- 이동진, 2005, 「1872년 '江北'의 조선인 사회: 『江北日記』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北方史論叢』 8.
- 하원호, 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 김기훈, 2006, 「韓人の 滿洲移民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白山學報』 76.
- 尹炳奭, 2007, 「한인(조선인)의 간도 이주 개척과 『間島開拓史』」, 『白山學報』 79.
-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
- 李志英, 2009, 「19世紀末 淸朝의 對 間島朝鮮人 政策」, 『明清史研究』 32.
- 임학성, 2009, 「20세기 초 西間島 거주 朝鮮人の 거주 양태」, 『한국학연구』 21.
- 金泰國, 2011, 「韓人の 滿洲 移住와 中國 韓人 社會의 形成」, 『中國 韓人の 歷史(상)』, 국사편찬위원회.
- 임학성, 2013, 「20세기 초 '間島'지역에 거주한 朝鮮人에 대한 戶口調査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30.

이정주, 2013, 「19세기 말 평안북도 구성군 家戶의 구성과 거주 양태」, 『역사민속학』
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sidence Status of Korean Immigrants in West Gando
in the Early 20th Century: An Analysis of the
Chosan Gangbuk Family Register(1902)

Lhim Hakseong

Many Koreans migrated to Gando, the land of opportunity,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Most of them were from North Hamgyeong Province, close to the Tumen River, and from North Pyeongan Province, close to the Yalu River.

The Korean Imperial Government sent officers not only to understand the residents' situation, but also to supervise and protect its people. They first took a census; the number of people reached the tens of thousands.

This paper analyzes the new-type family register in 1902 of residents of Gangbuk, in Chosan-gun, North Pyeongan Province, that is, north of the Yalu River. Research shows the households, jobs, families, and houses of Korean immigrants in West Gando. Their lifestyle is understood as follows.

First, 3,951 people resided in 1,346 households. The average population per house was less than three people(2.9), which was relatively small, because the population of minors, especially females, was barely registered. The sex ratio was 100:150, a very unbalanced figure.

Second, atop the list of family names of the heads of family were

Gyeongju Kim(7.3%), Milyang Park(4.5%), Jeonju Lee(4.2%), Chungcheong Kim(4.1%), Gimhae Kim(4%), and Jeonju Kim(3.9%). Even the largest family name, the Gyeongju Kim, reached only 7%. This result shows that the Korean immigrant society in West Gando was not a certain family's society yet. Also, reviewing family names of adult females, they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heads of family. In other words, Korean immigrants intermarried with each other.

Third, although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ranged from one person to seven persons, most families consisted of two persons(39%), three persons(29%), and four persons(19%). Thus, 87% of the Korean immigrants formed conjugal families, that is, a married couple or a married couple with one or two unmarried children.

Fourth, 97% of the Korean immigrants were involved in agriculture. The main reason for migration to Gando was to cultivate the wasteland and earn a livelihood.

Finally, Korean immigrants all lived in thatched cottages. The size of these houses was from one *kan*(間) to six *kan*, with the average size being 2.5 *kan*. The size of a square house was two *kan*(56%), three *kan*(39%), and four *kan*(4%), and was higher in the distribution. Considering that one *kan* was allocated to the kitchen,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as very poor.

Keywords

West Gando(西間島), Chosan-gun(楚山郡), Yalu River, Korean immigrants, new type of family register(新式戶籍), diaspor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제의 군수동원과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 백낙승(白樂承)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안기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가 추진한 군수동원정책(소형용광로 제철 계획)에 편승해서 日本無煙炭製鐵(株)을 설립·경영했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과 癒着해서 한국 최초의 泰昌財閥을 형성했던 백낙승(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故 백남준의 부친)의 기업가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이 연구가 문제로 하는 일본무연탄제철(주)과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 주목한 선행 연구는 배석만의 연구가 유일한 상황이다. 배석만은 종래 식민지기 경성방직(주) 중심의 조선인 자본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巨商의 後裔 백낙승과 1940년대 新興 資本家로 성장한 이종희의 기업가 활동에 주목해서 해방 전후 조선인 자본가 활동의 궤적과 그 궤결을 검토하였다.¹⁾ 그러나 같은 연구는 이론과 실증에 걸쳐 간과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 투고: 2012년 11월 2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7일, 게재 확정: 2014년 11월 24일

1) 배석만, 2008, 「일제 말 조선인자본가의 경영활동 분석」, 『경제사학』 제45호.

첫째, 백낙승의 전시협력과 자본축적과 관련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먼저, “조선인 자본가는 전시통제기 기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학습했는가. 최소한 백낙승은 국가의 지원이라는 렌트에 의존한 몸집 부풀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배웠으며, 그 매력은 그에게는 상당히 강렬하였던 것 같다. 백낙승의 해방 후 기업 활동이 이를 증명한다. …… 백낙승의 경우 일제시기 그가 학습한 두 가지 경험, 즉 전시통제기 이전 시장에서의 학습 경험과 그 이후 국가의 지원이라는 렌트에 의존한 기업활동의 학습 경험 중 후자를 선택한 결과였다”²⁾는 것이다. 결국, 백낙승은 일제의 전시경제에 협력했지만 자본축적에는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기의 매력이 너무나 강렬해서 해방 이후에도 政經癒着型 비즈니스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전시협력에 따른 자본축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정경유착형 비즈니스를 반복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전시협력으로 자본축적에 성공했기 때문이야말로 해방 이후 정경유착형 기업이 활동을 반복했다는 가설이 오히려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 결국, 논점은 과연 백낙승이 일제의 전시협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資本蓄積에 실패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증의 문제라 하겠다.

둘째, 해방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 대해 제시한 가설과 사실과의 괴리다. 배석만의 연구는 백낙승이 전시기 국가지원에 의존한 비즈니스 경험과 그 학습효과를 해방 이후에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시경영의 유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즉, “이들이 참여한 소형용광로 제철, 목조선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 소형용광로 제철을 이어받아 다시 추진한 것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극단적 생산력 증강이 필요했던 이승만 정권뿐이었다”³⁾는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무연탄제철공장이 1950년까지는 방치되었지만, 6·25 전쟁 이후 재건·복구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 일부무연탄제철(주) 경성공장의 행방이 묘연하고, 6·25 전쟁 이후 복구되었다는 사

2) 배석만, 2008, 「일제 말 조선인자본가의 경영활동 분석」, 『경제사학』 제45호, 172쪽.

3) 배석만, 2008, 위의 책, 171~172쪽.

실관계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해방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이 불충분한 가운데 ‘愛國(정경유착)하면 亡한다’는 지적과 같이 정경유착에 따른 경영 파탄마저 주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한국 최초 태창재벌의 형성과 1956년 백낙승의 사망 그리고 1961년 태창재벌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해방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해명과 제시한 가설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논점은 백낙승이 과연 전시기의 잘못된 학습(정경유착형 비즈니스) 때문에 해방 후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는가라는 또 다른 실증의 문제라 하겠다.

셋째, 일본무연탄제철의 전시경영을 과연 당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군수회사 육성시스템으로까지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군수회사 육성시스템이란 일본무연탄제철이 산업설비영단의 청부자금으로 해주와 진남포 공장을 건설한 후에 같은 공장을 임대·경영했다는 가정에 입각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설립 내지 인수한 회사들은 미완성과 경영난 속에서 해방을 맞았다”⁴⁾는 지적과 같이, 일본무연탄제철의 공장 건설은 전시적인 제약으로 지지부진했고, 그래서 백낙승은 자본축적에도 실패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통상 甲(산업설비영단)乙(일본무연탄제철)관계로 파악되는 양측이 과연 平時經濟도 아닌 不足의 經濟(shortage economy)를 특징으로 하는 통제경제의 와중에서도 청부공장 건설을 완료해서 당초의 계약을 이행했고, 이후 같은 공장을 임대·경영으로까지 나아갔는가 하는 사실의 문제이다. 여기서 논점은 일본무연탄제철이 산업설비영단과 당초 계약에 따라 청부공장 건설했는가 하는 점과 그 실태를 ‘군수회사의 육성시스템’으로까지 명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지역의 군수생산을 담당했고, 해방 이후에도 굴지의 자본가로 활동했던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4) 이와 관련해서 “산업설비영단은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완성된 제철소의 소유권을 가졌다. 설비자금을 지원받은 회사는 제철소 건설의 실무를 담당하고 완공 이후 공장을 산업설비영단으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했다”는 것이다. 배석만, 2008, 앞의 책, 171쪽.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했던 무연탄제철법의 실험공장이자, 1943년 이후 조선지역 소형용광로 제철계획⁵⁾을 담당했던 일본무연탄제철(주)의 경영 활동과 그 궤적이다. 또한,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을 종래 帝國의 後裔로도 널리 알려져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고창 김씨의 기업가 활동과 비교해서 해방 전후 조선인 자본가의 서로 다른 經驗과 經路의 多樣性에 주목하고자 한다.⁶⁾

II. 朝鮮渡邊鑄工(株)과 무연탄제철법의 개발

우선, 1943년 2월 설립된 일본무연탄제철(주)의 前身이자, 1941년 이후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무연탄제철법의 실험공장이었던 朝鮮渡邊鑄工(주)의 설립과 무연탄제철법의 개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_ 朝鮮渡邊鑄工(株)과 무연탄제철 실험

朝鮮渡邊鑄工(주)은 경성에서 고철상을 경영하던 山田勘一이 1938년 2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철강기근과 고철 붐에 편승해서 설립한 高揚鑄工所를 모태로 하였다.⁷⁾ 1939년 11월 山田은 종래 거래관계에 있던 渡邊鑄造(주)와 공동출자로 자본금 19만 5,000원의 朝鮮渡邊鑄工(주)을 설립하였다. 朝鮮渡邊鑄工 사장에는 渡邊 勇, 전무에는 山田勘一이 취임하였다. 渡邊鑄造(사장 渡

5) 1942년 이후 일제가 추진한 소형용광로 제철계획의 입안 경위와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정안기, 2009, 「전시기 日本帝國의 철강증산정책과 ‘조선형 증산 모델」, 『경제사학』 제47호.

6) 정안기, 2005, 「식민지기 경성방직의 戰時經營과 滿洲投資」, 『경제사학』 제38호.

7) 朝鮮殖産銀行, 1943. 10. 1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代理貸付申請ノ件」.

邊鐵次)는 당시 일본 橫濱에 입지한 중견 철공소였으며, 당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철강기근에 따른 재생철 확보를 위해 朝鮮渡邊鑄工(주)을 설립하였다. 朝鮮渡邊鑄工(주)은 1940년 1월 당시 경성부 고양군 독도(蠶島, 지금의 서울 뚝섬)에 공장을 건설해서 조선지역의 洋銀古鐵을 수집·재생해서 모회사에 매각하는 비즈니스였다. 그러나 朝鮮渡邊鑄工은 1940년 6월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강압적인 재생선철업 통제에 직면하면서 영업 정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⁸⁾

한편, 조선총독부 식산국 塩田과장은 영업 정지에 내몰린 재생선철업자의 반발을 반영해서 소속 기사 遠藤鐵夫와 함께 조선산 무연탄과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선철 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塩田과장은 당시 三和鐵山(주)의 사장이었던 是川銀藏으로부터 오사카 소재 東洋스틸(주)이 무연탄과 코크스의 等量混用으로 선철생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1941년 1월 朝鮮工業會와 朝鮮鑛業會가 주최한 철에 관한 官民協議會를 거쳐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제철법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⁹⁾ 塩田과장은 영업정지에 직면한 재생선철업자 가운데 기술과 설비조건이 가장 우수했던 朝鮮渡邊鑄工(주)을 실험공장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朝鮮渡邊鑄工의 입장에서 “관청과 유착해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별이의 재생선철업자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실험에 응한 것은 大膽한 決定”¹⁰⁾이었다. 어쨌든, 1941년 2월 朝鮮渡邊鑄工의 기술진과 조선총독부 식산국 遠藤기사는 일본제철(주) 八幡제철소 산하 연구소의 기술자문으로 무연탄제철에 대한 ‘結論的 確信’을 얻게 되었다.

이후 朝鮮渡邊鑄工은 1941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연탄 선철의 실험 허가를 취득해서 경성공장을 거점으로 조선산 철광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신흥 제철법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41년 8월 朝鮮渡邊鑄工은 사용연료의 90%를 코크스가 아닌 무연탄으로 대체하는 선철 생산의 실험 조

8)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안기, 2009, 앞의 글.

9)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2, 8, 26, 「無煙炭銑鐵ノ製造ニ就テ」.

10) 遠藤鐵夫, 1968, 『朝鮮近代鑛業の創成(1) 銑鐵開發と製鐵事業』, 30쪽.

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같은 해 10월 28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선철 생산의 정식 허가를 취득하였다. 이는 朝鮮渡邊鑄工이 1년 6개월에 걸친 영업 정지 해제와 함께 선철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2_ 무연탄제철법 실험 조업의 경과와 그 성과

한편, 朝鮮渡邊鑄工은 1941년 8월 “먼저 재생선철로를 사용해서 무연탄에 의한 洋銀고철로부터 재생선철 생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사용연료를 무연탄 80%와 코크스 20%의 혼용만으로도 재생선철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철광석과 무연탄을 이용한 실험 조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연탄 90%와 코크스 10%의 混用만으로도 약 2주간 연속작업에 성공”¹¹⁾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재생철의 경우는 고철을 단지 鎔解하는 방법이였기 때문에 주야 조업 20톤의 출선이 가능했지만, 선철 생산의 경우는 철광석의 還元鎔解였기 때문에 출선 능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야 조업 10톤 생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실험 조업의 반복으로 3개월 후에는 철광석과 무연탄만으로도 선철 생산이 가능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확보할 수 있었다. 朝鮮渡邊鑄工의 실험 조업과 성과는 <표 1>과 같이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비롯한 역내의 관계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어쨌든 무연탄 선철 실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무연탄 사용에 적당한 용광로의 구조와 조업 방법이다. 조선산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경우, 소형용광로의 저변 보온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조선산 무연탄은 그 형질이 분탄이기 때문에 괴탄화(연탄해탄)와 함께 그 이용 여부가 사업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었다.

둘째, 무연탄제철의 규모와 제품이었다. 용광로 규모는 1일 생산능력 20~25톤 정도가 최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조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용광로 1기 당 10명 정도이며, 용광로 건설비는 기당 약 3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11) 『東洋經濟新報』, 1944. 9. 19.

〈표 1〉 조선무연탄제철(주)의 관청 관련 사항

기별	연월일	관청 관련 사항
제 2 기	1941. 5. 26	1940년 8월 9일 제출한 제철사업설비 허가신청 건, 무연탄 주연료 사용을 조건으로 시험설비 허가를 총독부로부터 수령.
	1941. 6. 3	조선총독부 광산과 遠藤기사 공장시찰 방문.
	1941. 7. 23	조선총독부 鹽田광산과장 공장시찰 방문.
	1941. 8. 7	조선총독부 광산과 遠藤기사 시험조작 참관, 양호한 성적에 만족을 표명.
	1941. 8. 8	조선총독부 식산과 앞으로 시험설비에 의한 무연탄 선철의 주물 처리 건의 허가 신청.
	1941. 9. 16	시험설비에 의한 무연탄 선철의 주물 처리 건에 대한 조선총독부 식산국 허가 취득.
	1941. 9. 27	고양군 수도면 437번지 한강 부근 토지 굴착의 건, 조선허가령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도지사 앞으로 허가 신청.
	제 3 기	1941. 10. 28
1941. 12. 8		공장 상장식을 겸해 제2호 용광로 화입식 거행, 오후 1시 30분 遠藤기사의 화입과 식산국장의 인사말.
1941. 12. 26		앞서 화입한 제2호 용광로 설비의 만전을 기하고 정식 화입 거행.
1941. 12. 28		遠藤기사 및 광산전문학교 町田교수의 공장 방문, 무연탄과 철광석의 혼입 비율 등에 대한 입회조사 실시.
1942. 4. 8		조선군사령부 原소좌를 비롯한 2명의 공장 방문, 제철작업의 시찰과 격려.
1942. 4. 9		조선총독부 기획부 田所사무관이 中島기사와 함께 공장 방문.
1942. 4. 12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식산국 梶川철광과장의 공장 방문과 격려.
1942. 4. 14		조선군참모 清水대좌의 방문과 격려, 철도국 수용품 계월이 주조에 대한 질의 응답.
1942. 6. 1		북지군 참모 酒野중좌, 조선군군사령부 鹽山中좌의 안내로 공장 시찰, 복지 진출을 중용받음.
1942. 6. 9		인천조병창 上條대좌와 鹽山中좌, 遠藤기사의 안내로 공장 방문.
1942. 6. 17		인천조병창장 大幸각하 약 1시간에 걸친 공장 방문과 경영진 격려.
1942. 7. 3		遠藤기사 안내로 책임과 사무관 각하 방문, 본 사업은 회사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임으로 시국하 정책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증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1942. 8. 15		조선총독부 식산국장과 平井공학박사가 遠藤기사의 안내로 공장 방문.
1942. 2. 29		小磯조선총독 각하와 비서관 외 수명의 공장 방문.
1942. 9. 1		동경정비국 白川소좌와 田口기사 외 수명의 공장 방문.
1942. 9. 5	앞서 조선총독부 앞으로 신청했던 평양과 해주공장 건설 허가 취득.	

기별	연월일	관청 관련 사항
제 4 기	1942. 10. 9	田中정무총감 외 수명이 遠藤기사 안내로 공장 방문.
	1943. 1. 28	무연탄 선철 매수가격은 톤당 234원으로 결정.
	1943. 2. 2	조선군사령부 기술참모와 교관(대좌)의 공장 방문.
	1943. 2. 6	조선은행 직원들의 공장방문과 무연탄선철 작업의 시찰.
	1943. 3. 29	자본금 증자 수속의 완료와 일본무연탄제철(株)로 사명 변경.
	1943. 4. 8	회사 본점을 고양군에서 경성부 인사동으로 이전.
	1943. 4. 17	橫浜지점 폐지.
	1943. 4. 19	동경지점 개설.
	1943. 4. 30	상무취체역에 有馬純義 취임.
	1943. 5. 9	동경지점 이전.

자료: 日本無煙炭製鐵(株), 「기별 영업보고서」으로부터 작성.

셋째, 무연탄 선철의 경제성이다. 시험조업 당시 생산원가는 톤당 약 190원 정도였으며, 여기에 감가상각비와 영업이익을 가산하면, 약 230원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는 당시 선철가격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이었지만, 장래 운송과 제철기술의 개선으로 생산능률을 향상시킨다면, 톤당 140~150원에 상당하는 저렴한 원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한편, 1942년 9월 당시 일본 국내의 유력 경제잡지였던 東洋經濟新報는 조선총독부 식산국 기사 遠藤鐵夫를 필자로 하는 ‘無煙炭에 의한 簡易製鐵法’이라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¹²⁾

조선총독부 기사 遠藤鐵夫가 무연탄에 의한 제철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보고 개요를 여기에 발표하고자 한다. 철광증산이 官民一體로 진행되는 현재, 이러한 무연탄제철의 실현은 커다란 기여라 하겠다. 특히, 원철 부족에 고민하는 특수강 메이커에게는 간소한 소형 제철방식의 발견이자, 하나의 光明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그 본격적인 기업화가 평양, 해주, 삼척 등 무연탄과 철광석 부존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계획되고 있다. 내선 관계자의 一考를 요한다.

12) 『東洋經濟新報』, 1944. 9. 19.

이상, 당시 일본 경제잡지가 ‘소형용광로제철법’의 등장에 주목했던 것은 선철조업의 연료를 코크스가 아닌 무연탄을 사용했다는 점과 그 설비가 단순 소박하다는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소형용광로제철법은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을 내재하였다. 즉, 실험 조업에서 사용한 무연탄은 당시 출탄량과 입수가 크게 한정된 삼척탄광의 괴탄을 사용했다는 점과 유연탄과의 혼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41년 실험 조업은 단지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선철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裝入 원료의 품질, 풍압, 열풍, 온도 등 소형용광로 조업을 위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科學的 檢證을 결여한 이른바 ‘感에 의한 實驗’¹³⁾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무연탄제철법의 문제점은 나중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조업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조업 부진과 시설계획의 빈번한 변경, 그리고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었다.

3_ 朝鮮渡邊鑄工(株)의 영업 성적

한편, 朝鮮渡邊鑄工의 선철 조업은 장기간에 걸친 수익성과 무관한 무연탄 선철 실험에 따른 대규모 손실계상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미숙과 입지조건의 제약으로 그 경제성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무연탄 제철법은 막대한 실험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제품은 철강통제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실험 연구비는 주로 사장 渡邊 勇의 개인자금으로 충당되었다. 물론 당시 朝鮮渡邊鑄工도 1941년 9월 이래 무연탄 선철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일정한 수익성 확보가 예상되는 주물업 진출을 결정하였다. 생산 선철을 직판하기 보다는 농기구와 가마솥 등을 가공제작·판매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무연탄 제철의 시험 조업기 朝鮮渡邊鑄工의 영업성적은 <표 2>와 같다.

13) 『東洋經濟新報』, 1944. 9. 19.

〈표 2〉 일본무연탄제철(주)의 영업 실적과 추이

(단위: 원)

구분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1940. 10. 1~ 1941. 9. 30	1941. 10. 1~ 1942. 9. 30	1942. 10. 1~ 1943. 3. 31	1943. 4. 1~ 1943. 6. 30	1944. 1. 1~ 1944. 6. 30	1944. 7. 1~ 1944. 10. 31
고정자산	토지	195,400	262,851	262,851	12,050	315,822	256,115
	건물				72,971	415,430	120,152
	구축물				8,500	20,402	
	기계장치	15,000	29,823	54,282	254,932	351,672	
	차축운반구				16,782	94,590	81,268
	기구/비품/집기	7,140	15,676	29,266	70,748	104,876	95,534
	건설계정		14,524	184,457	708,388	561,432	
	실험연구와 개발비				986,756	984,679	984,679
출자금					2,000	2,000	
자산	동경지점						156,779
	경성공장						2,110,552
	계정						2,267,331
	해주공장	151,023	190,957	195,175		1,826,919	1,992,253
	진남포공장					9,880,271	13,025,788
	원료재료	52,771	2,680	10,829	495,597	371,920	96,346
	유동자산						
	소모품	98	4,156	8,574	9,734	21,761	51,834
	비품					45,783	
	사무용품					2,524	
연료	169,315	30,696	89,906				
제품	73,148	21,648	8,767	9,822	510,659	801,019	
비품	295,332			11,507			
당좌자산	유가증권	63	781	1,940	3,629	23,302	
	단기채권				22,700	20,200	309,005
	장기대부금				195,175		
	매출채권	392	9,318	37,249		96,302	78,593
	받을어음		14,324	94,541	146,630		
	미경과보험료		326		854		
	예금		1,268	2,473,145	730,167	99,910	
당좌예금		4,282	1,745				

구분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1940. 10. 1~ 1941. 9. 30	1941. 10. 1~ 1942. 9. 30	1942. 10. 1~ 1943. 3. 31	1943. 4. 1~ 1943. 6. 30	1944. 1. 1~ 1944. 6. 30	1944. 7. 1~ 1944. 10. 31	
자 산	현금	6,454	287	1,575	33,735	56,083	135,350	
	전불금				1,002,359	1,470,262	1,936,156	
	가불금	81,712	98,640	548,712	313,898	217,069		
	적송품		129,226			197,433		
	당좌 자산					605		
	외주출고재료					286,293	286,699	
	전불비용					41,850		
	미경과경비					3,002		
	미달계정					125,760		
	기타자산				1,500		585,999	
손실 계정								
	전기이월손실금	70,717	206,437	775,248	-	225,295	1,089,068	
	당기손실금	135,740	568,810	99,450	42,317	863,773	224,237	
합계		1,254,305	1,606,710	4,877,712	5,152,751	19,237,879	26,684,757	
자 본 부 채	자본금	195,000	195,000	2,594,500	2,597,500	2,597,500	2,597,500	
	장기 부채	산업설비영단					7,864,000	9,364,000
		전시금융금고					2,000,000	
	단기 부채	단기(식산은행)	382,085	824,825	1,897,725	1,817,000	5,500,000	10,952,867
		지불어음	183,694	269,258	290,077		540,485	410,439
		매입채무				673,739	433,652	199,784
		전수금				27,594	117,430	430,575
		미불금	169,394	50,262	72,870	33,272	147,298	135,986
		가수금	28,800	138,139	22,540		9,388	262,478
		차액계정					16,960	22,446
		제품매상계정						26,630
		직원신원보증금					11,173	14,729
	가불금				1,375			
	예금				2,277	0		

자료: 日本無煙炭製鐵(株), 「기별 영업보고서」로부터 작성.

제2기(1940년 10월~1941년 9월)의 경영성적이다.¹⁴⁾ 자산운영의 경우, 총 자산 95만 9,000원 가운데 고정자산은 21만 8,000원으로 약 22%를 차지했던 반면, 연료를 포함한 유동자산은 31%를 차지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장 계정으로 해공공장 1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나중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신규 공장건설을 위해 토지 매입금이였다. 더구나, 운영자산 가운데 20만 6,000원의 손실금을 계상했는데, 이는 자산총액의 약 21%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한편, 자본과 부채의 경우, 자기자본은 19만 5,000원으로 사용자본의 20%에 불과했던 반면, 조선식산은행 차입금은 38만 2,000원으로 자기자본의 80%에 상당하는 단기부채를 계상하였다. 더욱이, 같은 기간 손익은 수입 85만 원, 지출 220만 원으로 당기 손실액 13만 6,000원을 기록하였고, 지출은 주로 수익과 무관한 무연탄제철의 실험 연구비(주로 원재료비)였다. 그 결과, 朝鮮渡邊鑄工은 전기 이월손금을 포함해서 20만 6,000원을 후기 이월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3기(1941년 10월~1942년 9월)의 경우이다.¹⁵⁾ 1942년 8월 당시 기존 경성공장은 소형용광로 10톤과 15톤 용광로 각각 1기와 주물공장 250평, 확장공사 외증의 주물공장 652평, 공원수 150명이였다.¹⁶⁾ 운영자산의 경우, 총자산 147만 7,000원 가운데 고정자산이 총자산의 약 21%를 차지했던 반면, 연료와 제품을 포함한 유동자산은 0.4%, 당좌계정 8%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전기 이월손금과 당기 손실금 56만 9,000원을 포함한 손실금 총액은 77만 5,000원에 달하였다. 이는 총자산의 약 52%가 부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본과 부채의 경우, 자기자본은 19만 5,000원으로 총사용 자본의 13%에 불과했던 반면, 부채는 조선식산은행 차입금 82만 5,000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제2기에 비해 부채 규모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손익은 수입 3만

14)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1. 6. 30, 「第2期(1940년 10월 1일~1941년 9월 30일)營業報告書」.

15)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2. 9. 30, 「第3期(1941년 10월 1일~1942년 9월 30일)營業報告書」.

16)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2. 8. 26, 앞의 글.

5,000원에 대해서 지출 91만 원으로 당기 손실액은 약 57만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자기자본의 약 3배에 육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朝鮮渡邊鑄工은 자기자본의 5배에 달하는 이월 손실금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4기(1942년 10월~1943년 3월)의 영업 성적이다.¹⁷⁾ 운영자산의 경우, 총자산 540만 8,568원 가운데 고정자산 53만 원으로 약 9%를 차지했던 반면, 연료와 제품을 포함한 유동자산은 11만 8,000원으로 2%에 불과하였다. 반면, 손실금 계정은 전기 이월금 77만 5,000원과 당기 손실금 9만 9,000원을 포함해서 합계 87만 4,000원에 달하였고, 이는 총자산의 89%가 부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본과 부채의 경우, 자기자본은 259만 4,500원으로 47%에 달하였고, 부채는 조선식산은행 차입금 189만 8,000원을 비롯해서 228만 3,000원의 단기부채를 계상하였다. 이는 제3기에 비해 부채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손익은 수입 20만 원에 대해서 지출 약 30만 원으로 당기 손실금 약 10만 원을 계상하였다. 그 결과, 이월 손금은 전기 이월 손금 77만 5,000원을 포함한 87만 4,000원으로 자기자본의 33%에 달하였다.

이상, 朝鮮渡邊鑄工은 조선총독부의 실험공장으로 지정되었고,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소형용광로 제철법의 개발 과정에서 실험연구비 전액을 조선식산은행 차입금과 사장 渡邊 勇의 개인자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1942년 이후 朝鮮渡邊鑄工은 보다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면서 종래 융자관계에 있던 조선인 자본가 백낙승의 경영체제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백낙승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朝鮮渡邊鑄工은 경영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눈덩이로 불어나는 막대한 차입금과 함께 매기마다 납입 자본금 규모를 상회하는 당기 손실액의 계상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17)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3. 3. 31, 「第4期(1942년 10월 1일~1943년 3월 31일)營業報告書」.

Ⅲ. 日本無煙炭製鐵(株)의 설립과 産業設備營團

한편, 1942년 6월 백낙승은 朝鮮渡邊鑄工을 인수해서 일본무연탄제철(주)을 설립하였고, 같은 회사는 1942년 10월 제국정부가 국책으로 추진하는 소형용광로 제철계획의 조선지역 담당회사로 지정되면서 사업경영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_ 산업설비영단의 군수금융

1942년 6월 朝鮮渡邊鑄工의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표 3>과 같이 당시 굴지의 조선인 자본가 백낙승¹⁸⁾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42년 12월 朝鮮渡邊鑄工은 제국정부가 추진하는 소형용광로 제철계획에 참가하게 되면서 조선지역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43년 2월 백낙승은 朝鮮渡邊鑄工을 인수해서 일본무연탄제철(주)로 재편하는 한편, 회사 자본금을 종래 19만 5,000원에서 그 13배에 달하는 259만 7,5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일본무연탄제철 설립 당시 백낙승은 발행 주식 10만 주 가운데 3만 900주(지분율 39%)를 소유하였다. 또한, 회사 본점을 종래 고양군 독섬에서 경성부 인사동으로 이전하는 한편, 새

18) 백낙승(1886년 6월 25일~1956년 10월 12일)의 본관은 수원이다. 서울 종로 육의전에서 포목점을 경영했던 巨商 백운수(白潤洙)의 4형제(낙원, 낙중, 낙삼, 낙승)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백낙승은 일본 明治大學 법학과와 日本大學 상학과를 졸업했고, 1924년 부친 백운수가 창업한 大昌貿易(株) 取締役에 취임하면서 기업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6년 금전대부업의 愛國合名會社, 1928년 海東織物(주), 1935년 三和製藥(株)을 설립하였다. 1930년대 말 큰형이 사망하면서 大昌織物(주)의 경영권을 계승하였다. 1942년 大田興亞織布工場을 설립했고, 1942년 江原造船鐵工(주) 사장에 취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는 관동군사령부 헌병대와 결탁해서 직물의 만주수출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고도 한다. 또한, 1944년에는 굴지의 조선인 자본가 박홍식과 함께 조선비행기공업(주)을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였다. 高承濟, 1973, 『韓國經營史研究』, 韓國能率協會; 趙璣濬, 1983,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표 3〉 백낙승의 자산조사서

(단위: 원)

구분	과목	내역	금액	합계
자 산	부동산	경기도 고양군과 서주군, 경성, 춘천, 대구부 등	1,124,000	1,124,000
	증기증권	삼릉상사, 일본질소, 일본면화 전남군제제사, 유정락공장, 일본무연탄제철 태창직물, 대동방직	3,390,000	3,590,000
	투자금	만주직물공장	2,000,000	4,800,000
		만주도자기공장	600,000	
		대전직물공장	650,000	
		포항해수이용화학공장	350,000	
		여수축항	750,000	
	대부금	기타	450,000	1,600,000
		일본무연탄제철	450,000	
		태창직물	1,000,000	
예금/현금	전향각	150,000	300,000	
	합계		11,414,000	
부채	차입금	한성은행 차입금	1,240,000	1,240,000
순자산				10,174,000
구분	과목	내역	주식/금액	
자 산	부동산	지방분을 포함		320,000
		일본무연탄제철	80,000	2,800,000
		태창직물	4,300	
		해동직물	4,300	
		일본면화	2,000	
		전남군제제사	1,500	
		유정염공장	500	
		대흥무역	630	
	은행예금		10,000	
	가구집기		30,000	
합계			3,200,000	
부채	차입금		100,000	100,000
합계				3,100,000

주: 1943년 5월 20일.

자료: 戰時金融金庫(1943. 6), 『日本無煙炭製鐵(株)書類綴』.

롭게 동경지점을 개설하였다. 경영진의 면면은 사장 백낙승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인 일색이었다.¹⁹⁾ 그 결과, 일본무연탄제철은 종래 영세 철광소로부터 국책회사로 탈바꿈하였고, 1945년 4월 제2차 朝鮮 軍需會社 지정을 받았다.²⁰⁾

1942년 중반 이후 조선총독부는 무연탄 제철법의 사업화를 의도하고, 조선산 풍부한 무연탄과 철광석을 활용한 대대적인 철강 증산정책을 추진하였다. 물론 朝鮮渡邊鑄工(株)에 대해서도 1942년 9월 소형용광로 제철공장 건설을 명령하였다. 이후 공장의 입지 선정과 건설 계획은 <표 4>와 같았는데, 1942년 12월 당시 경성, 해주, 평양, 개천지역을 중심으로 10톤 용광로 2기와 20톤 용광로 20기 건설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해주공장 20톤 용광로 2기, 진남포공장 20톤 용광로 8기 건설을 결정하였다. 반면, 경성공장은 입지조건 등 현지제철주의 철강 증산정책의 취지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인지 최종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무연탄제철의 생산체제는 군수공장(해주와 진남포공장)과 비군수공장(경성공장)으로 이원화되었고, 그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았다.²¹⁾

첫째, 공장건설과 생산계획이다. 정부의 철강 증산정책에 대응해서 용광로 20톤 10기 건설과 연간 5만 톤 생산을 계획하였고, 6월 2일 조선총독부 정부총감으로부터 정식으로 시설투자 명령이 있었다. 생산계획은 1943년 9월 1일 해주공장 2기 건설(일산 40톤 생산), 1943년 10월 1일 진남포공장 3기 건설(일산 60톤 생산), 1943년 11월 1일 진남포공장 3기 건설(일산 60톤 생산), 1943년 12월 1일 진남포 공장 2기 건설(일산 40톤 생산)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생산능력은 연간 250일 조업으로 연산 5만 톤 생산을 예정하였다.

19) 朝鮮殖産銀行, 1944. 12. 3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代理貸付申請ノ件」.

20) Joung An-Ki, "The Wartime Economy in Imperial Japan and the Mobilization of Munitions in Its Colon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mplementation in Korea of the Munitions Company Act during the final period of the wa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4(4), 2011; 정안기, 2014, 「식민지 군수동원과 군수회사 체제의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63권.

2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3. 6. 28, 「事業目論見書」.

〈표 4〉 1942년도 일본무연탄제철(주)의 소형용광로 건설계획과 수정계획 (단위: 기, 톤)

수정 연월	공장명	용광로 톤수	생산 능력	1943년도 예정생산량	공장건설 착수연월	공장건설 완성연월	소요강재량			
							1~ 3월	4~ 6월	7~ 9월	계
12월 11일	경성	10*1	3,000	30,000	既	既	-	-	-	기설
		10*1	3,000	30,000	1942. 8	1943. 1	-	-	-	
	해주	20*1	6,000	5,500	1943. 1	1943. 4	260			260
		20*4	24,000	18,000	1943. 4	1943. 6				
평양	20*5	30,000	20,000	1943. 4	1943. 7	260			260	
	개천	20*5	30,000	15,000	1943. 7	1943. 9	160	270	110	540
		20*5	30,000	7,500	1943. 1	1943. 12				
	12월 21일	해주	20*1	6,000	4,400	1943. 1	1943. 4	350		
20*4			24,000	14,400	1943. 4	1943. 6				
평양		20*5	30,000	16,000	1943. 4	1943. 7	350			350
		개천	20*5	30,000	12,000	1943. 7	1943. 9			
	20*5		30,000	6,000	1943. 1	1943. 12	300	400	700	700
12월 25일	해주	20*1	6,000	4,400	1943. 1	1943. 4				
		20*4	24,000	14,400	1943. 4	1943. 6				
	진남포	20*5	30,000	16,000	1943. 4	1943. 7				

자료: 朝鮮殖産銀行(1942, 12, 11), 「小型溶鐵爐關係綴」.

둘째, 공장의 입지 선정이다. 해주공장의 경우, 철광석 산지 長銀鑛山과 下凌鑛山 외 석회석 취득이 용이하고 회사 소유 토지(해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진남포 공장의 경우, 철광석, 무연탄, 석회석 등 원재료 취득과 함께 운송이 용이하고 전력이 풍부하다는 입지조건에 주목하였다. 해주공장의 경우, 자기소유지 3,000평과 함께 사유지 7,000평은 해주부 알선으로 매수하는 한편, 진남포공장은 평남도청 소유지 4만 평과 사유지 3만 평을 진남포부 알선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셋째, 공장건설과 자금계획이다. 〈표 5〉와 같이 해주와 진남포공장 건설비는 합계 977만 원을 계상하였다. 자금계획은 진남포공장의 경우, 설비자금

〈표 5〉 일본무연탄제철(株)의 제철소 건설 계획

(단위: 원, 톤)

공장 구분	품명	취득처/금액	연간 사용량	비고	
진남포	설비	토지	50,000		
		건물	550,000		
		용광로	300,000		
		기계설비	670,000		
		예비비	200,000		
	원료	철광석	개천, 재령, 은율, 장은광산	80,000	1개월/6,400톤
		무연탄	봉천, 삼척, 평양탄광	64,000	1개월/5,120톤
		석회석	황해도창	40,000	1개월/3,800톤
		코크스	철강원료 통제회	16,000	1개월/1,280톤
		점결제	황해철령	72,000	1개월/600톤
해주	설비	토지	1,040,000		
		건물	1,400,000		
		용광로	1,200,000		
		기계설비	3,680,000		
		예비비	650,000		
	원료	철광석	개천, 재령, 은율, 장은광산	20,000	1개월/1,600톤
		무연탄	봉천, 삼척, 평양탄광	16,000	1개월/1,200톤
		석회석	황해도창	10,000	1개월/960톤
		코크스	철강원료 통제회	4,000	1개월/320톤
		점결제	황해도창	1,800	1개월/150톤

자료: 戰時金融庫(1943. 6), 『日本無煙炭製鐵(株)書類綴』.

800만 원과 6개월 운전자금 267만 2,000원, 해주공장은 설비자금 177만 원과 3개월 운전자금 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다. 건설자금은 산업설비영단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전자금 350만 2,000원은 1944년 3월 자본금 납입과 조선식산은행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자금계획이었다. 공장건설 관련 소요자재는 鐵鋼統制會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노동자 확보와 양성은 해주공장 150명과 진남포공장 800명, 합계 950명으로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모집해

서 경성공장에서 숙련공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셋째, 생산 선철의 판매계획이다. 총독부 지시물량은 연산 5만 톤으로, 공판가격은 톤당 234원(육군인천조병창의 가격 사정에 따라 변경 예정)이었다. 따라서 사업수지는 수입 1,170만 원(5만 톤*234원)과 지출 1,030만 원으로 연간 140만 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 계상을 예상하였다.

한편, 일본무연탄제철은 산업설비영단과 공장건설의 청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²²⁾ 계약에 근거한 공장 건설자금 977만 원은 제1회 1943년 8월 25일 316만 4,000원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1944년 1월 말까지 분할해서 차입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청부공장 건설은 1943년 12월 말 완성이었고, 마지막 제4회 설비자금 190만 6,000원은 1944년 1월 말 결제를 예정하였다. 이는 제4회 설비자금이 甲乙關係의 통상적인 청부계약이었기 때문에 공장건설의 지연과 하자 등 계약의 이행 여부를 고려한 증거금적 성격이었다.

2_ 제철소 공장 건설의 부진과 설계 변경

일본무연탄제철은 1944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1943년 6월 말 현재 해주공장의 경우, 20톤 용광로 2기 건설의 공사 진척도는 45% 수준이었고, 건설예산 177만 원 가운데 1943년 8월 당시 차입 공사비는 80만 원이었다. 또한, 20톤 용광로 8기의 진남포공장 건설은 일부 공장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었다.²³⁾ 1943년 8월 말 진남포공장 건설예산

22)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3. 6. 28, 「産業設備營團卜ノ契約書寫」. 계약서 요지는 제2조,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즉시 설비건설에 착수하고, 1943년 말까지 이를 완성해서 건설부지와 함께 갑에 인도한다. 제3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제1조의 제철소와 그 부속 토지를 비롯한 일절의 공사대금으로 총 977만 원을 지불한다. 제9조, 공사가 준공되고 을로부터 인도된 설비는 갑이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임대 기간은 갑이 을로부터 준공한 설비를 인도받을 때부터 5년으로 한다. 제20조, 을은 언제든지 당해 설비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23)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3. 6. 30, 「第5期(1943년 4월 1일~1943년 6월 30일)營業報告書」.

800만 원 가운데 차입 공사비는 320만 원이었고, 공사 진척률은 40% 수준이었다. 공사 진행은 10월 2기, 11월 2기, 12월 4기 완성과 조업 개시를 예정하였다.²⁴⁾ 그러나 양대 청부공장 건설은 산업설비영단과의 당초 계약과 달리 1943년 12월 건설 완료 기일을 넘기고 말았다. 나아가, 해주공장은 계획했던 용광로 2기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된 1943년 9월 초 완료하였다. 이는 내화연와의 품질불량과 공급애로에 직면하면서 조업의 중지와 재개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해주공장 제1호기 조업은 1일 평균 23톤을 생산했지만, 용광로 개보수를 이유로 1944년 5월 중순 조업을 중지하고 말았다. 제2호기는 4월 초 조업을 개시해서 약 20여 일에 걸쳐 제1호기와 동시 조업을 개시했지만, 6월 초 조업 중지와 함께 제1호기 조업만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즉, 해주공장은 공장건설 완료에도 불구하고, 조업 불안정과 원재료 부족으로 1호기와 2호기의 교대 조업이 불가피하였다.²⁵⁾ 1944년 6월 말 진남포공장 건설과 조업은 1943년 말까지 단지 2기 건설에 그쳤고, 1944년 2월 제1호기는 개보수를 이유로 조업을 중지한 상황이었다. 곧바로 제2호기 조업을 개시했지만,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이는 鐵管式 熱風爐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²⁶⁾ 당시 파열 강도가 낮은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소형용광로의 선철작업은 용광로 내부의還元작용을 촉진하고자 별도의 열풍로를 설치해서 섭씨 350도 이상의 열풍을 용광로에 지

24) 朝鮮殖産銀行, 1944. 2. 26,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資金融通ノ件」.

25)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4. 6. 30, 「第6期(1944년 1월 1일~1944년 6월 30일)營業報告書」.

26)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43년 말 제1호기 용광로 조업을 중지 이후 제2호기 조업을 개시했지만, 용광로와 열풍로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었기 때문에 열풍로에서 발생하는 열풍 온도가 저하하면서 용광로에 도달하였을 때는 대략 100~120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용광로 내부온도 저하로 2월 3일 조업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즉시 제5~6호기의 突貫공사와 커버식 열풍로에 의한 4월 1일 제6호기, 4월 10일 5호기의 조업을 개시했지만, 전부 조업개시 당일 조업중지가 불가피하였다. 이는 모두 설계 미비에 의한 것으로 기술진의 更迭과 설계를 전면 변경하고 心機一轉해서 재건설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4. 6. 30, 위의 보고서.

속적으로 송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진남포 공장의 철관식 열풍로는 섭씨 350도 이상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송풍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는 조업 중지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1943년 10월 자재가 허락되는 범위에서 열풍로를 철관식이 아닌 코퍼식(Cowper's hot blast stove)으로 개조할 것을 명령하였다.²⁷⁾ 일본무연탄제철은 1944년 9월 12일 산업설비영단 앞으로 청부공장의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을 신청하였다. 당시 설계 변경과 추가 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한 공장건설과 조업 실패는 다음과 같았다.²⁸⁾

진남포공장은 1943년 3월부터 공장건설에 착수했지만,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어 1943년 11월 1호기, 같은 12월 2호기를 조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1개월만에 조업을 중지하였다. 1944년 3월과 4월에 각각 5호와 6호기를 완공해서 조업을 개시했지만, 조업 불순으로 조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44년 5월부터 용광로 설계를 전부 변경하고, 新設計에 기초해서 건설을 개시하였다. 당초 계획은 용광로 8기 건설을 예정했지만, 지난 10월 총독부가 미완성 공사의 정비와 전력화를 위해 미완성분 설비와 자재를 다른 긴급공사에 전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진남포공장은 8기 가운데 미완성분 2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현재 6기는 거의 건설을 완료했지만, 현재 조업 중에 있는 것은 1기뿐이고, 나머지 5기분은 연내 조업 재개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부대설비로서 연탄 제조설비와 크스의 포토식 소결로를 건설하는 와중이다.

그러나 1944년 9월 진남포공장은 조업 부진과 빈번한 설계 변경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 그 사정을 고려해서 소형용광로 건설 계획의 重點主義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진남포고장 건설에 착수한지 거의 1년 이상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상의 8기 완성을 완료하지 못하

27) 朝鮮總督府, 1944, 「昭和十九年度小型鑄鐵爐生産確保對策」, 3~4쪽.

28) 朝鮮殖産銀行, 1944. 12. 9,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二對スル追加運轉資金代理貸付ニ關スル件」.

〈표 6〉 1944년 말 일본무연탄제철²⁹⁾의 설비예산과 변경 내용 (단위: 원)

구분	항목	당초 예산	설계변경 증가액	추가공사 예산액	신규 예산액
진남포 공장	토지	1,070,000	1,036,978	480,000	2,586,978
	건물	1,720,000	677,557	411,100	2,818,657
	공작물	2,150,000	753,269	307,365	3,210,634
	기계	2,715,000	2,309,806	1,348,100	6,272,906
	총계비	-	810,000	270,000	1,080,000
	예비비	225,000	-	200,000	635,000
	계	7,880,000	5,587,610	3,016,565	16,604,175
해주 공장	토지	50,000	186,830	12,000	248,830
	건물	600,000	112,090	77,000	789,090
	공작물	335,000	17,432	166,880	509,212
	기계	655,000	3,747	22,200	680,947
	총계비	-	140,000	20,000	170,000
	예비비	130,000	150,344	20,000	300,244
	계	1,770,000	610,443	318,080	2,698,323
총계	9,650,000	6,198,053	3,334,645	19,302,498	

자료: 朝鮮殖産銀行(1944. 12. 9),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追加運轉資金代理貸付ニ關スル件」.

고 일부 조업에 그쳤던 것은 최초로 시도한 무연탄을 이용한 제철이었기 때문에 용광로 조절이 양호하지 못하여, 금후 적극적인 연구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사업의 성격과 함께 연료 코크스의 입수 곤란, 기술 공의 부족, 연료 자체의 불비²⁹⁾ 때문이었다. 그 결과, 무연탄제철의 성공 여부

29) 朝鮮殖産銀行, 1944. 12. 9,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追加運轉資金代理貸付ニ關スル件」. 1943년 12월 조선식산은행 특별용자부도 '朝鮮小型鎔鐵爐의 建設狀況'이라는 보고서에서 용광로 건설과 조업부진의 요인으로 “日鐵의 청진과 겸이포를 제외하면, 전부 건설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코크스 배급의 두절로 사업 전도가 위협되고, 기술자 부족과 내화연와의 저품질 그리고 심각한 자재 부족”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는 무연탄의 해탄화에 있다고 판단한 조선총독부는 전면적인 설계 변경과 함께, 해탄로와 분철광석의 소결로 건설³⁰⁾ 등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결정하였다.³¹⁾

결국, 진남포공장은 공장건설의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표 6>과 같이 추가 공사를 위한 신규 예산 1,660만 4,175원(전체 예산의 86%)을 계상하였다. 이는 당초 계약금 800만 원의 약 2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해주공장은 신규 예산총액 269만 8,523원을 계상하였다. 설계변경과 예산증가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추가예산 가운데 실제 공사비보다는 자재가격 상승분이 약 2배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추가 시설투자는 단지 무연탄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대시설의 확충만이 아니라 자재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3_ 경성공장의 확장과 시설자금의 流用

한편, 막대한 자기자본의 잠식과 증가하는 불량자산 그리고 막대한 손실금 계상이 불가피했던 재무조건을 고려하면, 경성공장은 앞서 해주와 진남포공장과 구별되는 경영 활동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성공장은 1941년 이래 적극적인 주물공장과 가공설비 확장을 추진하였다. 경성공장의 입지조건은 경성부 근처의 독섬에 위치했지만,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철광석과 무연탄 등 적시 입하가 곤란하였다. 주요 설비는 1939년 이래 재생선철로를 개량·확장한 것으로 1943년 6월 말 당시 소형용광로 10톤과 15톤 각 1기의 선철공장과 주조공장 그

30) 1943년 5월 임시생산위원회는 粉鑛石 활용을 목적을 포트식 燒結爐를 內地와 조선에 급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이를 소형용광로 공장에 설치해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粉鑛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소결설비가 필요했던 것은 당시 조선산 자철광석의 경우, 直接還元이 곤란했고 그래서 철광석의 燒結에 따른 형질 전환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朝鮮總督府, 1944. 「昭和十九年度小型鑄鐵爐生產確保對策」, 4쪽.

3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4. 12. 8. 「小型鑄鐵爐建設工事設計變更增設對策計劃申請書」.

리고 추가로 가공공장 증설의 외증이었고, 무연분탄을 원료로 하는 연탄공장의 생산체제였다. 그 가운데 10톤 용광로는 1941년 말부터 조업을 계속했지만, 빈번한 용광로의 개보수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조업은 지지부진하였다. 실제로, 같은 기간 주물공장 생산량은 629톤이었고, 주력 제품은 일반 가마솔이었다.³²⁾ 경성공장의 조업부진은 기술자 부족, 내화연와의 품질 불량, 입지 조건의 제약에 따른 원재료의 적시 입하 곤란, 관리부실에 따른 생산능률의 저하 때문이었다.³³⁾

한편, 일본무연탄제철은 1944년 12월 전시금융금고로부터 청부공장 운전 자금 명목의 200만 원과 청부공장 설비변경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450만 원 용자를 신청한 상황에서 전시금융금고 앞으로 경성공장 증설을 위한 350만 원의 용자를 의뢰하였다.³⁴⁾ 그러나 일본무연탄제철은 용자신청 시점에서 증설예산 350만 원 가운데 조선식산은행 전대 차입으로 이미 159만 5,000원을 지출한 상황이었다. 당시 경성공장 증설은 주물 가공공장 설비와 분철광의 소결로 신설이었다. 실제로, 1944년 10월 말 당시 일본무연탄제철은 손실금 121만 3,000원, 실험 연구비 98만 4,000원, 청부공장 손실금 47만 8,000원, 시험연구비 57만 원을 계상하면서 불량자산 총액은 224만 5,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總督府의 經理調査”³⁵⁾에 따르면, 기타 은폐 불량자산을 추가하면, 결손금과 불량자산 합계액은 약 400만 원에 달하였고, 이는 자기자본의 약 2배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메인뱅크 조선식산은행의 입장에서도 소형용광로 제철계획과 무관한 경성공장 증설에 대한 추가용자를 주저하는 것도 어찌면 당연하였다. 실제로, 당시 조선식산은행 頭取 林繁藏은 다음과 같

32) 朝鮮殖産銀行, 1944. 2. 26,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資金融通ノ件」.

33)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3. 11, 「朝鮮ニ於ケル小型鑄鑪製鐵事業計劃ノ經緯」.

34) 1944년 10월 당시 350만 원 건설예산(10월 말 지출액)의 내역은 토지 16만 267원(10만 390원), 건물 97만 2,157원(79만 8,509원), 공작물 20만 9,880원(8만 8,725원), 기계설비 191만 2,734원(92만 4,878원), 예비비 24만 4,962원(8만 2,121원)원 이었고, 10월 말 지출내역은 199만 4,623원이었다.

35) 朝鮮殖産銀行, 1944. 12. 9, 앞의 글.

은 입장이었다.³⁶⁾

본 건 신청과 관련한 경성공장은 이미 건설도상에 있으며, 본 건 신청액 350만 원의 약 반액(175만 원)은 이미 지출한 상황이다. 그리고 당사의 자산상태를 보면, 자기자본은 손실 혹은 시험연구비로 전부 消失했기 때문에 경성공장 건설비로 지출한 약 160만 원은 산업설비영단의 청부공사로 건설 중인 진남포와 해주공장 건설비 혹은 운전자금을 卽時 流用한 것이다. 때문에 본 건 경성공장 건설자금을 별도로 차입해서 조달하지 못한다면, 진남포와 해주공장 건설을 완료해서 소기의 사업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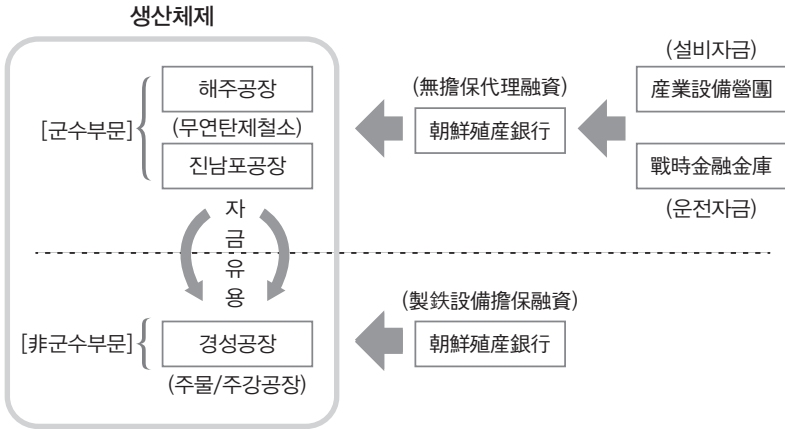
따라서 당시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군수회사에 대한 대리용자를 담당했던 조선식산은행은 전시금융금고에 대해 거의 背水陣에 가까운 소견으로 일본무연탄제철에 대한 자금수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무연탄제철이 군수공장 건설과정에서 설계와 시공능력 부족으로 막대한 손실금을 계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용광로제철계획과 무관한 경성공장의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청부공장 건설자금을 流用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청부공장 건설자금은 <그림 1>과 같이 군수분문(해주와 진남포공장)으로부터 비군수 부문(경성공장)으로 전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서 국책사업이었던 해주와 진남포공장 건설이 크게 지연되었던 것도 결국은 청부공장 건설자금을 전용해서 비군수 경성공장의 설비 확장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일본무연탄제철에 대한 강압적인 경리조사까지 실시해서 대규모 추가 부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공장의 설비 확장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성공장이 당초 무연탄제철의 실험공장이었다는 사실³⁷⁾과 당시 소형용광로 제철기업들의 무연탄제

36) 朝鮮殖産銀行, 1944. 12. 3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代理貸付申請ニ關スル件」.

37) 遠藤鐵夫, 1944, 『無煙炭煉炭ニ依ル銑鐵實驗報告』, 朝鮮總督府.

〈그림 1〉 일본무연탄제철(주)의 생산체제와 軍需金融



자료: 필자 작성.

철에 대한 기술적 의문과 함께 코크스 할당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실³⁸⁾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일본무연탄제철의 주력공장이었던 경성공장의 조업부진과 이에 따른 경영파탄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연탄제철계획의 상징적 존재였던 일본무연탄제철의 파산은 결국 조선총독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조선형 철강증산 모델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38) 당시 조선총독부의 梶川철강과장은 무연탄제철에 대한 담당회사들의 반발에 대해 “원래 분탄을 연탄으로 만들어 선철을 생산한다는 것이 금번 소형용광로제철의 당초 계획이며, 귀사도 이를 인지해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塊炭이 아니면 안된다는 주장은 귀사만이 아닌 모두(당시 조선지역 소형용광로제철기업)가 열망하는 것”이라 반박하였다. 정안기, 2011, 「戰時期 日本鋼管(주)의 조선 투자와 경영」, 『경제사학』 제51호.

IV. 일본무연탄제철(주)의 사업성과 영업 부진

다음은 이상과 같은 일본무연탄제철의 제철공장 건설 경위와 실태에 입각해서 개별 공장의 조업과 사업성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_ 조업실적과 영업부진

먼저, 공장별 조업실태이다. <표 7>과 같이 일본무연탄제철은 1942년 10월 8일~1945년 1월 22일에 걸쳐 조업일수 586일, 합계 약 5,640톤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장별 용광로 일간 평균 생산규모(경성공장 10톤과 15톤, 해주공장과 진남포공장이 각각 20톤)를 고려하면, 총생산량은 그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일간 평균 생산량은 경성공장 제1호기 8톤과 제2호기 8톤, 해주공장(각각 20톤) 제1호기 11톤과 제2호기 10톤을 기록하였고, 진남포공장(각각 20톤) 제1호기 3톤과 제2호기 12톤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장별 일간 평균 생산량도 당초 생산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월간 조업일수는 평균 15일 이하였고, 조업일수에 대응하는 평균 생산량도 지극히 불안정하였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1942년 당시 주요 경제잡지에 소개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무연탄 사용은 극히 한정적이었던 사실이다. 당초 실험성적에 따르면, 일본무연탄제철의 기술적 우위는 연료 사용량 가운데 90%의 무연탄 사용으로 코크스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주력 실험공장이었던 경성공장마저 무연탄 사용량은 약 50~60%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료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진남포공장 제1호기 용광로는 1943년 11월 10일~12월 8일까지 무연탄이 아닌 100%의 코크스 조업이었다. 해주공장과 진남포공장의 경우는 총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장별 차이는 있었겠지만, 연료사용 가운데 40% 이상 코크스 사용이 불가피

〈표 7〉 일본무연탄제철(주)의 공장별 조업 성적

(단위: kg, %)

공장명	용광로명 (화입년월)	조업기간	생산량	조업 일수	당초 계획량	1일 평균 생산량	무연탄 사용 평균 비율	
경 성	제1호	1942. 10. 8~12. 21	277,132	35	350	21,845	-	
		1943. 1. 22~6. 17	544,389	69	690	7,890	-	
		1943. 6. 6~6. 17	90,245	12	120	7,520	74	
		1943. 7. 24~8. 7	122,395	14	140	8,159	66	
		1943. 8. 16~8. 30	113,890	15	150	7,590	52	
		1943. 11. 27~11. 15	149,014	18	180	8,278	50	
		소계	1,019,933	163	1,630	6,257	-	
	제2호 (1943. 5. ?)	1943. 10. 18~10. 31	146,765	14	210	10,483	61	
		1943. 11. 1~11. 22	138,915	22	330	6,314	45	
		소계	285,680	36	540	7,935	53	
		합계	761,224	95	1,130	8,012	-	
해 주	제1호 (1944. 9. 13)	1943. 10. 2~10. 6	28,030	4	80	7,009	21	
		1944. 7. 11~7. 31	394,737	20	400	19,736	-	
		1944. 8. 1~8. 9	34,621	9	180	3,846	-	
		1944. 9. 13~9. 20	73,781	8	160	10,540	38	
		1944. 9. 21~9. 30	120,111	10	200	12,011	60	
		1944. 10. 1~10. 10	151,938	10	200	15,193	60	
		1944. 10. 11~11. 20	105,021	10	200	10,502	64	
		1944. 10. 21~10. 31	143,676	11	220	13,061	36	
		1944. 11. 1~11. 10	142,854	10	200	14,285	54	
		1944. 11. 11~11. 20	125,145	10	200	12,514	30	
		1944. 11. 21~11. 30	100,880	10	200	10,088	-	
		1944. 12. 1~12. 10	69,239	10	200	6,923	-	
		1944. 12. 11~12. 31	164,793	21	420	5,493	-	
		1945. 1. 1~1. 30	295,501	30	600	9,500	-	
		1945. 2. 1~2. 10	89,378	10	200	8,931	-	
			소계	2,039,705	183	3,660	11,025	-

공장명	용광로명 (화입년월)	조업기간	생산량	조업 일수	당초 계획량	1일 평균 생산량	무연탄 사용 평균 비율
해 주	제2호 (1944. 8. 19)	1944. 8. 20~8. 31	95,259	11	220	7,938	-
		1944. 9. 1~9. 9	56,729	9	180	6,303	-
		1944. 12. 16~12. 30	69,546	15	300	4,967	-
		소계	221,534	35	700	6,329	-
	합계	2,261,239	218	4,360	10,372	-	
제1호 (1943. 11. 9)	1943. 11. 10~11. 30	57,935	21	420	2,758	0	
	1943. 12. 1~12. 8	16,356	8	160	2,044	0	
	1944. 7. 11~7. 19	68,260	9	180	7,584	-	
	소계	142,551	38	760	3,751	0	
진 남 포	제5호 (1944. 9. 8)	1944. 9. 8~9. 20	186,759	12	240	14,319	-
		1944. 9. 21~9. 30	159,169	10	200	15,916	71
		1944. 10. 1~10. 10	163,449	10	200	16,344	77
		1944. 10. 11~10. 20	152,060	10	200	15,206	0
		1944. 10. 21~10. 31	161,341	10	200	14,667	-
		1944. 11. 1~10. 10	113,304	10	200	11,330	-
		1944. 11. 11~11. 20	138,277	10	200	13,827	0
		1944. 11. 21~11. 30	130,690	10	200	13,069	-
		1944. 12. 1~12. 10	103,522	10	200	10,352	-
		1944. 12. 11~12. 31	202,549	21	420	6,984	-
		1945. 1. 1~1. 22	170,736	22	440	7,760	-
		소계	1,681,856	135	2,700	12,458	-
	합계	1,824,407	173	3,460	10,545	-	
총 계	5,640,361	586	9,990	9,997	-		

주: 무연탄 사용 평균 비율 0%는 100% 코크스 사용을 의미함.

자료: 日本無煙炭製鐵(주), 「戰時金融金庫融資資料綴」로부터 작성.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42년 선철실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앞서 지적한 무연탄제철의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경성공장의 조업실태다. 1943년 말 경성공장은 10톤 용광로 1기와 15톤 용광로 1기, 주조공장 1개소 그리고 별도로 주조공장 1개소를 증설하는 와중이었다. 조업 상황은 10톤 용광로의 경우, 1941년 말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지만, 용광로의 개보수 일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1943년 1~6월에 이르는 조업 일수는 단지 69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같은 기간 경성공장의 선철 생산량은 544톤을 기록했지만, 이는 일간 출선량이 겨우 3톤에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조업일수에 대응하는 평균출선량도 약 7.5톤에 불과하였다. 한편, 15톤 용광로의 경우는 1943년 5월부터 조업을 개시했지만, 이 역시 기술미숙으로 용광로 조업과 개보수의 반복이었고, 1944년 후반에 이르러서도 본격적인 조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주물공장의 경우는 1943년 1~6월까지 생산량은 629톤에 달했지만, 그 절반 이상은 농기구와 가마솥 생산이 전부였다. 또한, 경성공장의 생산 선철은 총독부 지시에 따라 朝鮮鐵統制會를 거쳐 조선 총독부 교통국에 납입되었다.

일본무연탄제철의 월평균 선철 생산량은 용광로 2기 조업에 따른 연산 5,000톤 생산이 가능했지만, <표 8>과 같이 1944년 1~10월에 걸쳐 선철 213톤, 주물 99톤에 불과했고, 생산원가는 톤당 선철 626원과 주물 992원이었다. 반면, 1944년 1~10월에 걸친 선철의 톤당 공판가격은 234원이었고, 주물가격은 톤당 555원이었다. 이는 선철과 주물원가가 약 600~1,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손실액은 톤당 700여 원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높은 원가와 조업부진은 기술자 부족, 내화연와의 부족, 불리한 입지적 조건, 경영미숙 그리고 낮은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업부진의 근원은 역시 무연탄제철법 그 자체가 내재하는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다. 실제로, 파열 강도가 낮은 조선산 무연탄의 연료 사용은 용광로 내부의 환원작용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결국 선철생산의 작업속도 저하와 함께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결국, 1942년 경제잡지에 공개한 무연탄제철법은 과학적 검증을 결여한 '感에 의한 實驗'의 성과 그 다름이 아니었다.

〈표 8〉 1944년도 일본무연탄제철(주) 경성공장의 생산과 판매 (단위: 톤, 원)

구분	생산량			판매량		
	선철	주물	합계	선철	주물	합계
1월	201	79	280	6	46	52
2월	158	47	205	11	83	94
3월	259	103	362	138	51	146
4월	275	107	382	105	126	231
5월	322	127	449	0	48	48
6월	267	102	369	79	94	279
7월	209	116	325	70	41	111
8월	147	123	270	103	30	133
9월	159	104	263	118	23	243
10월	133	88	221	0	50	50
합계	2,130	996	3,126	629	591	1,221
생산원가(a)	374,015	572,292				
매출총액(b)				146,031	328,567	474,598
손실액(a-b)				227,984	243,725	

자료: 戰時金融金庫(1944. 2. 26), 『日本無煙炭製鐵(株)書類綴』로부터 작성.

2_ 빈번한 용자신청과 파이낸스

일본무연탄제철이 심각한 자본잠식과 경영부실의 와중에서도 공장건설과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조선식산은행과 전시금융금고라는 국책 금융기구의 전면적인 금융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⁹⁾ 실제로, 1943년 이후 일본무연탄제철은 조선식산은행과 전시금융금고 앞으로 빈번하게 용자를 요청하였다. 관련해서 1943년 10월 17일 조선식산은행 頭取 林繁藏는 “본 회사의

39)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진출과 용자활동에 대해서는 정안기, 2013, 「1940년대 戰時金融金庫의 조선 진출과 금융통제권」, 『경제사학』 제55호.

사업은 정부의 철강증산방책에 순응해서 조선총독부의 중용과 그 지원을 배경으로 실시한 것으로 …… 장래 그 채산성 확보가 곤란하여 운영자금은 보통금 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하는 것도 곤란”⁴⁰⁾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본무연탄제철은 1944년 2월~1945년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시금융금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의 650만 원과 경성공장 증설자금 3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차입금을 계상하였다. 그 실태를 당시 조선식산은행이 전시금융금고에 제출한 대리 융자신청서를 통해서 검토해 보자.

첫째, 제1차 운전자금 명목 200만 원의 융자다. 1943년 10월 11일 조선식산은행은 대리융자 신청서에서 “본 사업은 기업채산의 장래성은 전망이 곤란함으로 그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기대하기 곤란하다”⁴¹⁾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전자금 명목 430만 원의 융자를 의뢰하였다. 그 중 230만 원은 1944년 3월까지 제2회 주금 납입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430만 원 융자안은 현재 그 이유가 불명하지만, 1944년 2월 5일 230만 원을 3월 예정하는 제2차 주금 납입금으로 충당한다는 자금계획으로 수정되면서 실제 융자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⁴²⁾ 200만 원 융자의 부대조건은 융자금의 제철사업 운전자금 이외 차입금 변제 등에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⁴³⁾

둘째, 제2차 운전자금 명목 450만 원의 융자이다. 1944년 10월 11일 조선식산은행은 550만 원의 대리융자를 신청했는데, 그 중 250만 원은 조선식산은행이 이미 긴급 운전자금 명목으로 前貸한 상황이었다.⁴⁴⁾ 그러나 550만 원 융

40) 1943년 10월 17일 조선식산은행 頭取 林繁藏가 전시금융금고 앞으로 제출한 일본 무연탄제철의 운전자금 430만 원 대리융자의 건. 朝鮮殖産銀行, 1943. 10. 1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代理貸付申請ノ件」.

41) 朝鮮殖産銀行, 1943. 10. 11, 위의 글.

42) 朝鮮殖産銀行, 1944. 2. 5,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運轉資金融通ニ關スル件」.

43) 朝鮮殖産銀行, 1944. 2. 26,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資金融通ノ件」.

44) 朝鮮殖産銀行, 1944. 10. 1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運轉資金貸出ノ件」.

자안은 나중에 기각되고 말았다.⁴⁵⁾ 나아가, 1944년 12월 9일 조선식산은행은 재차 운전자금 명목의 450만 원 용자를 신청하였다. 그 사유는 (1) 1944년도 3월 예정했던 주금 납입의 실패, (2) 매입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운전자금의 고전화, (3) 생산선철의 공매 원가(톤당 200원)와 실제 원가(900원)와의 괴리, (4) 鐵鋼原料統制(株)의 매상가격의 보상 지연, (5) 청부공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의 증가였다. 실제로, 1945년도 운전자금 명목의 차입 필요액은 800만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400만 원은 금후 정부 매상가격의 인상분과 예정하는 既매출 보상이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실제 추가 운전자금 소요액을 45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⁴⁶⁾ 같은 450만 원의 운전자금 용자는 1945년 9월 15일 조선식산은행 앞으로 결정 통보되었다.⁴⁷⁾

셋째, 제3차 경성공장 증설자금 명목 350만 원의 용자이다. 일본무연탄제철은 1944년 12월 31일 기존 운전자금 200만 원과 당시 신청중이었던 추가 운

45) 戰時金融金庫, 1942, 12, 1, 「戰時金融金庫代理業務契約證書」.

46) 이와 관련해서 배석만은 “조선총독부는 1944년도 2만 5,000톤의 선철생산을 일본무연탄제철에 명령하였다. 백낙승은 이를 계기로 800만 원의 추가 운전자금 용자 신청을 전시기용금고에 제출하였다. …… 1차로 1945년 4월 350만 원이 경성공장 시설확충 자금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그리고 전시기용금고가 운전자금으로 나머지 450만 원 대출을 결정한 것은 일제 패망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1945년 9월 15일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지적은 명백한 잘못이다. 배석만이 확인했던 용자안에 따르면, 1944년 12월 초 추가 운전자금 명목의 800만 원 용자액 가운데 350만 원은 금후 既군납 선철의 재평가 이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450만 원이 실질적인 용자 요청액이었다. 또한, 일본무연탄제철에 대한 조선식산은행 800만 원 차입 신청은 각주 45와 같은 양측의 대리용자 업무 계약에 따라 전시기용금고가 1944년 7월 5일 직접 처리 건이라 명확한 거부사를 밝히고 있다. 결국, 450만 원 용자안은 1945년 9월 15일 결정되었다. 또한, 1944년 12월 말 비군수 경성공장의 시설 확충자금 명목 350만 원 용자안은 앞서 검토한 800만 원 용자안과 전혀 다른 명목이었다. 따라서 추가 운전자금 명목의 800만 원과 경성공장 시설확충 자금 350만 원은 명확히 구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해는 아마도 군수 공장(해주와 진남포)과 비군수 공장(경성)으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생산체제를 명확히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朝鮮殖産銀行, 1944, 12, 9,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追加運轉資金代理貸付ニ關スル件」; 戰時金融金庫, 1942, 12, 1, 앞의 글.

47) 朝鮮殖産銀行, 1945, 9, 13/15,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第三次資金融通ノ件」.

전자금 명목의 450만 원 용자신청에도 불구하고, 비군수 경성공장 증설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 용자를 신청하였다. 용자신청의 사유는 “당 공장은 무연탄 이용의 소형용광로제철법과 관련한 총독부 시험공장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당 공장은 막대한 손실과 시험연구비를 지출하였다. 현재 제철사업만으로는 收支相償이 안되고, 공장의 존립과 유지 곤란으로 생산선철과 수지조건이 양호한 주물 가공까지 일관작업을 추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당국의 방침”⁴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경성공장은 주물 가공설비의 도입과 철광석 소결로 증설 중이었고, 용자 신청액 350만 원 가운데 약 절반에 상당하는 160만 원은 앞서 先貸出·後承認의 형식으로 이미 지출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160만 원 지출자금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시 산업설비영단이 대부한 청부공장 건설 대금의 일부를 流用한 것이었다. 결국, 산업설비영단이 발주한 청부공장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라도 경성공장 증설자금의 용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같은 용자 신청안은 ‘경성공장 건설 설비자금’ 명목으로 1945년 4월 21일 용자가 결정되었다.⁴⁹⁾

이상, 일본무연탄제철은 조선식산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밀빠진 독에 물분기식의 금융수혈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체제의 유지가 곤란한 경영의 피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아가,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의 일본무연탄제철에 대해 조선총독부와 조선식산은행이 자금공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일본무연탄제철이 조선지역 무연탄제철사업의 試驗臺였으며,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동사의 過去 功績을 고려해서 同情”⁵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43년도 이후 일본무연탄제철의 사업경영은 조선총독부의 실험공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미 청부공장 건설에 투입된 막대한 건설자금이 결국 지속적인 자금용자의 인질(hostage)이 되고

48) 朝鮮殖産銀行, 1944. 12. 3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代理貸付申請ニ關スル件」.

49) 朝鮮殖産銀行, 1945. 4. 21,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第二次資金融通ノ件」.

50) 朝鮮殖産銀行, 1945. 4. 2,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シ資金融通請ノ件」.

말았다.

3_ 영업성과 수익구조

다음은 일본무연탄제철(주)의 영업 성적이다. 일본무연탄제철의 생산량과 매출액을 비롯한 전체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시금융금고 용자자료와 기타 자료를 통해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일본무연탄제철의 1944년도 1~10월까지 생산량은 선철 2,130톤과 주물 996톤을 포함한 합계 3,126톤을 생산했던 반면, 판매량은 선철 629톤, 주물 591톤으로 합계 1,220톤에 불과하였다.⁵¹⁾ 이는 생산량 대비 판매량 비율이 선철 28%, 주물 59%, 평균 39%에 불과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매출액은 선철 14만 6,031원(톤당 232원), 주물 32만 8,567원(톤당 556원)으로 합계 47만 4,598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1944년도 일본무연탄제철은 선철부문 22만 7,984원과 주물부문 24만 3,725원으로 합계 47만 1,709원에 달하는 손실액 계상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금은 1943년 1월 28일 일본무연탄제철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제시받았던 톤당 234원의 가격조건이 이후 급격한 원가 상승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⁵²⁾

51) 실제로, 1943년 6월 당시 경성공장의 선철 톤당 생산원가는 206원(원료비 78원, 보조재료비 73원, 기타 8원, 노무비 18원, 공장경비 28원)이었던 반면, 정부가 공시한 경성공장 생산선철의 판매가격은 234원이었다. 戰時金融金庫, 1944. 2. 26. 『日本無煙炭製鐵(株)書類綴』.

52) 이러한 저조한 수익률과 관련해서 조선식산은행은 “다액의 차입이 불가피한 것은 선철 원가가 900원 대에 달하였지만, 현재 매상 잠정가격은 500원으로 톤당 400원 정도가 일시 손실금으로 고정된 것이 그 주요 요인이었다. 가까운 시일내에 선철 매상가격은 그 원가를 기준으로 인상이 결정되고, 지난 매상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면, 이후 당사의 소요 운전자금은 정상을 회복하고 조업상황도 균형을 취할 것이다. …… 당사의 결손금과 불량자산 합계액은 400만 원에 달하지만, 선철 매상가격이 근일 내에 그 원가를 기준으로 인상 결정되고, 기존 매상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면, 기존 매상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 원 정도가 입금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朝鮮殖産銀行, 1944. 12. 9.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ニ對スル追加運轉資金代理貸付ニ關スル件」.

한편, 1943년도 조선지역 7사 9공장의 선철 매수량은 4만 3,650톤이었고, 이 가운데 일본무연탄제철의 선철 생산분은 2,000톤으로, 약 5%를 차지하였다.⁵³⁾ 또한, 1943년도 일본무연탄제철 생산선철의 톤당 매수가격은 일본제철(주) 132원에 대해서 290원을 기록하였고, 1944년 12월 말 정부의 선철 매수가격 톤당 234원에 대해서 일본무연탄제철 경성공장 선철생산 원가는 톤당 600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의 매수가격이 개별기업의 생산원가를 반영했음을 고려하면, 일본무연탄제철의 생산선철 경제성은 극히 낮은 것이었다.⁵⁴⁾ 물론, 무연탄제철도 조선총독부 앞으로 본격적인 조업과 함께 매상가격 인상과 함께 기존 판매분에 대한 인상가격의 소급 적용을 빈번하게 요청하였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인상률은 급격한 원가상승률에 비교하면 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으로, 채산성 확보와는 지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다음은 1943년 3월 이후 일본무연탄제철의 영업 성적이다.

제4기(1942년 3월 1일~1943년 6월 30일) 영업 성적이다.⁵⁵⁾ <표 3>과 같이 자산운영의 경우, 총 자산 629만 7,122원 가운데 고정자산 114만 4,000원으로 총자산의 약 18%를 차지했던 반면, 연료와 제품을 포함한 유동자산은 52만 7,000원으로 총자산의 8%에 불과하였다. 반면, 손실금계정과 당좌계정 그리고 기타자산이 총자산의 74%를 차지하였다. 한편, 자본과 부채의 경우, 자본금 259만 7,500원은 총자산의 41%를 차지했던 반면, 조선식산은행을 비롯한 단기부채가 총자산의 59%를 차지하였다. 손익계정은 수입 63만 원에 대해서 지출 약 77만 2,000원으로 당기손실액 4만 2,317원을 계상하였다.

53) 銑鐵懇和會, 1951, 『銑鐵統制販賣史』, 736~757쪽.

54) 관련하여 1943년 10월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의 소형용광로에서 부족한 코크스에 대신해서 풍부한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제철법을 채용하게 되었지만, 무연탄제철은 아직 본격적인 기업화에 이르지 못하여 그 생산비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를 요할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 매상가격도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신설 과정에 있는 공장이 소기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예측이 곤란하며, 채산상으로 본 사업의 장래와 성적을 전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朝鮮殖産銀行, 1943. 10. 11, 앞의 글.

55)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3. 6. 30, 「第4期(1943년 4월 1일~1943년 6월 30일)營業報告書」.

제6기(1944년 1월 1일~1944년 6월 30일) 영업 성적이다.⁵⁶⁾ 자산계정의 경우, 총자산 2,110만 원 가운데 고정자산 186만 원으로 총자산의 약 8%를 차지했고, 청부공장 계정이 1,170만 원으로 55%를 차지했던 반면, 연료와 제품을 포함한 유동자산은 95만 원으로 총자산의 4%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다. 반면, 기타 손실금계정과 당좌계정이 총자산의 33%를 차지하였다. 한편, 자본과 부채의 경우, 자본금 259만 7,500원은 총자산의 12%를 차지했던 반면, 산업설비영단과 전신금융금고의 장기 차입계정이 986만 원으로 46%를 차지했고, 조선식산은행을 비롯한 단기부채는 총자산의 42%를 차지하였다. 손익계정은 수입 35만 원에 대해서 지출 약 125만 5,000원으로 당기손실액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기(1944년 7월 1일~1944년 10월 30일)의 영업 성적이다.⁵⁷⁾ 자산계정의 경우, 총자산 2,497만 원 가운데 동경지점과 경성공장 계정을 포함한 고정자산이 325만 원으로 총자산의 약 13%를 차지하였고, 청부공장 계정이 1,502만 원으로 60%를 차지하였다. 반면, 연료와 제품을 포함한 유동 자산은 95만 원으로 총자산의 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다. 반면, 기타 손실금 계정과 당좌계정은 총자산의 24%를 차지하였다. 한편, 자본과 부채의 경우, 자본금 259만 7,500원은 총사용 자본의 10%를 차지했던 반면, 산업설비영단의 장기차입금 936만 원과 조선식산은행 차입금 1,095만 원이 단기부채의 90%를 차지하였다.

더구나, 1944년 제7기 영업결산의 경우, 손실금 131만 3,000원이었지만, 연구개발비 98만 4,679원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sunk cos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액은 약 230만에 달하면서 납입자본금의 90%에 육박하였다. 더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급속한 원가 상승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심각한 차입경영의 와중에서도 총자산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56)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4. 6. 30, 앞의 글.

57) 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1944. 10. 30, 「第7期(1944년 7월 1일~1944년 10월 30일)營業報告書」.

이는 1943년 이후 일본무연탄제철이 무연탄 사용량 증가를 위한 열풍로 설치와 추가적인 연탄공장 건설 등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넉쿨식 증설투자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일본무연탄제철의 사업수지는 조업 불안정과 경영규모의 확대에 따른 부실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손실규모도 더욱 확대하는 심각한 赤子經營에 허덕이는 문제의 기업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V. 해방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과 태창재벌의 형성

일본무연탄제철의 전시경영은 자본은 물론이고 경영 리스크마저 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軍需비즈니스였다. 이러한 政經癒着型 비즈니스 경험은 해방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愛國(정경유착)하면, 興할 수도 있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해방 후 일본무연탄제철의 행방과 한국 최초의 泰昌財閥을 형성한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이다.

1_ 경성공장과 戰時經營의 유산

해방 후 일본무연탄제철 경성공장의 행방이다. 1948년 당시 상공부 소속 중앙직할 귀속사업체 가운데 금속공업 10개사와 기계공업 12개사였다. 이 가운데 제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일하게 1940년대 전반 소형용광로 제철사업을 담당했던 是川製鐵(주)을 계승한 국영기업 三和製鐵公社뿐이었다. 또한, 당시 백낙승은 당시 유력 기계메이커였던 조선기계제작소(인천 소재, 총자본 800만 원, 종업원 556명)의 관리인으로도 선임되었다.⁵⁸⁾ 그러나 어쨌든 1948년 당시

58) 朝鮮銀行調査部, 1949, 『經濟年鑑』, Ⅲ-79쪽.

일본무연탄제철의 경성공장이 상공부 소속의 귀속사업체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백낙승의 개인자산으로 분류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해방 후 경성공장의 경영유산이다. 전시기 일본무연탄제철의 경성공장 그 자산가치는 고정자산의 경우, 1941년 9월 말 21만 7,540원, 1942년 9월 말 32만 2,874원, 1943년 6월 말 114만 4,371원, 1944년 6월 말 186만 4,224원, 1944년 10월 말 266만 3,621원으로 단지 4년만에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44년 12월 말 제3차 경성공장 증설자금 명목의 350만 원 용자안이 1945년 4월 결정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 대출자금의 신청 사유는 “당 공장은 …… 제철사업만으로는 收支相償이 안되고, 공장의 존립과 유지 곤란으로 생산선철과 수지조건이 양호한 주물가공까지 일관작업”⁵⁹⁾으로 주물가공 설비의 증설과 철광석 소결로 증설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해방 후 경성공장의 자산 가치는 1944년 10월 말 266만 3,621원과 증설자금 350만 원을 합산하면, 약 616만 3,621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동자산의 경우, 고정자산 총액의 약 30%(184만 원)로 평가했던 당시 관행을 고려하면, 경성공장의 실제 자산가치는 약 800만 3,621원에 달하였을 것이다.

또한, 나중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1954년 말 상공부가 경성공장의 건물과 설비 약 70% 파손율에 근거해서 복구비 총액을 4,358만 원으로 산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100% 파손율을 가정해서 자산가치를 산정하면 약 5,673만 원에 달하였다. 반면, 당시 백낙승의 일본무연탄제철에 대한 투자액은 납입자본금 259만 7,500원의 39%에 상당하는 101만 3,025원이었다. 결국, 백낙승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戰時協力の 결과, 투자액의 약 8배를 달하는 경성공장을 現物資産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 더구나, 경성공장은 迂餘曲折은 있었겠지만, 해방 후 급격한 물가상승을 배경으로 자산가치가 天井不知로 상승했고, 이는 해방 후 백낙승의 자본축적과 기업가 활동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⁶⁰⁾

59) 朝鮮殖産銀行, 1944, 12, 31, 앞의 글.

60) 해방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과 자본축적에 대해서는 박병윤, 1982, 『財閥과

2_ 6·25 전쟁의 피해와 경성공장 복구문제

다음은 1950년 6·25 전쟁에 따른 피해 상황이다. 1948년 말 현재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금속공장 수는 206개소였고, 1950년 6·25 전쟁 직전에는 293개 공장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들 금속공장의 39%에 달하는 113개 공장이 피해를 입었다. 철강업은 건물의 경우 총 건평의 7%에 상당하는 1,890평, 기계설비는 총 기계대수의 15%에 상당하는 173대가 파괴되었다. 즉, 금속공업은 전체적으로 기존 설비의 약 18%가 피해를 입었다.⁶¹⁾ 한편, 6·25 전쟁 전후 금속공업의 생산액은 1948년을 100으로 하면, 1951년도 6·25 전쟁 피해로 인해 23%로 급락하였다. 그 후 금속공업은 점차 정치적 안정과 함께 복구에 노력하였으나 1953년도 생산실적은 1948년 수준의 44%에 불과하였고, 이는 광공업 전체의 부흥실적에 비교하면 극히 부진한 상황이었다.

한편, 일본무연탄제철의 경성공장을 제외하고 남한지역 선철생산의 제철소는 삼척에 입지했던 삼화제철(주)이었다. 삼화제철은 1943년 이래 연간 3,700톤의 선철을 생산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방치되었으나, 1949년 선철생산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용광로 8기 가운데 2기를 보수하면서 부분적인 가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총설비의 약 30%가 파손되었다. 이후 1952년 정부자금으로 용광로 3기와 부대시설의 보수작업에 착수하였고, 1954년 6월 본격적인 가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자금과 연료부족으로 조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래서 같은 기간 생산실적은 겨우 627톤에 불과하였다.⁶²⁾ 또한, 1954년 정부는 급증하는 철강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본무연탄제철의 경성공장 복구를 고려하였다. 실제로, 1954년 상공부는 구일본무연탄제철의 경성공장 복구 여부를 위해 현지 조사단

政治』, 한국양서, 107~108쪽.

61) 朝鮮銀行調査部, 1955, 『경제연감』 I-119쪽.

62) 朝鮮銀行調査部, 1955, 위의 책; 한국철강협회, 2005, 『한국 철강산업 발전사』, 96쪽.

〈표 9〉 舊일본무연탄제철(주) 독섬(경성)공장의 현황

구분		구조/시설	동수/능력	건평/해방전 보유	파손율 (%)
건물	鑄造공장	기와, 슬레트, 갈대	1	400	40
	碎鑛공장	목조, 기와, 갈대	1	50	90
	연탄공장	목조, 아연, 철판, 갈대	1	50	90
	사무소	기와, 석조, 갈대, 2층	1	50	90
	변전소	기와, 벽돌, 갈대	1	20	30
시설	제선설비	용광로	10톤	1(1)	70
	동	용광로	15톤	1(1)	70
	동	송풍기	50HP	1(1)	50
	동	송풍기	80HP	1(0)	100
	동	마쇄크제조기	50톤	1(1)	40
	동	분쇄기	-	2(1)	50
	동	양수펌프	5Hp	2(0)	100
	동	捲揚기	5Hp	1(0)	100
	동	연통	직영12척/ 높이 100척	1(1)	0
	동	열풍장치	길이 4척, 폭 10척	2(0)	100
	주조용	전동호이스트	5톤	3(3)	60
	동	전동호이스트	5톤	2(0)	100
	동	전동호이스트	5톤	1(0)	100
동	용선로	3톤	1(1)	50	
동	용선로	2톤	2(2)	50	
동	용선로	1톤	1(1)	50	
동	송풍기	20HP	1(1)	50	
동	송풍기	5HP	1(0)	50	

자료: 상공부(1954. 4. 8), 『구일본무연탄제철 독섬(靑島)공장 복구에 관한 건』.

을 파견하였다. 1954년 4월 당시 상공부장관 安東赫이 국무총리 앞으로 구일본무연탄제철의 복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⁶³⁾

먼저, 구일본무연탄제철 경성공장의 건물과 시설현황이다. <표 9>와 같이 건물의 경우, 5개동, 570평으로 공장과 그 부대건물의 파손율은 약 70%에 육박하였다. 한편, 설비 가운데 제선설비의 경우, 10톤과 15톤 용광로 2기를 비롯한 10종 설비에 걸쳐 그 파손율은 약 70%대를 기록하였고, 주조설비의 경우는 5톤 전동기 3대를 포함한 6종 설비의 파손율은 64%에 달하였다.

한편, 경성공장을 복구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산정은 <표 10>과 같았다. 복구비는 건물 2,090만 원과 시설비 2,268만 원으로 합계 4,358만 원에 달하였다. 복구 소요기간은 1년이었으며, 복구 이후 생산능력은 연간 7,500톤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복구 이후 정상가동에 필요한 소요원료는 고철, 4,800톤, 철광석 7,000톤, 해탄 5,250톤, 무연괴탄 5,250톤, 석회석 2,250톤이었다. 이는 정부가 앞서 1943년 이래 무연탄제철법에 입각해서 공장복구를 추진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당시 상공부 장관은 경성공장의 건설과 시설의 파손상황 그리고 산정한 복구자금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본 공장은 전부 폐허화된 실정으로 현 시설 가운데 비교적 파괴가 적은 주조공장과 연탄공장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원료의 공급, 제품 수급의 운송 애로가 상당하여 채산의 균형을 취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연료, 원료, 조달 자재의 운반과 관련한 철도와 운하의 이용이 불가함으로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매일 평균 10대 이상의 화물 자동차가 필요하다.

셋째, 경인지구에 산재된 고철 확보는 용이하나 기타 석회석, 형석, 망간석 위주의 원료를 전부 원거리 지역에서 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로 다액의 운송비가 소요된다.

넷째, 현재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사용연료는 삼척 괴탄과 코크스이지만, 이들 연료를 공장까지 운송 반입하는 데 다액의 운송비가 소요된다.

63) 상공부(1954. 4. 8), 『舊일본무연탄제철 독섬(蘘島)공장 복구에 관한 건』.

〈표 10〉 舊일본무연제철(주) 독섬(경성)공장의 복구비 개요 (단위: 평, %, 원)

구분		건평/시설	파손율	복구비
건물	鑄造공장	400	40	12,000,000
	碎鑛공장	50	90	1,800,000
	연탄공장	50	90	1,800,000
	사무소	50	90	2,800,000
	변전소	20	30	500,000
	기타	-	-	2,000,000
	소계	570	68	20,900,000
시설	용광로	1기	70	1,400,000
	용광로	1기	70	1,500,000
	송풍기	1대	50	1,200,000
	송풍기	1대	100	2,400,000
	연탄제조기	1식	40	1,000,000
	쇄광기	2대	75	800,000
	양수펌프	2대	100	200,000
	권양기	1대	100	80,000
	열풍장치	2식	100	5,000,000
	전동호이스트	6대	80	1,000,000
	용선로	6기	50	600,000
	분석장치	-	-	1,000,000
	구내시설비	-	-	1,000,000
	전기시설	-	-	3,500,000
	기타	-	-	2,000,000
	소계	-	-	22,680,000
	복구비 총액		-	-

자료: 상공부(1954. 4. 8), 『舊일본무연탄제철 독섬(蘇島)공장 복구에 관한 건』.

다섯째, 제품의 수요처가 당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함으로 공급상 불편이 지대하며, 제품도 수선철이 아닌 재생선철임으로 수요가 일반기계 공장에 부적당하여 판로가 한정된다.

여섯째, 본 공장은 과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250여만 톤의 고철을 수입해서 제강원료로 공급하던 가운데 전쟁으로 도입이 두절된 이래 제철사업에 특별 보조금을 교부하여 그 운영을 계속하였던 당시 사정과 현재의 국내 사정과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금후 특별한 보조시책이 병행하기까지는 수지 균형을 꾀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상, 경성공장 파손율은 당시 금속업 일반의 피해규모에 비해서 2배를 넘는 것이었다. 따라서 70%를 넘어서는 높은 파손율은 막대한 자금투입에 따른 공장복구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정부도 앞서 상공부 의견을 반영해서 삼화제철공사와는 달리 공장 복구의 포기를 결정하였다. 물론, 백낙승의 입장에서도 전시기 이래 무연탄제철의 비효율성을 익히 절감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력 복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경성공장은 태창산업(주)의 직영사업장으로 재편되었다.

3_ 정경유착형 비즈니스와 태창재벌의 형성

현재, 해방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단편적인 기록과 자료를 재구성하면, 해방 이후 백낙승은 이승만 박사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이를 배경으로 1950년을 전후해서 한국 최초의 태창재벌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6년 백낙승이 사망한 이후 태창재벌은 장남 백남일이 계승하였으나, 1961년 부정축재 처리과정에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고 말았다.⁶⁴⁾ 우선, 해방 이

64) 1962년 당시 부정축재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당시 백남일이 지배하는 태창재벌의 계열회사는 태창방직을 비롯한 11개사였다. 나아가, 1962년 5월 백남일의 재산 정도는 부채 141억 8,181만 2,082환, 자산 158억 1,295만 7,590환으로 순자산은 16억 3,114만 5,508환이었다. 부정축재 내역은 외환부정대부액 691만 3,531달러, 귀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은 다음과 같았다.⁶⁵⁾

해방 후 재계에 정치바람이 휘몰아칠 때 泰昌의 白樂承이 잡은 줄은 확실했다. 정치의 다핵시대,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암흑 기였으나, 백낙승은 하와이에서 건너와 정치적 기반을 다지던 이승만에게 정성을 다했다. 이 같은 그의 정치적 배경은 정부가 수립된 후 김연수, 최창학 등 라이벌을 몰리치고 각종 정부지원을 만끽하며 탄탄대로를 달렸고 6·25 이전 국내 재계사에 우뚝 선 한국 최초의 재벌로 부상했다. ……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백낙승의 정성은 헛되지 않았다. 이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왔던 백낙승을 잊지 않고 그에게 귀속재산이었던 고려방직 영등포공장을 불허반도록 했으며 식산은행에 500만 달러의 외화 대부를 허용함으로써 일본 기계를 들여다가 태창방직을 확장하도록 도왔다. 또 백낙승의 대한문화선전사에 흡산의 판매권을 몰아주었고, 역시 敵産인 조선기계제작소의 관리인이 되도록 주선했다. 백낙승이 매달 바친 50만 圓은 각종 귀속재산의 불하와 특별 외화대부의 형태로 그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 결국 백낙승의 정치적 두뇌는 해방 후 6·25 이전까지 태창방직과 태창공업, 태창직물, 海田織物, 대한문화선전사, 조선기계 등 당시로는 아마어마한 계열기업군을 거느리는 국내 최초의 대재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속재산 불하 부정이득 17억 5,693만 2,567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벌금 7억 7,981만 4,250환, 조세포탈 7억 2,335만 3,363환과 이에 대한 벌과금 3억 2만 3,873환이었다. 그 결과, 부정축재조사단이 결정한 국고환수액은 외환부정대부액 691만 3,531달러(89억 8,759만 1,080환)를 가산하면, 125억 4,771만 5,133환에 달했고, 이는 당시 백남일이 보유한 순자산의 7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한편, 백남일의 정치자금 제공 내역은 태창직물의 경우, 1960년 자유당 5,378만 9,750환, 1961년 민주당 2,271만 8,000환, 신민당 306만 2,000환, 민정구락부 24만 4,500환으로 합계 7,981만 4,250환이었다. 태창방직의 경우는 1960년 은행대부 명목으로 자유당 2억 환, 1961년 5억 환으로 합계 7억 환이었다. 나아가, 1950년대 태창재벌의 7대 은행 융자상황과 그 비중에 대한 공제옥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병철을 필두로 하는 15명의 유력 자본가 가운데 제3위(1953년 말 8,000만 환에서 1961년 5월 65억 1,300만 환)를 기록했고, 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제옥, 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215쪽; 부정축재조사단, 1962. 11. 30, 『부정축재자 결과보고 백남일 관계』,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

65) 李鍾宰, 1993, 『財閥 이력서』, 한국일보, 62~64쪽.

이상, 해방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은 정치·경제적 혼란의 와중에서 사업적 수완만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 감각을 동반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백낙승은 1945년 11월 이후 생활비와 정치자금에 궁색했던 이승만에게 정치자금 70만 원과 이후 매달 생활비 명목의 50만 원을 제공하였다.⁶⁶⁾ 더구나, 백낙승은 이승만이 1946년 이래 신탁통치안에 대한 찬성과 미소공동위원회가 추진하는 좌우합작에 대한 반대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는 와중에서도 이승만에 대한 지지에는 변함없었다. 어쨌든 1948년 8월 정부수립과 함께 이승만은 73세 고령으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이대통령은 귀속재산 가운데 대규모 면방직 공장이었던 고려방직공사 영등포공장(종연방직 경성공장)을 백낙승이 불하받도록 주선함과 아울러 조선식산은행에 대한 5백 만 달러의 대출을 알선해서 태창방직의 설립과 설비확장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백낙승은 식민지기 조선 굴지의 자본가로 활동했던 김연수, 박흥식, 최창학 등 재계의 라이벌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던 것과는 달리 전폭적인 정부지원(산업은행 특혜용자, 대규모 귀속사업체 불하, 정부보유불대부)을 배경으로 기업 판도를 넓혀 나갈 수 있었다. 백낙승은 1950년대 초반 태창방직(주)⁶⁷⁾을 주력기업으로 태창직물(주), 동서해상, 협동섬유(주), 자유신문사(주), 금강홍업(주), 태창상사(주), 태창산업(주), 태창공업(주), 海田織物(주), 白湧상회(합) 등 다수의 계열 기업군을 거느린 태창제철을 형성할 수 있

66) 이외에도 백낙승은 貞陵別莊을 이승만에게 헌납했고, 이후 이승만은 창덕궁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貞陵別莊을 대한제국의 純宗妃였던 尹太后的 거처로 내주었는데 지금의 仁壽齋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만은 비서에게 “이곳에서 생전 사시도록 하계. 백사장이 내게 줬지만 나는 받을 맘이 없어. 그러니 무료로 쓰신 뒤 운항후께서 돌아가신 후 백사장에게 돌려주게”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석오편, 1973,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景武臺四季 2』, 중앙일보사, 369~370쪽.

67) 태창방직은 1935년 당시 일본 대규모 면방직기업 鐘淵紡績이 설립한 영등포공장이었고, 해방 후에는 고려방직공사 영등포공장으로 계승되었다. 1948년 당시 설비 규모는 방기 4만 9,700추, 직기 1,225대의 공장으로 당시 단일 면방직공장으로는 한국 최대 규모였다. 같은 공장은 1955년 3월 이후 태창방직이 고려방직공사로부터 임대 경영했다가, 1956년 1월 1억 7,000만 원으로 불하받았다. 대한방직협회, 1957,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13쪽.

었다.⁶⁸⁾ 이는 이한구의 지적과 같이 “典型的인 政經癒着型 財閥”⁶⁹⁾의 형성이었다. 나아가, 백낙승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친분 혹은 정경유착의 실패는 당시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비서였던 윤석오(尹錫五)⁷⁰⁾의 회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⁷¹⁾

조선히텔서부터 돈암장 초기까지 이박사의 생활비와 활동비는 한민당에서 지원했다. 처음에는 매달 7만원씩 부담하다가 인플레이도 있고 해서 15만 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식솔도 적지 않은데다 정치적으로 쓸 일이 많아 빠듯했다. 그러다가 후에 태창방직의 백낙승씨가 직접 나서 매달 50만 원씩 정기 현금과 수시로 필요한 때 비용을 만들어 주어 차차 사정이 풀려갔다. …… 그때 돈 심부름은 주로 내가 맡아 했었다. 매달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백씨는 이박사가 경무대로 옮긴 후에도 나에게 대통령의 생활비를 가져왔다. 그때까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안받을 수도 없어 며칠을 기다려 보라고 해놓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백사장이 각하의 생활비를 가져왔는데 어찌면 좋겠읍니까?” “백사장이 …… 내가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군. 이제는 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 그 사람 참 꾸준하고 고마운 사람이야. 한번 들어오라고 해” 백사장 내외는 며칠 후 대통령이 좋아하는 약밥을 해가지고 들어와 경무대에서 오찬을 대접받았다. 식사가 끝난 후 이박사는 그를 응접실로 데려갔다. “백사장, 그동안 도와주어 고마와, 내가 돈이 있으면

68) 부정축재조사단, 1962. 11. 30, 『부정축재자결과보고 백납일 관계』,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

69) 이한구, 2004,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84~86쪽.

70) 윤석오는 191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위당 정인보선생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했고, 1931년부터 중국 상해, 남경, 한구 등지에서 유학 후 귀국해서 한학을 연구하였다. 해방 후에는 정부수립까지 이승만의 비서를 역임했고, 1946년 11월 한중문화협회 상무이사, 1948년 12월 대한민국당 재무부장을 거쳐 1949년 7월 총무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나아가, 1949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이 제창하는 一民主義 보급을 목적으로 一民主義普及會를 결성하고,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조선일보』 1946. 11. 26; 『평화일보』, 1948. 12. 24; 『조선일보』, 1949. 9. 12; 『동아일보』, 1949. 9.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1) 윤석오 편, 1973,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景武臺四季 2』, 중앙일보사, 19, 114쪽.

값아야겠으나 나에게 먹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국가일 하라고 준 것이니 고맙게 받았어. 백사장도 國利民福을 위해 일하면 도와주겠어” 백씨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했다. 후에 달라라면 그렇게도 벌벌떨던 이대통령이 일본 기계를 들여와 태장방직을 확장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이 인연 때문이었다.

여기서 백낙승이 이승만에게 정치자금과 생활비를 제공한 것은 1945년 말부터 1948년 8월 대통령 취임까지였다. 당시 백낙승이 제공하는 정치자금과 생활비를 이승만이 받았던 것은 그동안 40여년에 걸쳐 職業 革命家의 이력을 고려하면, 식민지기 독립운동 자금의 연장으로 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⁷²⁾ 또한,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 이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정치적 지지에 대한 경제적인 보답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귀속재산 불하를 통해서 시장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자본가 개발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당시 북한의 파상적인 정치공세와 체제경쟁에 당면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는 귀속재산 불하는 단순한 국유재산의 매각 차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즉,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일성 정권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대항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대미원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하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가능한 유능한 자본가 발굴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만의 입장에서 귀속재산 불하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자본가를 개발하고, 그들을 시장경제 발전의 견인차역을 담당하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물론 유능한 자본가의 발굴과 지

72) 윤석오 회고에 따르면, 돈암장 시절 이승만이 동암장을 방문한 실업가들에게 자금 헌납을 요구했는데 그 용처는 “지금 미국서는 코리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코리아라면 말도 없고 글도 없는 왜놈 속국인 줄로만 알아. 그러니 돈 좀 얻어 미국에 우리를 새로 선전해야 해. 이제야 말로 독립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거야”라고 회고하였다. 윤석오 편, 1973, 앞의 책, 19, 114쪽.

원은 결국 이승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전시기 일제의 러브콜을 받았던 조선인 자본가들도 대부분 자본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굴지의 자본가들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政經癒着型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역시 문제의 핵심은 개별 자본가들의 경영능력이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자본가들 가운데 정경유착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기업가도 많았지만, 쉽게 몰락한 자본가도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낙승은 전시기 활동했던 김연수를 비롯한 다른 자본가와는 달리 이승만과의 인연으로 정경유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서 기업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찬스였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초반 백낙승이 한국 최초의 재벌로 膾炙되는 泰昌財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정경유착의 결과만이 아닌 전시기 이전부터 단련된 비즈니스 경험과 그 학습효과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도 하겠다.

VI. 결론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백낙승은 일제의 군수동원정책에 적극 협력했고, 그 결과 해방 후 선철주강의 경성공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백낙승은 전시기 기업가 활동의 연장으로 이승만 정권에 유착했고, 1950년대 초반 한국 최초의 泰昌財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하, 과제에서 지적한 선행 연구와 관련해서 이 연구의 결론이다.

첫째, 백낙승의 전시협력과 자본축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가설의 수정이다. 앞서 배석만은 일본무연탄제철을 경영했던 백낙승의 전시협력 혹은 政經癒着的의 비즈니스 경험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에 주목해서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경제에 협조 → 자본축적의 실패 → 해방 후 정경유착의 학습(필자)'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설의 문제점은 과연 백낙승이 전시협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에 실패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백낙승은 1944년 10월 말 납입 자본금 259만 7,500원에 대한 39%의 지분율로 총자산 2,441만 7,426원의 일본무연탄제철(주)을 지배할 수 있었고, 해방 후에는 남북분단으로 해주와 진남포공장은 상실했지만, 선철주강 일관생산체제의 경성공장을 소유하게 되었다.⁷³⁾ 결과적으로, 백낙승의 전시협력과 그 대가는 투자자금의 8배를 넘어서는 경성공장의 현물자산이었다. 또한, 해방 후 일본무연탄제철의 경성공장은 남한에 입지했던 민간이 소유하는 유일한 선철주강 공장이었으며, 당시 귀속재산의 관리 소홀로 형성된 고철시장의 활황국면에 편승해서 자본축적의 전기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백낙승의 자본축적은 해방 이후 국가지원의 렌트에 의존한 政經癒着型 비즈니스 경험을 반복케 하는 강력한 매력이었다. 따라서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은 배석만의 가설과 같이 자본축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정경유착형 기업가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에 성공했기 때문이야말로 정경유착형 기업가 활동을 반복했던 것이라 하겠다.

둘째, 해방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과 관련한 가설의 문제점과 그 수정이다. 배석만은 해방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과 관련해서 전시기의 연장으로 정경유착형 기업가 활동을 전개했지만, 조기 퇴장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경유착형 기업가 활동과 경영파탄의 논리적 연관성이다. 즉, 해방 후 일본무연탄제철의 행방이 묘연하고,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이 부족한 가운데 전시기 군수비즈니스의 경험과 학습효과를 주장하는 한편, ‘愛國(정경유착-필자)하면 亡한다’는 지적과 같이 정경유착형 비즈니스에 따른 조기퇴장 혹은 경영파탄마저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낙승은

73) 1948년 당시 중앙 직할 귀속사업체 가운데 금속공업 10개사, 기계공업 12개사였다. 이 가운데 제철업은 유일하게 1940년대 초반 소형용광로 제철사업을 담당했던 是川製鐵(주)과 이를 계승한 三和製鐵公社뿐이었다. 또한, 당시 백낙승은 조선기계제작소(인천소재, 총자본 80만 원, 종업원 556명)의 관리인이었다. 朝鮮銀行調查部, 1949, 『경제연감』, III-79~80쪽.

1956년 10월 71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이후 태창재벌은 장남 白南一이 계승하였다. 또한, 태창재벌이 공중 분해된 것은 1961년 12월 박정희 군사정권이 추진했던 부정축재자 처리와 그 결과였다.⁷⁴⁾ 더욱이, 태창재벌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백낙승 사후의 일이었다.⁷⁵⁾ 따라서 배석만이 주장했던 1950년대 중반 백낙승의 조기퇴장과 1961년 태창재벌의 파산은 별개의 논점이라 하겠다. 또한, 1950년대 전반 소형용광로제철소의 복구는 6·25 전쟁으로 재기 불능에 처한 일본무연탄제철이 아니라 전시기 是川製鐵(주)을 계승한 국영기업 삼화제철 공사였다. 결국, 백낙승은 전시기 정경유착의 비즈니스 경험과 전시경영의 물적유산을 계승해서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 유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 최초의 泰昌財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해방 이후 백낙승이 태창재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시기 정경유착형 軍需비즈니스 경험과 학습만이 아닌 전시기 이전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합리적인 기업가 능력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전시기와 해방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을 정리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 자본축적의 성공 → 해방 후 정경유착형 기업가 활동 → 한국 최초의 태창재벌 형성'으로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겠다.

셋째, 전시기와 해방 후 백낙승의 기업가 활동의 수정 가설(전시협력 → 자

74) 태창재벌은 정부 특혜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태창방직에 정부보유 달러 550만 달러를 대부한 사실 …… 태창방직이 당초 계획했던 면직물 수출이 전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대부분은 정부보유 달러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연체를 지속 하자, 정부에서는 원리금의 상환을 촉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태창방직은 기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창방직이 1959년 2월까지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약 2억 환(500: 1의 환율 적용)을 적립하는 데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연체하게 되자 1959년 5월 8일자로 그 운영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부정축재자 조사가 진행되어 1961년 12월 최종적으로 12억 5,400만 원의 환수액이 통보되자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그 장손(백남일)은 일본에 귀화”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공제욱, 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249~250쪽.

75) 공제욱은 백낙승을 1950년대 정치적 요인으로 몰락한 전형적인 자본가로 위치지우면서도 그 사망 시기를 1960년(65세)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백낙승에 관한 여러 자료는 1956년 향년 71세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공제욱, 1993, 위의 책.

본축적의 성공 → 해방 후 정경유착형 기업가 활동 → 한국 최초의 泰昌財閥 형성)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와 고창김씨가의 기업가 활동과의 비교이다. 종래 정안기는 경성방직의 전시경영과 만주투자에 주목해서 고창 김씨의 기업가 활동을 검토하였다.⁷⁶⁾ 경성방직은 戰間期 이래 심각한 경영부진과 소극적인 기업경영과는 달리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왕성한 大陸特需에 편승해서 투자수익의 본격적인 회수기를 맞이하였다. 나아가, 1939년 말 경성방직은 만주방직업의 過當競爭과 심각한 원면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성방직 자본규모 4배에 달하는 자본금 1,000만 원의 南滿紡績(주)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경성방직의 만주투자는 경성방직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크게 넘어서는 일이었으며, 막대한 은행차입이 불가피했고, 過剩成長에 지나지 않았다. 나아가, 終戰에 따른 대만주 투자자산의 상실과 실패는 해방 직후 김연수의 퇴진과 전면적인 경영진 교체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성방직의 만주투자 실패는 해방 후 政經分離型 기업가 활동과 특유의 企業公器論에 입각한 自己金融的 蓄積을 규정하는 역사적인 전제가 되었다. 즉, 전시기 고창김씨의 기업가 활동을 정리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 → 자본축적의 실패 → 해방 후 政經分離型 기업가 활동 → 경성방직 財閥化 실패'의 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즉, 백낙승의 전시협력과 해방 후 기업가 활동은 식민지기 경성방직 경영으로 널리 알려진 김연수와 김용완 등 조선인 자본가의 전시협력과 그 귀결에 대한 서로 다른 經驗과 徑路의 다양성을 시사한다.

76) 정안기, 2005, 앞의 글.

참고문헌

- 小林英夫, 1975,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壊』, お茶の水書房. 近代日本研究会編, 1987, 『戰時經濟』, 山川出版社.
- 長島 修, 1987, 『戰前日本鐵鋼業の構造分析』, ミネルヴァ書房.
- 長島 修, 1986, 『日本戰時鐵鋼統制成立史』, 法律文化社.
- 長島 修, 2000, 『日本戰時企業論序説-日本鋼管の場合-』, 日本經濟評論社.
- 下谷政弘, 1990, 『戰時經濟と日本企業』, 昭和堂.
- 大石嘉一郎編, 1994, 『日本帝國主義史 3-第二次戰大戦期-』, 東京大學出版會.
- 岡崎哲二・奥野正寬編, 1993, 『現代日本經濟システムの源流』, 日本經濟新聞社.
- 石井寛治編, 2007, 『日本經濟史 4 戰時・戰後期』, 東京大學出版會.
- 原 朗, 1987, 「太平洋戰爭期の生産増強政策」近代日本研究会編, 『戰時經濟』, 山川出版社.
- 原 朗, 1995, 『日本の戰時經濟-計劃と市場-』, 東京大學出版會.
- 木村光彦編, 2003, 『北朝鮮の軍事工業化』, 知川書院.
- 木村光彦編, 1999, 『北韓の經濟-起源, 形成, 崩壊-』, 倉文社.
- 安井國雄, 1994, 『戰間期日本鐵鋼業と經濟政策』, ミネルヴァ書房.
- 田中申一, 1975, 『日本戰爭經濟秘史』, コンピューターエージ社.
- アメリカ合衆国戰略爆撃調査団, 正木千冬訳, 1950, 『日本戰爭經濟の崩壊』, 日本評論社.
- 堀 和生, 1995,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 堀 和生 編, 2008, 『東アジア資本主義史論』, ミネルヴァ書房.
- J'anos kornai, 盛田常夫編譯, 1984, 『不足の政治經濟學』, 岩波現代選書.
- 山崎志郎, 2009, 『戰時金融金庫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 山崎志郎, 2011, 『戰時經濟 總動員體制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 山本有造, 1992, 『日本植民地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ブランドン・パマ, 塩谷 紘訳, 2014, 『検証 日本統治下の朝鮮の戰時動員 (1937~1945)』, 草思社.
- 青地正史, 2014, 『戰前日本企業の企業統治-法制度と會計制度のインパクト-』, 日本經濟評論社.
- 배석만, 2008, 「일제 말 조선인 자본가의 경영활동 분석」, 『경제사학』 제45호.

- 정안기, 2009, 「전시기 日本帝國의 철강증산정책과 ‘조선형 증산 모델」, 『경제사학』 제47호.
- 정안기, 2011, 「戰時期 日本鋼管(주)의 조선 투자와 경영」, 『경제사학』 제51호.
- 정안기, 2011, 「戰時期 鐘紡그룹의 多角化 戰略과 平壤製鐵所」, 『경영사학』 제26권 제3호.
- 정안기, 2012, 「전시기 조선철광업의 구조와 利原鐵山(주)」, 『한일경상논집』 제56호.
- 정안기, 2013, 「1940년대 戰時金融金庫의 조선 진출과 금융통제권」, 『경제사학』 제55호.
- 정안기, 2014, 「식민지 군수동원과 군수회사 체제의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63권.
- 공계욱, 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 고승제, 1973, 『韓國經營史研究』, 韓國能率協會.
- 조기준, 1983,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 이한구, 2004,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 Joung An-Ki, 2011, "The Wartime Economy in Imperial Japan and the Mobilization of Munitions in Its Colon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mplementation in Korea of the Munitions Company Act during the final period of the wa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4(4).

[ABSTRACT]

The Military Mobilization of Imperialist Japan
and the Wartime Cooperation of Korean Capital:
Focusing on the Case of Paik Nak-Seung

Joung Anki

This study is a diachronic review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aik Nak-seung(the father of the late world-famous video artist Paik Nam-jun) who managed Japan Coal and Iron Co., Ltd. by taking advantage of imperialist Japan's military mobilization policy during the Asia-Pacific War and formed Korea's first conglomerate, Taechang,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from Japan. Previous studies have indicated that Korean capitalists cooperated with the wartime economy but failed to accumulate capital and, accordingly, could not help withdrawing earlier after their country's liberation. However, with attention to Paik Nak-seung's entrepreneuria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this study offers a new hypothesis that Paik succeeded i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by providing cooperation with the wartime economy and pursuing business activities in a back-scratching relationship with politicians even after liberation so that he could found Korea's first conglomerate, Taechang.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e different experiences and diverse channels of Korean capitalist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comparing Paik's entrepreneurial activities with those of the Gochang Kim, well known for the "Offspring of Empire". In addition,

the author comments on the current arguments of some historians who regard the wartime cooperation of Korean capitalists as collaboration with Japan.

Keywords

Korean capital, Paik Nak-seung, Wartime cooperation, Accumulation of capital, the Taechang conglomerate, “Offspring of Empire”, Collaboration with Jap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소련의 귀환 정책과 사할린한인

방일권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국내에서 사할린한인사 연구가 학술 자료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기이다.¹⁾ 그럼에도 한인사의 주요 시기나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문들은 여전히 역사적 엄밀함으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남사할린을 차지한 소련은 얼마나 되는 한인을 붙잡고 있었으며 그들을 어떻게 통제 혹은 관리하였는가? 소련의 계산은 무엇이었고 사할린한인을 귀환시키려는 의도를 갖고는 있었는가?

1970년대 초에 일부 한인들을 귀환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소련이 ‘억류’에서 귀환의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며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귀환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 역시 위 질문

※ 투고: 2014년 4월 10일, 심사 완료: 2014년 7월 24일, 게재 확정: 2014년 8월 25일

1)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국내 연구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방일권, 2012,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한인 연구-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호, 363~413쪽, 특히 370~387쪽의 ‘이주와 귀환문제’에 대한 검토 참조.

들과 연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져 있는 한인 귀환 협상 과정이 1990년대 이후에 급물살을 탄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상의 질문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인 역류의 초기 상황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인의 귀환 문제는 국외 연구자들에게도 핵심적 주제이다. 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귀환을 위한 일본 내의 활동을 다룬 미시나 히데아키[三品英彬]²⁾나 '전쟁노동력으로 사할린으로 강제연행했던' 한인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일본 정부'의 전후 법적 책임을 묻는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³⁾와 같은 일본 측 자료들의 지적이 그 하나다. 러시아에서도 '일본인은 한인을 버렸다. 자기 국민만 데려갔다'고 한 복지고우⁴⁾를 필두로, 저명한 한인 관련 기록 연구자 쿠진⁵⁾이나 사할린한인 출신 연구자인 박승의⁶⁾ 역시 우선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사할린한인 미귀환의 책임에 관한 목소리가 그 톤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수의 사료를 검토한 쿠진의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귀환의 미실현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음은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소련이 '다수 한인의 운명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2) 三品英彬, 1981, 『棄てられた四万三千人』, 三一書房.

3) 大沼保昭, 1992, 『サハリン棄民: 戦後責任の点景』, 中公新書.

4) Бок Зи Коу, 1993,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사할린의 한인들).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с. 102.

5) А. Т. Кузин, 2010,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사할린한인들의 역사적 운명).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имилиация (1945~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с. 72.

6) Пак Сын Ы, 2008,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사할린한인의 역사적 고향으로의 귀환 문제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27~28 марта 2007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08, сс. 277~287; Он же,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사할린한인의 고국 귀환):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ы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dvd~sakhalin.ru/?pg=2&type=2&page=0>*

…… 떠안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소련을 옹호한다.⁷⁾

내용으로 볼 때 쿠진이 주장하는 소련의 ‘역사적 책임’이란 한인으로 인해 부담으로 발생한 안보 및 물질적 지원의 문제를 의미하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이 소련의 선의에 기대어 국제법에 상응하게 가라후토[樺太] 한인을 귀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다’는 주장을 보면 적극적인 ‘억류’의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⁸⁾ 물론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상황에서 한인 미귀환의 책임을 소련 측에 떠넘기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에 대한 반박이었으나 우리 입장에서 쿠진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확인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귀환 문제에 관한 두드러진 연구들이 나왔다. 첫째는 1940년대 후반 이래 남사할린 거주 일본인의 귀환 문제에 관한 연구를 다룬 뵈드페츠니코프(Подпечников)와 소장학자 인나 김(Ким)의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가 сахалин한인 귀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일본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결정 과정을 세밀히 추적함으로써 당시 한인 귀환 문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힌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두 연구자의 성과는 귀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지닌 세 주체(군과 중앙 및 지방당국)의 상호 접촉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민간인의 귀환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자주 천명했던 인물로 등장하는 남사할린 주(州) 초대 민정국장 Д. Н. 크류코프(Крюков)의 주장을 통해 그의 입장이 한인의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7) А. Т. Кузин, 2010, Проблемы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사할린 일본인과 한인의 전후 귀환 문제) // *Россия и АТР*, № 2, сс. 76~83.

8) А. Т. Кузин, 2010,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72. 일본의 책임론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하지만 러시아 측 자료를 주로 활용한 박승의와 한국학자인 박종효 역시 대체로 쿠진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Пак Чон Хё, 2011,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ц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사할린 주와 한인) // *Урок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6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2~3 сентября 201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60.

추정케 하기 때문이다.⁹⁾

둘째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러시아 연구자 올리아나 진(Дина)의 최근 성과가 있다.¹⁰⁾ 진은 사할린과 모스크바에 소재한 주요 관련 사료들에 기초해 군과 중앙 및 지방당국 간의 논의 및 일본 민간인의 철수 문제와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연결해 검토하면서 소련이 사할린한인을 북한으로 귀환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했음을 러시아 사학계에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사할린한인의 북송 계획은 이미 1993년에 국내에 알려졌고 이를 활용한 논문도 나왔다. 한혜인은 사할린 귀환 문제를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추적하면서 한·일, 소련 및 북한의 정책과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인 귀환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염려해 한인노동자를 최대한 정주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평가하였다.¹¹⁾ 사할린의 일본인 송환 문제에 대한 연합군총사령부와 소련 사이의 협의 과정과 국내 여론 등을 추적하며 사할린한인 귀환교섭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 황선익은 사할린한인은 ‘해방국민’이라는 모호한 국적으로 인해 귀환의 주체도 교섭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으며, ‘소련의 강력한 전후복구정책’, ‘해외 한인에 대한 모호한 국적규정’, ‘귀환부담을 지려 하지 않는 소련의 대미교섭태도 등으로 말미암아’ 억류되었다고 보았다.¹²⁾

9) В. Л. Подпечников, 2003, О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일본인 주민의 남부 사할린과 쿠릴 열도로부터의 철수에 관하여) //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 10.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с. 257~260; И. П. Ким, 2009,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전후 일본인의 남사할린 철수) //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И. Канта*, 2009, Вып. 12, сс. 26~30.

10) Ю. И. Дин, 2013,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45~1950 гг.(1945~50년간 남부 사할린의 한인 귀환 문제)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Вып. 8, М., 2013, сс. 72~81.

11) 한혜인, 2011, 「사할린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102, 177쪽. 1945~1950년 시기와 관련하여 한혜인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사료로 활용하였으나 그 해석의 문제가 있고, 시기별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귀환의 문제를 다루었다.

12) 황선익, 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사할린한인의 귀환사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검토의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최기영의 글 「한인의 사할린 강제 이주와 귀환」에서도 해방 직후 사할린한인이 귀환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서 노동력이 필요했던 소련 당국의 의도가 지적되고 있다. ‘여하한 수단을 쓰더라도 전쟁에서 잃은 노동력을 보충해야’ 했던 ‘소련 군정은 연합국과의 거류민 송환협정을 최대한 연기하고자 하였고’, 거주민에 대한 신분조사를 실시해 한인을 무국적자로 취급한 조치 역시 ‘결과적으로 사할린 거주 한인의 소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소련 당국의 의도였다’는 것이다.¹³⁾

역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관련 연구들에서 러시아 측의 사료들은 엄밀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한인의 ‘역류’가 소련의 의도 가운데 추진되었다고 주장되며, 그 ‘역류’의 주요 동인은 역시 노동력 활용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 검토 과정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근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한인 노동력 확보에 동반될 ‘역류’라는 국제적 비난의 부담을 소련 당국자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역류’의 비난을 상쇄할 만한 한인 노동력의 잠재력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역류’의 결정 시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기존의 주장들이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글은 1945년 8월 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남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들을 해명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제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기초로 소련의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들과 1940년대 후반 사할린한인의 귀환과 노동력 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동력 활용의 의도에서 한인 역류가 결정되었음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소련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447, 449쪽.

- 13) 최기영, 2012, 「한인의 사할린 강제 이주와 귀환」, 장석홍 외, 『해방 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88~89쪽. 물론 저자는 ‘기본적으로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줄지에 소련에 역류되어 미귀환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국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한인의 국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했던 ‘일본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최기영, 2012, 앞의 글, 90쪽).

버려진 한인들을 대상으로 소련식의 노동 관리 및 감독에 나서는지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검토도 부가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사료의 소개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남사할린 초대 민정국장이었던 크류코프의 회고¹⁴⁾가 출판되어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 활용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변호하려는 태생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료들에 반영되지 않은 의미 있는 비교 기록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러시아연방국립기록보존소(ГАРФ)의 기록군(Фонд) 5446(소련 각료회의 결정)과 9401(내무부), 9526(소련각료회의 송환업무 전권국) 기록군의 일본인 귀환 관계 자료다.¹⁵⁾ 이들 1차 사료군을 검토함에 있어 1946~48년 시기까지 소련 각료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즉 중앙행정당국이 귀환 업무를 총괄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송환업무의 전권은 군 출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환기하고자 한다.

셋째는 사할린주국립역사기록보존소(ГИАСО)에 보존되어 있는 한인 관련 사할린 주당국의 행정문서들로 폰트 번호 53(사할린주 인민대표회의)과 171(민정국) 자료들이 중요하다.¹⁶⁾

14) Д. Н. Крюков, 1993,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1948 гг.(1945~1948년간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민정 행정)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1993, № 1, сс. 3~44.

15) ГАРФ(GARF: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R,G), 5446[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의 각 시리즈(Опись)는 시기(연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Ф. 9526[Фонд управления Уполномочн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делам репатриации(소련 각료회의 송환업무 전권총괄국)]은 주로 전쟁포로의 송환 관련 자료가 주를 이루며 민간인의 경우는 일본인 귀환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찾은 기록들을 기꺼이 제공하고 연구에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러시아 연구자 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기록군에 속한 자료의 일부는 한국의 국가기록원에도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연구자 활용은 어려운 상태이다.

16) ГИАСО(GIASO: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 53: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Ф. 171: Управл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ом делам. 이들 기록의 일부는 한국의 국가기

II.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제기 배경

1946년 12월 19일 미국과 소련이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모든 일본인 전쟁 포로와 더불어 ‘각자의 희망에 따라’ 일반 일본인의 귀환이 가능해졌다.¹⁷⁾ 하지만 사할린의 경우 민간인이 절대 다수인 일본인이 귀환 대상이었다는 점 자체가 한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지역의 재편과 전후처리를 주도했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던 양측의 협력 구도가 와해되면서 결별하는 과정이자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을 협의하는 동안 양국은 일본의 분할 문제¹⁸⁾로부터 포로의 송환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 패전국의 연합국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자주 대립하며 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국제 관계와 정세의 변화가 일본인 민간인 귀환 결정의 원(遠)배경이라면 군 병력의 귀환에 주요한 목적을 둔 포츠담 선언은 미·소 간 귀환 협의 진행의

록원에도 소장되어 있다. 2009년 이후 국가기록원의 해외 기록 수집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수집되어 보존되고 있는 이들 기록은 940여 매로 그 양이 많지는 않으나 모두 한인 관련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1946~1953년 사이에 현지 지역공산당 및 행정 기관들이 생산한 기록물은 초기 한인 사회의 실태와 ‘억류’의 실상을 밝히는 데 유용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7) 미·소 양측의 협의 과정과 입장에 대해서는 황선익, 2012, 앞의 글, 431~461쪽.
 18)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도발국가들이 예외 없이 분단의 징벌을 받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할된 대표적 예다. 이탈리아도 작은 지역이나 잠시 분할된 경험이 있었지만 이를 회복한 것은 1943년에 무솔리니를 내쫓고 연합국과 휴전한 덕분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분할도 피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실제로 스탈린은 일본의 분할점령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본토의 분할점령이 허용될 수 없다면 홋카이도만이라도 분할점령하자고 제의했다. 1945년 8월 중에는 ‘쿠시로와 모로이를 잇는 선 이북의 홋카이도를 소련이 점령하는 외에 도쿄에 소련군 주둔 지역을 제공하도록 맥아더 사령부에 요구하라’는 명령이 소련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트루먼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했다. 『스탈린, 도쿄 분할 점령 한때 시도』, 『한겨레』 1995. 1. 5.

보다 가깝고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미·소 간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포츠담 선언에 따른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본국 송환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협상 과정에서 민간인의 송환은 부차적인 관심사였다.¹⁹⁾

해방국민으로서 패전한 일본인들보다 먼저 귀국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약 3만 명의 사할린 잔류 한인²⁰⁾사회에 일본인의 송환 결정 소식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많은 증언에서 언급되듯, 한인들은 코르사코프(구 大泊) 항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귀환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온 경우라도 보따리를 풀지 않은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5년 겨울과 1946년 초에 일부 한인들은 개별적으로 귀환을 요청하는 청원과 편지를 지방과 중앙에 과감하게 발송했고 임시직 노동 현장에 머물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관심을 귀향에 집중하고 있었다.²¹⁾

일본인들의 송환만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작업장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귀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하

19)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의 기초로 여겨지는 제네바 협약에서 전시의 민간인 보호 문제는 1949년 제4차 협약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1907년의 헤이그 협약 제4항을 개선한 것이었다.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1864년 처음 체결되었고,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은 1929년(제2차)에 채택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민간인 보호 문제는 사실상 가장 늦게 관심을 받은 셈이다. 황선익에 따르면 포로를 중심으로 한다는 송환 협의의 기본 원칙은, 사할린한인이 38선 이남 출신 한국인이나 ‘사할린에 일본군이 아닌 노동자로 갔다는 점’을 들어 연합군총사령부 측이 귀환 교섭을 가로막은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황선익, 2012, 앞의 글, 443, 446쪽.

20) 사할린한인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소련 측 공문서 기록에서도 약 5만 명에서 2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여러 수치들이 제시된다. 필자는 1947년 12월 17일에 사할린주당위원회가 작성한 “사할린 주 거주 한인 주민에 대한 대중 정치 사업 조직 관련 조치들에 관하여”에 나타난 ‘28,000명 이상을 헤아리는 주의 한인 주민’이라는 언급에 주목하여 약 3만 명으로 표기하였다. ГИАССО, Ф. 4, Оп. 1, Д. 302, Л. 28.

21) 일레로 사할린 민정국장 크류코프는 당시 소련 인민위원회 부의장 A. И. 미코얀(Микоян)에게 보낸 보고 자료에서 한인과 일본인 등으로부터 오는 개별적인 귀환 청원 요청과 문의에 대해 어떤 답을 주어야 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ГИАССО, Ф. 171, Оп. 1, Д. 5, Л. 41. (문서의 작성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수기 기록 등에 의거할 때 1946년 1월경으로 판단된다.)

는’ 등 집단적 의사 표현에 나서 지방당국을 긴장시켰다.²²⁾ 소련군 극동군사령관구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표현으로 군 관계자들 스스로 ‘일본인들의 귀환을 본 한인들은’ 귀환 문제의 결정이 ‘지체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²³⁾고 인정했다. 한인 김정연이 스탈린에게 청원한 1947년 4월 23일자 작성 편지에는 ‘한인의 귀환이 올해에는 가능하겠는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²⁴⁾ 소련의 모든 정책 결정 통로에 대해 자신들의 귀환 의지를 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은 이로써 사할린한인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귀환 문제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을 최고지도부 선까지 인식하게 된다. 1947년 6월 19일에 외무장관 B. M. 몰로토프(Молотов)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23,298명으로 집계된 남사할린 “한인의 귀환에 대해서는 어느 측도 누구에게도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가 없다”며 1946년 12월 19일의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상의 합의 사항을 확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²⁵⁾

두 번째로 일본인 송환 방식과 절차는 이미 미·소 간의 전후처리에 대한 결정의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본인의 귀환 이후 상황과 관련해 귀환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당국자들의 인식이 이후 한인에 대한 결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47년부터 실행된 일본인 귀환의 주요 과정과 해당 업무 실무 참여자들의 견해와 주장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소 간 협정에 따른 남사할린으로부터 일본인 송환 문제는 소련 각료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에서 구체적인 실무 지침들이 결정되었고, 그 실행은

22) ГИАСО, Ф. 171, Оп. 3, Д. 7, Л. 122.

23) ГАРФ, Ф.Р-9526. Оп. 4, Д. 54, Л. 416. -극동군사령관구 국장 라스포핀(Распопин) 대령의 보고(1947년). Ю.И. Дин, 2013, 76.

24) 김정연의 청원은 당시 소련 외무부의 책임자 B. M. 몰로토프(Молотов)에게 전달되어 모스크바의 수뇌부에서 그해 10월 초에 논의가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김정연 뿐 아니라 ‘몇몇의 한인은 몇 차례에 걸쳐 지역당국과 군 관계자들에게 포레야(Корея-조선)로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었다. Ю. И. Дин, 2013, 76.

25)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170.

민정국 책임자인 Г. Н. 크류코프(Крюков)에게 맡겨졌다.²⁶⁾ 이에 따르면 결빙 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8개월 동안 매달 3만 명씩의 일본인을 귀환항구로 지정된 마오카²⁷⁾에서 홋카이도[北海道]로 송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귀환 대상자의 임시 거주를 위한 시설은 마오카 항에 위치하는 379호 수용소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1947년 4월 20일에 이루어진 첫 송환을 통해 귀환한 일본인은 24,307명이었고, 1949년 7월 22일까지 2년이 넘게 추진된 송환을 통해 돌아간 일본인 민간인의 총수는 272,335명이다.²⁸⁾ 물론 미·소 간 협의에서 귀환 해당자를 ‘귀환을 희망하는 일반 일본인’으로 한정했고, ‘예측되지 않는 정세의 변화에 의해 …… 귀환자 수를 변경할 권한’을 협정체결 대표에게 부여한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들은 사할린으로부터 일본인의 귀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계획에 비해 송환의 속도가 늦어졌음이 자료에서 확인된다. 1946년 초에 사할린 민정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 민간인은 281,653명이었다. 일본인 귀환자 총수와 비교하면 거의 모두 귀환한 셈이지만, 소련의 송환 계획에 의하면 1947년에만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56,968명을 귀환시키도록 되어 있었고, 1948년에 16,213명을 귀환시켜 사실상 사업을 종결할 예정

26) 이하 일본인 귀환에 관한 소련 측의 결정과 그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И. П. Ким, 2010,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 연방에 속하게 된 영토(동프러시아와 남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의 정치·인구·사회·경제발전: 1945~1949년 상반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жно-Сахалинск을 주로 참조하였다.

27) 1946년 6월 5일자로 소련은 일본 시대의 주요 항구인 마오카[真岡]를 호름스크(Холмск)로 개칭하기로 했으나 미·소협정에는 ‘마오카(Маока)’로 표기되었다.

28) И. П. Ким, 2009, сс. 26~30. 일본인 민간인 이외에도 같은 기간에 일본군 포로 8,303명이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29)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에 실제로 사할린을 떠난 일본인은 160,701명에 그쳤을 뿐 아니라,³⁰⁾ 송환은 1949년 상반기에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 민간인 본국 송환 업무가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946~1947년에 모스크바로 발송된 소련군 관계자들의 보고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제공한다. 이들의 자료에는 남사할린 민정국장 크류코프[사할린주 당 제1서기 Д. Н. Мельник(Мельник)의 이름도 종종 언급된다.]가 '반드시 매달 3만 명의 일본인을 379호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사할린 주당을 지칭하면서 '송환 계획의 실패 책임'이라는 표현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다.³¹⁾

민정 업무 책임자들이 매달 3만 명의 일본 민간인을 수용소로 결집시켜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하여 크류코프는 몇 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

먼저 수송 및 기후 사정이 귀환 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1947년의 경우 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원거리 거주자인 우글레고르스크 및 레소고르스크 등지의 일본인부터 귀환시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유를 들었다.³²⁾ 두 번째로 그는 일본인 스스로가 귀환을 서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사정들도 있겠으나 일본으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귀환하는 상황에서 당장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사할린에서 일본인들이 귀환을 주저하

29) 통계 수치는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가령 1946년 8월 사할린 민정국이 각 지역을 돌며 조사한 결과로서 민족별 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ГИАССО, Ф. 171, Оп. 3, Д. 6, ЈЛЛ, 45~53에 따르면 일본인은 251,458명이었다. 본 글에서는 И. П. Ким, 2010, 69에서 제시된 수치를 따랐다.

30) 1947년 11월 17~18일로 기재된 사할린 주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1948년 귀환 예정인 일본인의 수가 112,480명으로 나와 있다(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ЈЛ. 14.). 1947년 6월 10일까지 돌아간 일본인 민간인의 수가 77,076명임을 감안할 때 1947년 하반기에 돌아간 이는 83,62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송환자 수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31)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10, ЈЛ. 54.

32)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ЈЛЛ. 50, 111~112.

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³³⁾

세 번째 이유로 민정국장은 일본인 송환 대상의 순위 문제를 들었다. 즉, 1947년에 송환될 제1순위는 일본인 관리(공무원)와 사업 등 시설의 관리자, 지식인과 군인 및 그 가족이며, 2순위는 일본인 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들은 1948년이나 귀환이 가능하고, 마지막 순위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 및 기타 기술자(가령 철도 업무 종사자 등)로 기간 시설과 관련된 이들인 바, 각 순위에 속하는 귀환 대상자를 매달 3만 명씩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³⁴⁾

사할린 대민업무 최고책임자의 주장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인 귀환에 대한 실무 업무 담당자의 부정적 판단이다. 실제로 크류코프는 일본인들을 지정된 수용소로 집결시켜야 했던 1947년 초에도 군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행정 절차의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했다.³⁵⁾ 계급상 상급자인 극동군 사령관 알렉산드로프(Александров)의 압박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³⁶⁾

사할린 민정국장의 그 같은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된 그의 세 번째 이유가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당장에 많은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귀환 대상자인 노동자와 농민을 2순위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 크류코프는 새로 소련에 편입된 영토에서 산업 시설의 정상적 가동과 추수의 종료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³⁷⁾했던 것이다. 기술인들을 최후의 귀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은 그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로 보낸 문서에서도 사할린 민정국장은 ‘일본인들을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빼

33) Д. Н. Крюков, 1993, сс. 26~27.

34) 위의 글, 26~27; И. П. Ким, 2009, с. 27.

35) 크류코프는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지 몰랐다’거나 ‘내각(정부)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379호 수용소로 일본인들을 수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10, ЛЛ. 24, 55;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26 등.

36) Ю. И. Дин, 2013, с. 75.

37) Д. Н. Крюков, 1993, с. 26.

내는 일은 정부의 농업과 공업 생산 계획의 불이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민간인 송환자를 월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낮추자며 귀환의 속도조절을 제안했다.³⁸⁾

크류코프의 불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인 송환 문제에서 사할린 지역의 생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으며, 이는 전후처리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군인 민간인을 포함한 귀환 업무를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민정국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극동군(중령급) 장교로 근무하였던 크류코프가 이미 합의된 협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하는 듯한 태도는 모스크바의 고위당국자들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갖지 않을 경우 태업으로 비치기에 충분한 행위였다. 사실 사할린 지역 노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잔류시키자는 그의 주장은 전후 소련이 새로 획득한 국경 지역에서 안보를 우선한다는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다. 즉 적성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밀집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으로 획득된 칼리닌그라드 주 및 사할린 주의 민간인은 각각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소련의 기본 정책과 부합했다.³⁹⁾

게다가 새로 확보된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및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크류코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극동군관구 관계자들은 일본인 민간인의 매월 송환자 규모를 줄이자는 크류코프의 제안에 대해 그 규모로 '민간인 귀환자가 줄어들면 군인 포로 송환자 수를 월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는 오히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므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⁴⁰⁾ '민간인의 경우 노동자 1명에 대해 보통 2~3명의 부양자가 딸려 있음에 비하면 이미 조직된 노동력인 군 포로들이야말로 민간경제 노동에서도 유익이

38)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168 // Ю.И. Дин, 2013, с. 75.

39) 이는 2010년도의 박사학위논문문인 Ким И. П.의 글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다.

40)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의 2조 2항에는 '소련방 귀환항으로부터 일본인 귀환자 수는 월 5만 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더 크다’는 것이다.⁴¹⁾

군의 날 선 비판은 모스크바의 최고당국자들에 대한 일종의 시위적인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3일, 국가방위위원회 결정 9898호를 통해 일본군포로 50만 명에 대한 전후복구 동원을 결정한 바 있었고, 1946년 4월에는 시베리아에 수용된 포로 5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송하고, ‘소련령 내의 병약한 포로 2만 명을 북한 내의 건강한 포로 2만 2천 명과 교환’한다는 명령을 내릴 만큼 구일본세력의 전후복구 동원에 적극적이었다.⁴²⁾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사할린 민정당국의 저항은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인 모든 측면에서 근거가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보여주듯 시간이 갈수록 일본 민간인 송환은 그 흐름이 약화되었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크류코프의 ‘태만’을 방임하는 듯한 모스크바 당국의 태도가 한몫을 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크류코프에 대해 단호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점차 동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해명은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표면적으로 민간 업무 담당 관리와 군 관계자 사이에 벌어진 사할린 내 일본인 노동력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군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류코프는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에 대해 일본인의 귀환이 사할린 주의 농업과 공업 경제에 심대한 해가 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귀환은 어차피 완결될 테지만 그때까지는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수불가결함’을 이해해 달라는 그의 주장에 민간 부문을 관장하는 고위지도자들이 동조하기도 하였다.⁴³⁾

크류코프의 보고에 대한 모스크바 실력자들의 동의는 원칙적인 측면에 국

41)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Л. 168~169.

42) 황선익, 2012, 앞의 글, 445~446쪽.

43) 크류코프의 주장은 소련 각료회의 의장대리 Л. П. 베리야(Берия)와 대외교역부 장관 А. И. 미코얀(Микоян)에게 올린 보고(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233) 및 1947년 말에 소련 각료회의 부의장이 된 А. Н. 코스이긴(Косыгин)에게 올린 보고(같은 Д. 510, Л. 24)에 나타나며, 동 보고서 위에 베리야와 코스이긴은 각각 동감의 뜻을 표해 두었다.

한된 것일까? 그 직접적인 대답이 될 만한 구체적인 문헌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사할린 민간인 노동력 유출에 대한 민정국장의 우려 섞인 주장이 소련 당국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졌음을 짐작케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하나 있다. 일본인 유출과 러시아인의 유입 현황이 바로 그것이다. 194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할린에 도착한 러시아인 이민자는 4,010가구였는데 그중 1,009 가구는 농업에, 나머지 약 4분의 3은 모두 어업 분야에 종사자로 나타났다.⁴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인 귀환자에 비해 이주자가 턱없이 모자랐다는 점이 그 첫째이자 표면적인 측면이라면,⁴⁵⁾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공업 분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이주민을 통해 당장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의미이다.

크류코프는 군 관계자들과의 외면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두 명의 각료회의 최고직 정치가로부터 자신의 견해를 일정 정도 인정받아 '생산 현장에서 일본인들을 빼내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⁴⁶⁾ 전쟁으로 획득된 영토로의 이주 문제를 담당하던 각료회의 의장단을 비롯하여 모스크바의 최고위급 정치가들이 크류코프를 누르지 못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미·소 간 송환 협정에 근거한 송환이었음에도 사할린의 일본인 귀환은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군당국과 민정국의 견해 차이와 갈등 속에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사할린 내의 경제 사정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하던 중앙

44) И. П. Ким, 2010, с. 69.

45) 1947년 하반기부터 1949년까지 이주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가구는 4,200호가량으로 나타나지만 이입자와 이탈자 간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의 글, с. 76.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노무자 모집이다. 소련 내각은 1947년 초에 극동지역 주요 어업 기지의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의 해소를 위해 3년 계약으로 2만 2천 명의 노무자를 북한 지역에서 모집하는 데 합의하고 3월 21일 노무자 모집을 요청했다. 그중 사할린으로 유입된 이들은 1947년에 6,475명(노무자 5,083명과 가족 1,392명)을 비롯하여 1949년까지 노무자가 총 20,891명, 그 가족이 5,174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귀환한 이는 모두 14,395명이었으므로 잔류자는 11,670명이 된다. ПИАСО, Ф. 53. Оп. 1, Д. 7, ЛЛ. 45~48 및 Д. 109, Л. 27.

46) Ю.И. Динь, 2013, с. 76.

당국과 마찬가지로 안개 속에서 뚜렷한 경제적 개선책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III.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검토

1_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부각

1946년 말부터 1949년 7월 22일까지 약 28만 명의 일본인이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떠났다. 그 다음 검토 대상이 한인이 되리라는 점은 사할린한인만이 아니라 소련 당국자에게도 명확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방 직후부터 한인들은 귀향 요구를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인의 귀환 과정에 몰래 끼어서 탈출 시도를 감행하는 일도 불사했다. 대표적으로 1947년 9월 28일에 포로나이스크에서는 '26명의 한인이 아무런 허가나 근거도 없이' 일본 귀환을 위한 수용소행 교통편에 편승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례가 보고되었다.⁴⁷⁾

사할린한인들은 해방 이후 소련 치하에서 이동의 제한과 감시라는 부자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일시적으로 귀환 문제에 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하지만 문제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그 하나는 1946년 여름까지 드물지 않았던 홋카이도 방향으로의 개인적 탈출 시도와 관련되었다. 당시 라페루즈(宗谷)해협에 대한 소련의 경비는 허술했고, 일본 측의 해안 경비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1949년 8월까지도 사할린 지역 국경 경비단 관리부 담당자 구빈(Губин) 대령이 사할린 주 내무관리들에게 보낸 비밀문서에서 인정했듯이, “국경 수비 강화라는 관심에 근거해 볼 때 남쿠릴 열도와 남사할린 연안, 즉 네벨스크, 아니바, 코르사코프

47) ГИАСО, Ф.557, Оп.1, Д.4, Л. 36.의 기록에서 동일한 사례가 홉스크에서도 나타났음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들에서 현재보다 더 철저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쿠릴 지역 거주 한인들(986명)은 이를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이주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었다.’⁴⁸⁾

사할린에서 개인적으로 탈출한 한인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소련의 ‘비인도적 4만 동포 억류’를 비난하는 공식 발언을 하는 이도 나타났는데 이런 소식은 곧 국제적 관심이 되었다. 일례로 1947년 9월 25일에 타스(TASS) 통신은 상하이에서 확인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서울발 소식에 따르면, 21세의 한 한국인이 위조 문서로 러시아인을 속이고 사할린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밝혀질, ‘러시아인들은 조선에 정부가 없다는 이유로 4만 명의 한인에 대한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95%의 한인들은 고국 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소비에트 군대 앞으로 보낸 모든 귀환 관련 청원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지역 신문이 보도했다.⁴⁹⁾

타스가 타전한 서울 소식은 동년 9월 21일에 『자유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동 기사는 탈출한 21세의 한국인 주인공을 1947년 9월 10일경 단신으로 귀국한 김재덕(金載德, 가명)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자유신문』 기사의 후속 보도로 여겨지는 1947년 10월 2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위의 김재덕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최영기(崔永璣)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다. 사할린에서 일본인과 섞여 탈출하여 부산을 통해 상경한 후 군정장관 및 민정장관 등에게 사할린 동포의 실정을 알리며 이들의 구출을 위한 탄원서를 올리는 등 그의 개인적 활동을 소개한 『동아일보』는 『자유신문』과 배치되는 내용과 더불어 소련의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데올로기적 비난을 덧붙였다.

48) ПИАСО, Ф. 4, Оп. 1, Д. 556, Л. 60. 구빈은 계속하여 ‘한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쿠릴 열도에 거주 중인 모든 한인들을 사할린 섬 내의 작업장들로 옮기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밑줄은 원문을 따름)고 강조하였다.

49) Ю.И. Динь, 2013, сс. 76~77에서 재인용.

생활사정은 대전(大戰) 당시도 남화태라고 하면 비생산지대로서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있었는데 오늘에 있어서는 남북으로 양단되어 있는 만치 더욱 생활난이 막심하여 우선 식량과 의류부족으로 최저한도의 생활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태인데 구조할 방법도 없이 이 같은 상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당지에 있는 4만 동포의 생명은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 끝으로 소련 측에서의 동포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조선인의 단체적 행동들을 불허하고 둘째로 조선인 교과서로서 조국의 지리와 역사를 엄금시킨다. …… 진보적 인민주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이 같은 처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⁵⁰⁾

기사의 후반부는 『자유신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전반부의 사할린한인의 생활사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김재덕(가명)은 『자유신문』에서 ‘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실업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아직 의식주에 있어서는 이력저력 마련되어 가는 모양이라 하며 체류 동포에 특수한 피해는 없는 모양이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⁵¹⁾ 연구자 황선익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보도는 1947년 11월에 결성된 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정식 명칭 樺太·千島在留同胞救出委員會) 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⁵²⁾ 탈출에 성공한 사할린한인의 발언은 이렇게 하여 반소비에트 선전의 성격을 띠어 갔으며, 이러한 논조는 특히 『자유신문』에 의해 1949년 초까지 이어졌다.⁵³⁾

둘째로 일본인에 대한 미·소 간 귀환 협상의 과정에서 소련이 사할린한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받고 있었으며 이는 한인 문제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검

50) 「극도의 생활난 징용으로 끌려간 재화태 4만동포」, 『동아일보』 1947. 10. 29(필자가 현대어 표기로 바꿈).

51) 「귀국할 길없는 화태잔류4만동포」, 『자유신문』 1947. 9. 21(필자가 현대어 표기로 바꿈). 이 같은 배치되는 언급으로 인해 김재덕이 최영기라는 새로운 발언자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52) 『자유신문』과 『동아일보』는 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의 결성과 주요 활동을 동년 11월에 기사화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에게 진정서를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인의 구출에 나서도록 건의하고 서재필을 통해 진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황선익, 2012, 앞의 글, 449~452쪽 참조.

53) 황선익, 2012, 앞의 글, 451~453쪽을 참고할 것.

토를 간과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미 1945년 말에 ‘이중징용’으로 사할린에서 일본 규슈(九州)로 동원되어 야마이치[山一] 탄광 등에 남아 노동과 고향으로의 귀환까지 거부한 채 사할린의 가족이 돌아오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원했던 한인들을 통해 사할린에 다수의 한인 민간인이 남아 있음을 안 연합군 총사령부(SCAP)⁵⁴⁾는 1946년 2월과 3월에 그 사할린 잔류 가족들의 귀환 의사를 소련 측에 타진하고자 시도하면서 사할린한인 중 조선 귀환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귀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예비 서한을 작성하기도 하였다.⁵⁵⁾

앞서 살펴본 김재덕 혹은 최영기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1947년 10월 16일 GHQ 장관대리 헬믹 대장은 기자단과의 정례 회견에서 ‘남화태와 만주지방에 잔류하고 있는 조선동포 귀환 문제는 사정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 귀환하도록 하겠다’며 남사할린의 한인 귀환은 그곳이 소련 영토인 만큼 ‘국제적인 교섭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미국무부에도 보고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하였다.⁵⁶⁾ 곧이어 10월 26일에 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가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사할린 동포들의 출신 지역이 남한인 만큼 가능한 속히 남한으로 귀국하도록 힘써 달라’는 요청이 도착했고, 이에 대해 하지(John Hodge) 장군이 연합군 총사령부 측에 사할린한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됨에 따라 이 문제는 본격적인 검토 사안으로 부상했다.⁵⁷⁾

하지만 1948년 2월 무렵에 사할린한인의 남한 귀환 요구는 주한미군정에 의해 부정적인 결론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주한미군정은 ‘중전으로 남한으로 28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귀환자와 망명자들이 귀국했다’며 ‘식량과 의복 및 수용소 제공을 위해 기존 시설이 무리하게 사용되어 온 상황’인 바 ‘현 시점에서 연합군총사령부가 추가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로부터의

54)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55) 이에 대해서는 장석흥, 2007,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G-3 REPATRIATION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10~275쪽에 소개된 문서를 활용하였다.

56) 「동포를 구할 길 열린다」, 『조선일보』, 1947. 10. 17.

57) 장석흥, 2007, 앞의 글, 236~238, 241쪽.

귀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⁵⁸⁾

미국 측의 판단은 비단 남한의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표면적 이유에
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연합군사령부는 1947년 11월 22일에 작성된 문서에
서 보다 상세한 이유들을 제시해 두고 있었다. 즉 포츠담 선언이나 일본의 소
련에 대한 항복 문서에서도 일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귀환시킬 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연합군사령부가 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이어서 ‘인도적 관점에서 가라후토[樺太]의 사례는 중국이나 만주
지역의 한인 이주자들까지 귀환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
할린한인을 귀환시키는 문제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심각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⁹⁾

이미 1947년 말에 반대를 내부 방침으로 사실상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사령부는 1948년 3월까지도 사할린한인의 수와 그들의 귀환 희망 여부
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인 귀환 문제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었던
셈이다.⁶⁰⁾ 이처럼 1947년, 특히 그 후반기에는 사할린의 일본인 송환과 맞물려
한인의 귀환 문제가 국제적 교섭의 차원에서 이미 피할 수 없는 관심사로 대두
되어 있었다.

2_ 북한으로의 귀환 계획

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던 당시 소련은 어떤 입장을 가지
고 있었는가? 사할린한인의 ‘역류’라는 표현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나
적어도 1947년이라는 시점에서는 바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당시 소련은
한인들 역시 귀환이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취해야 할 대상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58) 관련 내용은 1948년 2월 24일에 작성되었다. 장석홍, 2007, 앞의 글, 243쪽; 황선
익, 2012, 앞의 글, 452쪽.

59) 장석홍, 2007, 앞의 글, 252~253쪽.

60) 大沼保昭, 1992, 앞의 글, 32쪽; 한혜인, 2011, 앞의 글, 170쪽.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하나가 1947년 5월 말에 외무부와 내무부 최고위 책임자들 사이를 오간 두 행정서신이다. 외무차관 Я. А. 말릭(Малик)의 서명이 있는 1947년 5월 23일자 서신은 외무부 제1극동과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무부 및 국가안보부 부책임자들에게 발송된 비밀 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항복 시점 이래 남사할린 지역에는 22,777명의 조선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조선인들은 스탈린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들의 조선(Корея) 귀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사할린에서 이들 한인들을 조선으로(в Корею) 귀환시키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⁶¹⁾

기록은 적어도 1947년 초반에 한인의 귀환 문제가 소련 외무부 내 관할 부서의 검토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관계 행정부서들의 내부 의견을 수합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인들의 귀환자를 조선(Корея)으로 밝히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자료의 하단에는 “5월 29일 3008호로 말릭 동지에게 서신이 발송됨”이라는 타자 메모가 보이는데, 바로 뒷장에 붙어 있는 이 3008호 답변서는 작성자가 소련 내무장관 С. 크루글로프(Круглов)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7년 5월 23일자 …… 서신에서 언급하신 남사할린 거주 조선인 22,777명의 귀환 문제에 대하여 소련 내무부는 그들의 귀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남사할린 내의 한인들이 다양한 소비에트 경제 조직들에서 노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귀환 문제는 소련국가계획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⁶²⁾

한인 전체(22,777명)의 귀환에 동의한다는 점을 내무장관이 이처럼 명확히

61) ГАРФ, Ф.Р-9401, Оп. 1, Д. 2864, Л. 355.

62) ГАРФ, Ф.Р-9401, Оп. 1, Д. 2864, Л. 356.

밝히고 있다는 사실은 내무부가 전쟁 이후 새로 획득된 영토에서도 대민행정의 총괄부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답신에는 한인의 귀환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노동력으로서 한인의 이탈이 소련의 계획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무부는 노동력에 대한 고려가 한인의 귀환을 반대할 정도의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서 간 내부 의견 수렴의 과정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한인 전체의 귀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조 건부로나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내무부가 한인의 귀환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추정케 하는 기록이 있다. 1946년 7월 17일에 내무장관 명의로 작성되어 소련 각료회의 의장대리 JI. II. 베리야(Берия)에게 발송된 공문을 보면 내무장관은 남사할린 내의 중국인과 한인들을 (소·일 간의-저자) '전쟁 전에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로 일본인들에 의해 끌려온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다.⁶³⁾ 따라서 '소련 내무부는 지역당국으로부터 고국으로 가고자 희망하는 한인과 중국인의 숫자에 대한 자료를 받기까지는 이들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출발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지역당국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인 및 중국인들의 청원을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⁶⁴⁾ 강제동원된 한인 전체의 귀환이 당연함을 전제로 하는 의견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 최고위 인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소련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 역시 사할린한인을 귀환시키고자 계획 중이었다. 국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할린한인의 복송 계획이 그 증거이다.

1947년으로만 표기된 문서 생산 시점과 생산자로 스탈린의 이름이 명시된

63) ГАРФ, Ф.Р-9401, Оп. 2, Д. 148, Л. 339.

64) 위의 글. 동일한 서신의 초안으로 여겨지는 JI. 400을 보면 내무부가 남사할린 내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고국의 친지에게 편지 왕래하는 것과 송금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 부분은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ГАРФ, Ф.Р-9401, Оп. 2, Д. 148, Л. 400.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북한으로의 한인 귀환에 관하여’(이하 ‘한인 귀환에 관하여’로 줄임)라는 명칭이 붙은 소연방 각료회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1. 소련 각료회의 송환문제 전권대표(골리코프 동지)에게 1948년 7월 ~10월 기간에 23,298명의 한인을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로부터 북한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추진하도록 승인한다.
2. 남사할린 주당위원회(크류코프 동지)는 소련 각료회의 송환문제 전권대표(골리코프 동지)가 규정하는 기간에 송환 대상자들을 이후의 본국 송환을 위해 379호 수용소(흙스크 항)로 집결시키도록 한다. ……

소련 각료회의 의장 스탈린
소련 각료회의 총무국장 차다예프⁶⁵⁾

위 문서는 1947년 당시까지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수행 계획까지 사실상의 실무 협의가 종료된 상태로 실행만을 남겨두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실행계획서는 문서 위에 스탈린의 서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듯 말 그대로 실행 계획으로만 남았다. 왜 그렇게 되었는데는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겠으나 두드러진 점은 한인의 귀환지를 북한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유로 이제까지 ‘조선으로(в Корею)’라고 표현되던 것이 북송계획안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와 더불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기록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의문이 들

65)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5. // Ю.И. Дин, 2013, сс. 77~78.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조~해군부는 379호 수용소에서 한인을 수용할 선박을 준비할 것; 4조~남사할린에서 북한으로 도착하는 한인에 대한 면담은 북한군 민정행정국이 담당하며 이후 이들의 거주를 위해 북한 인민위원회에 인계됨; 5조~한인 귀환자의 모든 재산은 관세법에 따라 반출하도록 함. 이 문서는 1993년에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소개되었고 연구자들 역시 이 기사에 의거하여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부터 내포된 오류들에 연유하여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사할린의 한인들, 한·러 근대사 비사: 러시아문서보관위 사료 독점 발굴(34)」, 『동아일보』, 1993. 4. 20.

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인 귀환에 관하여’의 생산 시점과 생산자에 대한 의문이다. 이 문제는 일본인 귀환 논의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 문서 ‘한인 귀환에 관하여’와 연관 문서들을 살펴본 결과 이 의문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 문서의 생산자를 Ф. И. 골리코프(Голликов)⁶⁶⁾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1947년 12월 3일에 골리코프는 외무장관인 몰로토프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남사할린에는 23,298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본인의 귀환 조치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국 귀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중입니다. 제 의견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수의 한인들을 1948년 하반기 중에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남사할린 주당 대표, 극동군 25군(북한) 및 해군이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⁶⁷⁾

같은 달 27일자에 작성된 골리코프의 또 다른 문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앞서 밝힌 자신의 의견이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실무자들 사이에 확인해 왔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사할린 주당 대표인 민정국장 크류코프는 ‘1948년 하반기 중에 한인을 귀환시키는 데 대해 올해 10월 29일에 동의를 표했고’, 극동연해주 군관구 부책임자인 니콜라예프(Николаев)는 ‘11월 14일에 (1948년) 여름 동안에 한인들을 귀환시키고 이주시키는 것이 가능하

66) 골리코프(Филипп Иванович Голликов, 1900~1980)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련 군인으로 주로 정보계통에서 일하였으며 1943년부터 국방차관으로 임명되어 독일군에게 잡힌 소련군 포로의 송환을 맡았다. 전후에 상장(우리의 중장에 해당) 계급으로 정보계통의 요직을 담당했고 1947년 당시에는 소련 각료회의에서 귀환 업무 전권국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1961년에는 군 최고 계급인 소연방 원수로 승진하였다.

67)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3. // Ю.И. Динь, 2013, с. 77.

다고 답했으며, 수송 문제에 대해 해군은 '1948년도에 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협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⁶⁸⁾

이상의 내용은 '한인 귀환에 관하여'가 군이 주도하던 귀환 업무 담당부서에서 12월 중순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계획 입안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인의 귀환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으며, 일본인 민간인의 귀환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으로의) 한인 귀환을 실행하고자 했다. 몰로토프에게 구체적 준비 사항을 언급한 것은 소련 정부안으로 확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진행되었으니 외교적으로 구체화해도 좋다는 의미로 읽힌다.

골리코프가 외무장관에게 군이 실무 부서 간의 협의 및 동의사항을 상세히 언급한 이유는 순탄치 않았던 사할린으로부터의 일본 민간인 귀환 과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사할린 민정국장으로부터 이미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이나, 어떤 경우에도 한인 귀환 대상자 집결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지시를 크류코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인 귀환에 관하여' 제2항에서 명문화한 점도 그 방증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신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하며 한인 노동력의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보다 결정적이다.

이는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23,000명의 한인을 노동력으로 붙잡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극히 합당하기 때문입니다.⁶⁹⁾

골리코프가 사할린한인의 귀환지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두고 사할린한인을 남한으로 귀환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해하는 것은 계획의 입안 시기(1947년)뿐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에서 붙잡힌 한인 포로들의 귀환이 북한을 통해 이루어졌던 1948년도 5월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남북의 분단이

68) ГАРФ, Ф.Р-9526. Оп. 4, Д. 54, Л. 416. // Ю.И. Динь, 2013, с. 77.

69) 위의 글.

공고하게 고착화되지 않았던 사실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여겨진다.⁷⁰⁾ 조선인 출신 관동군 포로 중에 500여 명 이상의 남한 출신자들이 흥남을 거쳐 육로로 남한으로 귀환하였으며, 비공식적이기는 해도 육로 이동의 여지는 1950년 초 까지 존재했다.⁷¹⁾

귀환업무 전권국 책임자의 한인 민간인 귀환 계획은 그 구체성과 더불어 중앙정부, 지역당국, 군 등 실무 주체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연구자 진은 사할린 민정국장의 개별적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군은 인도적, 대외정책적 관점에서 한인 민간인 귀환에 나섰고 이에 대해 중앙 당도 동조하는 입장이었으나 크류코프에게는 당장 투입 가능한 노동력 문제가 더 절실했으며, 이 같은 민정국장의 설득이 조용하지 단 중앙당국자들에게 합리적 주장으로서 동의를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이다.⁷²⁾

과연 크류코프는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1947년 11월 17~18일에 콜리코프는 소련 각료회의 국장(A. Гриценко)으로부터 사할린 주당에서 올린 보고서를 전해 받았다. 보고서는 '남사할린에는 계획에 따라 1948년도에 남사할린에서 귀환하게 될 일본인 112,480명과 한인 23,298명이 남아 있다'면서, 하지만 '1948년도 상반기에 이들 노동력 전체가 각 사업체를 떠나게 된다면 1948년 기간 중에 발효되기로 되어 있는 소련 각료회의의 3014호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틈도 없이 현재 가동되는 공업시설들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될

70)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남북문제가 '한인의 귀환에 관하여'가 최종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한 것은 추후의 일이었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71) 콜리코프가 한인 운송과 관련하여 '한인의 귀환과 이주(расселение: 이주 혹은 이민)'를 언급한 점이나 한인의 귀환 실행 시기를 1948년 7~10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노동자 모집 및 1948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인 포로의 송환 문제가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자료를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베리아 포로의 귀환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로 박민영의 연구(2003, 「소련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집, 1~25쪽)가 있으나 러시아 문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아 소련 측 정책의 구체적인 추이를 추적하기 어렵다.

72) Ю. И. Дин, 2013, сс. 78~79.

것이 불가피한 바' 사할린 주당위원회는 한인의 귀환을 1948년 말까지로라도 연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⁷³⁾

이와 같이 크류코프는 군이 주도하는 민간인의 귀환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역당국의 현실적 문제를 앞세워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에 균열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 크류코프는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되었듯 12월 27일자 몰로토프에 대한 보고서에서 골리코프가 2만 3천 명의 한인 노동력을 붙잡아 두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골리코프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었다. 1947년 중에 결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인 귀환에 관하여'는 끝내 서명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었다. 골리코프의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크류코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외무부를 설득했다. 외무차관 요. A. 말릭이 1948년 1월 4일자로 '한인 귀환에 관하여'의 서명 당사자 중 하나인 각료회의 총무국장 요. E. 차다예프(Чадяев)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크류코프는 공업과 어업 분야의 심각한 노동력 문제에 덧붙여 남북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차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크류코프가 사할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인 일부가 자신들이 남한 출신임을 내세우며 남한으로 귀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할 때 …… 한인들 모두가 조선으로 귀환을 희망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는 크류코프 동지에게도 없습니다. 남사할린에서의 강제적인 한인 이주는 적어도 일본인의 귀환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성과 같은 이유로 외무부는 1948년도에 남사할린으로부터 한인의 대규모 귀환이 실행되어서 안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인의 개인적인 청원은 그것대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⁷⁴⁾

73)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3. // Ю.И. Дин, 2013, с. 78. 문서에는 크류코프의 의견이 소련 각료회의에서 합당하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74)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6; Ю.И. Дин, 2013, с. 79.

이렇게 콜리코프의 주장은 외무부와 각료회의의 지지를 상실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할린한인들의 귀환을 막으려 했던 크류코프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다.

사할린 주의 민정국장은 일본인 귀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인 귀환 시점 연장의 논리들을 보다 정교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는 일본인의 귀환이 결과한 사할린 현지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1947년 말에서 다음 해 초에 이르는 시기 동안 그의 논리를 강화해 주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전후처리를 둘러싸고 소련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진행 중이던 군대와 민간 행정관리들 사이의 묘한 긴장이 크류코프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해 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군부보다 더 앞선의 대민업무 관련 최고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사전 준비와 의견 표명이 크류코프의 노동력 부족론으로 단방에 철회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크류코프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사할린 주 행정 책임자는 한인 귀환의 기한 문제와 제한된 최소한의 동의를 확대하는 전술로 나갔다고 여겨진다. 즉 노동력의 부족을 강조하기보다 그는 현지 노동 현장의 총체적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한인을 당장에 귀환시키는 조치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귀환 자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도 아니었다. 임시 연기된 한인의 귀환은 크류코프의 언급처럼 어차피 곧 종료될 일본인 귀환의 완료 시점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 귀환이라는 원칙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의 변경도 없었고, 그것을 위한 여하한 논의도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콜리코프로 하여금 크류코프의 한인 귀환 시점 연기를 반박할 기회나 명분을 주지 않았다.

기록문서들을 통해서도 이후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크류코프 등 민간 행정 관리들이 한인 귀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귀환 업무를 담당하는 소련군 지도자들까지 침묵했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1948년 초 당시로서는, 골리코프 등 소련 군 관계자들의 기대보다 많이 늦어지긴 했으나 일본 민간인의 귀환이 1949년 7월해야 일단 완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면, 한인 귀환은 늦어도 1950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인의 잔류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크류코프조차 조선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할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사할린 현지의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대체로 1950년 시기까지 현지 당국자들이 한인을 노동력 이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보다는 안보 문제나 현지에서의 소비에트 체제 안정화의 문제와 보다 결부시켜 주목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심지어 한인의 노동력 활용을 탐색하는 문서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가 일제강점기 남사할린 내 조선인 탄광 노역의 최대 작업장의 하나인 나이부치[內淵] 탄광에 대한 조사 기록이다. ‘조선인 독신자 1500여 명이 남아 있다’며 이들을 사할린우골⁷⁵⁾이라는 새로운 생산 조직으로 편입시키도록 한 이 기록은 한인 노동자들이 ‘20~30명씩 이와 빈대가 들끓는 30m² 남짓한 방에 개인 이불도 없이 생활하며, 기숙사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떤 체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⁷⁶⁾ 규모나 산업 시설의 중요도 면에서 타 작업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컸던 이 탄광에서조차 한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당시의 합숙소 생활이 소련 체제에서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방치된 것은 비단 나이부치 탄광에 국한되지 않았다. 1948년 10월 5일자 소련공산당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당위원회 회의 의사록 29호 중 한인 노동자의 경제 형편에 관한 보고를 보면 ‘한인 노동자들의 경제 형편이 대단히 열악하여 배급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되어 있다.⁷⁷⁾ 사할린한인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인 이 기록은 사할린 내 산업 현장 전반의 사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75) 우골은 러시아어로 석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76) ГИАСО, Ф. 171, Оп. 1, Д. 31, Л. 42.

77) ГИАСО, Ф. 44, Оп. 1, Д. 65, ЛЛ. 3~6.

미가 있다. 소비에트 초기 현지의 당국자들이 한인의 노동력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작업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작업장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수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들의 '고국으로 놓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귀환 요청서'를 계속 받고 있던 지방당국자는 한인들을 노동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귀환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사할린 주 당국은 '이러한 현상은 현지의 당 조직이 (귀환 문제에 대해)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만한 정상적 조건도 만들어지지 못한 까닭'이라고 자인했다.⁷⁸⁾

IV. 맺음말

1949년 7월 22일에 일본인의 귀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한반도 남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할린한인들을 귀환시킬 곳은 없었다. 한국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던 군 지도자들이나 소련의 수뇌부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나 인도적 측면에서도 한인 귀환의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소련은 1950년 4월 22일에 사할린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집단 귀국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동년 7월 1일까지 잔류를 결정한 모든 일본인, 그리고 한인의 의무적 거주지 등록을 지시함으로써 개인적 통제를 강화했다.⁷⁹⁾ 사전 승인 없이는 등록된 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할 수 없게 되었고 직업을 갖지 않은 개인들은 더욱 엄중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78) ГИАССО, Ф, 4, Оп, 1, Д, 344, Л, 70. 이 기록의 작성 시점은 1948년 9월이다. 즉 앞의 문서와 연결해볼 때 1947년 하반기의 상황이 1년여간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79) ГИАССО, Ф, 242, Оп, 1, Д, 21, Л, 84.

임시거주자의 신분으로 줄곧 각종 제한과 차별 속에 있었던 한인들은 1952년 5월 6일이 되어서야 소련 각료회의 결의에 따라 소련 국적의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⁸⁰⁾ 이로써 소련은 사할린한인에 대한 정책을 귀환에서 정주로 변경한 것이었을까? 또한 변경의 주요 동기 역시 노동력 확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는 소련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었거니와 심사에만도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면 시민권의 부여가 곧 정주 정책의 공식화라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이 조치는 임시거주자 신분의 경계인이었던 한인을 열외자인 무국적자로 규정하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1952년의 국적 부여를 형식상으로나마 정주 정책의 출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지 노동력 확보 및 유지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소련이 1950년대 내내 사할린한인의 소련 국적 취득을 격려하기보다 북한 국적을 받도록 독려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내부 행정력까지 동원해 측면 지원한 사실이 그 방증이다.⁸¹⁾ 노동력이 필요하여 외국 국적자를 정주시키는 정책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한 조합이 아니다.

1946년부터 5년간의 기간 동안 한인 귀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사할린한인 귀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인 노동력의 활용보다 새롭게 획득된 영토의 빠른 안정화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을 갖는 시각이라 판

80) 실제 그 구체적인 지침은 1952년 5월 30일 2/417호에 의해 규정되었고, 사할린에서 앞의 지침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이 나온 것은 1952년 8월 8일이였다. ГИАССО, Ф. 242, Оп. 1, Д. 33, ЛЛ. 13~14 참조.

81) 기록에 따르면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국적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시기는 1958년으로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ГАРФ, Ф. P-9401, Оп. 1, Д. 4562, ЛЛ. 267~273을 참조하였다. 1958년 4월 당시에 생산된 이 일련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소련 내무부와 외무부, 안전국 등은 15년 이상 소련의 극동에 거주하는 15,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국적이 없다는 점을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바이다'라고 한 당국의 언급(ГАРФ, Ф. P-9401, Оп. 1, Д. 4562, Л. 268)이다.

단된다. 물론 현지 안정화와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 활용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며, 그런 점에서 노동력 활용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 한반도 남부 출신자들로 구성된 사할린한인 사회는 숙련된 농업기술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패전하기 전에 일본이 건설했던 공업 시설에서 부차적 지위이지만 전시 경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지역 행정 담당자의 눈에도 공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스탈린 시기 소련의 경제발전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한인 노동력은 단지 2만 3천 명이라는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러시아인 이주자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 모집을 통해 수혈했던 어업 분야는 소위 선주민으로 불렸던 사할린한인들 중 소수만이 투입되었던 분야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조차 한인의 노동력 유지가 귀환을 전제로 한 임시적 조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인의 귀환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였던 소련의 정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임시적 조치는 전후 새로 획득된 영토에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적성 민족의 제거라는 소련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지 행정 당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묘수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 분리해 접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남아 있었던 사할린한인의 귀환과 노동력 활용의 문제는 그 임시적 조치의 장기화 조짐이 감지되던 1952년을 기점으로 점차 결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할린한인의 소련 국적 취득 허용 조치 직전인 1952년 초를 기점으로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한인들이 일하던 개별 작업장에 대한 각종 생활여건 개선 관련 문건들이 다수 생산된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사할린우골 콤비나트 소속 한인 노동자의 생산 및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조치(1952. 1. 9)⁸²⁾, 글랍사할린레스쁘롬 소속 한인 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상황 기록(1952. 1. 8)⁸³⁾, 글랍사할린뽀쁘롬 소속 한인 노동자의 생산 강화를 위한 조치들⁸⁴⁾, 수산업 종사 한인의 생활 및 문화적 여건(1952. 1.

82) ГИА СО, Ф. 53, Оп. 7, Д. 105, ЛЛ. 11~13.

83) 위의 글, 14~18.

84) 위의 글, 19~23.

7) 등과 이와 관련된 각종 결정, 통계, 협조 요청 자료 등이 그것이다.⁸⁵⁾

언급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인 중심 작업장들의 생산여건과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몇 년 전 나이부치 탄광의 조선인 노동자를 언급한 기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격하고 비판적인 논조가 가득하며 당국이 본격적으로 한인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관리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1952년 말에 이르면 사할린 내 언론에서 한인의 귀환 문제는 사실상 다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1952년 11월 11일자로 나온 국가 기밀 및 언론위원회 대표인 K. 오멜첸코(Омелченко)의 지시문⁸⁶⁾을 보면 “공개적인 언론에서는 한인의 귀환 할당이나 귀환에 관한 여하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기록들은 이후 지속적인 거주자로 관리 대상이 될 사할린 한인에 대한 소련의 통제가 이동의 제한을 통한 안보의 확보와 한인 사회의 동요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노동력 이용의 추구라는 목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1952년에 두드러졌던 소련 당국의 입장 변화가 어떤 목표와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되었는가? 이 질문은 1946년까지의 1차 일본인 귀환이 완료된 데 이어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사할린의 한인이 일본 국적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상황과 연결지어 향후에 보다 상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85) 위의 글, 27~34.

86) ГИАСО, Ф. 131, Оп. 1, Д. 3, Л. 2. 한인의 귀환 관련 보도 통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지시서는 2급 비밀에서 해제된 기록으로 확인된다.

참고문헌

사료

ГАРФ(GARF: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Ф. 5446: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 Ф. 9526: Фонд управления Уполномочн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делам репатриации

ГИАСО(GIASO: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Ф. 53: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 Ф. 171: Управл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ом делам

Крюков Д.Н. 1993,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1948 гг.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No 1, сс. 3~44.

한국어 자료

- 강정하, 2001, 「사할린 잔류 한인의 영주귀국을 둘러싼 한-일-러 교섭과정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중, 2009, 「사할린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
- 박민영, 2003, 「소련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 방일권, 2012,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한인 연구-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호.
- 장석홍, 2007,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G-3 REPATRIATION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43.
- 최기영, 2012, 「한인의 사할린 강제 이주와 귀환」, 장석홍 외, 『해방 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 한혜인, 2011, 「사할린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102.
- 황선익, 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역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러시아어 자료

- Бок Зи Коу, 1993, *Корей 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Ю. И. Дин, 2013,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45~1950 гг.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Вып. 8, М., сс. 72~81.
- И. П. Ким, 2010,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0.
- И. П. Ким, 2009,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 П. Канта*, 2009, Вып. 12, сс. 26~30.
- А. Т. Кузнец, 2010,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 А. Т. Кузнец, 2010, Проблемы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 *Россия и АТР*, 2010, № 2, сс. 76~83.
- Пак Сын Ы, 2008,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7~28 марта 2007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сс. 277~287.
- Пак Сын Ы,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ы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dvd-sakhalin.ru/?pg=2&type=2&page=0>
- Пак Чон Хё, 2011,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ц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Урок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6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2-3 сентября 201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1.
- В. Л. Подпечников, 2003, О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 территории

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 10,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с. 257~260.

일본어 자료

- 三品英彬, 1981, 『棄てられた四万三千人』, 三一書房.
全国樺太連盟, 1978, 『樺太沿革・行政史』, 全国樺太連盟.
北海道新聞社, 1988, 『祖国へ』, 北海道新聞社出版部.
大沼保昭, 1992, 『サハリン棄民: 戦後責任の点景』, 中公新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Thwarted Repatriation:
The Steps of the Soviet Union for Detained Koreans in
Sakhalin

Bang Ilkwon

This paper treats politic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in Moscow, the Soviet occupation army, and the local communist party in Sakhalin from 1945 to 1952.

The government meetings in Moscow began to discuss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Sakhalin after the Repatriation Agreement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GHQ was reached in December 1946. Following the agreement, Japanese repatriation was conducted at a very slow pace until July 1949. This was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occupation army and the local communist party in Sakhalin. The former wanted instant repatriation of Japanese civilians for political security, but the latter wanted to detain the Japanese for maintaining production on the island.

After the repatriation of the Japanese, detained Koreans became the ongoing issue. Some Koreans tried to escape from Sakhalin, and some among those who did escape revealed the inhuman situation of the detained Koreans. In addition, some coal miners dispatched from Sakhalin to Kyushu, in Japan, appealed to GHQ to be able to meet their families again in Sakhalin. GHQ requeste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detained Koreans and the repatriation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In early 1947, Golikov, the head of repatriation in the occupation army, commented regarding detained Koreans. He insisted on obligatory repatriation to North Korea. But Kriukov, the head of the local communist party in Sakhalin, insisted that the repatriation of Koreans should be put off until all the Japanese had been sent to Japan in order to maintain production facilities. In April 1950, the government in Moscow listened to the two contrary opinions about the Koreans, and reached a final conclusion. However, the Korean War began a short time later, and the issue of the repatriation of detained Koreans disappeared with no interest.



Keywords

Sakhalin Koreans, Repatriation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GHQ, and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이연식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 일본 조치(上智)대학 외국인공동연구원



I. 머리말

1945년 종전 후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는 구 일본제국의 팽창과 붕괴, 구 식민지에 대한 미소의 분단점령과 동서냉전,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배태되었다. 흔히 한인 1세대의 영주귀국사업은 2010년에 마무리되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화태역류한국인 귀환소송재판(사할린재판, 1975~1989)’에 이어서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재판’이 2007년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들의 전후배상과 청구권문제가 여러 층위에 걸쳐 논의되고 있고, 아울러 영주귀국자의 처우와 관련해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보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도 최근에는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국내 유가족 확인과 성묘문제, 그곳에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영주귀국한 사람들의 또 다른 형태의 이산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복잡한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전쟁·전후 책임문제를 제기하기 마

련이었다. 특히 이 문제가 공론화된 계기가 '사할린재판'이었던 만큼, 국제법 분야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미·대소 귀환교섭을 추진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¹⁾ 또 정치학과 행정학 분야에서는 사할린한인의 귀환운동을 정책의제 형성과정과 연계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고, 1989년 동서냉전의 붕괴 이후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을 둘러싼 한국·일본·소련 3국 간의 정부·비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교섭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룬 연구도 발표되었다.²⁾ 또 최근에는 사할린한인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일본·소련 4개국의 정책과 대응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고찰하거나, 귀환교섭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연합국총사령부(GHQ/SCAP) 문서를 통해 미소 간의 교섭과정을 살펴 한인의 모국 귀환이 실패한 외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³⁾ 아울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할린한인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본에서 직접 귀환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지원했던 활동가나 연구자들의 저작이 1980년대 이후 국내에 대거 소개되면서 지금까지도 관련 연구의 기본 참고자료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⁴⁾

※ 투고: 2014년 4월 10일, 심사 완료: 2014년 7월 19일, 게재 확정: 2014년 8월 25일

- 1) 정인섭, 1989,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66호; 노영돈, 1990,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교포정책자료』 35; 노영돈, 1992, 「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7-2.
- 2) 김성중, 2006,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0; 김성중, 2009,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 김성중, 200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53; 강정하, 2001, 「사할린 잔류 한인의 영주귀국을 둘러싼 한-일-러 교섭과정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 3) 한혜인, 2011,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102; 황선익, 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역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 4) 三品英彬 著, 김종필 역, 1982, 『사할린의 한: 나의 조국 일본을 고발한다』, 인간; 김경득, 1982. 10, 「사할린 재판보고」, 『마당』, 98~102쪽; 1983. 7, 「일본에서의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운동의 경위와 현 단계」, 『대한변호사협회지』 88호, 14~18쪽; 三田秀淋, 1981, 『切り捨てられた四万三千人』, 三一書房; 李恢成, 1989, 『サハリンへの旅』, 講談社; 角田房子, 1997, 『悲しみのサハリン: 戦後責任の背景』, 新潮文庫; 大沼保昭, 1992, 『サハリン棄民』, 中公親書(오노누마 마사아키 저, 이종원 역, 1993,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청계연구소); 高木健一, 1994, 『戦後補償の論理』, れんが書房新社(다카키 겐이치 저, 최용기 역, 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

그런데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와 관련해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양상을 논할 때 대체로 기존 연구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배태된 ‘중전 전후’의 시기와 그로부터 반세기 후에야 비로소 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주귀국’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 시기는 관련 주제를 통사적으로 다룬 저작 안에서도 대개 소략하게 처리되었다.⁵⁾ 이 시기에는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와 관련해 각국 정부 레벨의 교섭과 논의는 소강상태에 있었던 반면, 사할린재판을 포함한 민간의 귀환촉진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환촉진운동단체가 전후 일본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과연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도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공동연구 가운데 위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정부가 각기 한국과 소련정부를 상대로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⁶⁾ 이를

을); アナトーリー・クヰン, 1998, 『沿海州・サハリン 近い昔の話: 翻弄された朝鮮人の歴史』, 凱風社.

5) 그러한 점에서 최근 외교사료를 기초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한일·일소 간 외교교섭과정을 실증적으로 추적한 현무암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는 사할린 잔류 동포로 하여금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준 1970년대 한일 간 외교교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玄武岩, 「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の帰還をめぐる日韓の対応と認識 - 1950~1970年代の交渉過程を中心に -」, 今西一, 『北東アジアの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サハリン・樺太を中心に』, 2012. 3, 国立大学法人小樽商科大学出版会(日本經濟評論社, 2010, 『同時代史研究』 3号 게재 논문의 재수록본).

6)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보고서, 2012, 『사할린 한인 문제: 연구시각, 자료 및 쟁점』(공동연구자: 노영돈·방일권·이연식)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보고서, 2013, 『사할린 한인 문제를 둘러싼 한·러·일 3국의 입장: 귀환을 중심으로』(공동연구자: 방일권·오일환·이연식) 가운데 필자가 담당한 일본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을 발췌해 논문 형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응과 관련 내용은 방일권, 관련 소송과 국제법적 검토는 노영돈, 한국정부의 대응과 기타 관련국의 교섭과정은 오일환의 상기 보고서와 논저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다소 논지가 단선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연구자 간의 불필요한 내용 중복을 피하고자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다른 집필자의 연구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위해 현재까지는 비록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확히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화태교포관계자료(樺太僑胞關係資料)』(외교부, 1983)에 수록된 일본정부의 외교교섭 활동자료들과 일본의회속기록을 기본 사료로 삼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내용상 크게 4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패전부터 1965년 한일조약 체결 이전까지 일본정부가 사할린한인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핀다. 제3장에서는 한일조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교섭 상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의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어떠한 외교적 교섭을 시도하였는지를 살핀다. 제4장에서는 1987년 의원간담회 결성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이전까지 전후 일본의 전형적인 외교적 대응양상을 다나카 수상과 이나바 법무상의 의회 답변을 통해 살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소련 미그기 망명사건’을 계기로 일소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외교적 교섭이 정체를 맞이한 시기에 일본의회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도 내에서 일본정부의 대응과정만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사할린한인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에 관해서도 이미 상기 보고서와 공동연구자들의 개별 논저에서 누차 분담하여 상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하였다.

II. 일본정부의 사할린한인 귀환문제 인식틀 (1945~1965)

1945년 8월 패전을 전후해 일본정부는 해외 각 공관에 상대국 관헌과 협력해 일본인들이 가급적 현지에서 잔류·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⁷⁾ 왜냐하면 일본정부의 각 부처는 종전 당시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일본인들이 일거에 본토로 유입됨으로써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주택·식량·실업 등 각종 민생문제의 악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⁸⁾ 그러한 점에서 전후 일본정부는 해외 일본인의 귀환과 관련해 본토(내지인)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로서는 해외에서 돌아온 일본인의 정착원호도 버거운 과제였지만, 소련 점령 지역에 억류된 일본인의 처안문제와 이들의 조속한 송환문제도 큰 걱정거리였다. 왜냐하면 개전 이래로 소련은 중립국을 통해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일본정부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⁹⁾ 심지어 도쿄의 연합국총사령부(GHQ/SCAP)마저도 종전

7)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会, 1997, 『援護50年史』, ぎょうせい, 28쪽.

8) 물론 전후 일본정부 내에서도 해외 일본인의 본토 귀환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마다 각기 다른 입장이 공존했다. 가령 외무성의 경우는 국가의 외교능력과 해외 교민보호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미귀환자나 억류자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반면에 후생성이나 내무 관계 관료들은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치안과 민생문제 악화, 그리고 이들의 응급구호를 비롯한 사회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법무성의 경우는 이들의 재외재산 처리와 해외 체류자의 국제법적 지위, 재산 상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귀환자 가운데 부채지주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같은 문제에 골몰했다. 이처럼 해외 일본인 귀환에 관해서는 각기 입장과 관심사가 달랐지만 이들의 유입이 초래할 행정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궤를 같이 했다.

9) 東郷外務大臣発在瑞典岡本公使宛電報, 「日ソ間利益保護事務に関する件」, 1945. 8. 14, 在瑞典岡本公使発重光外務大臣宛電報, 1946. 9. 8, 「在ソ邦人安否調査並に日ソ間利益保護事務に関する件」, 重光外務大臣発在瑞典岡本公使宛電報, 1945. 9. 10.

초기에는 소련을 상대로 한 대리교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¹⁰⁾ 이처럼 전후 일본정부는 해외에서 밀려들어오는 귀환자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자의 안전한 귀환을 추동해야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 해외 일본인의 본토 귀환과 억류문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본토에 거주하는 구 식민지민과 외국인을 이들의 본국(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물론 구 일본제국 안에서 일본인과 비일본인의 송환·수용문제는 미소 점령당국의 소관 사항이었다. 그런데 소련은 자국 점령지에 거주하는 일본인 송환에 대해 일체의 외교적 교섭을 거부하고 있었고, 나머지 일본본토와 미군 점령지의 송환문제는 연합국총사령부가 주관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결국 후자를 지렛대 삼아 소련 점령지에 남은 자국민과 구 식민지민의 송환·억류문제에 관여하고자 했다.¹¹⁾ 그러한 맥락에서 전후 일본정부가 편찬한 일련의 인양사(引揚史: 귀환사) 가운데 'GHQ 점령기'에 관한 내용은 일본정부의 다양한 요구와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점령군이 수립한 관련 지령이 한데 응집되어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왜냐하면 이 시기 내용 가운데 패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일본인과 한인의 수용·송출에 관한 지령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정부의 의도와 지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미루어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에 따라서는 일견 각기 다른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 핵심은 일본인과 한인의 송환문제를 '혈통'을 기준으로 철저히 차별적으로 다루고자 한 점이다. 한 예로 점령기인 1950년도의 출간물을 보면, 사할린을 비롯

10) 連合国總司令部發帝國政府宛覚書, AGO91-4号, 1945. 9. 17.

11) 竹前栄治 解説・竹前栄治・今泉真理 訳, 1996, 『GHQ日本占領史-GHQ占領史序説-』 1, 日本図書センター, 14쪽과 高野和基 解説・訳, 1996, 『GHQ日本占領史-占領管理の体制-』 2, 日本図書センター, 32쪽.

12) 引揚援護庁, 1950, 『引揚援護の記録』; 厚生省援護局, 1955, 『続引揚援護の記録』; 1963, 『続続引揚援護の記録』, 1978,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 ぎょうせい, 1997,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会, 『援護50年史』, ぎょうせい.

한 소련 점령지의 일본인들은 1946년 12월 ‘소련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 간 협정(이하 미소 간 협정)’을 통해 본토로 송환하기로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일본인이 억류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재류 한인에 대해서는 이들의 송환문제가 전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철저히 ‘치안유지’ 관점에서 하루 속히 이들을 본토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1946년 12월 미소 간 협정에서 송환 대상자가 왜 소련 점령지의 일본인 포로, 민간 일본인, 일본에 거주하는 구 북한 출신의 한인으로만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미소 간 협정을 체결하고도 일본인 송환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소련 측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억류 일본인 사회의 정황만 강조할 뿐, 처음부터 송환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는 도외시되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대외적으로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일본인과 한인의 송환문제에 개입한 뒤에 편찬한 인양사에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가령 1948년 외무차관이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게 해외 미귀환자 조사를 의뢰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1954년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귀환 일본인이 여전히 억류된 상황에서 소련 측이 ‘일본인 송환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자 이 문제를 다급히 유엔총회에 상정했을 때에도 역시 사할린한인문제를 배제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1958년에는 박노학 등 일본인 처를 둔 일부 한인의 일본 송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인 송환문제의 주된 관심은 ‘후기송환’으로 범주화된 재일동포의 복송(귀국운동)문제에만 모아졌다.¹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으로 송환된

13) 引揚援護庁, 1950, 『引揚援護の記録』, 30쪽과 55~56쪽. 참고로 전후 소련 본토만 보아도 총 24개국 약 420만 명에 달하는 포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일본인이 약 57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成田龍一, 2006,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191쪽.

14) 厚生省援護局, 1978,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 きょうせい, 167쪽과 183쪽. 일본에서는 ‘귀국사업·귀국운동’ 등으로 불리던 재일동포의 ‘복송’ 문제는 적어도 1965년 한일조약 체결 이전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귀국사업이 퇴조기에 접어든 1960년대 후반까지도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와는 결코 뗄 수 없는 길항관계에 놓

약 9만 3천 명 가운데 7만여 명 이상이 1959~1962년 사이에 송환된 것을 보면 당시의 북송 열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⁵⁾ 이처럼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한인 송환의 최대 이슈는 재일동포의 북송문제였기 때문에,¹⁶⁾ 비슷한 시기인 1958년 2월 박노학 등은 화태여류자귀환동맹을 결성하고 귀환운동을 개시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¹⁷⁾ 이렇듯 전후 일본사회에서 사할린한인의 귀환운동은 사회적 외면 속에서 일본인 처를 둔 덕분에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일부 한인에 의해 어렵게 시작되었다. 더욱이 이들이 의지하고자 한 곳도 일본정부보다는 한국대표부와 민단 등 일본사회에서 별다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던 기관이나 단체였으므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 있던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의 연구범위와 논지 전개를 고려해 이 문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루어야 할 듯하다. 다만 여기서는 일본정부가 재일동포의 추방의도를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를 비롯해 국제적십자사를 내세워 인도주의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명분으로 포장했듯이, 후술할 박노학 등의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 등의 귀환자단체 역시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똑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압박하고자 했음을 부기해 둔다. 아울러 고도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동원된 상기 명분은 일본, 한국, 북한을 막론하고 자국의 국익에 따라 '더블 스탠더드(double standard)'라는 비판을 감수해 가며 공공연히 구사되었으며, 1959년 이래 약 10여 년 동안 시기와 국면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으로 활용되었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와 항상 상충하는 대극에 놓인 사안이었던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북한으로 국한해 보았을 때 이 북송문제는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와 더불어 체제경쟁 논리 속에서 한반도의 양 정권이 해외동포의 '전취'와 '방치'를 국익과 관련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부기해 둔다.

15) 森田芳夫, 1996, 『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180쪽.

16) 주지하듯이 재일동포의 북송은 한일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대일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들을 전후복구사업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북한의 의도, 상대적으로 재일동포에 무관심했던 남한의 재외교민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다른 한 축에는 분명히 정치적·경제적으로 부담스런 집단이었던 한인을 추방하려는 일본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 참고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박정진, 2011, 「북한의 대일 접근과 조선인 북송(귀국)문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참조. 아울러 일본의 외교적 의도와 북송 추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오일환, 1998, 「일본의 남북한 이중외교」, 한국현대사연구회 편, 『근현대사강좌』와 이연식, 2001, 「1950~1960년대 재일한국인 북송문제의 재고」, 『전농사론』 제7집 참조.

17)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이종일 역, 1993,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청계연구소, 57~59쪽.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사할린한인은 이미 패전 시점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태도는 GHQ 점령기에 실시한 재일동포의 외국인등록조치를 통해 노골화되었고,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후에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비일본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들의 송환문제 자체가 의제화될 수 없었다. 게다가 사할린한인 귀환촉진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재일동포 복송사업에서 보듯이 일본정부가 본토에 살고 있던 한인들조차 밖으로 추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한창 추진하던 때였다. 당시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사할린의 비일본인(제3국인)이 여전히 미수교 국가인 한국’으로 귀환하는 문제에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전후책임에 대한 당시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일본 입국이나 영주 허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사안이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패전 후 약 10여 년 동안 소련 점령지구 억류자의 귀환교섭 외에도 이미 본토로 돌아온 군인·군속을 비롯해 민간인 귀환자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응하기에도 버거웠으므로 이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¹⁸⁾ 이것은 일본정부가 스스로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를 전후책임의 문제로 인식할 만한 최소한의 내부 동력이나 물질토대, 그리고 인식틀마저도 없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는 한일조약 체결을 계기로 과거 식민지배와 전후처리에 관한 총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 간의 외교적 의제로 서서히 부각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18) 이연식, 2010, 「전후 해외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60~164쪽.

Ⅲ. 일본정부의 주요 교섭활동 내용(1965~1976)

1960년대로 접어들며 일본정부가 사할린한인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라 안팎에서 조성되었다. 내부적으로 보자면 일본사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운동세력이 형성되어 갔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기에 일소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련에 억류된 일본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조선인을 남편으로 둔 일본인 여성과 가족도 일부 포함되었다. 1957년 8월부터 1959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본토로 돌아온 일본인 처는 766명, 그리고 그 조선인 남편과 자식들은 1,541명으로 도합 2,307명에 달했다. 1958년 일본인 처와 함께 일본에 돌아온 박노학은 잔류 한인의 귀환 촉진을 목표로 화태억류귀환자동맹(뒤에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 화태잔류귀환한국인회, 화태귀환재일한국인회 등으로 개칭. 이하 '한국인회')을 결성했다.

박노학 등은 한일협정 체결이 가시화된 1965년으로 접어들자 사할린한인과 한국의 가족들 사이에서 서신 왕래를 매개하며 귀환희망자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¹⁹⁾ 이 소식이 한국의 『동아일보』와 KBS를 통해 소개되면서 서신들이 쇄도하자, 이를 기초로 박노학 등은 1967년 3월 현재 사할린한인 가운데 무국적자, 소련적, 북한적을 포함해 약 7천 명에 달하는 귀환희망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었다(한국 영주희망자 1,410세대 5,348명, 일본 영주희망자 334세대 1,576명). 이 7천 명에 달하는 명부는 1969년 8월에 한국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건네졌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소련대사관에 전달되어 비로소 출국희망자의 유무 조사라든가 출국허가 교섭의 구체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소련 측이 상황에 따라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이내 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는 '일본과 논의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라든가, '사할린에는 귀국희망자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교섭의 물적 근거로 활용되

19) 角田房子, 1997, 『悲しみのサハリン: 戦後責任の背景』, 新潮社, 78~79쪽.

었다.²⁰⁾

한편 이러한 일본사회 내부 동인과 더불어 외부에서는 일본정부를 외교적으로 자극·추동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위주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줄곧 사할린한인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여온 한국정부가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교섭 대상국으로 등장하였고, 국제적십자사 또한 각국의 적십자사를 매개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사회 안팎에서 사할린한인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주체가 형성되자 일본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다듬어갔다. 그러한 점에서 1965년은 전후 일본정부의 사할린한인정책이 일정한 내용을 담아내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일소관계의 냉각으로 외교교섭이 정체국면으로 들어가는 1976년까지의 약 10여년의 기간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 형성된 시기였으므로, 그 사이에 일본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했는지를 외교교섭 일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²¹⁾

〈표 1〉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외교교섭 일지(1965~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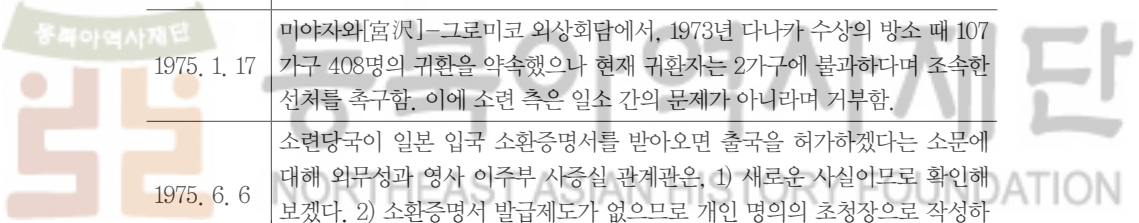
일자	한국과 소련을 상대로 한 주요 교섭내용
1966. 3. 30	구로다[黒田]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오재희 정무과장에게, 1) 한국정부가 사할린한인을 모두 수용한다. 2) 일본은 송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본 거주 희망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함.
1966. 9. 10	우시바[牛場] 외무성 심의관이 김영주 차관에게, 1) 선편 제공 등 한국인 송환 경비를 일측이 부담한다. 2) 한국정부가 이들 한국인을 모두 인수한다고 함.
1968. 1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김정열, 정일형, 차지철)의 방문 때 미키[三木] 외무대신은,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한국 귀환에 부정적이지만 노력하겠다고 함.

20)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1993, 앞의 책, 73쪽.

21) 이를 위해 한국 외무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오일환 공동연구자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자료실에서 새로 발굴한 것으로 서지 사항은 외무부, 1983. 1, 『화태교포관계자료』로 명명되어 있다.

일자	한국과 소련을 상대로 한 주요 교섭내용
1968. 4	한국의 진 차관과 기무라[木村] 일본대사의 면담에서, 1) 모든 송환자를 한국이 수용한다. 2) 소요경비는 일측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함.
1968. 7. 5	국제적십자가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일본정부는, 1) 귀환자의 일본 정착을 반대한다. 2) 소련은 일본을 경유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경우 한인의 출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함.
1968. 8	제2차 한일정기각료회의의 공동성명에서, 한인의 조속한 사할린 출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1969. 5. 1	국제적십자 갈로핀 총재의 방일에 외무성은, 소련의 출국허가가 선결요건이나 소련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함.
1969. 5. 26	한일 외교 동북아과장 면담에서, 한인 송환을 위해서는 정착지를 논하기 이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한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야 한다고 함.
1969. 8. 28	일본정부가 주일소련대사에게 한국에서 건네받은 7천 명의 명부를 전하고 이들 귀환에 협조하도록 요청함.
1971. 7. 29	주한일본대사관 하시메 참사관이 동북아과장에게 보고하기를, 외무성 동구1과장이 7천 명의 귀환희망자의 출국여사를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의 출국을 허가할 의사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함.
1972. 1	일소정기각료회의에서 후쿠다[福田] 외상과 그로미코 러시아 외상의 면담에서, 한인의 송환 실현을 요청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함.
1972. 4. 24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주일대사관 우문기 정무과장에게, 일본정부는 그로미코 외상의 답변을 근거로 제2차 일소각료회의에서 실무자 레벨에서 한인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니, 한국 측은 국제적십자를 통해 소련적십자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요구함.
1973. 5. 15	외무성의 요청으로 일본적십자사 총재가 소련적십자사 트로얀스키에게, 일본 측이 일본 입국을 허가한 경우 한인의 출국을 허가한 일이 있는지를 문자그러한 일이 있다고 대답함. 아울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인 송환에 협조할 뜻이 있느냐고 문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할 뜻을 보임.
1973. 7. 9	세오[妹尾]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우문기 과장에게, 귀환 희망 한인을 1) 자비여행 한국 정착, 2) 여비보조 한국 정착, 3) 자비여행 일본 정착, 4) 여비보조 일본 정착으로 분류할 때 1) 부류를 먼저 교섭할 뜻을 보임.
1973. 9	다부치[田淵] 의원의 방소 때 소련 외무성 극동제2부장 유코시니코프가 말하길, 1) 한인 가운데 무국적자의 출국은 자유이다. 2) 귀환희망자가 7천 명이나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행선지가 일본일 경우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함.

일자	한국과 소련을 상대로 한 주요 교섭내용
1973. 10. 7 ~11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회담에서, 브레즈네프는 귀환 희망자가 없다고 하였으나 다니카는 출국희망자가 있음을 역설하고 향후 외교적 협조를 요청함.
1974. 3. 18	세오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한국 측에 통보하기를, 1) 귀환희망자 201명에 대해 한국이 인수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해주시기 바란다. 2) 일본 도착 후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인수하겠다는 한국 측 입장에 반대한다. 3) 일본정부의 여비와 정착금 지원은 어렵다고 함.
1974. 10. 2	공명당 다케이리리[竹入] 위원장이 코시긴 수상에게, 귀환자가 희망하는 정착지로 출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자 1975년 1월 일본수상의 방소 때 의제로 거론하면 검토하겠다고 함.
1974. 11. 4	주소일본대사관에서 소련외무성 제2극동부 차장에게 201명의 귀환희망자 명단과 함께 출국허가를 요청하는 구술서를 제출하자, 한인의 귀환문제는 “일소 간의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접수를 거부함.
1975. 1. 17	미야자와외[宮沢]-그로미코 외상회담에서, 1973년 다니카 수상의 방소 때 107가구 408명의 귀환을 약속했으나 현재 귀환자는 2가구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선처를 촉구함. 이에 소련 측은 일소 간의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함.
1975. 6. 6	소련당국이 일본 입국 소환증명서를 받아오면 출국을 허가하겠다는 소문에 대해 외무성과 영사 이주부 사증실 관계관은, 1) 새로운 사실이므로 확인해 보겠다. 2) 소환증명서 발급제도가 없으므로 개인 명의의 초청장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1975. 7. 28	도만상·신성규 등이 소련당국의 출국허가를 받았다고 일본 측에 소환장이나 초청장을 요청하자 외무성은, 1) 개별적으로 입국 허가를 할 예정이다. 2) 201명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본경유’ 형태로 15~30일의 체류를 허가할 것이다. 3) 일본 영주희망자는 개별 심사할 예정이다. 4) 귀환희망자가 주소일본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국적자는 도향증명서를, 소련국적자는 입국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1975. 8. 14	외무성이 박노학의 귀환회에 일본입국증명발급신청서를 보내고, 박노학은 이 신청서와 귀환수속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송부함.
1975. 8. 19	소련당국에 청원한 결과, 한국과 소련은 국교가 없으므로 한국에 거류하는 딸이나 친족이 초청장과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한국정부가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어주면 송환을 허가하겠다고 함.
1976. 1. 6	엔도 북동아과장이 방한하여 우문기 과장과 면담하고, 소련이 한국 관련 사항에 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선 일본 정착요건을 구비한 일본정착희망자에게 입국을 허가하겠다고 함. 이에 따라 5명에게 현재 입국을 허가함.



일자	한국과 소련을 상대로 한 주요 교섭내용
1976. 1. 10	일소외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야자와 외상의 설명으로, 1975년 모스크바에서는 일본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1976. 1. 22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부치 의원 질의에 이나바[稲葉] 법무대신이 답하기를, 한인을 한국으로 귀환시킨다는 조건이 아니라 일본이 인수하여 인도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함.
1976. 1. 26	북동아과 다카하시[高橋] 차석의 외무성 입장 확인으로, 1)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 2)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검토해 입국비자를 발급하겠다. 3) 일본 입국 후 희망에 따라 한국귀환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함.
1976. 8. 11	정순근 주일공사가 나카에[中江] 아주국장에게 한국정부의 토크 페이퍼(talking paper)를 건네자, 사할린한인 귀환에 따른 일본정부의 비용 관련 의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비용문제를 일본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함.
1976. 10. 21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민사당 다부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사카[小阪善太郎] 외상은 사할린한인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느끼며 이들의 송환을 위해 진력을 다해 소련과 교섭하겠다고 대답함.
1977. 1. 4~9	엔도[遠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이동원 동북아과장의 면담에서, 사할린한인 귀환이 해를 넘겨 지연되어 가족들의 실망으로 한국정부가 난처하다고 하자, 외무성에서는 서류 등 실무준비는 모두 마쳤으나 소련 미그 기망명사건으로 일소관계가 경직되었다고 대답함.

비고: 외무부, 1983. 1, 『화태교포관계자료』, 43~76쪽에서 일본정부의 동향만을 발췌함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한일조약 체결 이후 1969년 박노학 등이 작성한 귀환 희망자 명부가 한국 → 일본 → 소련으로 전달된 시기까지의 주된 이슈는 크게 ‘귀환경비의 지불 주체’와 ‘귀환자의 수용 주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6년 구로다 동북아과장과 오재희 정무과장 사이의 면담과정 때부터 확인된다. 일본정부는 이 가운데 귀환비용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부담할 의사를 시사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반면, 한인의 수용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소련 측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외교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일관되게 일본 정착 내지 영주를 거부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을 통해 보듯이 어떻게든 한인들을 일본 본토에는 거류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순혈주의’가 1960년대 말까지 뿌리 깊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비용 부담을 처음에 완강히 거부한 것은 일본정부도 전체 귀환희망자 규모를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울러 한일조약 체결로 모든 전후처리 비용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간헐적으로 비용 부담을 시사한 것은 전후처리 원칙에 입각한 체류비와 정착비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편 알선 등 간단한 편의제공 수준의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련 측의 부정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실제 교섭환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일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외견상 일본정부가 박노학의 ‘한국인회’라든가 적십자사 등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외상회의나 수뇌회담 등을 통해 여러 층위에 걸쳐 소련과 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일단 귀환희망자명부를 바탕으로 1971년부터 이들에 대한 출국 허가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1972년에는 후쿠다-그로미코 외상회담을 통해 한인의 송환 실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한 그로미코의 회답은 ‘귀환신청이 있다면 소련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일본정부는 향후 교섭을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울러 한국정부 측에도 적십자사를 활용해 교섭채널을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다. 1973년에는 다나카-브레즈네프 수뇌회담을 통해 사할린에는 귀환을 희망하는 한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소련 측의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1974년에는 코시긴 수상에게 정착지와 상관 없이 한인 출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1975년에는 미야자와-그로미코 외상회담을 통해 다나카 총리의 방소 때 약속한 408명의 출국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일본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소 교섭을 추진했으나 소련 측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1960년대와 달리 사할린한인문제를 일본정부가 막상 정식 의제로 상정해 적극적으로 제기 해오자 소련정부는 의례적 답변으로 얼버무리거나 실무 수준의 ‘립서비스’로 대응했다. 하지만 사할린에 ‘귀환희망자는 없다’는 1973년 브레즈네프의 발언이나, 1974년 주소일본대사관의 출국허가 요청에 대해 이 문제는 결코 ‘일소 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상서 접수조차 거부한 것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시기에는 이처럼 일본정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시도했지만 정작 소련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할린한인의 정착지가 ‘한국’이라는 점이었고, 그 이면에는 재일동포의 복송문제 등으로 한국정부와 극도로 대립하고 있던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²²⁾ 실제로 1973년 다나카-브레즈네프 회담 직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즉각적으로 사할린한인의 남한 송환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²³⁾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교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단순히 통과지·경유지’일 뿐이며 모든 귀환자는 한국 측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종래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1973년 다부치(田淵) 의원의 방소 때 소련 외무성 극동제2부장 유코시니코프가 무국적자의 출국은 자유며, 행선지(정착지)가 일본이라면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말단 기관이나 각 지방 수준에서는 종종 있었으나 실제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 진의는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정부가 ‘귀환자를 일본 측이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태도만 확고히 보였다면 훨씬 더 교섭이 쉽게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일본정

22) 조정남, 2002, 「북한의 사할린 한인정책」, 『민족연구』 8, 6~8쪽.

23)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1993, 앞의 책, 90~93쪽; “재사할린 조선인 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관계되는 문제로 일본의 지배층은 사할린 조선인 동포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할린 동포를 남조선으로 송환시키려는 일본 지배층의 책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하는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조정남, 2002, 앞의 논문, 9쪽).

부도 깊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4년만 해도 세오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201명의 귀환희망자를 ‘한국정부가 반드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보장하라는 등의 고식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1976년 단계에 이르러서는 태도를 바꾸어 현실적으로 일본 영주희망자라도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송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렇듯 1970년대에는 일본정부가 교섭채널을 다양화하며 외형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1976년까지도 여전히 귀환자의 정착지와 정착비 부담 의무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또한 사할린한인문제에 대해 정치적·도외적 책임을 유력 정치인들이 표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할린한인을 일본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사회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전후책임에 대한 의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가 가뜩이나 경직된 태도를 고집하던 소련과의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24) 물론 그 이전에는 한사코 일본으로 입국한 사할린한인을 본국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보류하거나 가급적 일본에 정착하기를 바랐던 한국정부의 태도가 연동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공산권 동포의 본국 귀환을 꺼리는 한국정부의 반공주의와 경계의 정서, 현실적으로 이들이 본국에 정착했을 때 이들을 지원할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 등이 작용했다. 심지어는 구호식량으로 밀가루밖에 지원할 수 없었던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귀환자가 사할린에서 생활할 때보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못하다고 느꼈을 때 안게 될 부담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대두했다. 한국정부의 대응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로 공동연구 안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오일환의 보고서와 개별 논저를 참조하기 바란다.

Ⅳ. 다나카 수상과 이나바 법무상의 의회 답변

1980년대 말 세계냉전의 붕괴와 동북아 지역의 정치지형 변화로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과 관련해 다국 간의 협의가 급속히 진전되기 전까지 전후 일본정부의 사할린한인 관련 정책의 기본 방침은 위에서 보았듯이 대략 1970년대 초에서 중반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형화된 대응방식은 1972년 7월 우케타 신키치[受田新吉] 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의 답변서, 그리고 1976년 1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민사당 다부치[田淵哲也] 의원 질의에 대한 이나바 오사무[稲葉修] 법무상의 답변을 통해 매우 상세히 살필 수 있다.

민사당의 우케타 의원은 1950년대부터 재한일본인 처의 일본 귀환이라든가 재외 한인의 한반도 귀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²⁵⁾ 그는 1972년 7월 12일 중의원의장 앞으로 질의서를 제출했다.²⁶⁾ 질의 내용은 “중전 이전 징용에 의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이 현재 1만여 명이 잔류하고 있고, 7천여 명이 고국(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십여 년 동안 고국의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이미 노령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사이에는 국교가 없으므로 양국은 직접 교섭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인도적으로 전후처리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이들 조선인의 귀국에 대해 무언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수상은 7월 18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25) 衆議院, 1951. 1. 27, 『海外同胞に関する特別委員会』 2号; 衆議院, 1970. 12. 8, 『内閣委員会』 3号; 衆議院, 1971. 11. 10, 『内閣委員会』 3号 속기록.

26) 서한의 정식 명칭은 「徴用により樺太に居住させられた朝鮮人の帰国に関する質問主意書」(외교부, 1983, 『화태교포관계자료』, 117쪽).

1. 지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도 인도적 문제로서 실로 동정을 금할 수 없다. 남사할린이 일본영토였던 당시 그곳으로 보내져 종전 후 현재까지도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조선인에게 한국이나 일본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생각할 때, 정부로서도 현재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귀환 실현을 위해 가능한 한 노력할 생각이다. 다만 현재 사할린은 일본 관할하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2. 일본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해당 귀환희망자 실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소련정부 측에 1969년 8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귀환희망자명부’를 건네주었고, 이 명부에 기초해 출국 희망자의 실태조사 방법이라든가, 출국 희망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출국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 후로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련정부 측에 배려를 요청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할 것이다.
3. 지적받은 일본정부의 편의제공 문제는 귀환희망자의 실태파악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1) 일본은 단지 통과할 뿐이며(경유지일 뿐이며, 通過するのみで) 전원을 한국으로 돌려보낸다. 2) 귀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이 두 가지를 기본방침(とりあえずのライン)으로 삼아 외무성과 법무성 등 관계 관청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²⁷⁾

이것은 종전 이래 한인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인식과 대응양상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비록 사할린한인의 억류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인식한다고는 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질문의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답변에 불과했다. 즉 처음부터 남사할린이 일본의 관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교교섭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의 귀환교섭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면책론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제 2항에서는 구체적 편의제공에 앞서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일본정부가 그동안 혈통을 근거로 한 민족차별적인 한인

27) 외교부, 1983, 『화태교포관계자료』, 118~119쪽.

관에 입각해 '실패파악'조차 소홀히 하였음을 뜻한다. 만일 일본정부가 이들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다면 앞서 보았듯이 1948년 일본 내 각 지자체에 해외미귀환자 조사를 지시하였을 때라든가, 1954년 소련 점령지의 억류 일본인 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때 분명히 기회가 있었으므로 실패파악과 관련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학 등의 한인회가 작성한 명부에만 의존해 소련 측에 실패파악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은 애초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구체적인 편의의 내용도 '일본을 경유지로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답변서는 한일조약 체결로 사할린한인 관련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귀환비용도 지불할 수 없고, 소련 측이 일본 정착을 전제로 한다면 무국적자 등의 경우는 출국을 허가하겠다고 간헐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다나카 내각기에 비록 외형적으로는 활발한 교섭활동을 벌인 듯하지만 결국에는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이때는 1976년 소련 미그기 조종사의 망명사건이라든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인해 일소·미소관계가 1980년대 중반까지 악화일로로 치달게 되기 이전 상황이었으므로 사할린한인의 귀환 가능성이 비교적 유동적인 시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²⁸⁾

그 후 사할린 지방당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입국소환증명서(초청장)가 있으면 출국을 허가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의 귀환문제는 일소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련정부 중앙의 부정적 태도가 혼재된 가운데 교섭이 혼선을 빚자 1976년 민사당의 다부치 의원은 외무상·법부

28) 이와 관련해 오오누마는 이 답변에 대해 패전 직후 귀환하지 못한 한인은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이 연행한 일본인'이었으나 이들의 존재를 연합국총사령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오로지 혈통적인 일본인만의 송환을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버린 어두운 과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다나카의 답변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더불어 이들의 국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들을 전원 한국이 받아들이고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1993, 앞의 책, 95쪽.

상·후생상을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²⁹⁾ 그는 1972년 박노학 등이 일본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협력을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앞장선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소련을 방문해 유시니코프를 만나 대국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어 이 문제를 비교적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던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다. 그의 질의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 1946년 12월 ‘미소 간 협정’ 체결 때 한인 귀환에 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가?
2. 사할린한인 대부분은 전시 중에 강제로 연행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일본 혹은 고향으로 귀환)시킬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다고 보는가?
3. 1973년 일소우호의원연맹 일원으로 방소하여 소련 외무성 국동부 차장에게 문의하였더니 한국으로 귀환시킬 수는 없으나, 일본 귀환은 가능하며 그 후 이들이 한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소련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했다. 일본은 이들을 받아들일 자세로 이 문제에 임했는가?
4. 1972년 7월 12일 민사당 아이다 중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는, “1) 일본정부는 단순히 통과할 뿐이고 전원 한국으로 귀환시킨다. 2) 귀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한국이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이 방침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가?
5. 소련은 한국을 승인하지 않은 이상 한국 귀환을 전제로 한 한인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들을 전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6. 일본정부는 귀환희망자의 정착지가 일본이든 한국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7. 일본정부가 귀환자의 정착희망지가 한국임을 전제로 대소 교섭에 나선다면 장애가 따른다. 도의상 모든 귀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일단 수용할 것임을 전제로 교섭에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8. 원래는 일본과 소련이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영토문제를 확정하고 주민의 귀속문제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소련과는 아직 강화조약이

29) 이하 질문과 답변 내용은 參議院, 1976. 1. 22, 『決算委員会』 3号 속기록.

- 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근거로 사할린한인이 일본인이 아니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스운 논리가 아닌가?
9. 한국 귀환을 희망하는 한인의 대부분이 무국적자이고, 북한적이나 소련적 한인 중에도 생활을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일 뿐 한국 귀환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 무국적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10. 사할린한인문제는 일소 간 전후처리의 중요한 문제로서 북방영토 문제도 중요하지만 노령에 이른 사람들이 귀향에 대한 염원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부치의 질문은 1975년에 시작된 사할린재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실행위원회 활동과 연계되어 다분히 정부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가령 제2항에서 사할린한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해 물은 것도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³⁰⁾ 그의 질문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외교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

먼저 그가 소련 점령지구 일본인 송환에 관한 미소 간 협정 체결 때 일본정부의 태도를 물은 것은 곧 협정체결 주체인 연합국총사령부에 보고할 때 억류된 한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뜻이었다. 즉 이것은 식민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혈통을 기준으로 한인들을 버린 심각한 전후책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뒤이어 그는 몇 개 항목에 걸쳐 '일본은 경유지일 뿐이고, 모든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온 종래의 방침을 집요하게 비판했다. 즉 그는 일본정부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후 일본국적 상실을 이유로 한인의 일본 입국을 한사코 거부하고자 한 것이 문제이며, 그로 인해 대소 교섭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가 어떻게든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한국 송환은 추후에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일단 일본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30) 사할린한인의 원상회복과 '기능적 국적론'에 관한 해석은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1993, 앞의 책, 125~128쪽.

것은 1977년 이후 사할린재판의 주요 쟁점이 원고들에 대해, “일본으로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일본국적’이라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각종 법리를 동원하거나 정황을 핑계로 이들의 귀환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근원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의 질의에 대해 미야자와[宮沢喜一] 외무상은 사할린한인문제와 관련해 1975년 1월과 1976년 1월 양국 외상회담을 통해 소련 측에 선처를 요청하였고 답변했다. 아울러 법적인 문제와 달리 정치적으로는 일본정부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향후 일소강화조약 추진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반면에 이나바 법무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거주지를 불문하고 한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했다. 다만 강제연행된 사할린한인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국신청에 대해 일본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지만 소련의 출국허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단순한 경유지로 간주하거나, 한국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단 일본에서 수용한 뒤 인도적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단 ‘정착을 전제로 한 일본 입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1972년 다나카 답변에서 분명 진일보했다. 물론 실제 내용을 보면 한국 영주희망자의 경우 한국의 입국허가 보증이 없는 한 (경유지로서) 일본 입국을 거부하였고, 일본 영주희망자의 경우 반드시 종전 이전 일본 거류경력이 있어야 하고, 게다가 일정한 재력을 갖춘 신원보증인이 없는 한 (정착지로서) 일본 입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즉 한국행을 택한 자들에게는 ‘한국정부의 수용보증’을, 일본행을 택한 자들에게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단 ‘경유지·통과지로서의 일본’이라는 고식적인 종래의 인식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각 행정주체의 실행의지였다.

V. 외교교섭 정체가 일본정부의 대응(1976~1983)

1976년 소련 조종사의 미그기망명사건을 계기로 일소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하자 사할린한인의 귀환교섭도 향후 약 10여 년에 걸쳐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1977년 1월 엔도[遠藤] 외무성 동북아과장은 방한하여 귀환희망자에 대한 서류준비는 거의 마친 상황이지만 미그기망명사건 이후 일소관계가 악화되었으므로 향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회를 보아 다시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한국 외교부에 전했다. 그 후 약 4년이 지나 1981년 2월 10일 고쿠라[小倉] 외무성 동북아과장은 주일대사관 이재춘 정무과장을 만나 그 사이 일본 측은 귀환희망자에게 입국허가서를 발급했으나 소련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전했다.³¹⁾

이렇게 일소 간의 교섭이 위기에 봉착하자 1978년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다부치 의원은 “일본정부가 입국허가를 발급한 자는 113세대, 378명인데 현재 송환자는 왜 3명뿐이냐?”고 물었다. 이에 나카에 등 외무성 관계자는 소련정부가 출국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뒤에는 북한의 강력한 반대가 자리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다부치 의원은 국적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할린재판’이 진행 중인데 귀환희망자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특혜를 생각해 보았는가하고 물었다. 즉 ‘귀환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국적 한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미야자키 과장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사할린한인의 일본국적은 상실되었으며, 현행 국제법상 개인 의사에 따른 귀화 외에는 국적회복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즉 중국인, 대만인을 포함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 집단에게만 국적회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부치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묻자 소노다 외무상은 소련의 반대로 유엔 상정은 어려우

31) 외교부, 1983, 『화태교포관계자료』, 74~77쪽.

며, 이들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해 일본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역시 한국 귀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단 일본 영주희망자에게는 일본국적을 부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³²⁾ 이를 통해 보듯이 대소교섭이 정체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사할린한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해 일본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같은 날 참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가라타니[柄谷道一] 의원은, 영화 '망각의 해협'을 보면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고 현지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할 용의가 있는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토[佐藤] 동북아과장은 1978년 1월 외상의 방소 때 확인해 본 결과 북한과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였다며 최근 소련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직원 파견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 상태에서는 일본의 인도적 입장을 설득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그러자 가라타니 의원은 "1972년 우케타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는 '모든 한인은 한국으로 귀국시키고, 그 비용은 한국 측에서 지불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 후 출입국관리국장은 반드시 그것에 구애받지는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것은 결국 사할린한인의 일본 영주를 인정하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후생성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인가? 후생성은 모든 일을 외무성에 맡기고 그저 뒷짐만 지고 있다. 후생성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영주를 인정하겠다고 소련 측과 교섭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다. 이에 오자와[小沢] 후생상은 외무성과 같은 의견이므로 조속히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고노[小野] 원호국장은 인도적, 도덕적으로 원호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³³⁾ 즉 사할린한인의 국적 부여문제와 더불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일본 영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후 약 4년이 지난 1982년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쿠사가와[草川昭三] 의원은 외무성 관계자에게 사할린한인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

32) 參議院, 1978. 4. 18, 『外務委員會』 15号 속기록.

33) 參議院, 1978. 4. 18, 『社会労働委員會』 9号 속기록.

는지를 물었다. 후지이[藤井] 심의관은 소련 측이 여전히 ‘일소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귀환촉진단체 추정에 따르면 약 4만 3천 명이 억류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제공한 명단에 의하면 약 7천 명이 귀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1,500명이 일본 영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입국신청자는 438명이며 귀환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오타카[大高] 출입국관리국장은 현재 한국 귀환을 위해 일본 입국을 신청한 자 376명과 일본 영주를 신청한 35명에게 입국을 허가하였다고 답변했다. 그 가운데 일본 귀환희망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일본 거주경력과 신원보증인의 유무 등 입국자격을 심사하였는데 현재 2명은 한국에, 1명은 일본에 귀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4만여 명 가운데 불과 3명’에 그친 귀환현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쿠사가와 의원은 적십자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는데, 스즈키 총리는 아쉽게도 소련적십자사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쿠사가와 의원은 만일 일본정부가 1965년 당시 국제적십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면 소련 측이 한인들을 출국시킬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일본정부가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 하여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 잔류고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전후처리의 문제라며 고도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일본의 선진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다나베[田鍋] 국무대신은 총리부장관 산하에 심의기관으로서 전후처리문제검토협의회나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에도 이 문제에 대한 검토비를 상정했다고 밝혔다.³⁴⁾

이상에서 보듯이 사할린한인문제에 대한 대소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1976년도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의회에서 전개된 논의 내용 속에서는 크게 3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첫째, 1975년 사할린재판을 계기로 등장한 ‘귀환수단’으로서 한인에 대한 일본국적 부여 논의가 의회공간에서 공론화

34) 衆議院, 1982. 3. 8, 『予算委員会第一分科会』 4号; 衆議院, 1982. 3. 9, 『予算委員会』 19号 속기록.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72년 공적으로 확인된 ‘일본은 경유지일 따름이며 모든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다나카의 답변을 돌이켜볼 때 일본정부가 이들의 문제를 ‘전후 일본’의 문제로 끌어안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비록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로 했지만 사할린한인의 일본 영주문제가 논의되었다. 이것은 북송사업에서 보듯이 이미 거류하고 있던 재일동포조차도 한반도로 추방하고자 한 일본정부가 조건부이나마 이들의 정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에 마땅한 연고가 없거나 든든한 보증인을 두지 못한 대부분의 귀환희망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공고롭게도 중국 잔류교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사할린한인에 대한 대소교섭이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일본사회 안에서 전후처리 문제의 일환으로 사할린한인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 문제를 미디어를 통해 국내외에 공론화한 사할린재판활동이라든가, 유엔인권위 차별방지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적십자사를 움직이는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일간 연대를 모색하는 등 운동의 외연 확대를 도모한 ‘아시아에 대한 전후책임을 생각하는 모임’ 등 일본시민단체의 역할이 주효했다.³⁵⁾ 상기한 다부치, 가라타니, 쿠사가와 등의 의회 질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민운동세력의 요구를 의회공간에서 반영한 것이었다.³⁶⁾ 아울러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를 가져온 외부적 요인으로는 바로 이 대소교섭 정체기를 전후해 일본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 새로운 국제적 외교환경의 변화도 일조했다.³⁷⁾

35) 高木健一 저, 최용기 역, 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103~109쪽;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1993, 앞의 책, 141~145쪽.

36) 예를 들어 일본변호사회는 소련의 태도가 1976년 이후 경색된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잘못된 법적·외교적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며 하루빨리 귀환희망자의 실지조사, 소련과 귀환교섭의 재개, 귀환희망자에 대한 무조건 입국 허가를 주장했다.

37) *New York Times*, 1977. 2. 27, “Tokyo Group Seeks to Aid Koreans Held by Soviet Since World War II”; 『朝日新聞』 1981. 11. 23, “樺太棄民と日本の責任”.

VI. 맺음말

197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을 이끌어 온 오오누마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심한 마지막 선택지는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 의원간담회'의 결성이었다.³⁸⁾ 결과적으로 1987년 의원간담회 결성은 외교적 교섭이 팍막한 상황에서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단 자민당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하라 봄베에[原文兵衛](회장)를 비롯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당의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사무국장)를 중심으로 138명의 의원을 규합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인 외무성과 법무성 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다. 또한 교섭대상국인 남한, 북한, 소련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의원들이 적절히 포진되어 각국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던 장애물들을 하나씩 견어낼 수 있었다.

1987년 12월에는 이가라시를 중심으로 실무자소위원회를 발족해 업무 처리와 관련해 일본적십자와 관계부처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1988년에는 법무대신이 갱신 가능한 1년 단위의 체류허가를 언명함으로써 사할린한인의 일본 영주귀국이 사실상 가능해졌고,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사할린한인과 한국 가족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재회비 5,800만 엔이 상정되어 향후 예산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길이 열렸다. 1989년에는 소련 측이 한국을 방문지로 한 출국을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적십자와 일본적십자의 공동사업체가 발족해 대규모 한국방문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1990년 2월에는 120명의 사할린한인이 전세기편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할린한인과 한국 가족의 상봉이 한국 고향방문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2010년에 완료된 한인 1세의 영주귀국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38) 오오누마 마사아키 저, 1993, 앞의 책, 제8장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담회」 참조.

이렇듯 일본의원간담회 발족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사할린한인 귀환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19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고르바초프-세바르드나제로 상징되는 소련 지도부의 신외교노선, 그 후로 가속화된 세계적인 탈냉전 상황,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급속히 개선된 한소관계 등 더 이상 북한이 사할린한인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일련의 환경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서울올림픽은 사할린한인 사회에도 큰 파장을 던져 북한국적자들은 앞다투어 고향방문을 위해 무국적 여권을 얻고자 했다.³⁹⁾

이처럼 1987년을 기점으로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된 맥락을 되짚어 보면 거꾸로 본 연구에서 살핀 1945년 종전 이래로 이 문제의 해결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일본정부의 대응이 지닌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관한 전후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 '일본은 경유지일 뿐이며, 모든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발상의 뿌리는 종전 직후부터 가시화된 혈통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귀환원호태도에 있었다. 즉 일본정부가 독자적인 귀환원호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점령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1946년 미소 간 협정에서 소련 점령지구 한인이 송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일본정부가 이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연합국총사령부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⁴⁰⁾ 또한 1950년대 중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고

39) 角田房子, 앞의 책, 203~204쪽, 서울올림픽 이후의 변화 참조.

40) GHQ는 종전 초기부터 일본정부 외에도 구 화테 소재 탄광에서 일본 본토 탄광으로 전환배치된 이른바 이중징용자의 탄원서라든가, 일본 재류 조선인단체 등의 탄원서를 통해서도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종전 직후에는 참모본부 G-3가 이들의 귀환가능성을 주한미군정에 타진한 바 있다. 당시 주한미군정은 월남민과 해외 귀환 한인으로 인한 점령지의 치안과 공안문제를 비롯해 민생문제 악화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전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주한미군정의 G-2보고서를 분석한 일련의 줄고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하위 점령기구였던 주한미군정의 반대로 인해 GHQ가 한인의 귀환문제 전반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것보다는 1946년 12월 미소 간 협정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1947~1948년 세계냉전의 부각과 일본점령당국의 '역코스' 등의 점령정책 변화 속

이끌어낸 일소공동선언과 그에 따른 억류 일본인의 귀환과정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운운하는 ‘국적’이란 사실상 ‘혈통’이었다.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 처와 가족들은 분명히 일본국적에서 제외되었으나 1958~1959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결혼과 더불어 ‘비일본인’이 된 ‘일본인 처’ 덕분에 일본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박노화와 같은 한인에 의해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활동과 귀환촉진운동이 시작된 사실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둘째, 소련은 냉전체제 아래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은 사할린한인에 대해 강력한 재외교민정책을 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의 귀환문제는 ‘조소 간의 문제’라는 것이 소련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소련 측은 사할린한인의 남한 정착을 전제로 한 출국을 허가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은 경유지일 뿐’이라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나카 내각이 그토록 전례 없는 활발한 교섭을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당당한 태도는 이들이 사할린에 거류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일본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역설적이게도 대소교섭이 정체기를 맞게 된 1976년부터 약 10년 사이에 1972년 다나카 수상 답변보다 그나마 진일보한 논의가 의회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자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할린재판을 계기로 확산된 전후처리와 전후책임에 대한 일본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그리고 이에 호응한 일부 정치인의 신랄한 비판에 따른 수동적 성격의 변화였다. 1976년 이나바 법무상의 발언은 바로 그 전형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사회 내부의 압박보다는 국제인권규약 비준과 난민조약 가입에 따라 경제력에 걸맞은 ‘인권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재일코리안의 차별적 인권상황

에서 일본정부가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것이 GHQ의 한인문제 인식이라든가 정치적 판단과 어떻게 맞물렸는가 하는 문제를 보다 실증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등을 이유로 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일본정부의 변화를 추동한 더욱 강력한 힘이었다. 그 결과 일본정착을 전제로 한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넷째, 전후 일본정부의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는 본질적으로 한인 등 구 식민지민을 일본열도에 들이지 않겠다는 순혈주의가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송사업에서도 확인된다. 즉 식민지배와 관련해 일본의 과거 치부를 들먹이고, 전후 반정부운동의 핵심집단이며, 게다가 일본의 복지예산마저 축내는 빈한한 집단을 어떻게든 일본에서 내몰겠다는 것이 북송사업과 관련한 일본의 의도였다고 볼 때, 단지 공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이들과 똑같은 상황의 사할린한인을 일본영토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섯째, 사할린한인 귀환촉진운동은 시민운동의 방향 및 활동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1987년 오오누마가 산파역을 자처함으로써 가능했던 의원간담회의 결성과 활동방향은 일련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헤드쿼터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비록 다부치 의원이나 쿠사가와 의원이 시민운동세력과 호응해 일본정부의 형식적인 교섭방식이나 업무추진 태도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당시 의회 내에서는 1987년의 의원간담회와 같은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과 더불어 각 장애요소를 허무는 역할을 떠맡을 인물들을 적절히 규합하고자 하는 노력과 발상이 시민운동세력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를 강력히 압박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1987년 이후 오랜 시민운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오오누마가 보였던 운동방식과 성과는 여타 전후 보상운동의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외務省(内部文書), 1946. 12, 「終戰前後における樺太半島方面陸軍部隊の消息」.
 樺太元泊村長, 1947. 5, 「管内狀況報告書」.
 樺太協會, 1945. 10. 25, 『樺太引揚同胞の現況』.
 在外同胞援護會, 1946. 1. 25, 『殘留同胞と南樺太』.
 外務省管理局總務部北方課, 1947. 1. 20, 『樺太情報』.
 外務省, 1947. 1, 「第二次樺太引揚邦人に対する米軍の調査に関する件: 覚書」.
 일본국회 속기록(중의원·참의원).
 외무부, 1983. 1, 『화태교포관계자료』.

국내 논저

- 강정하, 2001, 「사할린 잔류 한인의 영주귀국을 둘러싼 한-일-러 교섭과정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지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성중, 2009,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
 김성중, 2006,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0.
 노영돈, 1990, 「사할린 韓人에 대한 日本의 法的 責任」, 『교포정책자료』 35.
 노영돈, 1992, 「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7-2.
 이성환, 2002,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국제학논총』 7.
 이연식, 2010, 「전후 해외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 『근현대 한일 관계의 제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이연식, 2013. 6, 「전후 일본의 히키야게(引揚) 담론 구조」, 『일본사상』 24호.
 정인섭, 1989,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4권 2호.
 조정남, 1988,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 『민족연구』 8.
 한혜인, 2011,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102.
 홍석조, 1988, 「사할린잔류한인귀환에 관련된 제문제점 및 대책」, 『통일한국』 49.
 황선익, 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역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일본어 논저

- 全国樺太連盟, 1978, 『樺太沿革・行政史』, 全国樺太連盟.
- 厚生省援護局, 1978, 『引揚と援護三十年の歩み』, ぎょうせい.
- 三田英彬, 1981, 『棄てられた四万三千人』, 三一書房.
- 北海道新聞社, 1988, 『祖国へ』, 北海道新聞社出版部.
- 高木健一, 1990, 『サハリンと戦後責任』, 凱風社.
- 大沼保昭, 1992, 『サハリン棄民: 戦後責任の点景』, 中公新書.
- 新井佐和子, 1997, 『サハリンの韓国人はなぜ帰れなかったのか―帰還運動にかけたある夫婦の四十年』, 草思社.
- 竹前栄治 解説・竹前栄治・今泉真理 訳, 1996, 『GHQ日本占領史-GHQ占領史序説―』 1, 日本図書センター.
- 成田龍一, 2006,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 帝国の戦争体験』, 岩波書店.
- 三木理史, 2006, 『国境の植民地・樺太』, 塙書房.
- 今西一, 2012, 3, 『北東アジアの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サハリン・樺太を中心に―』, 国立大学法人小樽商科大学出版会.



[ABSTRACT]

The Steps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Detained Koreans in Sakhalin, 1945~1983

YI Yeonsik

After World War II,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and non-Japanese was an issu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GHQ. All of the detained Japanese were able to repatriate to their homeland due to the Repatriation Agreement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GHQ in 1946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56. But the detained Koreans in Sakhalin could not repatriate to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had lost Japanese nationality at the time of the San Francisco Treat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no efforts for the detained Koreans, regarding them as non-Japanese although they had moved to Sakhalin as Japanese civilian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After the 1960s,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negotiate with the Soviet Union for the repatriation of detained Koreans, because there were no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But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Korean government for an important premi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cure settlement of Koreans repatriated from Sakhalin(including those people repatriated via Japan), and repatriation expenses, too.” This was the basic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1972, Prime Minister Tanaka Kakuei reconfirmed this policy. But the Korean government

insisted on the opposite, that detained Koreans should settle in Japan and all the expenses should be pai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Soviet Union declared that it would not permit embarkation to South Korea. The place of settlement for the detained Koreans was a high hurdle for diplomatic negoti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during the 1960s and the 1970s.

Keywords

Japanese empire, detained Koreans in Sakhalin, obligatory mobilization, repatriation, war responsibility, postwar responsibility, diplomatic negotiations, Japanese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대원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

이익주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개석 선생의 저서 『고려-대원 관계 연구』가 출간되었다. 책에 따르면 저자의 정년과 때를 맞추어 출간되었고 동시에 저자의 첫 저서라 하니, 몽원사(蒙元史) 연구자로서 수십 년 동안 정진해온 저자의 연구를 한 단계 매듭짓는 의미있는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 한국 동양사학계의 두드러진 경향이 ‘몽골사와 관계사의 약진’이라고 하는바,¹⁾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다룬 이 책은 그러한 연구 경향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라도, 한국사 연구자로서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 책의 출간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관계란 본래 상호적인 것이므로 마땅히 고려와 몽골의 상호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나, 평소 필자의 연구가 고려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1) 육정임, 2012, 「몽골사와 관계사의 약진: 2010~2011년 송·요·금·원사 연구 개관」, 『歷史學報』 215(한국 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

지 우려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필자의 연구 시각을 교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컸다.

이러한 기대는 비단 필자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닐 것이다. 돌아보면 1980년대 중반 필자가 처음 원간섭기 고려의 정치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원사(元史)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다. 일본인 학자들의 오래된 논문들 말고는 그나마 고병익 선생과 이용범 선생의 고려-원 관계사 논문 몇 편이 필자를 비롯한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공부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다. 1989년에 한국역사연구회의 '원간섭기 사회성격 연구반'에서 주채혁 선생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원은 중국 왕조가 아니고, '몽고'가 아니라 '몽골'이라고 불러야 하며, 고려-몽골 관계사가 아니라 몽골-고려 관계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²⁾ 하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다시피 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필자가 1996년에 「고려-원 관계의 구조와 고려 후기 정치체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여전히 고려-원 관계로 인식되었고, 몽골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몽골의 독자적인 요소는 한지파(漢地派)의 존재를 통해 희석되거나, 드러내 말하지는 않더라도, 뿌리 깊은 한화(漢化) 이론에 묻혀 외면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몽골사가 중국사로부터 독립한 것이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1990년대 말부터 국내 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야마 마사하키[衫山正明] 교수의 영향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페르시아어 사료인 『집사(集史)』를 번역하고 몽골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창한 김호동 교수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원사 및 몽골사 연구의 시각 변동은 당연히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종전의 연구가 한-중 관계사의 흐름 속에서 13~14세기 고려-원

2) 이 좌담회 뒤에 주채혁 선생의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애산학보』 8 및 『國史館論叢』 8)라는 같은 제목의 논문 2편이 발표되었다.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몽골제국 중심의 세계 속에서 고려의 위상을 밝히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실은 필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조구제(世祖舊制)’라는 가설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³⁾ 그 뒤로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교수의 ‘투하령(投下領),⁴⁾ 김호동 교수의 ‘속국(屬國)·속령(屬領)’ 등⁵⁾ 당시 고려-몽골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번 이개석 선생의 저서는 그 제목처럼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견해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었다.

저자가 고려-몽골 관계사 논문을 처음 발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이미 고려사 연구의 일부로서 고려-원 관계사를 취급하는 한국사학계의 연구 경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과 동시에 ‘대몽고국-고려 관계사’로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⁶⁾ 그로부터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양국 관계사의 열개를 갖추어 갔고,⁷⁾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몽원사 연구자의 ‘다른’ 시각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내외 연구 성과의 폭넓은 검토를 바탕으로, 때로는 사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때로는 두 세기에 걸친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제시함으로써 학계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였다. 그러면서도 시종 “몽원사 연구자의 다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연구와 토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8쪽)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저자의

3) 李益柱,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 - 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6.

4) 森平雅彦, 1998, 「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 - 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の高麗王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の成立 - 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5)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6) 李玠奭, 2004, 「『高麗史』 元宗·忠烈王·忠宣王世家 중 元朝關係記事의 註釋研究, 『東洋史學研究』 88.

7) 李玠奭, 2007, 「大蒙古國-高麗 關係의 재검토, 『史學研究』 88; 李玠奭, 2010, 「麗蒙兄弟盟約과 초기 麗蒙關係의 성격; 사료의 再檢討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101; 李玠奭, 2010, 「元 宮廷의 高麗 출신 宦官과 麗元關係, 『東洋史學研究』 113; 李玠奭, 2011, 「여몽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 - 제1차 여몽화약과 지배층의 통혼관계를 중심으로-,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기대대로 본격적인 토론이 앞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 서평에서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연구사적 의미를 짚어본 다음 독자로서의 소감을 몇 가지 개진해보고자 한다.

II

이 책은 서론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은 ‘고려-대원관계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는 야나이 와타루[箭内互],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나이트 슌포[内藤隼輔] 등 초기 일본인 연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960~1970년대 고병익, 김상기, 김재홍, 키타무라 히데토[北村秀人], 1980년대 이후 샤오지칭[蕭啓慶], 한루린[韓儒林], 천더즈[陳得芝], 천까오화[陳高華], 딩쿤지엔[丁崑健], 장동익, 김구진, 그리고 최근의 모리히라 마사히코, 시레이[喜蕾], 슈지엔[舒健], 우원까오와[烏云高娃], 보르지기다이 에르데니 바타르, 책메드 체렝도르지 등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타이완 포함), 몽골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광범하게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서론에는 국내의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고려-대원 관계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피력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을 통해 몽원사 연구자의 시각을 보여 주려한 저자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몽골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필자와 모리히라, 김호동 교수의 가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것과 차별되는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론에는 고려-대원(몽골) 관계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단계 구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고려-몽골 관계는 양국 군대가 처음 만난 1218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때 체결한 ‘형제맹약’이 양국 관계의 제1단

계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고려와 몽골의 전쟁 기간이고, 제3단계는 전쟁이 끝난 뒤부터 1356년 대원의 '고려에 대한 실질적인 강권적 지배와 간섭'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1356년 이후 '형식상 지배와 간섭관계'가 지속되다가 1369년 고려가 지정 연호를 다시 정지했을 때까지 짧은 기간이다. 저자는 이 가운데 제1단계와 제3단계를 주로 다루었는데, 전쟁 이전의 초기 여몽관계를 중요하게 취급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여몽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에서는 1218년 첫 접촉 이후 이듬해에 이른바 '형제맹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몽골의 요구 사항 가운데 고려 국왕의 친조와 몽골 법제의 준수, 그리고 뒷날 '6사(六事)'로 구체화되는 조군(助軍), 수량(輸糧), 납질(納質), 설역(設驛), 공호수적(供戶數籍), 치다루가치(置達魯花赤) 등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형제맹약 당시 몽골의 '6사' 요구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초기 여몽관계가 1231~1259년 전쟁 기간의 조정을 거쳐 1260년 이후 양국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2장 <몽골 군대의 고려 진주와 내속국체제의 수용>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1260년부터 1278년까지 몽골과 고려 사이에 지배와 복속관계가 성립,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먼저, 전쟁 직후에는 쿠빌라이의 정책 변화, 즉 '쿠빌라이가 '조술변통(祖述變通)'과 '개행한법(改行漢法)'을 내걸고 대몽고국체제를 대원체제(大元體制)로 수정하는 길을 걷게 됨으로써 한법적 천하관에 기초한 책봉-조공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작동하게 되었고"(130쪽) 그에 따라 고려는 왕국의 기본틀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몽골이 부과한 국왕 친조와 '6사'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속국(內屬國) 체제가 성립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는 사실상 1218년 이래 몽골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초기의 '형제맹약'을 "고려와 대몽고국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내속관계의 첫 단추"(129쪽)라고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1270년경 몽골이 고려에 설치한 둔전도, 종래 설명대로 일본 침략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내속국' 고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제3장 <여몽 통혼관계의 성립과 고려 안의 몽골 권력기관>에서는 고려와 몽골의 왕실 혼인이 양국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재음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마국왕’이 출현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차원을 달리할 정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음을 밝혔다. 즉, 이전에 왕국을 유지하면서 ‘6사’의 의무를 지는 ‘새로운 개념의 책봉-조공국’으로부터 한걸음 나아가 몽골 황금가족(黃金家族)의 일원인 부마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둔전군을 비롯한 몽골군이 철수하고 다루가치가 폐지되는 등 ‘6사’ 의무 일부가 면제되었는데, 이는 고려국왕이 몽골제국에 충성하는 제후왕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결과로서, 저자는 이를 ‘내속관계의 심화’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왕실혼인으로 말미암아 고려국왕의 왕부(王府)와 몽골공주 출신 왕비의 공주부(公主府) 등 몽골식 가정기관(家政機關)이 설치되었음을 밝히고, 『고려사』에 등장하는 비체치(必闡赤)를 왕부 소속의 케식(怯薛)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제4장 <몽골제국 안의 고려인과 여몽관계>와 제5장 <몽골의 고려변경 지배와 고려 안의 몽골인, 몽골문화>는 이상에서 밝힌 고려-몽골 관계의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서술한 것이다. 각 절의 제목들을 보면 ‘대원 궁정의 고려 출신 환관’, ‘두 나라 지배층의 통혼관계와 여몽관계’, ‘몽골의 고려변경 지배: 탐라총관부를 중심으로’, ‘대청도와 몽골황자, 몽골제왕의 고려 유배’, ‘고려의 색목인 상인과 몽골문화: <쌍화점>과 염제신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등으로, 제목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장은 여몽관계사 연구가 정치사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III

저자는 책의 모두에서 “대몽고국/대원과 고려와 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간접 관계로 보는 것보다 몽골 사회의 혈연 중심의 봉건적 시스템 속에 편제되어 있는 내속관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5쪽)고 밝혀 놓았다. 이것이 결국 이 책의 결론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저자의 주장은 ‘내속국론(內屬國論)’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이 가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본격적인 토론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저자가 이 책을 내면서 바라는 바일 것이다. 다만, 서평을 위해 일독하면서 필자가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책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그 점에서 우선 읽는 재미가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고려-몽골 관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예를 들어, 심왕(瀋王)의 위하(位下)인 심양로 및 심주가 일정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로의 고려인들을 분리하여 편성한 교우로(僑寓路)·교우주라는 해석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고려사』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던 기사들이 해명될 뿐 아니라 요동 지역의 고려인들에 대한 지배 문제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70년경 몽골의 둔전 설치가 일본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도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여기에는 1260년 이후 고려가 국가를 유지하면서 ‘6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화의가 이루어졌으나 몽골로서는 고려가 그것을 순순히 이행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저자의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1278년 둔전의 폐지를 부마국왕의 위상이 확인되고, 고려가 부마국왕의 영토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면서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1278년에 설치된 비체치와 신문색(申聞色)을 몽골식 케식 즉, 왕부(王府)의 속관으로 보는 것도 새로운 해석이다. 비체치가 케식의 일부였다는 점은 모리히라 교수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⁸⁾ 그 설치를 몽골식 결책 형식의 도입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특히 ‘정방(政房) 비체치’와 ‘왕부 비체치’를 다른 것으로 보아 후자로부터 고려왕부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저자의 독창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역시 몽골의 정치 문화 및 제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으로, 향후 고려시대 정치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두 번째 미덕은 곳곳에서 보이는 치밀한 논증에 있다. 예를 들어, 1219년 고려와 몽골 사이에 체결된 소위 ‘형제맹약’에 대한 분석이 그러하다. ‘형제맹약’에 대해서는 1960년대 고병익 선생의 연구 이후 첫 번째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충묘지명>과 유승단이 지은 2편이 국서를 검토하여 이 맹약이 몽골에서 먼저 요구하고 고려에서 받아들인 것이었음을 밝혔다. 계속해서 『고려사』에 실려 있는 1231년 몽골의 첩문 2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맹약 당시 국왕 친조와 ‘6사’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이 맹약을 고려-몽골 관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압권이라 할만하다.

1259년에 고려 태자가 입조해서 쿠빌라이를 만난 ‘양초지교(梁楚之郊)’가 양국(梁國)의 치소인 오늘날 하남성 상구현 남쪽과 초국(楚國)의 치소인 오늘날 강소성 서주시 사이의 ‘1백리 안의 들[郊]’이며, 쿠빌라이가 거쳐 간 변량(개봉)으로부터 13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고려 태자가 일부러 찾아간 것이라는(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설명은 참 흥미롭다. 이러한 추론은 중국의 지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쿠빌라이의 행군로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인데, 이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몽골과의 강화에 임하는 고려의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이 책에는 우리의 몽골에 대한 상식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대목이 적지 않다. 충선왕이 대도에 설치한 만권당은 그 본래 이름인 ‘제미기덕통소개(濟美

8) 森平雅彦, 2001, 「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 『史學雜誌』 110-2.

基德痛掃漑)가 몽골어로 ‘입을 다물고 명상에 잠겨 앉아 있다.’는 뜻으로, 유자(儒者)들이 모여 학문하던 곳이 아니라 ‘묵언참선(默言參禪)하는 방’이었다는 해석이 새롭다. 제주의 향파두리성이 ‘말이나 소가 마시는 구시물이 있는 성’을 뜻하는 몽골어 ‘흙보고 투르’ 또는 ‘흙보 투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서, 삼별초의 향몽 유적이 아니라 몽골의 탐라 지배의 근거지였다거나, 고려 속요 〈쌍화점〉의 ‘쌍화(雙花)’는 ‘쌍화’로 읽히며, 만두가 아니라(만두는 ‘상화’) 여성이 몽골식으로 머리를 꾸밀 때 사용하는 머리털[가발]이나 머리 장신구를 뜻한다는 해석도 독창적이다.

다만, 이 새로운 해석들은 본격적인 연구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제출되어 앞으로 더 검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만권당이나 향파두리성, 쌍화점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들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밖에도 몽골과 관련된 수많은 상식들이 학문적인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고려-몽골 관계의 희미한 흔적을 쫓아 대청도 답사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저자의 노력이 존경스럽다.

IV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저자의 학문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고려-대원 관계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을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사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한국, 중국, 일본과 몽골 연구자들의 최근 성과까지를 폭넓게 검토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견해가 다른 논저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충실히 인용하는, 학자로서의 여유와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또 이 책은 시각의 측면에서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을 것이 분명한데,

책을 통해 토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가 성공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필자가 이 책을 읽으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으로써 서평의 책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려와 몽골(대몽고국, 대원)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속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속관계는 필자가 ‘세조구제’를 통해 주장하는 ‘책봉-조공 관계의 13~14세기적 형태’와는 물론 다르고, 모리히라 교수의 ‘고려왕부설’이나 김호동 교수의 ‘속국·속령’과도 다른 것이다. 모리히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를 정동행성의 통치영역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형식논리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전개한 측면이 있다”(34쪽)거나 “고려왕권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성격 가운데 제왕의 위하지배(位下支配)의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53쪽)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김호동 교수의 견해와 저자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저자가 설정하고 있는 고려-몽골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분절점은 1274년 왕실혼인과 1278년 부마고려국왕의 출현이다. 책에 따르면, 서로 연결된 두 사건을 계기로 몽골 통치질서 안에서 고려국왕의 지위가 크게 달라졌고,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이전에는 고려가 국가를 유지하면서 ‘6사’의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이던 것이 이후에는 ‘6사’의 무 가운데 일부가 면제되고 고려에 대한 통치가 고려국왕에게 위임되었다. 1278년에 몽골 둔전군이 고려에서 철수하고 비체치·신문색 등 왕부관이 설치된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저자는 이점에 주목하여 왕실 혼인 이후 고려-몽골 관계의 변화를 ‘내속관계의 심화’라고 표현하거나, ‘신(新) 조공-책봉관계’에서 ‘부마국의 요소를 덧붙인 특수한 중반관계’로 차원이 달라진 것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정작 이 책에서 필자가 이해한대로 왕실혼인과 부마고려국왕의 출현이 고려-몽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였다고 보는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서론에서 고려-몽골 관계사를 4단계로 구분하면서 전쟁이 끝난 1260년부터 1356년까지를 제3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단계 안에서 12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또 한 차례 획기적인 단계가

설정되는 셈이다. 그 앞 시기, 즉 제3단계의 앞 10여년은 ‘6사’ 이행을 조건으로 고려의 체제를 유지하는, 즉 ‘세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관계로 설명되지만(이 대목에서 필자의 ‘세조구제’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였다.), 1278년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한 언급이 없다. 아무래도 ‘세조구제’가 계속 관철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신하여 부마고려국왕의 지위와 고려왕부의 존재를 강조한 것을 보면 모리히라 교수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거나, 아니면 왕실혼인 이후 속국·속령의 두 측면이 병존했다는 김호동 교수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이 역시 분명한 언급이 없다.

이 책에서 1270년대 중·후반 왕실혼인 및 부마고려국왕의 출현을 전후하여 ‘세조구제’와 ‘고려왕부’를 병렬시킨 데에는 ‘세조구제’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작용한 듯하다. 저자는 필자가 말하는 ‘세조구제’를 고려가 국가의 유지를 전제로 국왕의 친조와 ‘6사’ 등 내속국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세조구제’가 쿠빌라이와 고려의 원종·충렬왕 사이에 오랜 협상을 거쳐 성립한 관계의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접촉 초기부터 몽골은 고려를 ‘6사’의 일방적 의무를 지는 속국으로, 고려는 몽골을 송·거란·금과 같은 책봉-조공 관계의 대상으로 각각 다르게 생각했음은 저자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 생각의 차이가 전쟁을 불러왔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몽골이 고려국왕을 책봉한 가운데 ‘6사’의 이행을 둘러싸고 외교전을 벌이다가 결국 ‘6사’의 핵심적인 요소인 호구조사와 다루가치 설치 두 가지를 몽골이 철회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세조구제’이다. 그리고 그 성립 시기는 다루가치가 철수하고 호구조사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1278년으로 보았다.

‘세조구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으로써 그 성립 시기를 달리 보게 되었고, 그로부터 1278년을 필자가 ‘세조구제’의 성립 시점으로 보는 데 반하여 이 책에서는 이전에 성립한 ‘세조구제’가 그 수명을 다하고 다른 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세조구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쿠빌라이 초기 고려-몽골 관계에서 ‘세조구제’

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조술변통(祖述變通)’, ‘개행한법(改行漢法)’ 등의 정책이 그 뒤로, 구체적으로는 1274년 왕실혼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으로 남기고자 한다. 책의 곳곳에서 1260년 무렵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쿠빌라이의 한법(漢法) 수용을 조심스럽게 거론한 반면 127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왕실혼인과 부마고려국왕의 출현 이후로는 고려왕부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왕부는 당시 고려를 몽골부마에게 분봉된 투하령(投下領)으로 보는 근거로서 모리히라 교수가 처음 주목했고, 이후 김호동 교수와 저자에 의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속관 구성의 미비함이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책에서도 왕부의 출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역시 고위 속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려왕부를 “카안의 내정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왕의 사적인 권력기구로서 …… 고려조정과 별개로 존재하여, 고려에 대한 몽골 지배를 관철하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였”(226쪽)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려왕부가 고려-몽골 관계에서 그토록 중요한 기구였다면, 『고려사』 등에는 왜 그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 왕부의 설치만 해도 1290년 조인규가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에 임명된 사실을 가지고 역추론하는 데 불과하며 실제 설치 기사는 없다. 또 왕부단사관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도 조인규를 비롯하여 오잠, 조련, 권부, 이체현 등 몇몇에 불과하며, 이들이 왕부의 속관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왕부의 핵심 관직인 왕부(王傅), 부위(府尉), 사마(司馬) 등은 임명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자료를 근거로 고려-몽골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왕부의 존재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 다. 당시 고려에는 정동행성을 비롯한 대원의 관청과 관직이 다수 설치되어 있었고, 고려 사람들이 이들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여겼으므로 고려국왕이 보거(保舉)해서 대원에서 수여하는 명예직이었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한다.

공주부와 비체치에 대해서도 좀 더 살필 것이 있다. 저자는 충렬왕비 쿠틀룩켈미시 공주의 응선부(膺善府)나 충선왕비 보타시린 공주의 숭경부(崇敬府)를 몽골 권력기관이라고 하였으나, 고려에도 왕비와 왕자에게 ‘입전치부(立殿置府)’하고 첨사(詹事) 등의 속관을 두는 제도가 있었으므로(『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妃主府)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 비체치의 경우, 저자는 왕부비체치와 정방비체치를 구분하고, 전자로부터 왕부의 존재를 재확인했지만, 실제 사료에서는 두 기관의 비체치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예컨대 권근이 지은 <이색행장>에 따르면, 이색은 1355년에 “왕부비체치가 되어 비목 쓰는 일을 담당하였으니 유림들이 영선이라 하였다(乙未春 爲王府必闡赤 掌書批目 儒林榮選也).”고 한다. 왕부비체치가 인사 행정을 담당한 사례로서 정확하게 정방비체치의 역할과 중복된다. 이 때문에 김창현 교수는 왕부의 비체치와 정방의 비체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었던 것인데,⁹⁾ 이를 왕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왕부와 정방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천착해볼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본래 상호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루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에는 고려-몽골 관계의 한 쪽 당사자인 고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목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치밀한 논증을 거쳐 체결 과정과 내용을 밝혀낸 1219년 ‘형제맹약’에 국왕의 친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국왕의 친조는 그렇게 쉽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려 초에 거란의 침략으로 개경이 함락된 상황에서 친조를 약속하고 거란 군을 돌아가게 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친조는 끝내 실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몽골과의 첫 접촉에서, 그것도 한 차례 교전조차 없던 상황에서 사신이 가져온 서신만을 보고 고려가 친조를 약속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당

9) 金昌賢, 1998, 『高麗後期 政房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시 국왕 친조는 몽골이 요구했으나 고려가 받아들이지 않은, 따라서 몽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양국 간에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인데, 그렇다면 ‘형제맹약’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몽골의 친조 요구를 강조하는 만큼, 그것을 거부한 고려의 입장도 함께 살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또, 저자도 인정하듯이 몽골과의 관계에서 고려의 기본적인 입장은 왕조를 유지하면서 몽골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260년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나 ‘불개토풍(不改土風)’의 합의 아래 고려 왕조의 유지를 약속받은 것이나, 이후 몽골의 ‘6사’ 요구를 회피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고려측에서 왕실혼인을 먼저 제안했고, ‘부마고려국왕의 출현’으로 평가되는 부마국왕의 금인(金印) 수여도 실은 고려가 요청한 결과였다.

당시 고려인들은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 그것은 고려 왕조의 존속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자가 ‘내속관계의 심화’라고 표현한 이 변화가 고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고려측의 입장을 살폈어야 한다. 이미 밝혀져 있는 것처럼 당시 고려 사람들은 몽골과의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왕실혼인이 그러한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과연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편향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시에, 옛날 일본인 학자들의 만선사관이 원을 주제로 하고 고려를 객체로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려가 고려-몽골 관계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시점을 견지함으로써 비교적 균형있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몽골 중심의 시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욕심 때문일까? 몽골의 고려 침략을 정벌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책의 제목으로 고려-대원 관계보다 대원-고려 관계를 선호했다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잔향(殘響)처럼 귀에 맴돈다.

두서없는 서평을 마치면서, 서평을 쓸 때마다 늘 그렇듯이, 저자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필자의 주장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다만 이 글이 저자가 기대했던 토론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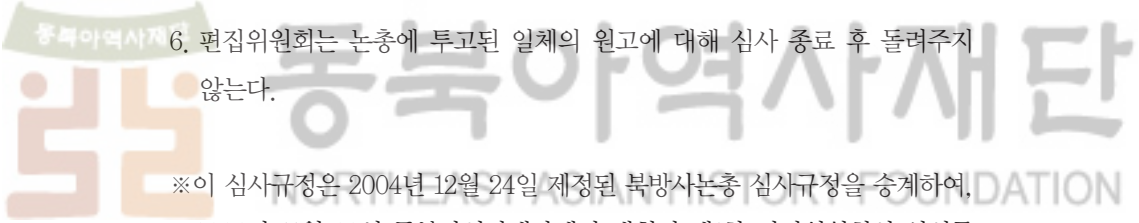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禽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6호(2014.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4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31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평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